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教育學博士學位論文

高句麗 初期 支配勢力의 再編과 政治體制의 變動

2021년 8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金 聖 玹

高句麗 初期 支配勢力의 再編과 政治體制의 變動

指導教授 徐 毅 植

이 論文을 教育學博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1년 4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社會教育科 歷史專攻

金 聖 玹

金聖玹의 博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21년 7월

委 員 長 _____

副 委 員 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國 文 抄 錄

본 논문은 한국 고대사회의 表徵으로 나타나는 部를 분석대상으로 삼아 지배층이 國政에 참여하여 정치를 운영해 나간 원리와 양상을 究明하고, 고구려의 국가 성립 과정을 고조선 및 舊고구려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系統的으로 접근하여, 주몽을 구심점으로 하여 들어선 고구려의 초기 역사가 고대사회의 재편 과정이었음을 밝힌 글이다.

서기전 2세기 후반, 舊고구려는 위만조선 및 濊와 함께 東夷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었으며, 舊고구려에는 諸加가 스스로 連帶하여 구성한 정치조직인 部가 성립해 있었다. 部의 中核을 이루는 諸加는 독립된 政治力을 보유한 王者였고, 加의 王者性은 그가 諸 읍락을 統主하는 데서 지녔던 行政的·軍事的·經濟的 측면 등의 支配權에 기반을 두었다. 諸加는 연대를 통해 部를 조직하고 누층으로 疊築하여 상위권력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지배권을 더욱 鞏固化하였다. 곧 상부국가로서 舊고구려의 건설이며 그 왕으로서 高句麗王의 존재이다.

고구려왕은 五部에 소속한 지배층인 國人이 共立하였다. 國人의 共立은 새 왕이 고구려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따라서 國人의 共論에 따라 고구려왕이 추대되면, 설령 現王의 直子 우선 계승이라는 원칙하에 우선권을 지녔던 왕위계승 후보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에 따랐다고 이해된다. 國人이 共立하여 推戴한 왕이라는 점에서, 고구려왕은 '共立王'으로서의 성격을 띠었다. 당시 고구려 王權의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고구려어가 곧 '皆次'이다. '皆次'는 고구려어로 '王'이란 뜻으로, 語義 및 音價 상 신라의 '居西'와 相同한 단어이다. 고구려와 신라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皆次·居西干을 共立하는 정치구조가 선행한 체제에서 이어진 것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王者的 存在인 諸加가 다시 그들의 상위 王者로서 고구려왕을 聳立시킨 전제 위에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二重聳立體制'라 할 수 있다.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정치권력은 部에서 生成·保持되었고 諸加는 각 部에 소속함으로써 그 權力을 享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諸加가 주체가 되어 고구려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國家權力을 각 部가 分有한 형태였다. 고구려왕 또한 部에 소속하는 위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玄菟郡의 설치 및 축출 과정에서 舊고구려의 王部로서 消奴部와 王室로서 沸流國의 주도권 및 그 영향력은 점차 미약해져 갔다. 종래 對漢 관계를 이끌던 舊고구려 왕실의 입지는, 舊고구려를 이끌 만한 새로운 인물이 대두한다면 王統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곧 주몽의 등장이다. 주몽은 舊고구려의 王室이었던 沸流國王 松讓의 투항을 받아냄으로써 고구려의 새로운 王室을 열었고, 이로써 고구려의 王部는 消奴部에서 桂婁部로 교체되었다.

王部가 교체된 당대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建國'하였다는 인식보다는 고구려를 '繼承'하였다는 인식이 더 보편적이었다고 추정된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그가 국가의 시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등장한 象徵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주몽은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고구려'를 '繼承'하여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舊고구려를 계승한 위에서 성립한 고구려의 국정은 한동안 舊고구려로부터 운영되어 온 조직과 질서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었다. 곧 部를 中樞로 한 국가운영체계의 유지이다.

諸加는 部에 소속한 加로서 諸加會議에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審議·決定하였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권한은 고구려왕에게 위임되었다. 諸加會議는 國中大會에서 실시하던 諸加評議를 포함한 정기 제가회의와 諸加의 共論을 통해 사안을 논의하는 별도의 회의기구로 구성되었으며, 평시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가회의에는 각 部의 대표로서 大加가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大加는 세력 면에서도 大者이겠으나 그와 동시에 국정 운영상 주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지위이기도 하였다.

한편, 王部 교체 이후 고구려왕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현안은 舊고구려에서 이탈한 지배세력에 대한 통합 및 정돈이었다. 대내적으로는 특히 유리왕 대에 지배세력의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新왕실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의 재편이 일단락하면서, 각 部에 소속한 전체 諸加가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으로 단행한 것이 尉那巖 천도였다.

대외적으로는 주몽 이후부터 대무신왕 대까지 五部 소속 諸加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갔다. 특히 대무신왕 대에는 부여를 정벌함으로써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유리왕 대 서쪽 방면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고구려현을 공격하여 중원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한 것과, 부여 정벌을 통해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한 기반 위에서, 남쪽 방면으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 군현에 附庸하고 있던 諸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점차 고구려왕으로 집중하였고, 또한 租賦統責權과 같이 諸加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왕과의 결탁이 중요하게 되면서, 각 部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태조대왕 이후 官等을 소지한 部 소속 제가층이 나타나는 양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구려왕 또한 諸加를 포용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였다. 급격히 확장된 영역의 통치에 요구되는 行政力과 支配力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部와의 提携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이중용립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지배방식이 유효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기보다는 部에 소속한 諸加의 統主權을 일단 인정한 위에서 諸加가 자발적·주체적으로 새로운 統治理念을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참여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통치이념이란 곧 고구려왕이 諸加가 지배하는 下戶 또한 국왕의 民으로써 직접 통치한다는 이념으로, 민중왕 대부터 賑恤을 통해 표출되었던 이러한 의지는 태조대왕 대에 들어서 더욱 확산되며 政治的으로도 現實化하여 갔으며, 고국천왕 대에는 賑貸의 恒式化로써 制度化하였다. 이러한 時勢 속에 정치권력은 국왕에게 集積하여, 국정은 국왕에 의해 결정되고 국왕의 관료 집단 및 정치기구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가 정립하는 위에서 종래의 읍락사회는 地方으로 재설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원리상 국왕이 정치권력을 掌握한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國王集權體制'라 부를 수 있다.

국왕집권체제가 공고화하면서 정치권력은 部에 소속하면서가 아니라 고구려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면서, 종래 諸加의 王者性을 뒷받침하던 統

主權은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權力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앙에서 政治權力을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은 재편되어 '貴族化'·'官僚化'하였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部로서 '方位名部'가 성립하였다.

태조대왕 대 이후 可視化한 이러한 변동으로 고구려왕은 점차 다른 諸加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위치하게 되었다. 이제 고구려왕은 諸加가 共立한 왕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 속에서 모든 民을 통치하는 君主로서의 성격을 띠어 갔다. 국왕집권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나타난 새로운 왕권의 성격이었다. 이에 차대왕 이후의 국왕은 現王 및 先代王과의 혈연관계에 의해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확보되었고, 國人의 共論을 통한 共立은 왕위계승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위상을 지닌 절차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결국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던 舊고구려는 지배계급인 諸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이를 강제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古代社會였다고 할 수 있다. 舊고구려 시기부터 존재한 部는 국가가 건설되고 운영되는 데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였다. 따라서 주몽의 '건국' 이후 고구려는, 앞선 역사 경험에서 비롯된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이에 동반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정치권력구조를 새롭게 調整하는, 곧 고대사회의 재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요어 : 舊고구려, 部, 諸加, 二重聳立體制, 國王集權體制
학 번 : 2017-34448

次 例

國文抄錄

Ⅰ. 序論 ····· 1

Ⅱ. 舊고구려의 실체와 二重聳立體制 ····· 15
1. ‘消奴部爲王’ 시기와 舊고구려 ····· 15
2. 諸加 중심 정치조직과 部 ····· 32
3. 諸加의 王者的 性格과 二重聳立體制 ····· 46

Ⅲ. 高句麗의 舊고구려 계승과 諸加 세력의 재편 ····· 66
1. 舊고구려의 위축과 朱蒙의 고구려 ‘건국’ ····· 66
2. 諸加 세력의 재편과 尉那巖 천도 ····· 82
3. 諸加 共論의 국정 운영과 大加의 지위 ····· 98

Ⅳ. 정치권력의 集中化와 二重聳立體制의 변동 ····· 114
1. 예맥사회의 통합과 왕권의 성장 ····· 114
2. 정복 지역의 지배구조와 租賦統責權 ····· 126
3. 諸加層의 관료 진출과 관등제의 운영 ····· 138

Ⅴ. 지배질서의 재편과 國王集權體制의 정비 ····· 153
1. 국왕 중심의 지배질서 확대와 진휼의 실시 ····· 153
2. 관료 집단의 국정 운영 장악과 方位名部의 성립 ····· 168
3. 왕위계승과 '高句麗王'位의 推移 ····· 177

Ⅵ. 結論 ····· 193

參考文獻 ····· 201

日文抄錄 ····· 217

Ⅰ. 序論

서기 700년에 작성된 고구려 유민 高慈의 墓誌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세운 후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708년 간 그의 집안에서 대대로 公侯將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였다.[1] 평양이 함락되어 寶藏王이 항복한 때가 668년이므로,[2] 이를 기준으로 셈하면 「高慈墓誌」에서 밝힌 건국 시기는 서기전 40년이다. 『三國史記』에서는 서기전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고 하였다.[3] 3년의 차이가 있지만 두 기록 모두 서기전 1세기 후반 경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사실을 공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몽이 건국하기 전에도 이미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었다. 『漢書』 地理志에 玄菟郡 屬縣의 하나로 나타나는 高句驪縣이 그것이다.[4] 『後漢書』에도 漢武帝가 衛滿朝鮮을 滅하고 高句驪를 縣으로 삼아 玄菟에 속하게 하였다고 한다.[5] 현도군이 설치된 시기는 서기전 107년이었다.[6] 서기전 2세기 후반에 '고구려'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 '고구려'는, 주몽이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구려라 한 점, 그러면서도 고구려를 '새롭게' 재편해 나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舊고구려'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7]

하지만 『한서』와 『후한서』의 기록만으로는 縣名으로 나타난 고구려가 國名인지 種族名인지 아니면 地域名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新唐書』에서 賈言忠이

---

1) 「高慈墓誌銘」. '公諱慈 字智捷 朝鮮人也 先祖隨朱蒙王 平海東諸夷 建高麗國已後 代爲公侯宰相 …… 自高麗初立 至國破已來 七百八年卅餘代 代爲公侯將相不絶'(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27年 秋9月. '李勣拔平壤 …… 王臧遣泉男産 帥首領九十八人 持白幡 詣勣降'

3)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 …… 是漢孝元帝建昭二年'

4)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玄菟郡 …… 縣三 高句驪 …… 上殷台 …… 西蓋馬'

5)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6)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7) 舊고구려란 용어는 金光洙, 「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b에서 사용된 바 있다. 주몽의 건국 이전에 존재한 고구려는 '고구려 초기사회'(조민규, 「高句麗 太祖王의 出自와 桂婁部 王統의 成立過程」,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원고구려'(박노석, 「고구려의 발전과 현도군 책구루의 변화」 『全北史學』 46, 2015) 등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高麗祕記』라는 책을 인용하며 高氏가 漢 이래로 나라를 가진 지 지금 구백 년이라 한 사실이 주목된다.[8]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때가 서기전 1세기 후반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인 서기전 3세기경이라 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확신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다만, 고구려의 역년이 900년이라는 인식이 시사하듯, 『후한서』에 나타난 '고구려'를 國名으로 본다면 舊고구려 시기에 이미 국가가 성립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주몽이 '建國'하였다는 고구려의 역사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 체계가 요구될 것이다. 이와 같이 舊고구려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舊고구려와 고구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고구려 초기 역사는 그 社會相 및 歷史像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舊고구려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9]

이는 한국사상 古代國家에 대한 이해와도 맞물리는 문제이다. 고대국가는 시대구분의 한 단계로 개념화하여 설정되는 용어이다. 시대구분은 역사의 발전 논리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문제로서,[10] 이 과정에서 고대가 함의하는 바와 그 성격에 대한 규정은 역사인식 및 방법론의 적용에 따라 多岐할 수 있다.[11] 그러나 국가가 성립한 이후의 역

8) 『新唐書』卷220, 列傳145. '且高麗祕記曰 不及九百年 當有八十大將滅之 高氏自漢有國 今九百年 勣年八十矣'

9) 고구려 국가 형성 과정에 관하여는 다음의 著書·論文이 참고된다.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韓國史論』2, 1975 ; 李鐘旭,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歷史學報』94·95, 1982 ; 金光洙, 앞의 논문, 1983b ; 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 朴京哲, 「高句麗의 國家形成 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b ; 余昊奎, 「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 琴京淑, 『高句麗 前期 政治史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4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2005 ; 이종욱, 『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고구려의 국가 형성과 성장에 대한 〈모델3〉』,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 曺泳光, 「高句麗 初期의 國家 形成」,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 이준성,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장병진,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0) 李景植, 「韓國史硏究와 時代區分論」, 金容燮敎授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 『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知識産業社, 1997, p.237.

11) 서양과 한국에서 제기된 고대의 개념과 내용에 관하여는 김영하, 『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pp.19~32 참조.

사를 소유관계, 신분관계, 권력형태, 사유방식의 형식 및 그 변동과 발전 면에서 체계화하고 일관된 논리 속에서 단계화하고자 할 때,[12] 그 첫 단계로 고대를 위치시키는 것은 상호 일치하는 원칙이다. 시대구분으로서 고대국가와 그 始發點으로서 국가 성립의 관계가 이러하므로, 고대국가의 성격을 논하는 것은 일단 국가 성립의 문제를 선결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그간 고대국가의 성격을 논하는 諸 견해가 국가 성립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진전되어 온 것도 이러한 사정에 연유한다. 그리고 이 작업은 연구 환경의 학문적·시대적·정치적 형편 및 사료를 취급하는 관점, 史實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통해 제시되는 歷史像에 영향을 받는다.

근대 역사학의 방법론에서 고구려 국가 성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주체는 일본인 학자들이었다. 이들은 한국사 전반을 압도한 특징으로 타율성과 정체성을 부각하였다.[13] 이로 인해 舊고구려 사회는 低劣하고 未熟한 상태로 여겨졌다.[14] 주몽의 등장 이후에도 고구려의 사회 상태가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상정하였다. 대체로 3세기까지도 고구려 사회는 아직 국가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三國志』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部'를 씨족 혹은 부족으로 상정하고 풀이한 이해의 결과였다.

맑스주의 역사학에 입각하여 원시씨족사회로부터 노예제국가에 이르는 세계사적 보편적 발전법칙에 따라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에 고구려를 奴隸所有者的 階級의 國家로 발전하는 과도기 단계의 개념인 部族國家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15] 이러한 견해를 '公式主義'라 비판하며, 고구려는 '아시아적 생산양식'에 따라 고대사회이면서도 원시적·공동체적 생산양식이 강력하게 잔존하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견해도 제기되었다.[16] 나아가 공동체적 停滯性으로 인해 고구려는

---

12) 李景植, 앞의 논문, 1997, p.243 참고.
13) 金容燮, 「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 『歷史學報』31, 1966, pp.133~136.
14) 那珂通世, 「朝鮮古史考」 『史學雜誌』5-3~7-10, 1894~1896(「外交繹史」, 『那珂通世遺書』, 大日本圖書株式會社, 1915) ; 白鳥庫吉,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25-4·5, 1914(『白鳥庫吉全集3—朝鮮史硏究』, 岩波書店, 1970) ; 池內宏,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16-1, 1926(『滿鮮史硏究』上世第1冊, 吉川弘文館, 1951) ; 今西龍, 「高句麗五族五部考」 『史林』6-3, 1921(『朝鮮古史の硏究』, 國書刊行會, 1970) 등 참조.
15)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東京: 改造社, 1933.

5세기에서야 국가의 형태를 이루었으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공동체적 제도의 강한 잔존에 영향을 받았다고 상정하기도 하였다.[17] 이러한 諸 견해는 원시사회 이래 강인한 공동체적 요소의 잔존과 소유관계의 미발달 등을 이론적 근거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18]

광복 이후 북한의 역사학계는 사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역사를 연구해 가는 가운데, 특히 삼국시기 사회경제 구성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19] 고조선·부여·진국을 古代로 파악하고, 封建國家로서 고구려가 서기전 1세기 중엽에 성립한 것으로 설정하였다.[20] 그리고 1970년대까지는『삼국사기』고구려본기를 긍정하고 주몽의 '건국' 기년을 사실로 인정하는 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고구려 역년이 이보다 길게 나타나는 것은 소노부 출신을 왕으로 하여 형성한 소왕국의 건국 시기까지 포함한 결과로 이해하였다.[21]『삼국사기』기년은 주몽에 의해 왕조가 교체된 것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22] 그러다 1980년대에 들어서『삼국사기』의 기년은 왜곡이며, '주몽에 의한' 실제 고구려 건국연대는 서기전 37년이 아니라 그보다 적어도 7~80년은 더 올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3] 1990년대 이후에는 역년 900년설을 사실로 인정한 뒤, 여기에「광

16) 李淸源,『朝鮮社會史讀本』, 東京: 白揚社, 1936.
17) 金洸鎭,「高句麗社會の生産樣式—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普專學會論集』3, 1937. 1930년대 아시아적 생산양식론을 둘러싼 논쟁의 전개에 관하여는 조형열,「1930년대 조선 '역사과학' 계열의 보편특수성 인식과 아시아적 생산양식론 수용 양상」『전북사학』49, 2016 참조.
18) 金光洙,「古代國家形成論」, 金容燮敎授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知識産業社, 1997, pp.281~282.
19)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편집,『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출판사, 1957이 대표적이다. 1960년대까지 북한의 고대사 인식 및 연구 동향에 관하여는 최광식,「고대국가 형성에 대한 연구사 검토」『역사비평』10, 1990, pp.254~262 ; 金光洙,「古代國家形成論」, 金容燮敎授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知識産業社, 1997, pp.283~285 ; 이경섭,「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韓國史學史學報』36, 2017 참조.
20)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62.
21)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조선통사(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pp.88~90.
22) 이지린·강인숙,『고구려역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6(『고구려 역사』, 서울: 논장, 1988), pp.44~54.
23) 채희국,『고구려력사연구—고구려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종합대학출판사, 1985(서울: 백산자료원, 1991), pp.36~45.

개토왕릉비」의 '17世孫' 해석 문제,[24]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보장왕 조에 나오는 史論 등을 바탕으로 하여,[25] '주몽의 고구려 건국 연대'를 구체적으로 서기전 277년이라 규정하였고 이것을 정설화하였다.[26]

이러한 추이 속에서 주몽에 의해 건국된 '중세 봉건국가'로서 고구려는 서기전 3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소급되었다. 그리고 주몽의 고구려에 선행한 '고대국가'로 '구려'의 존재가 상정되면서, 고대사는 고조선사·부여사·진국사에서,[27] 고조선사·부여사·구려사·진국사 체제로 변화하였다.[28] 북한의 시대구분론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차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과제이겠으나 한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주목된다. 다만 역년 900년설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 시대상을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설정된 이해체계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29]

남한에서는 部族國家에서 古代國家로의 전환을 體系的·段階的으로 해명하려는 연구

---

24) 「廣開土王陵碑」.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至十七世孫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25) 『三國史記』卷22, 高句麗本紀10, 寶藏王. '論曰 … 高句麗自秦漢之後 介在中國東北隅'

26) 손영종,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서울: 백산자료원, 1997) ; 사회과학력사연구소, 「고구려봉건국가의 성립」, 『고구려편』(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2판)(서울: 백산자료원, 1997) ; 손영종,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2000(서울: 신서원, 2000) ; 손영종, 『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등 참조.

27)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조선전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조선고대사』, 서울: 한마당, 1989).

28)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고조선사·부여사·구려사·진국사(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서울: 백산자료원, 1997).

29) 최근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에 관하여는 朴京哲, 「最近 北韓學界의 高句麗史研究動向에 關한 小考: 그 認識視點에 對한 批判的 接近」 『白山學報』46, 1996a ; 고구려연구재단,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4 ; 李成制, 「北韓의 高句麗史 研究와 歷史認識—孫永鍾 교수의 최근 저술에 보이는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 『高句麗研究』18, 2004 ; 김현숙,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 『국학연구』21, 2012 참조. 한편,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에 관하여는 다음의 논고가 참고된다. 김현숙,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과 전망」 『동북아역사논총』53, 2016 ; 曺泳光, 「포스트 동북공정, 중국의 고구려 국가형성 및 초기 정치체제 연구동향」 『한국학논총』47, 2017 ; 范恩实, 「中国学界高句丽地方统治制度研究述评」, 鄭京日 외, 『소장학자들이 본 고구려사』, 혜안, 2018.

가 진행되었다.[30] 부족국가라는 개념을 통해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普遍的 根據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가 추구되었던 것이다.[31] 하지만 이상의 연구가 진행되던 당시는 고대국가의 성립 편년을 올려보기에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1960년대 초반까지도 한반도에는 金石竝用期의 단계가 설정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32] 이러한 형편에서 제시된 고구려 초기 사회의 모습은 아직 국가체제를 갖추지 못한 단계로 파악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점차 진전되어 가는 연구 환경의 바탕 위에서 이러한 오류를 시정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 속에 部의 地緣的·編制的 性格을 강조한 견해가 案出되었다.[33] 종래 씨족 혹은 부족으로 파악하였던 部를 단위정치체로 상정한 것으로, 部의 성립이 곧 王權의 성립 및 성장을 의미한다고 파악한 것이다. 王의 執權力을 바탕으로 유력 부족이 運動力의 일부를 상실하여 部族聯盟體의 일원으로 통합되었다는 구도이다. 이것이 한국 고대국가의 성립과정 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며, 고구려에서는 이런 식의 '部體制'가 太祖大王 代에 확립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론에서 진전된 연구 성과로, 고구려 초기의 역사는 原始社會의 해체기에서 고대사회의 이행기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舊고구려는 국가 조직을 구성하기에는 성숙하지 못한 사회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舊고구려 시기에는 주변 세력을 편제해 나갈 강력한 왕권 및 지배력이 不在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몽의 고구려 건국 이전 사회에서는 고대국가 형성의

---

30) 金哲埈,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31) 徐毅植, 「古代·中世初 支配勢力硏究의 動向과 「국사」敎科書의 敍述」 『歷史敎育』45, 1989, p.44.

32) 金石竝用期란 '石器와 金屬器가 함께 사용되는 시기'로 실제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1923년 하마다 코사쿠(浜田耕作, 1881~1938)가 참여한 『朝鮮總督府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에 처음 쓰인 이후, 한반도를 대상으로 쓴 금석병용기는 일제의 식민사관, 특히 타율성론을 증명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써 사용된 사례로 비판받는다. 금석병용기에 대한 기존의 이해 및 그 문제점에 관하여는 이기성, 「일제강점기 '금석병용기'에 대한 일고찰」 『韓國上古史學報』68, 2010 참조.

33)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2, 1975. 고구려본기에 나타나는 那, 部를 소국가적 기능을 지닌 지연집단으로 파악한 연구는 三品彰英,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 『朝鮮學報』6, 1954였다. 盧泰敦, 앞의 논문, 1975는 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部를 단위정치체로 규정한 것이었다(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의 동향」,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p.23).

表徵으로서 部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해가 뒤따랐다.

한편, 부족국가 개념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34] 또한 서비스(Service) 등이 國家와 文明의 단계적인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구분한 이른바 社會發展段階說을 援用하여 국가 형성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커져가면서, 村落社會—小國—小國聯盟—小國 併合—中央集權的 王國이라든가,[35] 邑落社會—小國—小國聯盟—部體制—中央集權的 古代國家[36] 등의 발전단계론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발전단계상에 적합하지 않은 史料는 歷史性이 否認되거나 검토 대상에서 排除되기도 하였다. 비록 1960년대부터 『삼국사기』 초기기사에 대한 신빙성이 제기되었다고는 하나,[37] 그렇다고 이 문제가 완전히 解消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고구려 초기 王系에 관한 이해가 주된 논거로 작용하였다. 「廣開土王碑」에 나타난 고구려의 왕계가 『삼국사기』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中國史書와의 비교 검토 및 葬地名 등의 분석을 토대로 傳說王系의 整理, 太祖大王과 故國川王의 加上, 大王 王系의 創出 등의 과정을 거쳐 5세기 후반 이후에야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고구려 왕계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산상왕 이전 왕계의 史實性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38]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져,[39] 초기 왕계의 實在가 인정되었다고는

---

34) 千寬宇 編, 「토론: 한국사의 쟁점」, 『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pp.215~234. 部族國家를 대신한 용어로 城邑國家(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 『韓國學報』2, 1976 ; 李基白, 「高句麗의 國家形成 問題」,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小國(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 『歷史學報』69, 1976 ;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硏究』, 一潮閣, 1982), 君長社會(金貞培, 「君長社會의 發展過程 試論」 『百濟文化』12, 1979), 邑制國家(尹乃鉉, 「古朝鮮의 社會性格」,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a) 등이 있다.

35) 李鍾旭, 앞의 논문, 1982 ; 「韓國 初期國家의 形成·發展段階」 『韓國史硏究』67, 1989 ; 「고구려의 초기 국가 형성과 성장」, 『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 서강대학교출판부, 2008.

36) 盧重國, 『百濟政治史硏究』, 一潮閣, 1988 ; 「韓國古代의 邑落의 構造와 性格—國家形成過程과 관련하여—」 『大丘史學』38, 1989.

37) 金元龍, 「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三國史記와 樂浪郡에 대한 再檢討—」 『東亞文化』7, 1967.

38) 武田幸男, 「高句麗王権の史的展開」,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pp.281~313.

39) 노태돈, 「高句麗의 初期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하지만 그 왕계의 성립 시기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 외에도 遷都 문제와 주몽의 建國說話에 대한 이해 문제가 겹쳐지면서,[40] 사료의 선별적 取信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은 一個 세력이 정복을 통해 왕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국가로 성장한 과정이었다는 대전제가 아직까지 그 기반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속에서 '中央集權國家'가 곧 '古代國家'였으며, 三國의 형성 과정이 곧 한국 고대사회의 성립 과정이었다는 古代史像이 合理로 여겨지고 있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가 성립을 논하는 것이 一國의 成立史로서가 아니라 古代國家 形成史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舊고구려는 고대국가로 향해 나아갔던 고구려의 기반이 되기는 하였으나, 그 자체가 고대사회로서 면모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가 통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초기기사는 그것이 모두 허구는 아니지만 또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고구려사를 이해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에 三國만을 시야에 두고 한국고대사를 발전단계 모형의 범주에 무리하게 편입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41] 그리고 사회발전단계를 논하면서 정치권력의 중앙집권화 정도 나아가 왕권의 전제화를 기준으로 발전 정도를 검토하고, 이것이 고대국가 성립의 지표로까지 이해되는 경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42] 고구려 초기사 전체를 시야에 두고 보았을 때,[43] 왕권이 이른바 '强化'되어 가면서 정치체제 또한 변동

---

40) 천도 문제와 주몽의 건국설화를 둘러싼 쟁점에 관하여는 노태돈,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의 신빙성 검토」, 韓國史學會 編,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景仁文化社, 2003, pp.44~66 참조.

41) 徐毅植, 앞의 논문, 1989, p.46.

42) 하일식, 「국가성립사연구와 방법론」 『역사와 현실』4, 1990, pp.347. 社會發展段階說의 소개 및 이를 토대로 한국고대사를 단계별로 설정하려는 움직임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관하여는 全京秀, 「신진화론과 국가형성론—인류학이론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 『韓國史論』19, 1988 ; 李賢惠, 「新進化論의 이해와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歷史學報』146, 1995 ; 金瑛河, 「韓國 古代社會의 政治構造」 『한국고대사연구』8, 1995, p.35 ; 朴京哲,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 『한국고대사연구』28, 2002, pp.45~49 ; 조우연, 『天帝之子: 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2019.

43) 고구려사에서 初期 혹은 前期는 대체로 주몽에서부터 서기 3세기까지를 가리킨다(임기환, 앞의 책, 2004 ; 琴京淑, 앞의 책, 2004 ; 여호규, 앞의 책, 2014). 본고에서 가

이 일어났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동을 推動케 한 근본적인 원인이 왕권의 강화였는지, 아니면 왕권의 강화로 해석될 수 있는 양상 또한 現象的인 것이며 그 基底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原理가 변화하였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대사회는 諸加·諸干이 스스로 연대하고 아울러 累層으로 疊築하여 거대 권력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음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44] 이러한 정치체제 하에서 각 지역의 諸加·諸干이 國政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의논하고 결정하기 위한 회의기구 및 이때 결정된 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 그리고 나라 전체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征服力·强制力을 갖춘 왕권에만 주목하게 되면, 諸加·諸干이 연대하여 나라를 건설하고 政事에 참여하였던, 사료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양상이 지닌 歷史的 價値는 상대적으로 度外視되고 捨象·排除될 여지가 발생한다.

이는 고구려의 국가 성립을 이해하는 데 직결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추구되어 온 문제이다. 국가란 학자 및 학문 분야에 따라 여러 갈래에서 정의되지만,[45] 대체로 계급이 형성되고 그러한 계급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를 수반하는 정당화된 권력을 행사하는 기구로서 국가가 발생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46] 이러한 국가의 성립을 알리는 지표는 그 사회가

리키는 '高句麗 初期' 또한 이러한 衆論을 따라서 서기전 1세기 후반부터 서기 3세기까지를 시기 범주로 한다. 王部가 교체된 이후 진행된 政治體制의 재편 과정이 3세기에는 마무리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화 이전과 이후에 대한 분석을 요하므로,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시기는 서기전 2세기까지 확장하여 설정하였다.

44) 金哲埈, 「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 『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70 ; 金光洙,「高句麗 前半期 「加」階級」『建大史學』6, 1982 ; 李景植, 『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古朝鮮~新羅·渤海—』,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徐毅植, 「韓國古代國家의 二重聳立構造와 그 展開」『歷史敎育』98, 2006(『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45) (고대)국가 성립에 관한 諸 이론에 관하여는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6, pp.168~192 ; 崔光植, 「古代國家形成에 對한 理論的 檢討」『新羅文化』3·4, 1987 참조.

46) 혈연관계에 따른 사회질서를 벗어난 단계 또한 국가 형성의 주요한 기준으로 거론되는데,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혈연관계가 사회의 기본 단위로 지속되며 혈연조직의 유

처한 지역적·정치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국가 성립을 파악하는 데 핵심은, 지표 하나하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 및 그것이 왕권으로 표상되는 집권력을 바탕으로 실현되는지의 여부에 있다기보다는, 그러한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歷史像을 추적하는 데 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국가가 조직되었다면,[47] 그러한 목적을 위해 마련한 기구가 보호하려는 대상이 왕권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諸加 지배계급의 이익 전체를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국가로서 고구려가 성립하였을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고구려의 역사는 주몽을 기점으로 하는 역사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역사를 片鱗으로나마 전하고 있는 中國正史에 입전된 고구려전에서, 고구려가 서기전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나라로 인식된 적은 없다. 심지어 주몽의 건국 설화를 입수한 이후에도 주몽이 건국하였다는 고구려를,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바와 같이 서기전 1세기 후반에 성립한 고구려가 아니라, 玄菟郡 설치 이전에 존재한 고구려 즉 舊고구려를 포함한 '고구려'로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다.[48] 고구려 역년 900년설이 제기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러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국가 성립은 주몽이 건국한 것으로 나타나는 서기전 1세기 후반 이후의 고구려에 국한하기보다는 舊고구려를 시야에 두고 모색할 여지가 있다. 주몽을 건국 시조로 하는 고구려가 분명 새로운 국가체제를 확립해 나간 측면이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첫 고대사회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49]

지 위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강제를 수반하는 公權力에 보다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참고된다(박대재, 『의식과 전쟁—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책세상, 2003, p.23 ; 박대재, 「古朝鮮의 '王'과 國家形成」『북방사논총』7, 2005, pp.148~150).

47) 하일식, 앞의 논문, 1990, pp.344~345.

48) 拙稿, 「中國史書에 나타난 高句麗 初期 王系와 宮의 裔孫化」『高句麗渤海研究』66, 2020 참조.

49) 현도군을 축출한 서기전 75년에는 고구려가 국가 형태를 취하고 주위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고구려의 국가 형성 시기가 서기전 75년 이전 혹은 서기전 107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참고할 수 있다(李基白, 「高句麗의 國家形成 問題」, 歷史學會 編,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pp.80~82).

시야를 이렇게 넓혔을 때, 『후한서』에서 漢武帝가 衛滿朝鮮을 滅하고 高句驪를 縣으로 삼아 玄菟에 속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다시 주목할 수 있다. 舊고구려가 玄菟郡의 屬縣으로 편제된 데에 위만조선의 붕괴가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種族 系統으로 나타나는 貊은 이미 舊고구려 성립 이전부터 고조선과 有關한 존재로서, 濊와 함께 고조선의 주축을 이룬 세력이었음이 지적된다.[50] 즉, 고구려의 종족 계통인 貊이 고구려로 결집하기 이전부터 고조선과 상관한 존재였고, 舊고구려를 형성한 이후에도 위만조선의 붕괴로 인해 해당 사회가 정치적 변동을 겪었을 만큼, 舊고구려를 포괄한 '고구려'의 역사가 주변 지역에 존재하였던 정치세력과 상호 연관 속에 전개된 形跡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구려의 중심부가 되는 지역에서 自生한 집단이 政治力을 형성하고 결집해 나가면서 국가가 성립한 것으로 이해하는 構圖는, 그 자체로 논리적 완결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舊고구려 시기에서부터 고구려 주변에서 정치세력이 성장한 역사 및 그 변동과 舊고구려와의 관련성을 계기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과제를 남기게 된다. 고구려의 국가 성립 과정을 立體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前漢에 의해 붕괴된 위만조선이 있었던 지역의 정치 경험과 문화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들이 어느 정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을지에 대해서는 현전하는 문헌 자료가 부족한 까닭에 분명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유적·유물 상 고조선 후기 단계에 혼하에서 압록강 중상류에 이르는 지역에서 새로운 지역 간 네트워크와 주민의 이동, 교역관계의 성립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감지된다는 점에서,[51] 적어도 고구려의 역사가 주변 세력과 고립·단절된 채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삼국의 국가 성립 및 그 운영을 이해할 때, 선행한 국가의 역사적 경험과 사회적 토대 위에서 해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52] 아울러 고구려의

50) 金貞培, 「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硏究」『國史館論叢』88, 2000 ; 박경철, 「고조선·부여의 주민 구성과 종족」『북방사논총』6, 2005 ; 「中國 古文獻 資料에 비쳐진 韓國古代史像」『先史와 古代』29, 2008 ; 박준형, 『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pp.88~99 ; 拙稿, 「高句麗 王部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7, pp.12~17 참조.

51) 강인욱,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동북아역사논총』71, 2021.

국가 성립과 그 운영을 고조선에서부터 系統的으로 접근하려는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53] 이와 관련하여 辰韓6國의 지배층이 자발적으로 六部를 구성하고 연합정권으로서 신라를 형성하여 각 部의 共論과 合議를 통해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던 체계가 존재하였고, 서열을 이루면서도 본질적으로 상호간의 평등성을 전제로 한 이러한 사회 구성 원리가 고조선을 형성한 기반임을 제언한 연구가 주목된다.[54] 신라의 경우 六部가 건국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지배층이 연합하여 구성한 조직이었던 것이다. 部가 삼국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한국 고대사회의 標徵이라는 점에 착안한다면, 고구려 국가 성립 역시 신라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예상된다. 즉, 고구려의 성립은 고조선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계기적 변화상을 究明하고, 지배층이 國政에 참여하여 정치를 운영해 나간 원리와 양상을 점검할 때 그 實相을 보다 선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課題에 穿鑿할 때 논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舊고구려 시기부터 있어 온 정치운영의 원리 및 그 양상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를 究明하려면 우선 部의 實體를 재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舊고구려 및 고구려 초기의 정치운영 양상을 원리적 측면에서 具現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의 部가 신라의 部와 마찬가지로 지배층만 소속할 수 있는 조직인지, 그러하다면 部에 소속한 지배층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조직체를 형성한 까닭은 무엇이며 이러한 성격의 部가 舊고구려 시기에 정치체제 면에서 작동하였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요청되는 것이다.

舊고구려의 실체에 위와 같이 접근하면, 주몽을 구심점으로 하여 들어선 고구려의 초기 역사는 舊來의 정치운영 원리가 유지되는 속에서 변화가 동반하는 舊고구려 사회의 계기적 전환 과정으로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도군이 설치 및 축출되는 등 舊고

52) 하일식, 앞의 논문, 1990, pp.348~349 ; 서의식, 앞의 책, 2010 ; 장병진, 「고구려의 영동지역 진출과 관할 방식」『동북아역사논총』58, 2017, p.142 등.
53) 金光洙, 「古朝鮮 官名의 系統的 理解」『歷史教育』56, 1994 ; 조법종,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54) 徐毅植, 「辰國의 變轉과 '辰王'의 史的 推移」『歷史教育』114, 2010(「辰國의 變轉과 '辰王'位의 推移」, 앞의 책, 2010).

구려의 정세가 변동하는 과정에서 주몽의 등장이 지닌 의미와 나라 이름을 그대로 고구려라 하였으면서도 주몽이 '건국' 시조로 인식되는 까닭은 무엇인지, 그리고 새로운 고구려의 성립이 종래 지배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중심지의 이동은 없었는지 등을 정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몽 이후 고구려에서 나타난 변화의 基因을 밝히고, 이에 기반한 정치체제 및 지배세력의 변화상을 포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은 그간 진전되어 온 연구 성과에 힘입으면서도, 舊고구려 사회에서부터 작동한 정치운영 원리와의 차이를 선명히 대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생각해야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려면 사료 비판을 전제로 하면서 견해를 기준으로 자료의 取信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료 자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며, 특히 『삼국사기』 초기기사에서 일정한 歷史性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서 전하는 기사 중에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中國史書 간에 불일치하는 기록도 있어 『삼국사기』 초기 기록에 의심을 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광개토왕비」가 건립된 시기에도 고구려에 여전히 다양한 王系의 전승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주된 근거 중에 하나인 『魏書』에서 전하는 王系는,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초기 왕계와 정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오히려 『위서』의 것이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55] 또한 『後漢書』에서는 宮 즉 태조대왕이 121년에 사망하였다고 전하지만 이는 분명한 모순이 확인되는 기록이다.[56] 이를 바탕으로 사료 비판 없이 다시 『삼국사기』 기록이 모두 옳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사료 비판이란 것이 모든 사료에 가해져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사료 비판을 통해 제시된 것이 아니라면, 일단 『삼국사기』 초기기사의 내용을 인정한 위에서 활용하여 당대 역사상과 合致하는 부분은 없는지, 과장 혹은 윤색 등이 가해진 것은 아

55) 拙稿, 앞의 논문, 2020.
56) 拙稿, 「고구려 태조대왕 대 요동 공격의 추이와 宮의 沒年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75차 국내학술대회, 『고구려와 발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2021, pp.109~114.

닌지를 면밀히 따져서 합리적으로 설명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본고는 이러한 見地에서 立論하여 論旨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 舊고구려의 실체와 二重聳立體制

1. '消奴部爲王' 시기와 舊고구려

朱蒙이 국호를 고구려라 하기 이전에도 고구려라는 이름이 있었던 사실이『漢書』지리지 및『後漢書』고구려전에서 확인된다.[1] 이때 고구려는 縣名이다. 이에 따른다면 舊고구려는 하나의 縣으로 편제될 만한 一勢力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縣名으로 쓰였다고 해서 그 이름이 해당 縣으로 편제된 관할 범위에만 국한되는 세력명이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衛滿朝鮮이 붕괴된 이후 설치된 樂浪郡에 속한 首縣의 이름은 '朝鮮'이었다. '조선'은 前漢과 장기간 전쟁을 벌였고,『史記』열전에 入傳될 만큼 東夷 지역을 대표한 大勢力의 국명이다. 위만조선의 강역이 사방 수 천리였다고 함을 보아도,[2] '조선'이 낙랑군에 편제된 하나의 縣 정도에 해당하는 세력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고구려' 또한 해당 縣에만 국한되는 세력명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臨屯郡과 眞番郡의 경우『漢書』武帝紀 元封 3년 여름 기사에 臣瓚이『武陵書』를 인용한 대목에서 각 郡의 치소와 소속 현의 개수가 확인된다.[3] 다만 임둔군의 군치인 東暆縣과 진번군의 군치인 霅縣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상세하지 않아, 首縣의 이름인 '東暆'와 '霅'이 '조선'과 같은 예로 해석되는 명칭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한편, 漢武帝 시기 前漢이 다른 지역에 군현을 설치한 경우는 어떠하였는지도 참고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西南夷의 군현 설치 사례가 주목된다. 서남이의 사례에서 '조선'이 縣名으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

1)『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玄菟郡 …… 縣三 高句驪 …… 上殷台 …… 西蓋馬';『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2)『史記』卷115, 朝鮮列傳55. '會孝惠高后時天下初定 … 以故滿得兵威財物侵降其旁小邑 眞番臨屯皆來服屬 方數千里'

3)『漢書』卷6, 武帝紀6, 元封 3年 夏. '朝鮮斬其王右渠降 以其地爲樂浪 臨屯 玄菟 眞番郡 臣瓚曰 茂陵書臨屯郡治東暆縣 去長安六千一百三十八里 十五縣 眞番郡治霅縣 去長安七千六百四十里 十五縣'

司馬遷은 自序에서 한무제 시기 활동한 唐蒙이 夜郎을 경략하여 통하게 하고, 邛과 笮의 君이 內臣이 되어 吏를 받아들이기를 청하니 西南夷列傳을 지었다고 하였다.[4] 열전을 따로 둘 만큼 서남이 지역에서 주목한 대상이 夜郎과 邛 및 笮이었던 것이다. 특히 당몽이 夜郎에게 10여 만의 精兵이 있다고 하였음을 볼 때,[5] 夜郎 등 諸 세력 규모는 미미하지는 않았다고 추정된다.

夜郎이 내속하여 군현을 두었을 때 夜郎侯 多同의 아들은 縣令이 되었고, 이 지역에는 설치한 郡의 이름은 犍爲郡이었다.[6] 이후 군현제 운영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南夷와 夜郎 두 縣에 도위 하나만 두었다고 함에서,[7] 夜郎이 縣名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기전 111년(元鼎 6)에는 西南夷를 평정하고 군현이 설치되면서,[8] 邛都가 越巂郡 笮都는 沈犁郡으로 삼았다.[9] 笮'縣'(笮都)이 越巂에 있다고 하였음에서,[10] 이때 邛都와 笮都가 모두 縣名으로 쓰였고 각 군의 치소로 기능하였다고 이해할 수 있다.[11] 낙랑군과 서남이 군현 설치 사례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명이 모두 郡名이 아니라 縣名 특히 首縣名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가-1]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①時沃沮皆屬焉 漢武帝 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②時沃沮亦皆爲縣(『三國志』)[12]

[가-2]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菟郡(『後漢書』)[13]

---

4) 『史記』卷130, 太史公自序70. '唐蒙使略通夜郎 而邛笮之君請爲內臣受吏 作西南夷列傳第五十六'
5)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蒙乃上書說上曰 … 竊聞夜郎所有精兵 可得十餘萬'
6)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遂見夜郎侯多同 蒙厚賜 喻以威德 約爲置吏 使其子爲令 夜郎旁小邑皆貪漢繒帛 以爲漢道險 終不能有也 乃且聽蒙約 還報 乃以爲犍爲郡'
7)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上罷西夷 獨置南夷夜郎兩縣一都尉'
8) 『漢書』卷6, 武帝紀6, 元鼎 6年. '定西南夷 以爲武都 牂柯 越巂 沈黎 文山郡'
9)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南越破後 … 乃以邛都爲越巂郡 笮都爲沈犁郡'
10)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韋昭云 徙縣屬蜀 笮縣在越巂'
11) 동북아역사재단 편, 『三國志·晉書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09, p.27의 邛, 笮에 대한 주 9), 10)의 설명 참조.
1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1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東沃沮.

현도군의 경우 서기전 107년에 설치한 이른바 제1현도군의 치소를 두고 논란이 있다. 제2현도군 시기의 치소가 『漢書』 지리지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고구려현이었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14] 이에 제1현도군 시기의 치소 또한 고구려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삼국지』 동옥저전에서는 제1현도군의 치소가 고구려현이 아니라 沃沮城이었던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가-1]의 ㉡).[15] 이에 따른다면 제1현도군의 치소는 고구려현이 아니라 옥저성이었다고 해석된다.

[가-1]의 ㉡을 『후한서』 동옥저전의 기사([가-2])와 비교하여 보면, 『삼국지』에서 옥저'城'이라 한 것을 『후한서』에서는 옥저'地'라 한 차이가 발견된다. 『삼국지』가 『후한서』보다 史書의 편찬 시기가 이르기 때문에 [가-1]의 옥저'城'을 옳은 표기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史書의 원문이 언제나 편찬 당시에 기록한 字句 그대로가 아닐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대에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 板刻者가 읽는 과정에서 誤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16] 따라서 [가-1]의 옥저'城'과 [가-2]의 옥저'地'는 기사 전체의 맥락을 염두에 두고 어느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점을 염두하고 [가-1]을 음미하였을 때 ㉡의 '沃沮城'은 문맥상 다소 어색한 표현임이 감지된다. 위만이 조선에서 왕 노릇을 하였을 때 '옥저가 '모두[皆]' (조선에) 속하였다'고 하였으므로([가-1]의 ①), 이때 옥저는 單數가 아니라 複數의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단단대령 이동 지역을 동부도위로 分置하고 영동 7현을 別主케 하였을 때 '옥저 또한 '모두[皆]' 縣이 되었다'고 하는 데에서도 동일한 용례가 확인된다([가-1]의 ②). 그런데 ㉡의 '옥저성'을 이와 같은 용례에 비추어 '옥저의 성들'이라 풀이한다면

14)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玄菟郡 …… 縣三 高句驪 …… 上殷台 …… 西蓋馬'. 고구려현이 현도군의 속현이었다는 내용은 『한서』 지리지에서 처음 언급된다. 이때 현도군은 서기전 75년 이후의 이른바 제2현도군이다. 서기전 107년부터 고구려현이 현도군의 속현이었음은 비교적 후대의 기록인 『후한서』 고구려전에서 나타난다. 『후한서』의 저자는 고구려현이 제1현도군의 속현이었다고 기록할 수 있는 원전 자료를 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는 Ⅲ장 1절 참조. 본고는 『후한서』의 기록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제1현도군 시기부터 고구려현이 현도군에 속한 것으로 파악한다.

15) 제1현도군의 치소에 관한 諸 논의에 관하여는 李丙燾, 『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pp.161~169 ; 金美炅,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24, 2002 참조.

16) 서의식, 「辰國의 變轉과 '辰王'位의 推移」, 앞의 책, 2010, pp.20~26.

이 구절은 현도군의 치소를 두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기 곤란하다. ㉡ 뒤에 동부도위를 분치하고 不耐城에 치소를 두었다는 구절을 참조하여 보아도 '옥저성'의 '城'은 단수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이렇게 되면 [가-1]의 ①과 ②에서 모두 복수의 옥저를 상정하고 있다가 그 중간인 ㉡에서는 단수의 옥저를 가리키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편 [가-1]의 ㉠과 ㉡을 비교하여 보면, 한무제가 조선을 정벌한 뒤에 '그 땅[其地]'을 '四郡'으로 삼았는데 '옥저성'은 '현도군'으로 삼았다는 對句가 확인된다. 이 점에서 ㉡의 '옥저성'은 ㉠과 마찬가지로, '그 땅[其地]'을 '四郡'으로 삼았는데 '옥저 땅[沃沮地]'은 '현도군'으로 삼았다와 같이 '地'였어야 자연스럽다. 『후한서』의 '沃沮地'가 그것이다([가-2]). '地'와 '城'은 부수가 동일하며 字形도 유사하다. 따라서 [가-1]의 '沃沮城'은 '沃沮地'로 고쳐 보아야 합리적이라 사료된다. 즉, 『삼국지』 동옥저전의 기술은 위만조선이 붕괴되고 한사군이 설치되었을 때 현도군의 치소를 옥저에 두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옥저 지역이 현도군이 되었다는 내용을 전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삼국지』의 기술대로 옥저 지역이 한사군 설치 때부터 현도군으로 편제되었는지, 아니면 서기전 82년 임둔군과 진번군을 罷하고 이 지역을 낙랑군과 현도군에 병합하였을 때[17] 옥저 지역이 현도군에 일시 편입된 것을 『삼국지』에서 부회한 것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가-1]의 ㉡이 현도군의 치소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1현도군의 치소는 고구려현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18] 이에 근거하여 볼 때, 首縣名으로 쓰인 '고구려' 또한 조선과 서남이 지역의 사례와 같이 하나의 縣 정도로 편제될 세력의 이름이 아니며, 따라서 舊고구려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짐작된다.

『한서』 지리지의 현도군과 낙랑군에 관한 기술은 현도군 설치 이전 舊고구려의 세력을 가늠하는 데 보다 참고가 된다.

[나] 玄菟 樂浪 武帝時置 皆朝鮮濊貉句驪蠻夷(『漢書』)[19]

---

17)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至昭帝 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幷樂浪玄菟'
18)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p.161~169.
19)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한서』 지리지에서는 玄菟와 樂浪은 무제 때 두었으며 모두 '조선과 예맥, 구려의 만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나]). 여기서 '구려'는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서』에서 시기상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고구려 관련 기록은 서기 12년(始建國 4) 王莽이 '高句驪'를 '下句驪'라 하였다는 기사이다.[20] 同書 지리지 현도군 조 또한 왕망이 고구려를 하구려라 하였다는 내용을 삽입해 두었다.[21] 『後漢書』에서는 왕망이 '高句驪王'을 '下句驪侯'라 하였다는 추가 정보를 전하고 있다.[22] 그리고 서기 32년(後漢 建武 8)에 고구려가 朝貢하자 王號를 회복하였다고 하였다.[23] 이들 사실로부터 왕망 대 및 후한 초까지 중원에서는 고구려가 '고구려'이기도 하면서 또한 '하구려'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나]에서 고구려를 '구려'라고만 한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고구려가 일반적인 호칭이었지만 서기 32년까지 '하구려'가 공식적인 호칭이었던 까닭에, '高'↔'下'로 대비되는 글자는 생략하고 '구려'로만 표기하였던 것이다. 이후 중국사서에서 고구려를 구려라고도 하는 점, 그리고 『한서』에서 고구려와 구분하여 파악해야 할 '구려'로서의 존재가 별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도 [나]의 '구려'는 고구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24]

[나]의 '예맥'과 관련하여서는 예맥이 '예'와 '맥'으로 구분되면서도 '예'와 '맥'을 다시 '예맥'이라고도 하였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왕망이 陽俊을 誅貉將軍으로

---

20) 『漢書』卷99中, 王莽傳69中. '… 其更名高句驪爲下句驪 布告天下 令咸知焉'

21)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22)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莽大說 更名高句驪王爲下句驪侯 於是貊人寇邊愈甚'

2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建武八年 高句驪遣使朝貢 光武復其王號'

24) 처음부터 '고구려'란 명칭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려' 혹은 '구려'와 같은 음가를 표기한 것으로 이해되는 國名, 가령 夫餘 북방에 있었던 高(槀)離國이나 馬韓의 古離國이 확인되고, '구려'의 의미가 城을 뜻하는 고구려어 '溝婁'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호로서 '고구려'는 '구려'로도 표기되던 어떤 의미가 확장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체제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장한 3세기 단계에는 '구려'='구루'가 城을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되었지만, 본래 그 의미는 '나라(국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참고된다(조영광, 「예맥 족명과 부여, 고구려 국호의 유래와 의미」 『先史와古代』44, 2015a, pp.117~118). 다만 [나]의 '구려'는 고구려에 앞서 존재한 그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임명하고 嚴尤를 討穢將軍으로 임명한 데에서,[25] 예와 맥이 서로 구분되는 세력이라는 점이 확인된다. 다만 夫餘의 땅을 『삼국지』에서는 '濊貊의 땅'이라 하고 『후한서』에서는 '濊의 땅'이라 한 것에서 알 수 있듯,[26] '예'를 예맥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貊人을 穢貊國人이라고도 한 데에서,[27] '맥' 또한 '예맥'이라 하였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나]의 '예맥'은 '예와 맥'을 가리킨 것이거나 '예'를 '예맥'으로 표기한 것, 혹은 '맥'을 '예맥'이라 하였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를 貊 계통으로 보는 『한서』 왕망전의 기사를 참고한다면, [나]에서 '구려'를 설정해 두고 다시 '맥'을 '예맥'이라 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나]의 '예맥'은 일단 '예와 맥'을 가리킨 표현이거나 '예'를 '예맥'이라 한 것으로 좁혀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서』 食貨志에서 '穢(=濊)朝鮮'을 '穢貊朝鮮'이라 한 사실이 주목된다. 彭吳가 '穢貊朝鮮'으로 가는 길을 열었고 거기에 滄海郡을 두었다는 구절이 그것인데,[28] 이는 『사기』 平準書의 기사에 근거한 것이다. 平準書에는 '彭吳賈滅朝鮮'이라 하였는데,[29] 이는 '彭吳穿穢朝鮮'의 誤記이다.[30] 즉 『사기』의 '예'조선을 『한서』 식화지에서 '예맥'조선이라 하였던 것이다. 『한서』의 이와 같은 改稱 사례에 비추어 보건대, [나]의 '예맥' 또한 '예'를 '예맥'이라 하였을 경우에 무게가 실린다. 그리고 이때의 '예'는 특히 '예조선'으로 서기전 128년(元朔 元年) 전한에 투항한 東夷 薉君南閭의 '예'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31]

---

25) 『漢書』卷99中, 王莽傳69中. '誅貉將軍陽俊 討穢將軍嚴尤出漁陽 奮武將軍王駿 定胡將軍王晏出張掖'

2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其印文言 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以也' ;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夫餘. '夫餘國 在玄菟北千里 南與高句驪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本濊地也'

27) 『後漢書』卷1下, 光武帝紀. '二十五年春正月 遼東徼外貊人 貊人穢貊國人也貊音陌 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28) 『漢書』卷24下, 食貨志4下. '彭吳穿穢貊朝鮮置滄海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

29) 『史記』卷30, 平準書8. '彭吳賈滅朝鮮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間靡然發動'

30) 『史記』 平準書의 '賈滅朝鮮'이 '穿穢朝鮮'의 오기인 것은 拙稿, 「高句麗 王部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7, pp.14~15 참조.

31) 『漢書』卷6, 武帝紀6. '元朔元年 … 東夷薉君南閭等 口二十八萬人降 爲蒼海郡'. 창해군의 위치에 대해서는 多岐한 견해가 도출되어 현재로서는 정설을 보지 않은 주제라 할 수 있다. 예군남려 및 창해군과 관련한 연구 동향 및 그 이해에 관련하여서는 李丙燾, 앞의 책, 1976, pp.169~176 ; 權五重, 「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 『歷史學報』168, 2000 ; 여호규, 『고구려

『한서』 이후 중국정사에서 貊 계통 자료는 '고구려전'에 삽입된 한편 濊는 별도 편명으로 입전되어 있다는 점도 참고된다. 가령 『삼국지』에서는 고구려전에서 '小水貊' 관련 기사를 전하였고,[32] '예'에 대하여는 濊傳을 따로 두었다. 『후한서』에서는 예군남려에 관한 기사를 濊傳에서 서술하였다.[33] 『후한서』에서 예군남려에 관한 기사를 예전에 실은 것을 두고, 요동 근방에 존재한 예맥과 후한 대의 예맥을 혼동한 杜撰이라고 해석하거나[34] 이를 분별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충하였다고 보기도 한다.[35] 하지만 『한서』에서 전하는 예군남려의 존재와 『후한서』에 입전된 濊가 명백히 구분된다는 근거가 분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군남려를 '東夷'라고 기술한 『한서』의 기록을 따른다면 『후한서』에서 이를 예전에 실은 것이 타당한 판단이라 볼 수 있다.[36] 이 점에서 [나]의 '예맥'은 『사기』에서도 그 존재가 확인되며 『삼국지』 단계에서도 별도로 입전되던 '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나]는 현도군과 낙랑군에 편제된 대상이 (위만)조선과 예(맥), 그리고 (고)구려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이때 조선이 단순한 종족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은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특히 위만이 조선에서 왕 노릇하기 전부터 고조선에는 王이라는 권력자가 존재하였다. 燕이 스스로 王을 칭하니 朝鮮侯 또한 王을 칭하였다는 데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37] 燕이 易王 재위 10년(서기전 323)에 稱王하였으므로,[38] 고조선은 적어도 서기전 4세기 대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pp.156~164 ; 박노석, 「고조선대 창해군에 대한 재 고찰」『전북사학』50, 2017 ; 임찬경, 「조선 즉 위만조선과 창해군의 위치에 관한 연구」『국학연구』22, 2018 ; 이준성, 「濊君 南閭의 동향과 滄海郡·玄菟郡 설치」『白山學報』116, 2020a ; 최슬기, 「蒼海郡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고조선단군학』44, 2021 참조.

3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又有小水貊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3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元朔元年 濊君南閭等 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34) 李丙燾, 앞의 책, p.172.

35)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硏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1980, p.115.

36) 기수연, 『『後漢書』「東夷列傳」 硏究—『三國志』「東夷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2005, pp.184~190 참조.

3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38) 『史記』卷34, 世家4, 燕召公世家. '易王初立 齊宣王因燕喪伐我 取十城 蘇秦說齊 使復歸燕

에는 王을 칭하였다고 할 수 있다.[39] 王의 존재는 국가의 형성을 알리는 중요한 징표 내지 하나의 기준이 될 만큼 국가 성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있다.[40] 아울러 고조선에서는 왕위가 父子로 繼承되어 국가적 권력체계 또한 이에 의해 계승되는 명실상부한 고대국가체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된다.[41]

濊 또한 이러한 면모가 유추된다. 예 지역은 앞서 살핀 바 '예조선'이라고도 하였지만 또한 '濊州'라고도 하였다. 이 표현은 한무제 시기 활동한 嚴安이라는 자가 上書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그는 "濊州를 攻略하여 城邑을 세우고 匈奴에까지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蘢城을 불사르고자 함은, 議하는 자들은 이를 좋다고 하나 이는 신하에 利이지 天下에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여,[42] 예군남려의 땅을 '濊州'라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唐蒙이 南越王을 '一州의 主'라 한 기사가 유의된다. 서기전 135년(한무제 건원 6) 王恢가 東越을 공격하자 동월은 그 왕 郢을 죽여 항복의 뜻을 알렸고, 왕회는 兵威를 바탕으로 당몽을 남월로 보냈다.[43] 당몽은 이때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上書하여 아뢰길 남월왕이 다스리는 땅은 동서 만여 리이며 外臣이라 이르지만 그 실은 한 州의 主라 하였다.[44] 여기서 '州'는 部刺史의 감찰구역으로서 州나 후한 대 13州의 하나로서 州와는 의미가 다르며, 오히려 '九州'의 州, 특히 독립적이고 격절된 하나의 구역 내지 자체적 세계로서 州라는 의미에 가까움이 지적된다.[45] 즉 남월왕을 君主로 하는 그들 자체의 독립적 세계를 '州'라고 표현한 것이다.

十城 十年 燕君爲王'

39) 『三國志』 濊傳에는 準王 때에 참람되게 王을 칭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 '朝鮮侯準 僭號稱王'), 이는 앞서 稱王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았던 중원에서 준왕이 이미 왕을 칭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한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조법종, 『고조선 ·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p.199).

40)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6, pp.192~198 ; 김영하, 「三國時代의 王과 權力構造」 『韓國史學報』12, 2002, p.242 ; 박대재, 「古朝鮮의 '王'과 國家形成」 『북방사논총』7, 2005, pp.150~151.

41) 조법종, 앞의 책, 2006, pp.196~204.

42) 『史記』卷112, 平津侯主父列傳52. '嚴安上書曰 …… 今欲招南夷 朝夜郎 降羌僰 略濊州 建城邑 深入匈奴 燔其蘢城 議者美之 此人臣之利也 非天下之長策也'

43)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建元六年 大行王恢擊東越 東越殺王郢以報 恢因兵威使番陽令唐蒙風指曉南越'

44)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南越王黃屋左纛 地東西萬餘里 名爲外臣 實一州主也'

45) 동북아역사재단 편, 『史記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2009, p.228의 주 44) 참조.

'濊州'란 용어 또한 위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이는 예군남려가 지배하는 곳 또한 그들 나름의 독자적 세력권이 구축되어 있을 만큼 성장하여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여기다가 창해군을 두었다고 함을 보면, 예군남려 등이 실제 28만 口를 이끌고 요동에 간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戶籍을 들고 요동에 갔고 예군남려의 땅에다가 창해군을 운영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46] 따라서 서기전 2세기 후반 이들 지역에서는 이미 지배세력이 戶籍과 같은 방식으로 피지배층을 파악·지배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이는 호적 작성·관리에 필요한 행정력 및 그들 나름의 조직적인 행정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또한 호적에 기반한 收取, 그리고 인적 관리가 운영되고 있었다고 볼 단서가 된다.

결국 [나]에서 언급한 (위만)조선, 예(맥), (고)구려에서 조선과 예가 서기전 2세기 후반에 동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정치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점에서 이들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고구려 또한 당시 이들에 비견되는 정치력을 지닌 세력이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즉 서기전 2세기 후반 舊고구려는 후에 현도군이 설치되는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이었으며, 서기전 107년 縣名으로 나타나는 '고구려'는 한무제 시기 해당 지역을 대표하던 舊고구려의 이름을 縣名으로 활용한 결과였다고 해석된다.

현도군 설치 이전 舊고구려의 세력을 이와 같이 감안하였을 때, 보다 구체적인 실상에 접근하는 데 단서가 되는 자료가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五部 관련 기사이다.

[다] 本有五族 有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三國志』)[47]

『삼국지』에 따르면 고구려에서 王을 배출한 部는 消奴部에서 桂婁部로 교체되었다([다]). 그러나 [다] 기록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언제 그러한 교체가 일어났는지는 확단하기 어렵다. 이에 王部의 교체 시기에 관하여는 部의 실체에 대한 이해의 방향 및 『삼

46) 李丙燾, 앞의 책, 1976, pp.356~357 참조.
4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왕실 世系에 대한 해석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다양한 견해가 개진되어 왔다.[48] 따라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 고구려전의 宗廟 관련 기사가 유의된다.

[라-1] 魏略曰 高句麗國 …… 爲宮室宗廟 祠靈星社稷(『太平御覽』)[49]

[라-2]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三國志』)[50]

[라-1]은 『太平御覽』 所引 『魏略』의 기사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宮室과 宗廟를 짓고 靈星과 社稷에 제사지냈다. 涓奴部(=消奴部) 또한 본디 國主였기에 지금은 비록 王이 되지는 못하여도 그 적통대인은 古雛加를 칭하고 또한 종묘를 세울 수 있었고 靈星과 社稷에 제사를 지냈다([라-2]).[51] [라-2]에서 消奴部 '또한' 종묘를 세울 '수 있다'고 기술하였으므로, 이는 現王室의 인정 하에서 이루어진 儀禮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라-1]에 나타난 종묘를 지은 주체는 고구려 現王室이라고 해석된다.[52]

---

48) 王部의 교체 시기에 관한 諸 견해는 크게 ① 주몽 대, ② 유리왕 대, ③ 태조대왕 대, ④ 산상왕 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기 참고되는 약간의 논고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李丙燾, 「高句麗國號考」 『서울대학교논문집』3, 1956 ; 田美姬, 「高句麗初期 王室交替와 五部」, 『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探求堂, 1992 ; 노태돈,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기원」 『韓國古代史論叢』5, 1993 ; 金賢淑, 「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 『大丘史學』47, 1994, ② 김기흥, 「고구려의 국가형성」, 『한국고대국가의 형성』, 민음사, 1990, ③ 金哲埈,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 김용선, 「高句麗琉璃王考」 『歷史學報』87, 1980 ; 김종은, 「고구려 초기 천도 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 『숙명한국사론』3, 2003. 최근에는 沸流部에서 桂婁部가 파생되어 나오는 방식으로 태조대왕에서 신대왕 사이에 왕실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제출되었다(이준성,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49) 『太平御覽』卷783, 四夷部4, 東夷4, 高句麗.

5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51) 『삼국지』의 涓奴部는 消奴部의 오기로 이해된다.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詳述. 본고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삼국지』의 涓奴部 또한 消奴部로 표기하였다.

52) 『三國志』 고구려전에 왕실이 종묘를 세운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居所의 좌우에 大屋을 지어 鬼神과 靈星, 社稷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였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 이때 '祭鬼神'의 장소가 곧 종묘일 것으로 해석된다(조우연, 「고구려의 왕실조상제사—4~5세기 '始祖 朱蒙의 위상과

종묘는 儒教的 禮制에 입각하여 조상의 神位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祠堂을 의미하거나 넓은 의미로는 조상의 廟를 가리키기도 하며, 처음에는 왕실의 조상제사를 통칭하다가 점차 의미가 좁혀져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만을 의미하게 되었다.[53] 이러한 조상숭배는 배타적인 의미를 짙게 띠며 혈연적 연관성이 없다면 조상숭배 의례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54] 이 시기 고구려에서 中國式의 宗廟制가 수용·실시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本體가 무엇이든 그것이 종묘와 같이 조상에 제사지내는 공간이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독자의 조상제사시설을 갖추고 있던 消奴部의 前王室과 桂婁部의 現王室은 서로 다른 血統이었으며, 이에 王部의 교체는 곧 王統의 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王部의 교체 시기는 일단 산상왕 대 이전으로 좁힐 수 있다. 『삼국지』 고구려전은 산상왕의 즉위(197) 과정에서 있었던 왕위계승 분쟁 과정을 전하고 있고, 여기에서 拔奇와 함께 公孫康에게 투항한 消奴加(=消奴加)의 존재가 확인된다.[55] 拔奇는 자신이 형임에도 왕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겨 公孫康에게 투항한 인물이다. 즉, 拔奇와 伊夷模(=산상왕)는 고구려왕에 오를 수 있는 왕실의 구성원이었으므로, 이 시기 王部는 이미 계루부로 교체된 이후라 할 수 있다.[56]

王統과 관련하여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王系가 혈통의 단절 없이 一系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廣開土王碑」에서도 始祖 鄒牟王부터 廣開土王까지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60, 2010, p.50).

53) 김나경, 「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한국고대사연구』97, 2020, p.108.

54) 조우연, 앞의 논문, 2010, p.41. 廟制의 중요한 전제는 직계혈통관계의 확립이며, 이러한 혈연적 계승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直系와 傍系, 大宗과 小宗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으며, 조상관계가 복잡해져 일목요연한 종법질서가 정립되기 어렵고, 또한 종법질서를 바탕으로 한 종묘체제의 확립이란 불가능하다(조우연, 앞의 논문, 2010, p.51).

5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56) 金哲埈,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b, pp.122~124. 『삼국지』에서 산상왕이 즉위하고 '更作新國'하였다고 한 것은 공손씨가 지원한 拔奇를 정통으로 보는 인식에서 기술된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 혹은 산상왕이 새로운 국가 의례 공간을 창출하고 환도성을 왕의 거소로 삼은 것이 '更作新國'으로 나타났다는 해석도 참고할 수 있다(奇庚良, 「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87).

王系가 단절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57] 이들 자료에 근거할 때, 주몽이 왕위에 오른 이래 고구려의 王統이 변화한 적은 없다고 이해되어, 王部의 교체 시기는 주몽이 고구려왕이 된 때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왕계가 초기부터 정립되었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왕계가 처음부터 성립하여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지만,[58] 4세기 후반에 전체 왕계가 정립되었다는 견해도 지지를 받고 있다.[59] 왕계 정립에 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한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 그에 관하여 전부 다룰 수는 없지만, 王部의 교체 시기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둘 수 있다. 하나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고구려 왕계에 前王室의 것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다. 다른 하나는 그것이 실제 왕계이든 이후에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정된 왕계이든, 그 왕계가 계루부 왕실의 왕계이기는 하나 王部 교체 이전의 조상까지 포함한 왕계였을 가능성이다.

첫 번째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는 종묘의 운영이 주목된다. 고구려에서 종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고 늦어도 3세기가 되면 궁궐과 분리된 형태의 종묘가 등장하였음이 지적된다.[60] 그런데 이 시기 前王室은 여전히 자신들의 혈통에 따른 독자적인 종묘를 세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2]). 만일 이때 現王室이 정립한 王系에 전왕실의 王系가 삽입되었다면, 같은 인물이 서로 다른 혈연관계에서 조상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므로 납득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이미 王統을 차지하고 있는 현왕실이 굳이 전왕실의 王系를 借用하였다고 해석하기에도 주저되는 면이 있다. 전왕실이 엄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왕실이 그들의 왕계를 취하는 것이 현왕실의 정통성 및 정당성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추측되기 때문이다.

4세기 후반에 왕계가 정립되었다는 견해를 취하여도 『삼국사기』에 나타난 왕계가 전왕실의 왕계를 포함한 결과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종묘제가 운영된 지 꽤 경과한 4

57) 「廣開土王陵碑」.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 顧命世子儒留王 以道興治 大朱留王紹承基業 □至十七世孫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58) 김기흥, 「고구려 국가 형성기의 왕계」, 『고구려의 국가 형성』, 고구려연구재단, 2005.
59) 趙仁成, 「4,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 『한국고대사연구』4, 1990 ; 노태돈, 「고구려 초기 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60) 강진원, 「고구려 宗廟制의 전개와 변천」 『고구려발해연구』53, 2015b, p.36.

세기 후반에 자신들과 혈통관계가 없는 다른 계통의 왕들을 계루부 왕계 위에 수렴했다는 것을 쉬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61] 『삼국사기』의 고구려 왕계는 일단 계루부 왕실의 가계로 해석해야 합리적이다.

남은 가능성은 그것이 계루부 왕실의 가계이기는 한데 고구려왕이 아니었던 인물들이 왕인 듯 기록되었고, 실제는 소노부에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을 경우이다. 이렇게 이해하려면 『삼국사기』 기록에는 왕부 교체에 관한 사실을 생략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오히려 왕부의 교체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기사가 확인된다. 비류국왕 松讓과 주몽의 相爭 및 그의 內降 기사가 그것이다.[62] '消奴'와 '松讓' 사이에 유사음 관계가 있어 송양은 消奴部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63] 그리고 '沸流'가 國名으로 나타나지만 溫祚의 형으로서 人名 '沸流'가 또한 있으며 『삼국사기』 三國有名未詳地分에서 沸流國을 松讓國이라 하는 등, 國名과 王名이 혼용되는 사례를 감안하면 松讓은 정치체의 명칭일 가능성이 높다.[64] 따라서 이상의 분석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王部의 교체 시기는 주몽 대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太祖大王의 王號와 그의 世系上 문제이다.[65] 廟號로서 '太祖'는 건국한 초대 왕을 지칭한다. 그런데 太祖大王의 '太祖'가 묘호로서 붙여진 것이었다면 그 뒤를 이은 次大王이나 新大王에게도 격식에 어울리는 묘호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들의 왕호를 '다음 대왕(次大王)'과 '새로운 대왕(新大王)'이라 하였다는 점에서,[66] 太祖大王의 '太祖'를 묘호라 확단하기에 주저되는 면이 있다.

---

61) 김기흥, 앞의 논문, 2005, p.249.

62)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卽位條 ; 2年 夏6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63) 李丙燾, 「高句麗國號考」 『서울대학교논문집』3, 1956(앞의 책, 1976), pp.359~360 ;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2, 1975, p.6 ; 여호규, 앞의 책, 2014, p.33. 『鄕藥救急方』에서 菖蒲에 대한 鄕名 표기로 '消衣乃'와 '松衣乃'가 발견되는 점에서도 '松'과 '消'의 관계를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김무림, 『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pp.156~157 참조. 그리고 松讓을 후대 松壤이라고도 표기하고, 두 음의 相似하며, 壤이 內, 奴, 那 등과 互用하므로 讓=壤=奴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64) 조법종, 앞의 책, 2006, pp.317~318.

65) 태조대왕에 관한 諸 논의에 관하여는 朴京哲,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 『한국고대사연구』28, 2002(『한국고대사의 재인식』, 서경문화사, 2018), pp.92~101 참고.

한편『魏書』고구려전에서 전하는 고구려 초기 王系와『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양상, 특히 宮(=太祖大王)을 莫來(=대무신왕)의 裔孫이라 하고 있어,[67] 이들 사이에 실제로는 여러 명의 왕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중원 쪽에서 주몽의 고구려 '건국'을 舊고구려까지 포함한 '고구려'의 건국으로 오해함으로써 나타난 표현에 불과하며, '莫來 子孫 相傳'이라든가 宮을 '裔孫'이라 한 것은 사실성이 박약함을 지적한 바 있다.[68] 그리고『三國遺事』王曆에 유리왕부터 민중왕의 姓氏가 解氏로 되어 있고,[69] 모본왕은 解憂, 解愛婁라고도 하는 바,[70] 이 차이를 血統의 차이로 해석하기도 한다.[71] 하지만 王室의 교체와 王系의 변화는 별개의 사실로, 王姓의 변화는 桂婁部 王室 내에서 일어난 내부 변화로 이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2] 또는 諸王에게 주어졌던 일종의 王者的 성격을 규정하는 칭호의 하나가 '解'였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73]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太祖大王의 '太祖'나 分註로 기록된 國祖王의 '國祖'를 반드시 '건국자' 혹은 王室의 교체를 반영한 王號로 보기는 어렵다고 이해된다. 다만 그가 '太祖'·'國祖'와 같이 불릴 만큼 당대 고구려의 政治體制를 일대 變革한 王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이 점에서 그의 왕호는 新紀元을 이룩한 君王이라는 의미로,

---

66) 太祖大王, 次大王, 新大王의 王號를 새로운 왕계가 시작되어 정통을 자처함에 따라 각각 '첫째 왕', '둘째 왕', 그리고 '새 왕' 식의 의미를 지닌 말로 해석한 견해와(노태돈,「초기 왕계의 구성」, 앞의 책, 1999, p.78), 太祖大王의 分註 王號가 國祖王임에 착안하여, 次大王과 新大王의 분주 왕호를 '次王', '新王'으로 추정하고, 그 왕호의 계통성이 國祖王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 견해가 참고된다(임기환,「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28, 2002, pp.13~14).

67)『魏書』卷100, 列傳88, 高句麗. '初 朱蒙在夫餘時 妻懷孕 朱蒙逃後生一子 字始閭諧 及長 知朱蒙爲國主 卽與母亡而歸之 名之曰閭達 委之國事 朱蒙死 閭達代立 閭達死 子如栗代立 如栗死 子莫來代立 乃征夫餘 夫餘大敗 遂統屬焉 莫來子孫相傳 至裔孫宮 生而開目能視 國人惡之'

68) 拙稿,「中國史書에 나타난 高句麗 初期 王系와 宮의 裔孫化」『高句麗渤海研究』66, 2020.

69)『三國遺事』卷1, 王曆. '第二瑠璃王 一作累利又口留 東明子立 壬寅 理三十六年 姓解氏' ; '第三大虎神王 名無恤 一作味留 姓解氏 瑠璃王第三子 戊寅立 理二十六年' ; '第四閔中王 名色朱 姓解氏 大虎之子 甲辰立 理四年'

70)『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慕本王 諱解憂 一云解愛婁'

71) 김용선, 앞의 논문, 1980, pp.52~56.

72) 金賢淑, 앞의 논문, 1994.

73) 金光洙, 앞의 논문, 1983b, pp.70~71.

당대 高句麗王의 性格이 統合王權으로 발전된 면모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74] 따라서 주몽이 고구려왕으로 즉위한 이후 王統은 변화한 적이 없으며, 『삼국지』와 『후한서』 등에서 밝힌 王部의 교체 시기는 주몽 대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의 王部 교체 기사를 다시 살펴보면, '고구려'를 계루부의 현왕실이 들어선 이후의 그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당대 중국인의 관점에서는 王部의 교체가 새로운 건국의 건설 및 국가 간의 통합 과정이 아니라 '고구려'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 주도세력의 교체로 인식된 것이다.[75] 이러한 인식이 가능했던 이유는, 뒤에서 部의 성격과 결부하여 자세히 논하겠지만, 비류국왕 송양 세력 하나가 고구려 그 자체가 아니었고 또한 주몽 세력 하나가 고구려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러 지배세력이 部를 구성하고 고구려를 건설하였던 까닭에 '고구려'라는 국가체가 유지되는 속에서 王部가 교체된 것이었다.

또한 王部 교체 기사를 文意 그대로 해석하면 주몽이 등장하기 이전인 舊고구려 시기에도 部가 존재하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계루부에서 '대신한다[代]'고 한 것이 주목된다. 部가 주몽이 등장한 이후에 성립한 것이었다면 '대신한다'는 표현은 어색한 면이 있다. '대신한다' 함은 계루부에서 왕이 나오기 전에도 部가 존재하였음을 전제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왕실이 독자적인 종묘를 운영하는 등의 대우를 받고 있는 점에서, 그들이 당대에도 현왕실로부터 '고구려의 前왕실'로 인정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本涓奴部爲王'이라는 구절에서도 감지되지만, 만일 王部 교체 이후 고구려에서 '왕'이라는 새로운 성격의 존재가 성립한 것이었다면, 이들을 굳이 前'왕실'로 대우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이는 舊고구려 시기에도 王이 존재하였으며, 王部 교체 이후에도 '고구려왕'의 성격이 한동안 舊고구려 시기와 동일·유사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삼국지』 고구려전의 '其國有王'에서 '其國'은 王部 교체 이후의 고구려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有王'에서 확인되는 '王'의 존재는 舊고구려 시기까지 넓혀 보아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76]

---

74) 金光洙, 앞의 논문, 1983b, p.61, p.119.
75) 장병진,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50.

이러한 이해선상에서 볼 때, 비류국왕 송양이 고구려의 前王室 곧 舊고구려의 왕실이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서기전 2세기 후반 고구려가 위만조선 및 濊와 함께 거론되는 세력이었다는 점과 송양이 '累世爲王'하였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면,[77] 비류국을 왕실로 하는 舊고구려는 현도군 설치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78] 이와 관련하여 비류국이 고조선계 지배세력이었다는 지적이 주목된다.[79] 일찍이 고려시기에도 이러한 해석이 제기된 바 있는데,[80] 전왕실이 王部 교체 이후에도 독자적인 종묘를 세워 제사를 지낼 수 있었던 점과,[81] 전왕실의 마지막 왕인 송양이 '仙人之後'를 칭한 것과 平壤을 '仙人王儉之宅'이라 한『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기록,[82] 이 둘의 상관성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견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류국과 상관한 고조선을 위만조선으로 보아 비류국을 위만조선이 붕괴한 이후의 잔존 세력으로 해석하기도 한다.[83] 하지만 기록상 고조선과 관련하여 流移가 발생할 만한 政治的 波動은 크게 잡아도 燕 昭王 代(서기전 311~279) 秦開의 東侵과[84] 서기전 2세기 초 위만의 왕위 찬탈이 있다.[85] 또한 舊고구려가 현도군 설치 이전 이미 성

---

76)『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國有王'

77)『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松讓曰 我累世爲王'

78) 현도군 설치 이전에 消奴部 혹은 消奴 세력 및 沸流國이 성립해 있었을 것으로 파악하는 諸 견해로는 다음의 論考가 참고된다. 田美姬,「高句麗初期 王室交替와 五部」,『水邨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探求堂, 1992, pp.170~174 ; 박찬규,『초기고구려사 연구—삼국지 고구려전과 관련사료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4, pp.49~56 ; 조법종, 앞의 책, 2006, pp.317~328 ; 장병진,「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한국고대사연구』77, 2015, pp.32~36 ; 앞의 논문, 2019, pp.60~68.

79) 조법종, 앞의 책, 2006, pp.317~328 참조.

80)『帝王韻紀』卷下, 東國君王開國年代. '東明本紀曰 沸流王松讓謂曰 予以仙人之後 累世爲王 今君造國 日淺 爲我附庸 可乎 則此亦疑檀君之後也'

81)『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82)『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21年 春2月.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移民及廟社 平壤者 本仙人王儉之宅也 或云 王之都王險'

83) 朴京哲,「高句麗의 國家形成 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b, p.139.

84)『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 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85)『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 及綰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收中國亡命 爲朝鮮藩屛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

립해 있었을 측면을 고려할 때, 비류국이 위만조선의 붕괴와 연결될 지배세력일 여지는 적다. 그러므로 舊고구려의 왕실과 관계하는 고조선은 위만조선 성립 이전에 존재한 고조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비류국의 지배세력은 위만에 의해 축출된 準王系와 연결될 수 있으며,[86] 舊고구려의 성립 시기는 늦어도 위만조선이 성립한 직후 어느 때인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이다.[87]

舊고구려의 성립 시기를 이와 같이 파악하면, 서기전 128년 예군남려 등이 前漢에 투항하였을 당시 舊고구려 또한 이에 가담하였다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예군남려 '등'이 투항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예군남려 한 명이 아니라 그에 비견할 만한 지위를 가진 여럿이 前漢에 內屬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8만 口는 예군남려의 지배 하에만 있던 口數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지배세력이 파악하고 있던 口數의 총합으로 볼 수 있다.[88] 『삼국지』에서 高句麗, 東沃沮, 濊 등의 戶數가 각각 3만, 5천, 2만으로 나타나는데,[89] 총 5만 5천 戶가 대략 30만 口 전후로 추산되고,[90] 당시 평균 인구증가율이 0.1% 미만이라는 추산을 고려하면,[91] 예군남려 등이 거느린 28만 口는 대체로 후에 고구려, 동옥저, 예 등이 영유한 강역 정도에 거주하는 인구 규모로 추정된다.[92] 이를 토대로 서기전 2세기 후반 舊고구려의 인구 규모는 대략 3만여 호로 추산할 수 있다. 또한 예군남려 등이 戶籍을 들고 투항하였으므로 舊고구려

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86) 조법종, 앞의 책, 2006, pp.204~209, pp.339~341.

87) 프리드(Fried)의 개념 설정에 따르면 舊고구려는 그 지역에서 발생·발전한 初期國家(Pristine State)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에 의해 형성된 二次國家(Secondary State)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적용은 濊貊朝鮮을 初期國家로 위만조선을 二次國家로 구분한 연구를 참조한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6, pp.24~35 참조.

88) 예군남려 등이 이끈 28만이라는 수치는 과장된 표현으로 간주하기도 하나(池內宏, 「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 『史學雜誌』57-2·3, 1947(『滿鮮史研究』上世第1冊, 吉川弘文館, 1951), p.125 ; 和田清, 「玄菟郡考」 『東方學』1, 1951(『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1955), p.16), 그렇게 볼 수 있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

8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戶三萬' ; 東沃沮. '戶五千' ; 濊. '戶二萬'

90) 여호규, 앞의 책, 2014, pp.157~158.

91)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1984, p.121.

92) 예군남려 28만 구는 대체로 요동군 동쪽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교통로상의 여러 주민집단을 포괄한다고 파악한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여호규, 앞의 책, 2014, p.158).

에서도 이미 戶籍과 같은 방식으로 피지배층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다만 이와 같은 규모를 비류국에서 직접 지배·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문제는 部의 성격을 파악한 위에서 합리적으로 해명될 수 있다. 따라서 舊고구려 시기에도 部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하는 위에서, 이때의 部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諸加 중심 정치조직과 部

『삼국지』에 따르면 고구려에는 涓奴部(=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등 모두 5개의 部가 존재하였다.[93] 주목되는 점은 다섯 部를 열거하면서 이를 총칭하여 五'族'이라 한 것이다. 『翰苑』 所引 『魏略』에서도 고구려의 다섯 部를 五族이라 한 점에서,[94] 적어도 『위략』을 편찬한 시점부터 五部를 五族이라 하였다고 이해된다.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등에 붙어 있는 部가 『위략』 등을 편찬하면서 중원 쪽에서 加入한 표현이라면 部라 표기하여 놓고 이를 다시 五'族'으로 통칭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新唐書』에서 '分五部'라 한 뒤 다섯 部를 제시한 것과 같이,[95] 五部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는 『삼국지』 고구려전에 나타난 部가 고구려에서 사용한 용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族은 중원에서 고구려의 部를 그들 나름대로 인식한 표현의 결과라 볼 수 있다. 族은 혈연 집단, 官族, 品類, 무리(群·衆) 등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로, 이 가운데 五族의 '族'은 혈연 집단을 가리킨다고 파악된다.[96]

---

9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本有五族 有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94) 『翰苑』, 蕃夷部, 高麗, 部貴五宗, pp.212~213. '魏略曰 其國本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樓部'. 여기서 제시한 원문 및 이하 제시하는 원문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譯註 翰苑』, 동북아역사재단, 2018에서 제시한 교감문을 참고한 것이다.

95)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分五部 曰內部 即漢桂婁部也 亦號黃部 曰北部 即絕奴部也 或號後部 曰東部 即順奴部也 或號左部 曰南部 即灌奴部也 亦號前部 曰西部 即消奴部也'

96) 여호규, 앞의 책, 2014, p.365.

『삼국지』 고구려전 기사를 음미하여 보면 고구려의 部가 일면 族과 같이 상정될 여지가 있다. 王은 桂婁部에 속하는데 왕의 宗族 중 大加가 모두 古雛加를 칭한다고 하여 桂婁部에 왕과 왕의 宗族이 속하였음이 유추되고, 前王部인 消奴部에서는 適統大人이 古雛加를 칭할 수 있다고 하여 前王室의 家系가 消奴部에 소속하여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면모가 확인된다. 消奴部에서 따로 宗廟를 세우고 靈星과 社稷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 역시 그러하다.[97] 이렇듯 部가 마치 혈연관계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위략』과 『삼국지』에서 部를 '族'으로 적은 것이라 추정된다.

[마] ㉠部貴五宗 ㉡魏略曰 其國本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樓桂樓部 本消奴部爲王微弱 桂樓部代之 ㉢五部皆貴人之族也 一曰內部 卽後漢時 桂樓部 一名黃部 二曰北部 卽絶奴部 一名後部 一名黑部 三曰東部 卽順奴部 一名左部 一名上部 一名靑部 四曰南部 卽灌奴部 一名前部 一名赤部 五曰西部 卽消奴部也 一名右部(『翰苑』)

『翰苑』에서는 部를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마]). [마]는 '部貴五宗'이라 한 본문과(㉠), 이와 관련한 『魏略』의 기사(㉡), 그리고 雍公叡의 서술이라 할 수 있는 ㉢으로 구분된다.[98] ㉢ 이하 기사는 章懷太子 李賢이 『後漢書』 고구려전에 註記한 것에 의거한 것이다.[99] [마]에서는 李賢의 注에 근거하여 消奴部, 絶奴部 등의 이른바 '固有名部'로서 五部와 東·西·南·北 등 이른바 '方位名部'로서 五部가 동일한 실체인 것으로 기록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方位名部의 성격을 固有名部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固有名部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마]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

9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p.843.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消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98)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硏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1980, p.80 ; 이준성, 「고구려 초기 읍락의 성격과 '부(部)'의 성립—'본유오족(本有五族)'의 의미를 중심으로—」 『韓國史硏究』190, 2020b, p.25.

99) 全海宗, 앞의 책, 1980, p.80.

[마]-㉣에서는 고구려의 部를 '貴人之族'이라 하였다. 여기서 族은 무리(群·衆)로도 풀이할 수 있겠는데, ㉣에 앞서 『위략』의 기록을 제시하고 있고, 또 '(고구려의) 內部는 燕의 內部와 같으니 姓은 高氏요 즉 王族이라' 하였으므로,[100] 혈연 집단에 가까운 의미로 푸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위략』이나 『삼국지』에서 部를 族이라 한 것에서 나아가 그 대상을 특정하여 '貴人의 族'이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듯 중원에서는 部를 族的 성격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삼국지』에서 部를 이와 같이 인식한 이유에 관하여는, '部'를 지역적 단위집단으로, '族'을 혈연관계에 기초한 집단으로 구별한 『삼국지』 찬자가, 3세기 중엽 고구려의 五部가 혈연관계에 기초한 지배세력의 존재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101] 문제는 3세기 중엽 이전의 部를 또한 族과 같이 파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이전의 部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변화한 결과가 族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102] 이는 『삼국지』 기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3세기 중엽 이전 部의 성격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部 관련 기사에 기초하여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를 검토하였을 때 해명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표 1〉『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기록된 部 관련 용례

연번	시기	내용
1	大武神王 5년(22) 7월	扶餘王 從弟가 來投하자 그를 掾那部에 安置함
2	대무신왕 15년(32) 3월	沸流部長이었던 仇都, 逸苟, 焚求 등 3인을 黜退하고 南部 使者 鄒敎素를 대신 部長으로 삼음
3	閔中王 4년(47) 10월	蠶友落部 大家 戴升 등이 樂浪에 투항함

100) 『翰苑』, 蕃夷部, 高麗, 部貴五宗, p.213. '其內部 如燕內部 姓高 卽王族也 高麗稱無姓者 皆內部也'. '其內部'의 '內'는 원문에 '北'이라 하였으나, 문맥상 內에 적합한 점을 고려하여 교감문을 따랐다.

101) 여호규, 앞의 책, 2014, p.367.

102) 3세기 중엽 이전의 고구려 部를 또한 '族'과 같이 파악하는 견해로는 이준성,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106, 3세기 중엽의 族的 성격은 전환 양상으로 보는 견해는 여호규, 앞의 책, 2014, p.367 참조.

4	太祖大王 20년(72) 2월	貫那部 沛者 達賈를 보내어 藻那를 정벌함
5	태조대왕 22년(74) 10월	桓那部 沛者 薛儒를 보내어 朱那를 정벌함
6	태조대왕 80년(132) 7월	貫那 于台 彌儒, 桓那 于台 菸支留, 沸流那 皂衣 陽神 등이 遂成에게 왕위 찬탈 의견을 내놓음
7	次大王 2년(147) 2월	貫那 沛者 彌儒를 左輔로 삼음
8	차대왕 2년(147) 7월	桓那 于台 菸支留를 左輔로 삼고, 大主簿로 加爵함
9	차대왕 2년(147) 10월	沸流那 陽神을 中畏大夫로 삼고, 于台로 加爵함
10	차대왕 20년(165) 10월	椽那 皂衣 明臨答夫가 차대왕을 시해함
11	故國川王 원년(179)	拔奇와 消奴加가 각기 下戶 3만여 口를 이끌고 公孫康에 투항함
12	고국천왕 2년(180) 2월	提那部 于素의 딸을 王后로 삼음
13	고국천왕 12년(190) 9월	左可慮 등 네 掾那가 謀叛을 일으킴
14	中川王 4년(251) 4월	貫那夫人을 西海에 던져버림
15	중천왕 7년(254) 4월	沸流 沛者 陰友를 國相에 임명함
16	중천왕 9년(256) 11월	掾那 明臨笏覩를 公主에게 장가들여 駙馬都尉로 삼음

〈표 1〉은『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기록된 部 관련 용례를 정리한 것이다.[103] 〈표 1〉을 통해 掾那(연번 1, 13, 16), 椽那(연번 10), 沸流(연번 2, 15), 沸流那(연번 6, 9), 蠶友落(연번 3), 貫那(연번 4, 6, 7, 14), 桓那(연번 5, 6, 8), 消奴(연번 11), 提那(연번 12) 등의 部名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들 部名이 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등과 각기 어떻게 대응되는지 살핀 후에 〈표 1〉에 나타난 部 관련 용례의 특징

103)『삼국사기』에 기록된 部는 部名을 기준으로 固有名으로 표기된 部와 方位名으로 표기된 部로 나뉜다.『삼국지』에 나타난 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등 五部는 이른바 固有名部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단 固有名部에 초점을 두어 다루고 있으므로, 〈표 1〉에서는 固有名部와 관련한 용례만 제시하였다.

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중왕 4년(47) 낙랑에 투항한 戴升이 冠稱한 鼷友落의 경우 五部에 대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되므로,[104] 일단 제외할 수 있다. 한편, 고국천왕 2년(180) 于素가 冠稱한 提那는 掾那의 誤記일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일찍부터 제기되었다.[105] 그리고 次大王 20년(165) 왕을 시해한 明臨答夫의 소속이 椽那로, 中川王 9년(256) 公主에게 장가간 明臨笏覩의 소속이 掾那로 나타나는 것과 후대 사서에서 椽那와 掾那가 교체되어 쓰인 것을 고려하면,[106] 椽那와 掾那는 동일 표기로 파악된다. 따라서 掾那, 椽那, 提那는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기로 볼 수 있다.

沸流는 沸流那에서 那를 생략하고 표기한 형태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둘은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故國川王 원년(179) 拔奇가 公孫康에 투항할 때 함께한 消奴加 기사가 唐代 편찬된 『通典』의 기사와 일치하므로,[107] 이 기사는 『통전』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여겨진다.[108] 따라서 消奴加는 고구려 측에서 사용한 용례에서는 제외된다. 이상을 토대로 『삼국사기』에 나타난 五部 관련 명칭은 掾那, 沸流那, 貫那, 桓那 등 네 개로 정리할 수 있다.[109] 이때 王을 배출한 桂婁部가 고구려본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면, 총 다섯 개가 되어 『삼국지』에 기록된 部의 숫자와 일치한다.[110]

---

104) 노태돈, 앞의 책, 1999, pp.106~107 참고.

105) 三品彰英,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朝鮮學報』6, 1954, p.53 ; 李基白, 「高句麗王妃族考」『震檀學報』20, 1959, p.84.

106) 가령, 大武神王 5년(22) 扶餘王 從弟가 고구려에 來投하여 掾那部에 安置된 史實을 기록한 安鼎福(1712~1791)의 『東史綱目』이나 『修山集』(1803)에서 掾那部를 椽那部라 하였음이 참고된다(『東史綱目』第1下, p.7. '帶素從弟 謂國人曰 … 來投高句麗 王封之爲王 置椽那部 …' ; 『修山集』卷11, 東史世家, 扶餘世家, p.18. '王從弟謂國人曰 … 降高麗 高麗立爲扶餘王 置之椽那部 …'

10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上' ; 『通典』卷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

108) 전덕재,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p.236.

109) 椽那와 掾那 중 빈도 상 掾那가 더 높으므로 본고에서는 기록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掾那로 표기한다. 沸流와 沸流那 중에는 다른 部名에 那가 공통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에 주목하여 沸流那로 표기한다.

110) 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p.60.

그렇다면 掾那部, 沸流那部, 貫那部, 桓那部 등의 네 部가 『삼국지』의 涓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등 네 部와 각기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貫那部를 灌奴部에, 桓那部를 順奴部에 비정하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논란이 되는 것은 桂婁部 이전 王部로 기능한 涓奴部가 『삼국사기』에 기록된 어떤 部와 대응하는가이다.[111]

『삼국지』에는 前王部를 涓奴部라 하였지만 『후한서』에서는 消奴部라 하였다.[112] 『翰苑』 所引 『魏略』에서도 『후한서』와 마찬가지로 消奴部라 하였다.[113] 이를 토대로 보면 涓이 誤字이고 消를 正字라 할 수 있다. 그리고 '涓'의 한어중고음 음가는 見母[k-]이고,[114] 『廣韻』의 반절 표기는 古玄切이며 上古音이 見元[kiwan]으로 재구된다.[115] 涓의 상고음과 중고음이 모두 見母[k-]로 재구되어 掾 혹은 椽의 음가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도 현대한국한자음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涓奴部를 掾那部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涓奴部는 消奴部의 誤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掾那部와 관련하여서는 掾의 또 다른 표기인 椽으로 표기한 椽那와 絶奴를 等價音으로 분석한 견해가 주목된다.[116] 이를 참고하면 고구려에서 '椽那'라 한 것을 『삼

---

111) 涓奴部를 消奴部의 誤記로 파악하고 '消奴'와 沸流國王名인 '松讓' 간에 음이 유사함을 바탕으로 沸流那部를 消奴部에 대응하는 견해가 통설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涓의 현대한국한자음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掾那의 掾과 일치하고 있어, 消奴部를 涓奴部의 오기로 보고 涓奴部와 掾那部를 동일한 실체로 파악하기도 한다. 沸流那部=消奴部 說은 李丙燾, 「高句麗國號考」 『서울대학교논문집』3, 1956(앞의 책, 1976), pp.359~360 ; 盧泰敦, 앞의 논문, 1975, p.6 ; 여호규, 앞의 책, 2014, p.33 참조. 涓奴部=掾那部 說은 李德星, 「高句麗 五部五族考」, 『朝鮮古代社會硏究』, 正音社, 1949, pp.56~57 ; 손영종, 『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2000(서울, 신서원, 2000), p.43 ; 田美姬, 앞의 논문, 1992, 167~169 ; 윤상열, 「고구려 前期 영토편제방식의 재검토」 『高句麗渤海硏究』51, 2015, pp.10~17 참조.

112)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113) 『翰苑』, 蕃夷部, 高麗, 部貴五宗, pp.212~213. '魏略曰 其國本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樓部'

114) 이승재, 「부록 고구려어 表音字의 音價와 出典」, 『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일조각, 2016, p.713 참조.

115) 郭錫良,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p.223. 上古音은 대체로 周, 秦 古音을 일컫고 隋·唐·宋代의 한자음은 中古音으로 통칭한다(李敦柱, 『漢字音韻學의 理解』, 塔出版社, 1995, pp.32~33).

116) 兪昌均, 『韓國 古代漢字音의 硏究Ⅰ』, 啓明大學校出版部, 1980, p.355. 이에 따르면, '椽'의 상고음은 [d'ɨwän], '絶'의 상고음은 [dz'ɨwät]인데, d'-/dz'-는 d-로 反射된다고

국지』에서 '絶奴'로 표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117] 또한 『삼국지』에 '世與王婚'한다는 絶奴部와 『삼국사기』에 나타난 掾那部 관련 史實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118] 따라서 掾那部는 絶奴部와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삼국지』·『후한서』에 기록된 五部 중 桂婁部를 제외한 나머지 네 部는 『삼국사기』의 네 部와 각각 絶奴部—掾那部, 消奴部—沸流那部, 灌奴部—貫那部, 順奴部—桓那部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 부여왕 종제의 내투 기사를 자세히 음미하여 보면, 이들 部에 소속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바] 扶餘王從弟謂國人曰 我先王身亡 國滅民無所依 王弟逃竄 都於曷思 吾亦不肖 無以興復 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安置掾那部 以其背有絡文 賜姓絡氏(『三國史記』)[119]

대무신왕 5년(22) 기록에 보이는 掾那部는 扶餘王 從弟를 안치한 곳으로 나타난다([바]). 安置는 글자 뜻대로 일정한 곳에 편안히 둔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바]에서 연나부에 안치된 대상을 만여 인으로 보기도 하지만,[120] 이 기사는 '(부여왕 종제가) 만여 인과 함께 來投하니 왕이 (부여왕 종제를) 王으로 封하고 연나부에 安置하였으며, 그의 등에 絡文이 있으니 (부여왕 종제에게) 絡氏 姓을 하사하였다'로 해석된다. 來投의 주체 및 고구려왕이 조치를 내린 대상이 모두 부여왕 종제이며, 만여 인은 그에 따라 오는 부수적 존재인 것이다. 즉, 왕으로 봉하고 연나부에 안치한 대상은 모두 부여왕 종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연나부에 안치된 대상

한다. 그리고 末尾의 -t는 -l化하여 '絕'은 [dəl]이 되고 '椽'은 [dən]이 되어 -n/-l의 交替가 있는데, 이는 後續 -n-에 의한 音韻論的 異形態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117) '掾'의 『廣韻』 반절 표기는 '以絹切'이지만 '掾'의 한국한자음에는 '연'과 '전'이 병존한다. 따라서 椽那에 바탕을 둔 설명을 掾那에 적용하여도 무리는 없다고 사료된다. 掾과 椽은 한국한자음에서 오랜 시기부터 서로 섞여 사용되며 涓과 같이 유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기 '연'과 '전'의 한자음을 동시에 지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18) 掾那部와 絶奴部의 대응에 관한 설명은 李基白, 「高句麗 王妃族考」 『震檀學報』20, 1959 (『韓國古代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96), pp.68~76 참고.

11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秋7月.

120) 李鐘旭,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 『歷史學報』94·95, 1982, pp.92~93 ; 琴京淑, 「高句麗의 '那'에 關한 硏究」 『江原史學』5, 1989, pp.16~18.

은 부여왕 종제 한 명이며,[121] 부여왕 종제가 이끈 만여 인까지 掾那部에 안치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122] 이는 部에 소속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음을 감지케 한다.

이는『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어느 지역 사람[某處人]'으로 소개되는 용례를 部名을 관칭하는 인물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에도 확인된다. 〈표 2〉는 '某處人'을 관칭하는 인명에 관한 기록을 뽑아 정리한 것이다.

〈표 2〉『三國史記』高句麗本紀에 나타난 某處人 冠稱 인명 용례

연번	시기	인명	내용
1	유리왕 3년(서기전 17)	鶻川人 禾姬	유리왕의 繼室이 됨
2	유리왕 37년(18)	沸流人 祭須	익사한 왕자 如津의 시신을 찾음
3	대무신왕 4년(21)	北溟人 怪由	대무신왕이 부여 정벌에 나설 때 도중에 만나서 함께 참전한 인물
4	대무신왕 4년(21)	赤谷人 麻盧	대무신왕이 부여 정벌에 나설 때 도중에 만나서 함께 참전한 인물
5	대무신왕 13년(30)	買溝谷人 尙須 등 3인	대무신왕에 來投
6	민중왕 4년(47)	東海人 高朱利	밤이면 빛이 나는 고래 눈을 바침
7	모본왕 6년(53)	慕本人 杜魯	모본왕을 시해함
8	산상왕 12년(208)	酒桶村女 (酒桶村人)	산상왕과 交合하여 동천왕을 낳음
9	동천왕 19년(245)	東海人	왕에게 美女를 바침

〈표 2〉를 〈표 1〉과 비교하여 볼 때, 우선 '어느 지역 사람[某處人]'이라는 기술이 部와는 관계없이 등장한다는 점이 확인된다.『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部가 初出하는 때는 대무신왕 5년(22)이다. 그런데 어떤 인물을 '某處人'과 같이 설명하는 방식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나타나고 있다.

---

121) 田美姬, 앞의 논문, 1992, p.178 ; 拙稿, 앞의 논문, 2017, p.41의 주 170).

122) 掾那部에 安置된 대상이 부여왕 종제로 나타나지만 부여왕 종제뿐만 아니라 그를 따라온 지배집단 일부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田美姬, 앞의 논문, 1992, p.178).

한편, 慕本王 6년(53) 기록에서 杜魯를 慕本人이라 하였다(연번 7). 慕本은 모본왕이 시해되고 장사지낸 곳인 慕本原을 가리킨다.[123] 왕이 慕本原에 매장되었다는 점, 그리고 주몽 이후부터 모본왕 대까지 君王의 葬地가 대략 그 人民을 포함하는 私家的 所有地였다는 지적을 참고하면,[124] 慕本原은 王室이 소유한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桂婁部에서 왕이 나오기 전에는 消奴部에서 왕이 되었다고 하므로, 王部의 교체 시기에 대해서 여러 견해가 제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모본왕이 당시 消奴部 혹은 桂婁部 중 어느 部에 소속되어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만일 部가 한 인물의 출신 혹은 소속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로 관칭한 것이었다면, 慕本原은 部에 소속한 王室이 소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消奴部 혹은 桂婁部로 편제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杜魯 또한 部名을 관칭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杜魯는 部名을 관칭하지 않고 地域名을 관칭하고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桂婁部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杜魯를 포함한 某處人이라 한 인물들이 桂婁部에 소속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桂婁部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은 桂婁部를 관칭하지도 않지만 某處人이라 하지도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125] 이 점에서 〈표 2〉에 나타난 인물들을 桂婁部 소속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部가 거주 혹은 출신 지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누군가에게는 지역명이 관칭되고 누군가에게는 部名이 관칭되며, 部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누구는 部名을 관칭하고 누구는 관칭할 수 없으므로, 앞서 분석한 부여왕 종제의 사례에서와 같이 部를 관칭하는 기준은 사람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

12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6年 冬11月. '杜魯弑其君 杜魯慕本人 … 於是拔力害之 遂葬於慕本原 號爲慕本王'
124) 金光洙, 앞의 논문, 1983b, pp.133~134.
125)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桂婁部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는 大武神王 8년(25) 右輔가 된 乙豆智와 太祖大王 71년(123) 右輔가 된 高福章이 있다(『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8年 春2月. '拜乙豆智爲右輔 委以軍國之事' ;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71年 冬10月. '以沛者穆度婁爲左輔 高福章爲右輔 令與遂成參政事'). 이 외, 대무신왕 10년(27) 右輔가 된 松屋句나 태조대왕 71년(123) 左輔가 된 穆度婁도, 이들이 다른 部 소속이었다면 그것을 명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桂婁部 소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여호규, 앞의 책, 2014, pp.303~304).

다. 부여왕 종제와 杜魯의 사례를 비교해 보면, 杜魯와 같은 피지배층은 部에 소속할 수 없었으며, 만여 명을 거느린 부여 王族과 같은 지배층이 部에 소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 기준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데 部 관칭 인물과 某處人 冠稱 인물의 行蹟에서 나타나는 차이가 실마리를 제공한다.

部를 관칭한 인물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하나는 提那部(→掾那部) 于素, 貫那夫人, 掾那 明臨笏覩와 같이 部를 관칭하되 官等은 소지하지 않은 인물들이다. 이들에게서는 王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 외 部를 관칭하면서 동시에 관등을 소지하고 官職에 임명되는 인물들이 있다. 〈표 1〉에 沛者, 于台, 大主簿, 皂衣와 같은 관등을 소지한 인물들의 사례가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이다. 관등을 소지한다는 것은 왕과 군신 관계를 맺어 국정 운영에 참여함을 상징한다.[126]

관직의 경우, 左輔와 右輔는 '輔'라는 글자에서도 감지되듯 고구려왕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職이라 할 수 있으며, 國相은 종래의 左·右輔를 개정하여 설정한 관직이었다.[127] 相은 중국에서 君主의 私人 또는 家臣의 위치에서 출발한 職으로 春秋時代에는 주로 諸侯가 朝聘宴會할 때 輔導行禮의 任을 띠었으며, 戰國時代에 이르러 君主權이 專制化하면서 점차 百官의 長으로 國政을 總括하는 首相의 職으로 변화하였다.[128] 이러한 相職은 衛滿朝鮮에서도 歷谿卿이나 路人, 韓陰, 參 등이 임명된 職으로 나타나며,[129] 고구려의 國相 또한 국왕과의 관계에서 從屬性이 강한 幕僚的 고위관으로서 성격을 지닌 官名이라 할 수 있다.[130] 中畏大夫의 '大夫' 또한 고조선 시기에 사용된 官名으로,[131] 고구려의 中畏大夫는 國相에 버금가는 要職으로 近侍·監察 등의 임무를 띤 것으로 추

126)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pp.154~155 참조.
12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拜答夫爲國相 加爵爲沛者 令知內外兵馬 兼領梁貊部落 改左右輔爲國相 始於此'. 國相에 관한 연구 동향에 관하여는 여호규, 앞의 책, 2014, pp.275~277 참조.
128) 金光洙, 「古朝鮮 官名의 系統的 理解」 『歷史教育』56, 1994, p.4.
12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 『史記』卷115, 朝鮮列傳55. '左將軍已幷兩軍卽急擊朝鮮 朝鮮相路人 相韓陰 尼谿相參 …'
130) 金光洙, 「高句麗의 '國相'職」, 『李元淳教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教學社, 1991, pp.8~9.
13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정된다.[132] 따라서 관등을 소지하고 관직에 임명된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왕을 중심으로 하는 국정 운영에 臣僚로서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반면, 某處人을 冠稱한 인물들에게서는 위와 같이 관등이나 관직을 소지하고 있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는다. 祭須와 같이 익사한 왕자의 시신을 찾았다거나,[133] 怪由나 麻盧와 같이 대무신왕이 부여를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만나서 전쟁에 참여하고, 혹은 고래 눈을 헌상하거나 美女를 바치는 등, 그들의 행적은 대체로 국정과 관련하여 일시적·제한적인 행위에 그친다.[134] 그리고 杜魯는, 왕에게서 가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볼 때, 마치 王의 私有物처럼 취급당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낮은 신분으로, 일반적인 臣下나 王家의 家臣과도 구별되는 侍從人이었다고 여겨진다.[135]

이상의 차이에 주목하면, 部에 소속한 인물은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거나 관등·관직을 소지하여 국정에 참여하는 자들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부여왕 종제는 별다른 관등이나 관직을 소지하지 않고 掾那部에 소속되었던 점, 그리고 于素나 明臨笏覩가 왕실과 혼인을 맺기 전에 이미 掾那部에 소속된 점에서, 이들이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部에 소속되었다기보다는, 部에 소속된 상태에서 국정에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점에서,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部는 국정에 참여하는 지배층으로 구성된 조직이었다고 추정된다.[136] 고구려의 部가 地緣에 기반한 측면보다 지배

---

132) 金光洙, 앞의 논문, 1983b, p.173 ; 앞의 논문, 1991, pp.7~8

133) 祭須를 沸流人이라 하였는데 이때 沸流를 部名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沸流水나 沸流源과 같이 地名으로 나타나는 沸流의 예가 나타나므로, 沸流人의 沸流는 部名이 아닌 地域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拙稿, 앞의 논문, 2017, p.36의 주149)).

134) 北溟人 怪由의 경우 대무신왕 4년(21) 12월에 대무신왕이 부여를 정벌하러 가는 도중에 만났을 때, 同王 5년(22) 2월 부여왕의 머리를 벨 때, 마지막으로 同年 10월 사망할 때 등 총 세 번의 기사가 있어 다른 인물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인 행적이 소개되고 있다. 다만, 세 번의 기사가 만남, 부여왕 斬首, 사망에 관한 내용으로, 이것만으로 그가 국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135) 趙仁成, 「慕本人 杜魯—高句麗의 殉葬과 守墓制에 관한 一檢討—」 『歷史學報』87, 1980, pp.175~178.

136) 일찍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那)部 冠稱 인명을 분석하여, 那名을 관칭할 수 있었던 대상이 특정 貴族 혹은 有力者라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三品彰英, 앞의 논문, 1954, pp.44~46). 그러나 이 견해는 涓奴部, 絶奴部 등의 部가 『魏志』 혹은 『魏略』에서 漢譯的으로 사용한 것이라 하거나 部를 那集團으로 상정하여 原始社會的인 것으로 보

층의 결합이라는 측면이 더 기본적인 속성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지적이다.[137]

이에 기초하여 보았을 때, 『삼국지』에서 확인되는 部의 성격은 고구려에서 어느 시기에 변화한 결과라기보다는, 처음부터 部가 지니고 있었던 성격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다만 고구려의 部를 族이라 한 것은, 部가 지닌 성격의 일면을 설명할 수 있을 뿐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한 설명이다. 部에 소속하는 데 혈연관계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部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리가 모두 혈연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단적인 사례가 대무신왕 5년(22) 부여왕 종제를 掾那部에 안치한 것이다. 부여왕 종제는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로 부여왕이 참수되어 부여가 存亡의 위기에 처하자 고구려에 투항한 王族이었다. 그가 내투하기 전부터 고구려와 관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그를 部에 소속케 한 점을 보아도 部가 혈연관계에만 바탕을 둔 조직으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이 部에 소속되는, 다시 말해 部가 존재하고 운영되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다고 짐작된다. 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部의 구성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이 諸加의 존재이다.

[사-1]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祠靈星社稷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諸大加亦自置使者皁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皁衣先人同列(『三國志』)[138]

[사-2] 凡有五族 有消奴部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其置官 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大加 主簿優台使者帛衣先人(『後漢書』)[139]

는 등, 당대 고구려의 정치구조 및 사회상에 대한 이해 및 '특정 貴族 혹은 有力者'라 한 대상의 性格이 본고와 크게 차이가 있다.

137) 이준성, 앞의 논문, 2020b, p.27.

13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39)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사-1]의 ㉠에서 '其'는 앞의 '王之宗族'을 가리키므로, '그 大加'는 '왕의 宗族 중 大加'로 풀이된다. 王室이 桂婁部에 속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계루부에 속한 大加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古雛加를 칭하는 이유를 '大加'이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뒤이은 ㉡에서는 絶奴部에서 세세토록 왕과 혼인을 하니 '古雛'의 칭호를 더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古雛加라는 칭호가 '古雛+加'로 合成된 용어임이 확인된다. 왕실과 혼인을 맺고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세력과 지위를 고려할 때, 그리고 桂婁部에서 古雛加를 칭하는 자들이 大加인 점을 볼 때, 絶奴部에서 古雛의 칭호를 더한 加 또한 大加였을 가능성이 크다. 『삼국지』의 古雛加를([사-1]) 『후한서』에서 古鄒大加라 한 것은([사-2]의 ㉣)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된다.

이 점에서 古鄒加의 칭호를 얻는 消奴部의 適統大人 또한 加 특히 大加였으리라 짐작된다. 灌奴部와 順奴部에 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지만, 적어도 다른 部와 같이 大加가 존재했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140] 따라서 ㉢의 '諸大加'는 桂婁部 소속 왕의 宗族인 大加와 함께 諸部에 소속한 여러 大加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41] 이 大加는 곧 小加와 구분되는 존재로서 『삼국지』에는 大加와 小加를 합쳐 諸加라 하였다.

[아]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三國志』)[142]

10월 國中大會에서 실시한 公會에서 大加와 主簿는 머리에 幘을 쓰고, 小加는 折風

140) [사-1]에서 灌奴部와 順奴部가 다른 세 部와 비교하여 위상에 차이를 보이는 것과 왕의 宗族으로서 大加가 등장하는 점은 고구려 사회의 변동상이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이에 관하여는 後述.

141) 왕의 宗族뿐만 아니라 消奴部의 적통대인, 絶奴部에서 칭한 古雛加 등 또한 大加일 것이라고 본 견해가 일찍이 제출된 바 있다. 이에 관하여는 金哲埈,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b), pp.128~129 참조.

14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을 썼다([아]).[143] 이에 이어 고구려에는 牢獄이 없어 죄지은 자가 있으면 諸加가 評議한다고 기술하였으므로, [아]-㉢의 諸加는 앞에서 설명한 大加와 小加를 아울러 칭한 표기임이 유추된다. 평의에 참여한 諸加를 大加에만 한정하여 볼 수도 있겠으나, 만약 평의에 참여할 수 있는 加가 大加에 한정되었다면, [아]에서는 '諸加評議'가 아니라 '諸大加評議'라고 하여 참여 대상을 구체 명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사-1]에서 사자, 조의, 선인 등을 自置하는 주체를, 小加를 포함한 諸加가 아니라 '諸大加'라고 적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의에 참여한 자는 小加를 포함한 諸加였다고 추정되며, 이들이 加로서 평의에 참여하는 것을 토대로 볼 때, 大加와 小加의 구분은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加라는 공통의 기반에서 國政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小加 또한 大加와 마찬가지로 部에 소속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왕의 宗族으로서 大加라든가 소노부의 적통대인 등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諸加뿐만 아니라 그와 친족 관계에 있는 자들도 部에 소속하고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들을 統稱하여 '加'層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삼국지』에서는 消奴部의 적통대인이 고추가를 칭할 수 있다든가, 絶奴部는 세세토록 왕과 혼인하여 또한 고추가를 칭할 수 있다고 하고, 본디 消奴部에서 왕이 되었다가 지금은 桂婁部에서 대신한다고 하여, 마치 하나의 지배세력이 그대로 하나의 部에 대응하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部가 단일한 지배세력만으로 구

143) [아] 기사대로만 보면 公會가 東盟에 대응하는 용어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런데 '其公會 … 形如弁' 구절이 『후한서』 이후 여러 사서에서 隧神祭 기사 이후에 배치되는 차이에 주목하여 보면 東盟과 公會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東盟은 祭天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國中大會이고, 여기서 '公會', 수신제, 評議 등을 행한 것으로 파악된다(이정빈, 「고구려 東盟의 정치의례적 성격과 기능」 『한국고대사연구』41, 2006a, pp.172~177). 이때의 '公會'는 3세기 고구려 정치체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君臣會議 중에서도 대규모의 朝會와 같은 정치의례였음이 지적된다(위의 논문, pp.178~185). 본고에서는 이러한 見地에서 國中大會와 公會를 구분하여 파악한다.

한편, 東盟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대무신왕 대, 태조대왕 대, 신대왕 대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삼국지』 기사에 기재된 양상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祭天을 위한 大會는 이른 시기부터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민중왕 4년(47) 낙랑에 투항한 戴升을 이미 大加라 한 데에서, 大加와 小加의 구분 또한 일찍부터 있었다고 추정된다. 아마도 이른 시기의 大會는 고구려왕과 大加와 小加 등 諸加가 중심이 된 행사였을 것이다.

성되지 않았던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으며,[144] 부여왕 종제의 來投 사례에서 掾那部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거기에 부여왕 종제가 소속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하나의 部 안에는 여러 지배세력 즉 여러 加가 속해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결국 部는 諸加가 中核을 이루는 조직이었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舊고구려 시기에는 消奴部가 王部로 기능하였으므로, 이러한 성격의 部는 舊고구려 시기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部에 소속한 諸加는 어떠한 존재였으며, 누가 주체가 되어 部를 조직한 것인지 살펴볼 때, 部가 존재한 이유와 舊고구려 시기의 정치체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3. 諸加의 王者的 性格과 二重聳立體制

『삼국지』 자료를 통해 部의 구성원으로 존재한 諸加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러한 加의 존재가 『삼국사기』 기록에는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표 3〉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加 관련 기사를 뽑아 정리한 것이다.

〈표 3〉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加 관련 기록

연번	시기	인물	내용
1	閔中王 4년(47)	鹽友落部 大家 戴升	樂浪에 투항
2	太祖大王 원년(53)	古鄒加 再思	琉璃王의 아들이자 太祖大王의 아버지
3	태조대왕 22년(74)	朱那 王子	고구려에 정벌되고 古鄒加가 됨
4	新大王 5년(169)	大加 優居	主簿 然人과 함께 병사를 이끌고 公孫度을 도와 富山賊을 토벌함

144) 盧泰敦, 앞의 논문, 1975, p.26 ; 金賢淑, 「高句麗 初期 那部의 分化와 貴族의 姓氏—《三國史記》 高句麗本紀內 出現人名 분석을 중심으로—」 『慶北史學』16, 1993, pp.33~36.

5	故國川王 원년(179)	消奴加	拔奇와 함께 公孫康에 투항함
6	東川王 12년(238)	主簿大加	병사를 이끌고 魏를 도와 公孫淵 토벌에 나섬
7	美川王 원년(300)	古鄒加 咄固	西川王의 아들이자 美川王의 아버지
8	文咨明王 원년(492)	古鄒大加 助多	長壽王의 아들이자 文咨明王의 아버지

〈표 3〉에서 확인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古鄒加 관련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연번 2, 3, 7, 8). 이는 고추가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加 그 자체의 성격을 파악하는 자료로 취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외 加 관련 기사는 고구려 자체 전승에 따른 기록이었던 것은 아니라고 짐작된다.

[자-1]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上(『三國史記』)[145]

[자-2]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 詣公孫康降 還住沸流水(『通典』)[146]

[자-3] 王 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將兵助玄菟大守公孫度 討富山賊(『三國史記』)[147]

[자-4] 伯固 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助 度 擊富山賊 破之(『三國志』)[148]

[자-5] 高句麗伯固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助玄菟太守公孫度 擊富山賊 討之(『册府元龜』)[149]

[자-6] 魏大傅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王遣主簿大加 將兵千人助之(『三國史記』)[150]

[자-7] 太尉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宮遣主簿大加 將數千人助軍(『三國志』)[151]

[자-8] 遣太傅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位宮遣主簿大加 將兵千人助軍(『梁書』)[152]

145)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46) 『通典』卷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14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5年.
14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49) 『册府元龜』卷973, 外臣部18, 助國討伐.
150)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12年.
15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고국천왕 원년(179) 기록의 消奴加는([자-1]) 『通典』의 자료를([자-2]) 고구려본기에 삽입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신대왕 5년(169)의 기록([자-3])과 동천왕 12년(238)의 기록([자-6]) 또한 각각의 비교에서도 확인되듯, 중국사서에서 전하는 기록을 원전으로 삼고 있다고 추정된다.[153] 민중왕 4년(47) 기록 또한 『後漢書』의 기록이 원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록은 [자-3]이나 [자-6]이 『삼국사기』 편찬 과정에서 삽입된 양상과는 달리,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데 底本이 된 국내 사서에 이미 전해진 기록으로, 그 과정에서 大加가 大家로 바뀌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까닭에 『삼국사기』에는 『후한서』 기록을 分註로 달아놓았던 것이다.[154] 결국 『삼국사기』에 기록된 加 관련 기사는 소략하며, 그 중에서도 古鄒加 관련 기록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사서에 바탕을 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삼국사기』 기사만으로는 加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加의 성격은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究明할 필요가 있다. 이는 크게 두 부면에서 접근 가능하다. 하나는 加와 동일한 語形으로 여겨지는 干의 성격을 참고하여,[155] 加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다. 고구려, 부여, 신라 등 나라는 각기 달리하여도 그 지배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같다는 사실에서, 加·干이 지닌 성격이 기본적으로는 유사하였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부여와 고구려의 지배자 칭호가 加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부여의 사례를 통해 加의 성격을 유추하는 것이다.

[차] 開闢之後 此地未有邦國之號 亦無君臣之稱 越有我刀干 汝刀干 彼刀干 五刀干 留水干 留天干 神天干 五天干 神鬼干等九干者 是酋長領總百姓凡一百戶七万五千人(『三國遺事』)[156]

---

152) 『梁書』卷54, 列傳48, 諸夷, 高句驪.

153) 全德在,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 『東洋學』64, 2016, p.63, p.66.

154) 大加를 大家로 改書한 주체를 『구삼국사』의 찬자였다고 보고, 『삼국사기』 찬자가 『구삼국사』의 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상정하기도 한다(全德在, 앞의 논문, 2016, p.61).

155) 金光洙, 앞의 논문, 1983b, pp.66~68 ; 徐毅植, 「新羅上代 '干'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pp.16~17 참조.

『삼국유사』에서는 我刀干 등 아홉 干이 하늘에서 내려온 여섯 개의 알을 맞이하였고, 이 중 하나가 수로이니 곧 가야의 시조라는 기록을 전하고 있다([차]). 여기에는 수로를 왕으로 추대한 주체로서 9干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이 거느린 백성은 100호 75,000인이었다. 人數를 감안할 때 '一百'은 '一萬'의 誤記로 이해된다. 아홉 干의 영솔 규모가 총계로 기록되어 있어 실제 각 干이 어느 정도의 세력을 거느리고 있었을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다만『삼국지』韓傳에 弁辰에 속한 大國의 규모가 4~5천 家이고 小國이 6~7백 家이며 總數가 4~5만 戶인 점을 참고하면,[157] 9干이 모두 一國을 거느린 지배자였을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신라「冷水里碑」에서 干(支)을 王이라 표기한 사실도 주목된다. 六部의 干層이 가졌던 지방에 대한 租賦統責 機能과 新羅 '上代' 지방지배체제의 二重構造와 같은 社會相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되는「冷水里碑」에서는,[158] 沙喙部의 至都盧 葛文王부터 斯德智 阿干支, 子宿智 居伐干支, 喙部의 尒夫智 壹干支, 只心智 居伐干支, 本彼部의 頭腹智 干支, 斯彼部의 暮斯智 干支 등 7인을 열거한 뒤 이들을 '此七王等'이라 하였다.[159] 이 또한 干이 본디 漢譯語로 '王'이라 할 수 있는 즉 각기 '國'이라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배체제를 보유한 지배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다.[160] 어떤 지배자가 干을 칭하여도 외부 세력이 그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을 때, 혹 그러한 세력이 있다면 그에 대항하여 자신의 독자성을 지킬 기반을 가지고 자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탱할 수 있을 때, 그 지배자가 비로소 干일 수 있었던 것이다.[161] 즉, 干은 獨立的 政治勢力의 우두머리로서 王者的 存

156)『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

157)『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弁辰 …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158) 서의식,「'中古'期 冷水里碑文의 '節居利'와 干의 租賦統責」,『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p.195.

159)「浦項冷水里新羅碑」. '斯羅喙夫智王乃智王 此二王教用珍而麻村節居利爲證尒 令其得財教耳 癸未年九月卄五日沙喙至都盧葛文王 斯德智阿干支 子宿智居伐干支 喙尒夫智壹干支 只心智居伐干支 本彼頭腹智干支 斯彼暮斯智干支 此七王等 …'

160)「冷水里碑」에서 확인되는 '此七王等'은 王과 대등한 존재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諸干이 王 그 자체는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에 관한 논의는 서의식,「6세기 初 '干'層의 分化와 眞骨身分의 成立」, 앞의 책, 2010, pp.299~302 참조.

161) 徐毅植, 앞의 논문, 1994, pp.21~23 참조.

在였다.[162] 加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干과 유사하였다는 점에 착안하면, 加 또한 독립된 政治力을 보유한 王者였다고 상정된다.

[카-1] 其邑落皆主屬諸加(『後漢書』)[163]

[카-2] 國有君王 … 邑落有豪民名下戶皆爲奴僕(『三國志』)[164]

[카-3] 戶五千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三國志』)[165]

[카-4]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三國志』)[166]

한편 부여에서는 邑落이 모두 諸加에 主屬하였다([카-1]). 대체로 읍락은 중심부의 대규모 취락에 주변부의 복수 취락이 연결된 하나의 단위로 이해되며,[167] 하나의 읍락은 10~100戶로 이루어진 마을을 10개에서 20~30개 안팎으로 통합하고 있는 규모로 상정되는 행정단위이자 군사단위로 기능한 사회로 추정된다.[168] 『삼국지』에는 이러한 읍락의 용례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옥저의 읍락에 대한 설명이다([카-3]). 그런데 부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읍락의 상황이 동옥저와 다르다. 동옥저에서는 읍락마다 長帥가 있다고 한 반면, 부여에서는 읍락에 豪民과 下戶가 있다고 할 뿐([카-2]),[169] 長帥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삼국지』 읍루전에서 읍루의 읍

162) 徐毅植, 위의 논문, 1994, pp.22~23.
16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夫餘.
16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16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16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
167) 權五榮, 「三韓社會 '國'의 구성에 대한 고찰」 『한국고대사연구』10, 1995, pp.36~37 ; 李賢惠, 앞의 책, 1984, p.106 ;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硏究』, 一潮閣, 1982, p.27.
168) 李景植, 『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古朝鮮~新羅·渤海—』,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23 참고.
169) [카-2]의 '名'은 판본에 따라 '民'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로서는 무엇이 正字인지 확단하기 어려우며, 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한 정리는 조법종, 「고구려 사회·경제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32, 2003b, pp.334~336 ; 나유정, 「『三國志』 東夷傳에 나타난 대민지배방식과 民·下戶의 성격」 『한국고대사연구』90, 2018, pp.25~27 참조. 본고에서는 明代 「汲古閣本」을 제외하고 여러 판본에서 '名下戶'로 판각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나유정, 앞의 논문, 2018, p.26),

락에 大人이 있다고 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170] 부여의 읍락 구조가 동옥저 및 읍루와는 다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長帥의 존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長帥는 同書 韓傳에서도 확인되는 용어로, 馬韓에는 각기 長帥가 있어 이들 중 大者는 스스로 臣智라 하고 그 다음은 邑借라 하였다고 한다.[171] 『晋書』에서 長帥를 渠帥라 하고 있으므로,[172] 長帥와 渠帥를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된다. 즉, 동옥저에서 東部都尉가 폐지되면서 그 후에 縣侯로 삼았다는 縣中의 渠帥가 곧 長帥를 가리키는 것이다.[173]

한편 濊에서는 侯·邑君·三老라 하는 官이 下戶를 統主하였다([G-2]). 동옥저의 경우와 비교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三老이다. 동옥저에서는 옥저의 여러 읍락 渠帥가 모두 三老를 自稱하였다([카-3]). 濊에서 三老를 소지하며 下戶를 統主하던 존재가 곧 동옥저에서 三老를 자칭하는 渠帥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옥저의 渠帥 역시 濊의 渠帥처럼 읍락의 下戶를 統主하는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동옥저와 예의 상황을 3세기까지도 계층 분화가 크게 진전되지 못하여 읍락의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74] 특히 濊에서 읍락 내 공동체적 관계가 강하게 남아 있다고 보는 근거로 責禍 관련 기사가 제시된다([카-5]).

[카-5]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三國志』)[175]

'名下戶'로 읽었다.

17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17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172) 『晋書』卷97, 列傳67, 四夷, 東夷, 馬韓. '馬韓居山海之間 無城郭 凡有小國五十六所 大者萬戶 小者數千家 各有渠帥'

17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漢光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174) 金哲埈, 『韓國古代國家發達史』, 한국일보社, 1975a, pp.47~49 ; 盧泰敦, 「三國의 政治構造와 社會·經濟」, 『한국사(2)』, 국사편찬위원회, 1984, p.231 ; 金杜珍, 「三韓時代의 邑落」 『韓國學論叢』7, 1985, p.22 ; 여호규, 앞의 책, 2014, pp.144~145 ; 문창로, 「동예의 읍락과 사회상—'不耐濊國'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81, 2016, pp.50~51.

[카-6] 邑落有相侵犯者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後漢書』)[176]

일반적으로 [카-5]의 ㉠과 ㉡을 연관지어서 '각 읍락은 산천을 경계로 하는 구역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다른 읍락민이 침범하면 책화라는 벌을 가하였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177] 그러나 ㉠과 ㉡을 연결지어 해석하는 데 주저되는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에서 '不得妄相涉入'하는 곳은 크게 보아 '山川'이고, ㉡에서 相侵犯의 기준은 '邑落'이기 때문이다. 산천과 읍락을 곧바로 동일시하기는 어렵다. [나-3]은 일단 ㉠은 ㉠대로, ㉡은 ㉡대로 구분해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서 濊의 풍속은 산천을 중시하고 산천에는 각기 部分이 있어 서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다. 여기서 '서로[相]'의 주체는 읍락 혹은 읍락민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각 읍락이 산천을 경계로 하여 다른 읍락민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일정 지역을 共有地로서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178] 이렇게 산천이 중시된 데에는 산과 하천이 땔감이나 食料를 구할 수 있는 제공처라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179]

문제는 공유지로서 산천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그 사회에 공동체적 관계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려시대에도 山林川澤은 共利로 인식되었으며,[180] 조선시대에도 일부 산림을 제외한 대부분은 '與民共之'라 하여 백성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고,[181] 온 나라의 人民이 함께 共利하는 것이라는 이념을 분명히 하였다.[182] 그리고 조선시대의 산림천택은 소유권적 위상에서 보았을 때, 공동의 이용지이면서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대지라는 복합적 상태에 놓여 있었음이 지적

17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
176)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177) 노태돈, 앞의 책, 1999, p.135 ; 여호규, 앞의 책, 2014, p.144.
178) 盧泰敦, 앞의 논문, 1984, p.231.
179) 權五榮, 「三韓社會 '國'의 구성에 대한 고찰」『한국고대사연구』10, 1995, p.46.
180) 『高麗史』卷85, 志39, 刑法2, 禁令, 忠肅王 12年. '山林川澤 與民共利 近來 權勢之家 自占爲私 擅禁樵牧 以爲民害 仰憲司禁約 違者治罪'
181) 김동진, 「15~19세기 한반도 산림의 민간 개방과 숲의 변화」『역사와 현실』103, 2017, p.88.
182) 李景植, 『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p.49.

된다.[183] 이때 '산림천택 여민공지'는 국왕이 '與民共之'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능을 설정한 위에서 발현되는 이념이라 할 수 있다.[184] 이러한 이념을 3세기 예 사회의 그것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역사적 추이를 놓고 보면, 산림천택 즉 ㉠에 나타난 산천에 대한 권리는 개별적 소유권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산천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국왕이 그러한 이용권을 백성에게 부여하였다는 이념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산천 이용에 대한 ㉠의 상황만으로 토지 전체에 대한 권리 또한 공유로 설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185]

한편 ㉡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된다. 하나는 侵犯의 주체를 읍락으로 보아, 읍락이 서로 侵犯하면 生口와 牛馬 등으로 罰責하였다고 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을 文意 그대로 해석한 것이다. 이와 달리, 『후한서』의 기록처럼 侵犯의 주체를 읍락이 아니라 '읍락 내의 민'으로 보아 '읍락에서 서로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罰責하였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카-6]).

여기서 유의할 부분은 ㉡의 '侵犯'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다. '침범'이라 하였으므로, 그것이 단순히 경계를 범하는 행위에 국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몰래 군사를 보내어 경계를 노략질하는 것을 侵이라 함을 참고하여도 그러하고,[186] 匈奴가 여러 차례 奇兵을 보내어 漢의 변경을 '侵犯'하니 군대를 주둔하여 이에 대비하였다고 한다든가,[187] 新 말 後漢 초에 西羌 滇良이 先零, 卑湳이 모두 강성하고 부유하여 자주 '侵犯'하여 모멸을 당하자 이들을 掩襲하여 크게 무찔렀다고 하는 등의 용례를 참작한다면,[188] '침범'이란 크게 잡아 상대방에게 害를 가하는 행위를 의

183) 김선경, 「조선후기 山林川澤 私占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博士學位論文, 1999, p.39.
184) 김선경, 앞의 논문, 1999, p.21.
185) [카-5]의 ㉠이 공유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山川各有部分'을 聖地信仰과 관련된 구역으로 산과 川에 특별한 공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문창로, 앞의 논문, 2016, p.51 참고. 후자의 가능성으로 보아도 ㉠은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의 기사로 처리될 수 있다.
186) 『康熙字典』, 侵. '春秋胡傳 聲罪緻討曰伐 潛師掠境曰侵'
187) 『漢書』卷94上, 匈奴傳64上. '於是匈奴數使奇兵侵犯漢邊 漢乃拜郭昌為拔胡將軍 及浞野侯屯朔方以東 備胡'

미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의 '침범'을 '경계를 범한다'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을 염두에 둔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만 본다면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보다는 '侵'에 대한 의미에 보다 중점을 두고 살필 여지가 있다.

㉡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는 읍락끼리 서로 침범하였을 때, 즉 상대방에게 노략질과 같은 위해를 가하였을 때 이에 대해 罰責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이는 읍락 간에 발생한 침범 행위에 대한 일종의 賠償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 배상물인 生口와 牛馬는 상대 읍락에게 가해한 읍락의 이름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배상 과정이 가해 읍락의 공동체적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이해하기는 곤란하다. 배상의 책임이 어느 한 사회·국가에 있다고 하여, 해당 사회·국가가 공동체적 소유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 같이 ㉡ 또한 그 자체만으로 읍락의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단서로 활용하는 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의 두 번째 해석인 『후한서』의 기술 방식도 주목된다. 『후한서』는 ㉠의 '部分'을 '部界'라고 하고 '涉入'은 '干涉'으로 고쳤다.[189] 이렇게 고친 이유로는 그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이 지적된다.[190] ㉡을 '邑落有相侵犯者'로 고친 데에도 이러한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후한서』에 따른다면 ㉡은 읍락 내에서 서로 침범하는 경우에 대한 기술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의 주체로는 개인 혹은 집단을 상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배상할 때 주는 生口나 牛馬는 결국 개인 혹은 집단이 소유한 것에서 충당하였으리라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개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적 소유에 대한 존재를 확인케 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집단의 경우라 할지라도, 적어도 읍락 전체가 生口나 牛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추정 가능하다.

따라서 ㉠과 ㉡만으로는 3세기 濊의 읍락에서 공동체적 소유관계가 강하게 남아 있

188) 『後漢書』87, 西羌傳77. '自燒當至滇良 世居河北大允谷 種小人貧 而先零 卑湳並皆強富 數侵犯之 滇良父子積見陵易 憤怒 而素有恩信於種中 於是集會附落及諸雜種 乃從大榆入 掩擊先零 卑湳 大破之'

189)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界 不得妄相干涉'

190) 盧泰敦, 「『後漢書』 濊傳」, 『中國正史朝鮮傳 譯註1』, 國史編纂委員會, 1987, p.159.

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당시 濊의 인구를 2만 '戶'라고 하여 '戶'를 기초단위로 사회 구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渠帥의 존재, 渠帥의 統主를 받는 下戶 및 生口로 계층이 구분되는 측면에 주목한다면 읍락 내의 계층은 상당 정도 분화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렇다면 부여의 읍락과 동옥저·예의 읍락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동옥저·예와 부여에서 설명이 다른 또 하나를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동옥저·예에서는 大君長 혹은 大君王이 없다고 한 반면,[191] 부여에서는 君王이 있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카-2]).

옥저는 위만이 조선에서 왕 노릇을 할 때에 위만조선에 복속하였다.[192] 그리고 위만조선이 붕괴된 후에는 玄菟郡에 속하게 되었다.[193] 夷貊의 침입을 받아 현도군이 고구려의 西北으로 옮겨지면서는 다시 낙랑군에 속하였고,[194] 漢에서 그 땅이 너무 멀다고 하여 東部都尉로 나누어 領東 7縣을 別主케 하자 모두 그 縣이 되었다.[195] 즉, 위만조선 성립 이후부터 줄곧 옥저 지역은 외부의 간섭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서기 30년(建武 6) 후한이 邊郡을 줄이면서 동부도위도 폐지되었고, 이때 縣中 渠帥는 모두 縣侯가 되었다.[196] 그러나 동옥저는 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태조대왕 4년(56) 고구려에 정벌되면서,[197] 다시 고구려에 臣屬하는 처지에 놓였다.

예 또한 동옥저와 정치적 형편이 유사하였다. 이 지역은 위만조선의 붕괴와 함께 臨屯郡이 설치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198] 임둔군이 폐지된 이후에는 單單大山領

19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戶五千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19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19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漢武帝 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菟郡'

19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後爲夷所侵 徙郡句麗西北 … 沃沮還屬樂浪'

19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19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漢光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197)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4年 秋7月.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拓境東至滄海南至薩水'

서쪽은 낙랑군에 편입되고 동쪽 지역의 7縣은 都尉가 관할하였다.[199] 그러다 都尉를 없애면서 後漢은 읍락별로 渠帥를 侯로 삼아서 이들을 통제하였다.[200] 예 지역 또한 서기전 2세기 후반의 예군남려와 같은 존재가, 한사군 설치 이후부터 후한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등장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상을 토대로 본다면, 大君長이 없다고 한 것은 당시 이 지역의 사회 수준이 대군장의 존재가 나타날 만큼 진전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 군현이 설치된 이후에는 대군장이 들어설 수 없었던 정치적 역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동옥저와 예에서는 읍락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그 읍락의 渠帥에게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표현이 곧 '統主下戶'이다.

반면 부여에서는 읍락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渠帥가 아니라 그보다 상위권력 즉 君王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제 하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에, 읍락에는 더 이상 統主權을 지닌 渠帥와 같은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부여와 같이 王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계를 갖춘 사회에서 읍락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눈에 띄는 것은, 읍락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이 곧바로 君王(國王)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邑落이 모두 諸加에게 主屬한다고 하여 諸加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카-1]).

[카-1]의 '諸加'는 바로 앞에 馬加, 牛加, 豬加, 狗加 등이 기술되어 있어,[201] 이들에 한정한 표현으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삼국지』부여전에서 '大加'의 용례가 확인되고,[202] 왕위계승에 관여하는 諸加의 존재를 감안할 때, [카-1]의 '諸加'는 六畜名의 加에만 한정되기보다는 부여에 존재하였던 諸加 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203]

---

198) 李丙燾, 앞의 책, 1976, pp.191~209.

199)『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 '自單單大山領以西 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200)『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濊.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 문창로, 앞의 논문, 2016, p.43.

201)『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 牛加 豬加 狗加 …'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夫餘. '以六畜名官 有馬加 牛加 狗加'

202)『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位居遣大加郊迎 供軍糧'. 판본에 따라서는 大加를 '犬加'라고도 하였지만, 六畜名官에 이미 狗加가 확인되므로 이는 大加로 보는 것이 옳다.

여기서 '主屬'은 그 字意의 관계에서 유추할 때 읍락이 諸加를 主로 하여 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主'는 지배—복속 관계를 함의하며, 渠帥가 下戶를 統主한다는 그 '統主'와 같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건대, 동옥저나 예에서 下戶를 統主하며 읍락을 다스리는 지배권력이 부여에서는 諸加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동옥저와 예에서는 읍락 별로 각기 존재하는 渠帥가 읍락 내에 거주한 下戶를 統主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나의 읍락에서 지배—복속 관계가 상정되는 반면, 諸加는 읍락 전체와 主屬 관계가 있다고 하는 차이 또한 발견된다. 이 점에서 諸加는 복수의 읍락을 지배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고구려의 읍락 구조와 관련하여 『삼국지』에 기술된 내용은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民이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國中邑落에서는 이슥한 밤이 되면 남녀가 모여 서로 노래하며 논다는 데에서 邑落의 용례가 나타나고,[204] 拔奇가 형이면서도 왕위에 오르지 못하여 涓奴加와 각기 下戶 3만여 구를 이끌고 공손강에게 투항하였다고 하는 데에서 下戶의 존재가 보이며,[205] 고구려에 부여와 같이 王이 있다고 하여,[206]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통치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고구려에서 역시 부여와 같은 加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고구려의 읍락 사회 지배방식을 부여의 사례에 비추어 이해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사료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加의 용례와 마찬가지로 邑落이란 용어는 보이지 않고 谷, 川 등의 지명이 등장한다. 이때 谷·川과 原·澤 사이에는 일정한 위계가 상정되는데, 原·澤이 최소 규모의 단위이고 谷·川이 읍락에 대응되는 것으로 이해된다.[207] 이를 앞서 살핀 읍락의 구조와 결부하여 볼 때, 고구려에서는 原·澤이라 불리는 여러 개의 취락이 중심부 原·澤과 연결·결집하여 하나의 谷·川 즉 읍락을 이루었다고 짐

203) 이승호,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 『한국고대사연구』96, 2019, pp.212~214.
20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羣聚 相就歌戲'
20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20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國有王'
207) 이준성, 앞의 논문, 2020b, pp.10~13 참조.

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諸 읍락을 지배하는 統主權이 加에게 있었을 것이다. 諸加와 邑落民, 특히 下戶는 정치적·사회적 지배—복속 관계에 있었고 이 관계는 人身的인 主從關係를 매개로 하여 수립되고 있었던 것이다.[208]

다만 加는 어디까지나 諸 읍락 지배에 대한 統主權者이고, 그 지배의 실질적인 실현은 豪民이라 불리는 계층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豪民은 渠帥와 같은 지배자였다가 統主權이 상실되고 난 후 加가 諸 邑落을 지배하는 구조 하에서 읍락 사회의 실질 업무를 담당한 계층이라 볼 수 있다. 豪民은 각 읍락의 유력자로서 諸加의 읍락 통주를 媒介하였을 수도 있고, 혹은 統治機關의 權力職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209]

이상 加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干의 존재를 통해 加가 王者的 存在인 점, 그리고 부여의 사례를 바탕으로 加가 諸 읍락을 統主하는 지배자라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加의 王者性은 그가 諸 읍락을 統主하는 데에서 가지는 支配權에 기반을 두었다고 파악된다. 諸加의 統主權은 諸加와 下戶의 정치적·사회적 지배—복속 관계에 기반한 權力이었던 것이다.[210] 따라서 지배—복속 관계를 수립케 하는 諸加와 下戶의 主從關係가 유지되어야 諸加의 統主權 및 그에 따른 王者性이 보장되고 안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諸加는 서로 連帶하고 아울러 누층으로 疊築하여 상위권력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지배권을 더욱 鞏固化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211] 곧 상부국가로서 고구려의 건설이며 그 왕으로서 高句麗王의 존재이다.

이와 같은 加의 존재를, 앞서 분석한 部의 실체와 결부지어 보았을 때, 결국 王者的 存在인 諸加가 소속해 있던 조직이 部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部는 왕권이 諸加를 편제하면서 성립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었던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가 那와 那部의 관계이다.

---

208) 李景植, 앞의 책, 2005, p.27. 下戶는 諸加가 지배하고 예속시킨 읍락민이었으나 사회형태가 발전하고 분화가 촉진되어 읍락민 가운데서 특별히 最下位로 전락한 층을 지칭하기도 하였다(위의 책, pp.29~30).
209) 李景植, 앞의 책, p.29, p.32.
210) 李景植, 앞의 책, p.27 참조.
211) 李景植, 앞의 책, p.28 참고.

일반적으로 독립된 상태의 那가 왕권에 의해 편제되면서 那部가 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那는『삼국지』기재 五部名에 보이는 '奴'에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삼국지』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읽어낼 만한 자료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삼국사기』고구려본기 기록 또한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오히려『삼국사기』에서는 那와 那部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 4〉『三國史記』高句麗本紀의 部名 용례의 시기순 정리

部名	시기(서기력)										
	22	32	72	74	132	147	180	190	251	254	256
掾那部	掾那部						提那部 → 掾那部	掾那			掾那
貫那部			貫那部		貫那	貫那			貫那		
桓那部				桓那部	桓那	桓那					
沸流那部		沸流部			沸流那					沸流	

大武神王 5년(22) 來投한 부여왕 종제를 掾那部에 안치하였다고 하고, 고국천왕 2년(180) 왕에게 딸을 시집보낸 于素는 提那部(→掾那部)를 관칭하였는데, 同王 12년(190) 左可慮 등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세력은 部가 생략된 네 掾那라 하였고, 中川王 9년(256) 公主에게 장가든 明臨笏覩 또한 掾那만을 관칭하고 있다. 貫那部에서도 이와 동일한 양상이 확인된다. 太祖大王 20년(72) 藻那를 정벌하는 데 나선 沛者 達賈는 貫那部를 관칭하고 있는데, 同王 80년(132) 遂成에게 왕위 찬탈 의견을 내놓은 인물들 중 한 명인 于台 彌儒는 貫那라 관칭하였고, 次大王 2년(147) 기사에서도 貫那만 관칭하고 있다. 〈표 4〉를 확인하여 보면, 桓那部와 沸流那部에서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읽을 수 있다.

아울러 貫那部와 桓那部는 태조대왕 대에 '某某那部'와 '某某那'가 같이 쓰이고 있고,

掾那部는 고국천왕 대에 掾那部와 掾那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왕대에 두 표기가 섞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태조대왕 대 이미 두 가지 방식의 표기가 나타났다가 고국천왕 대 다시 두 표기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某某那와 某某那部라는 표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만약 두 표기가 가리키는 바가 상이하였다면, 어느 시점을 기하여 그 이전과 이후에 某某那와 某某那部가 확연히 구분되어 쓰이는 양상이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某某那라 하든 某某那部라 하든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파악할 수 있다. 두 표기를 형태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某某那'라 하던 것을 후에 '部'를 덧붙여 표기하기도 하였다고는 인정되지만, 部가 직접 사용되지 않은 시기에 또한 '某某那' 그 자체가 '某某那部'와 같은 성격을 지닌 용어로 쓰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렇다면 '那'가 '部'와 같은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那 혹은 那와 동일한 어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삼국지』의 奴는 壤과 대응하며, 그 本源的 의미는 土地·땅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212] 그리고 태조대왕 20년(72) 및 同王 22년(74)에 고구려에 정벌된 나라의 이름이 藻那와 朱那인 데에서도 감지되듯, 那는 일찍부터 國名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213] 이 점에서, 部名에서 나타나는 '那'는 藻那와 朱那와 같이 이미 정치적으로 조직화한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那가 지역·영역에 기반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면, 일견 '那'의 의미와 '部'의 성격 사이에 모순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앞서 部에 여러 加가 소속해 있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가령 掾那部라 하면 掾那라 묶을 수 있는 범위에 존재한 여러 명의 加가 掾那部에 소속하였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런데 加가 王者的 存在였다는 상기 분석을 고려할 때, 피지배층까지 掾那에 소속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나의 那는 각기 加가 이끄는 諸 읍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범주 내에 거주하는 피지배층은 각기 加와 지배—복

212) 三品彰英, 앞의 논문, 1954, pp.32~39 ; 盧泰敦, 앞의 논문, 1975, p.4 ; 최남희,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2005, p.366.

213) 『삼국사기』 지리지에 수록된 고구려 지명을 바탕으로 奴, 內 등을 '나라, 땅(壤)'으로 파악한 견해도 참고할 수 있다(정광, 『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연구—고구려어의 역사비교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박문사, 2011, p.700).

속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那를 기준에 두고 지배—피지배 관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것이다. 이들 피지배층이 혹 관칭을 하였다면 '某處人'과 같았을 것이다. 즉, 某某那를 관칭할 수 있는 대상은 部의 관칭과 같이 지배층에 한정되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部라는 글자가 사용되기 이전에도 部와 같은 성격의 조직 즉 諸加를 위시한 지배층이 정치집단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部의 존재는 部라는 글자의 실제 사용 시기에 구애받지는 않아도 좋다고 사료되며, 앞 절에서 분석한 내용 및 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舊고구려 시기로까지 넓혀서 파악하여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것이다.[214]

桂婁部 王室이 등장하기에 앞서 이미 部와 같은 조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때, 고구려가 部를 조직한 데에 반영된 連帶的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消奴部이든 桂婁部이든 왕실은 餘他 4部와 같이 部에 소속하였다. 특히 王部가 교체되었음에도 왕실은 여전히 部에 소속하였다. 이는 部가 왕권에 의해 지배세력이 편제된 조직이 아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사료된다. 만일 왕권이 편제한 조직이 部였다면, 거기에 왕실이 굳이 소속할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각자 '운동력'을 지녀 온 정치적 지배세력을 왕권이 편제하여서 部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部가 신라 왕권을 성립시킨 배경으로 작용한 것과 같이,[215] 고구려의 部 또한 諸加가 주체가 되어 조직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諸加나 高句麗王이나 모두 같은 部에 소속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등한 조건 하에서 連帶하였던 것이다.

아울러 부여왕 종제를 대상으로 새로운 部를 만들지 않고 기존 掾那部에 안치하거나, 주몽 이후의 대외 통합으로 고구려의 세력권이 확장해 나가는 속에서도 五部 외 部가 나타나지 않는 점, 예컨대 太祖大王 20년(72) 藻那를 정벌하고 同王 22년(74) 朱那를 정벌하였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部를 만들지 않았던 점에 주목하면, 고구려왕이 다른 諸加보다 武力的으로 越等하게 되거나 하였다고 해서 部를 일방적으로 置廢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보았을 때에도, 部가 왕권에 의해 쉽게 좌우

214) 部가 고유의 조직방법에 대한 한문식 표기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참고된다(金光洙, 「고구려사 연구의 제문제—초기의 국가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會, 『韓國上古史』, 民音社, 1989b, p.210).

215) 서의식, 「5~6세기 新羅의 '六部'와 權力關係」, 앞의 책, 2010, p.254.

될 수 있는 조직은 아니었다고 이해된다.[216]

그렇다면 部를 다섯 개로 한정한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를 성립시킨 주체이자 國政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임을 드러내는 것이 곧 部라는 지적이 주목된다. 새로이 고구려에 통합된 세력을 部로 편제하지 않고 部를 다섯 개에 한정한 것은, 5部가 고구려를 건국하고 이끌어 나갔던 중심 집단이었다는 정치적 측면이 작용한 결과였다는 것이다.[217] 이로 볼 때, 諸加가 각자의 독자적 지배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를 건설하고, 그 건설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그러한 지배층의 조직으로 기능한 것이 部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桂婁部가 王部가 되기 이전, 즉 주몽이 고구려의 왕이 되기 이전에도 이미 部는 있었다. 그렇다면 5部가 고구려를 건설한 주체라고 하였을 때 이 '고구려'가 주몽이 건국하였다고 하는 고구려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때의 '고구려'는 舊고구려로 해석해야 한다.

결국 部는 王者的 存在인 諸加가 주체가 되어 결성한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성격의 部가 강하게 유지되던 고구려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나라였다기보다는 部에 소속한 諸加가 중심인 나라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고구려왕 또한 기본적으로는 諸加와 같이 加的 性格에 기반을 두면서도, 한편으로는 部에 소속한 諸加의 合議를 主宰하고 고구려 전체를 指揮하는 統治者였다고 여겨진다. 서로 간에 同質的인 平等을 지니면서도 그 안에서 位階와 序列을 이루는 관계인 것이다.

諸加는 자신의 독자적 지배기반은 대체로 유지한 채 서로 연대하여 그들의 상부국가로서 舊고구려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지배권력을 보장·공고화하기 위한 상위 정치권력을 마련한 것이었다.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정치권력을 諸加가 소속한 각 部가 서로 分有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정치구조는 加가 자신의 지배영역에서는 '王者'로서 서 있으면서도, 다시 '王者'의 상위 '王者'로서 高句麗王을 聳立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수준과 성격이 다른 王의 이중적 聳立을 중핵으로 하여 성립해 있는 이러한 정치구조를 '二重聳立構造'로 개념화한 연구를 참고한다면,[218] 이러한 구조 속에서

216) 고구려 초기 역사 전개 과정에서 이른바 '方位名部'가 등장하여도 한동안 기존 部가 여전히 존재하여 두 성격의 部가 공존하는 양상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17) 노태돈, 앞의 책, 1999, pp.108~109. 이 논고에서 규정한 部는 본고에서 살핀 部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지만 部를 국가의 건설과 결부한 지적은 타당하다고 본다.

운영되는 정치체제를 '二重聳立體制'라 부를 수 있다.

이중용립체제의 운영을 통해 諸加는 자신의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대를 통하여 서로 간에 武力 행동이 자제될 수 있으며, 또한 갈등 관계가 발생하게 되면 그들이 마련한 상위권력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219] 곧 部가 分有하고 있는 정치권력으로 추대한 高句麗王으로 대표되는 國家權力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一個 군사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침입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연대는 효과적인 방책 중 하나이다. 아울러 諸加는 部에 소속함으로써, 비록 자신이 獨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部에 일부 移讓하더라도, 자신이 統主하는 諸 읍락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에 보다 집중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고구려에서 部가 장기간 존재하고 있음을 보면, 이러한 연대가 一時的·短期的 결합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 유지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물론 部가 합의·결정하였다고 표방하면서도, 현실적·정치적 힘의 관계에 의해 특정 지배세력이 주도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서로 간의 동등보다 서열이 더욱 강조되는 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리가 이러하였다는 데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던 舊고구려는 지배계급인 諸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층을 지배하고, 이를 강제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사회였다고 짐작된다. 이 점에서 舊고구려는 原始社會가 아닌 국가와 같은 정치체를 형성한 古代社會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비단 舊고구려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회를 특징짓는 징표임이 지적된다.[220] 이와 관련하여 舊고구려의 왕실이었던 沸流國의 지배세력이 準王系와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221]

---

218) 한국 고대국가의 특징을 二重聳立의 政治體制 또는 二重聳立構造라는 용어로 개념화한 연구에 관하여는 서의식, 「辰國의 變轉과 '辰王'位의 推移」 및 「韓國古代國家의 二重聳立構造와 그 展開」, 앞의 책, 2010 참조.

219) 신라의 사례이나 婆娑尼師今 23년(102) 音汁伐國과 悉直谷國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어 新羅王에게 중재를 요청한 사례가 참고된다(『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23年 秋8月. '音汁伐國與悉直谷國爭疆 詣王請決'

220) 서의식, 「辰國의 變轉과 '辰王'位의 推移」 및 「韓國古代國家의 二重聳立構造와 그 展開」, 앞의 책, 2010, pp.94~96.

221) 조법종, 앞의 책, 2006, pp.204~209, pp.339~341.

위만조선 성립 이전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準王은 箕子의 후예로 나타난다.[222] 여기서 箕子는 人名으로, 商나라 賢人으로서 箕子가 東來하였다는 전승은 역사적 허구로 파악되고 있다.[223] 이때의 '箕子'는 王號임이 일찍부터 지적되었다.[224] 이른바 '箕子朝鮮'은 人名으로서 箕子와 그 후예가 왕 노릇을 했던 고조선이 아니라 王號로서 '箕子'가 존재한 고조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225]

'箕子'는 비단 '箕子朝鮮'뿐만 아니라 三國에서도 확인되는 王號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구려어의 '皆次'이다. '皆次'는 곧 '王'으로『三國史記』地理志 牛首州條에 "王岐縣 一云皆次丁"이라 한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226] 舊고구려의 王室인 沸流國이 '箕子朝鮮'과 상관한 세력이었으며 그들의 왕호가 '箕子'='皆次'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

222)『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所引 魏略. '昔箕子之後朝鮮侯' ; 濊. '朝鮮侯準 僭號稱王'

223) 箕子 및 箕子東來에 관하여는 尹乃鉉,「箕子新考」『韓國史硏究』41, 1983, pp.2~8 ; 유 엠 부찐,『古朝鮮』, 國史編纂委員會, 1986, pp.106~112 ; 조원진,「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20, 2009 ; 吳炫受,「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大東文化硏究』79, 2012 ; 김남중,「箕子 전승의 형성과 단군 신화에의 편입 과정」『韓國史學報』65, 2016 ; 조재형,「고조선어 연구사—한국의 고조선어 연구 경향과 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8, pp.87~92 등 참고.

224) 箕子를 'ᄀᆡᄋᆞ지'로 보고 태양이라 해석하거나(崔南善,「朝鮮의 黎明」,『故事通』(『六堂崔南善全集』7, 역락, 2003, p.461)), 箕子의 '箕'를 '검'으로 읽고 全朝鮮의 王이라 해석한 것이 그 예이다(鄭寅普,「古朝鮮의 大幹」,『朝鮮史硏究』上, 1946(『薝園 鄭寅普全集』3,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p.56~57). 이후 宣祖 8年(1575) 간행된 광주판『千字文』에서 '王'의 訓을 '긔ᄌᆞ'라 한 사실에 주목하여, 이때의 긔ᄌᆞ[Kisi]가 우리나라에서 統治者[王]를 가리킨 용어임이 지적되었다(李基文,「百濟語 硏究와 관련된 諸問題」『백제연구』13, 1982). 한편, 箕子는 왕을 의미하는 '크치'를 표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는데(安在鴻,「箕子朝鮮考」,『朝鮮上古史鑑』上卷, 民友社, 1947, pp.1~59), 이에 관하여는 김인희,「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안재홍의 '기, 지, 치 이론'의 성과와 한계」『語文論集』70, 2017 ;「고조선어와 역사—안재홍의 '기, 지, 치 이론'과 기자조선의 존재 여부」,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8 참고.

225) 위만조선 이전에 존재한 고조선은 王으로서 '箕子'가 존재한 고조선으로서 '箕子朝鮮'이라 할 수도 있겠고, 주축 세력이 濊와 貊인 점에 주목하여 '濊貊朝鮮'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다. '濊貊朝鮮'에 관하여는 金貞培,「古朝鮮의 再認識」『韓國史論』14, 1984 참고.

226)『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牛首州. 왕호 '箕子'와 '皆次'에 관한 자세한 국어학 관련 논의는 V장 3절 및 손희하,「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王' 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14, 2006 참조.

舊고구려의 이중용립체제는 '箕子朝鮮'의 국가 조직 및 정치운영의 원리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해 볼 수 있다.[227]

그러나 이중용립체제가 舊고구려 시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갖추어져 운영되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체제의 양상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서는 王部의 교체 이후 확인되는 部에 기초한 국정운영 양상을 통해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舊고구려에서 고구려로 즉 王部가 교체되기까지의 과정이 정치적으로 순조로운 형편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서기전 107년 前漢의 군현이 舊고구려의 세력권에 설치되었고, 또한 얼마 후 현도군이 다시 축출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염두에 두고 우선 주몽이 등장하기까지의 정치적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27) '箕子朝鮮'과 舊고구려 아울러 위만조선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 비교 검토한다면, 각국의 정치체제 및 사회 구성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원리 및 특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관하여는 別稿를 통해 詳論하겠다.

Ⅲ. 高句麗의 舊고구려 계승과 諸加 세력의 재편

1. 舊고구려의 위축과 朱蒙의 고구려 '건국'

舊고구려는 서기전 2세기 후반 위만조선 및 濊와 함께 동이 지역을 대표하는 세력으로 인식되는 정치세력이었다. 이러한 舊고구려에는 諸加가 중심이 되어 조직된 部가 존재하였으며, 諸加는 部에 소속함으로써 자신의 지배권력을 유지해 나갔다고 추정된다. 고구려왕 또한 部에 소속하였으며 加的 기반에서 聳立된 王者였다. 舊고구려 시기에는 왕실이 消奴部에 속하였는데 곧『삼국사기』고구려본기 기록에 나타나는 沸流國이다. 즉, 비류국의 왕실이 消奴部에 소속하였으며 그 왕실에서 다시 舊고구려의 왕으로 용립된 것이었다.

舊고구려는 서기전 128년 예군남려의 前漢 투항에 함께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1] 예군남려 등이 右渠 즉 위만조선에 반발하여 요동에 內屬하려 하였음에서,[2] 이들의 움직임은 위만조선과의 某種의 정치적 갈등 관계로 인해 나타난 결과였던 것이다. 주목되는 것은 그러한 갈등을 타개하려는 방식이 전한으로의 투항이었다는 점이다. 이로부터 20여 년 뒤인 서기전 107년 위만조선이 붕괴되고, 舊고구려에는 현도군이 설치되었다. 舊고구려가 전한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현도군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으므로, 현도군의 설치는 舊고구려와의 타협이 개입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3] 예군남려의 투항에 함께한 것과 현도군이 설치된 사정에서 전한의 군현 설치를 크게 거부하지 않는 면모가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이다. 두 사건이 20여 년의 간격을 두고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현도군의 설치를 수용한 지배세력 중에는 예군남려의 투항 사건을

---

1) Ⅱ장 1절 참조.

2)『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元朔元年 濊君南閭等 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3) 金光洙, 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b, pp.15~21 ; 金基興,「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韓國史論』16, 1987, pp.19~22 참조. 고구려가 한 군현의 교통로 연결에 필요한 영내 통과에 협조적이었다고 보는 견해도 참고된다(李成制,「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64, 2011, pp.301~302).

몸소 경험한 자들이 적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王部가 교체된 이후에도 諸加를 중심으로 한 국정 운영이 한동안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4] 舊고구려왕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전한의 군현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아마도 舊고구려왕이 주도하고 이에 여러 加가 동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들이 그들의 지배권 일체의 상실을 예상하고 내린 판단은 아니었을 것이다. 서기전 111년(元鼎 6) 南越이 격파된 후 夜郎이 入朝하자 漢武帝는 그 지배자를 夜郎王으로 삼았고,[5] 서기전 109년(元封 2) 서남이의 滇王이 前漢에 나라를 들어 항복하고 군현의 설치와 入朝를 요청하였을 때, 前漢은 益州郡을 설치하고 滇王에게 王印을 내려 다시 그 민의 수장이 되도록 하였다.[6] 그리고 서기전 111년 南越을 멸한 뒤에는 番禺 以西에서 蜀南에 이르기까지 열일곱 개의 郡을 두고 그 故俗에 따라 다스리게 하며 賦稅를 거두지 않게 하였다.[7]

위만조선이 성립하자 전한은 위만에게 外臣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며 塞外 여러 蠻夷 君長이 天子를 入見하고자 하면 이를 막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8] 右渠 때에는 辰國(혹은 衆國)이 上書하여 天子를 알현코자 하여도 그것을 막아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9] 이들 기사를 통해, 위만 이후부터 우거가 왕위에 있던 시기까지 위만조선의 주변 세력이 전한과 교섭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당시 舊고구려가 남월 및 서남이 지역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舊고구려왕 및 諸加가 전한과의 교섭에서 나름의 정보를 입수하고 그와 같은 대우를 기대하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특히 위만조선이 전한의 공격으로 붕괴되는 상황을 目睹하였을 때에는, 그들 諸加가 구축한 舊고구려 체제로 전

---

4) 본장 3절에서 서술.

5)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夜郎侯始倚南越 南越已滅 會還誅反者 夜郎遂入朝 上以爲夜郎王'

6) 『史記』卷116, 西南夷列傳56. '元封二年 … 滇王離難西南夷 擧國降 請置吏入朝 於是以爲益州郡 賜滇王王印 復長其民'

7) 『史記』卷30, 平準書8. '漢連兵三歲 誅羌 滅南越 番禺以西至蜀南者置初郡十七 且以其故俗治 毋賦稅'

8) 『史記』卷115, 朝鮮列傳55. '遼東太守卽約滿爲外臣 保塞外蠻夷, 無使盜邊, 諸蠻夷君長欲入見天子 勿得禁止 以聞 上許之'

9) 『史記』卷115, 朝鮮列傳55. '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人滋多 又未嘗入見 眞番旁辰(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閼不通'

한의 군사력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舊고구려의 모든 지배세력이 전한의 군현 설치를 수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서』 功臣表에 나타난 서기전 99년(天漢 2) '朝鮮亡虜' 기사를 통해,[10] 위만조선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전한과의 전투가 진행되었고, 전한에 항복한 지배세력이 이들을 보호하고 원조하였던 사실이 지적된다.[11] 舊고구려 내에도 이러한 반발이 현도군 설치 초기부터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반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현도군의 축출이다.

[A] 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三國志』)[12]

『삼국지』에 따르면, 沃沮城에 있던 현도군의 치소는 夷貊의 침입으로 고구려 서북으로 이전하였다([A]). 여기서 '沃沮城에 있던 현도군'이라는 구절은 착오로 추정된다.[13] 따라서 ㉠의 의미는 夷貊의 침입으로 제1현도군의 치소인 고구려현이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겨졌다고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발한 시기는, 『漢書』 天文志에 서기전 75년(元鳳 6) 正月 遼東 玄菟城을 쌓았다는 기사와,[14] 同書 昭帝紀에 역시 서기전 75년(元鳳 6) 郡國의 무리를 모아 遼東 玄菟城을 쌓았다는 기사를 토대로 보건대,[15] 서기전 75년이다.[16]

㉠의 '夷貊'을 고구려로 보는 데에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그런데 현도군 축출의 주체를 고구려라 하지 않고 '夷貊'이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夷貊의 貊이 고구려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夷貊을 그대로 고구려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夷貊이 고구려만

10) 『漢書』卷17, 景武昭宣元成功臣表. '天漢二年 坐匿朝鮮亡虜 下獄病死'
11) 趙法鍾, 「衛滿朝鮮의 對漢 戰爭과 降漢諸侯國의 性格」 『先史와 古代』14, 2000, pp.174~175.
1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13) Ⅱ장 1절 참조.
14) 『漢書』卷26, 天文志6. '其六年正月 築遼東玄菟城'
15) 『漢書』卷7, 昭帝紀7. '六年春正月 募郡國徒築遼東玄菟城'
16) 李丙燾, 「玄菟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 金美炅, 「第1玄菟郡의 위치에 대한 재검토」 『실학사상연구』24, 2002, pp.32~34.

이 아니라 異種族에 대한 범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므로,[17] 이때의 貊이 고구려를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18]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 동옥저전에 나타난 '夷狄'이란 표현이 참고된다.

[B] 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 華麗 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三國志』)[19]

[B]는 서기 30년 낙랑군의 관할을 받던 동부도위가 혁파된 후 전개된 토착 세력 사이의 치열한 상쟁을 담고 있는 기사로 이해된다.[20] 여기서 '夷狄'은, [B]-㉠ 앞에서 도위가 혁파된 후 縣中渠帥를 모두 縣侯로 삼았는데 夷狄이 '서로[相]' 攻伐한 이후 不耐濊侯만 功曹 등의 諸曹를 두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동옥저 및 예의 渠帥와 같은 지배세력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에서 攻伐의 주체를 渠帥 아니면 沃沮 등으로 표기할 법한데, 그렇지 않고 상쟁의 주체를 '夷狄'이라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B]-㉠).[21]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에는 뒤에 不耐濊侯만 諸曹를 두었다는 기사가 실마리를 제공한다. [B]-㉠의 결과, 중원 세력이 인정하여 그 지배질서 내에서 운영되는 侯國은 不耐濊侯만 남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B]-㉠은 중원 세력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사정과 그들이 군현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원인을 담고 있는 구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의 '夷狄'은 그러한 변화를 야기한 '攻伐'의 주체를 가리키기 위해 쓴 卑稱인 것이다. 이들이 서로 攻伐한 이유에는, 그 결과로 不耐濊侯만 侯國의 지위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런데 諸 읍락에는 여전히 渠帥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 중원 세력의 군현

17) 조영광,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동북아역사논총』27, 2010, p.204.
18) 이종록, 「高句麗 초기 梁貊 관계 기사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75차 국내학술대회, 『고구려와 발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2021, p.140.
1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20)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p.343.
21) 영동 7현이 侯國이었던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중원 세력의 군현제 하에서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관하여는, 김병준, 「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한국고대사연구』78, 2015, pp.167~175 참조.

제 운영을 둘러싼 옥저 내 內紛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A]-㉠ 또한 [B]-㉠과 같은 양상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옥저 지역을 현도군으로 삼아 군현지배를 하였다가 [A]-㉡으로 인해 郡治가 고구려의 서북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때의 '夷貊' 역시 중원의 지배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한 주체에 대한 卑稱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제1현도군의 郡治가 고구려현이라는 것을 상기한다면 곧 고구려를 가리키는 것이겠다.

그런데 서기전 2세기 후반부터 현도군 설치에 이르기까지 舊고구려가 전한의 군현 설치를 수용하는 위에서 자신들의 지배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던 점이 유의된다. 이 점에서 消奴部 소속 王室이 현도군 축출을 주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신중을 요한다.[22] 물론 새로운 舊고구려왕이 등장하면서 방침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서기전 75년 현도군이 축출되고 나서 서기전 1세기 후반 王部가 교체하는 사정까지 감안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정세를 염두에 둘 때, 현도군 설치 이후 舊고구려 내 지배세력의 동향을 部와 연결하여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전한이 이민족 지역에 郡을 설치한 초기에 故俗에 따라 다스리게 하였던 점,[23] 그리고 군현이 설치된 이후에도 舊고구려 사회의 지배구조가 유지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24] 현도군 설치 이후에도 舊고구려에서 部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部의 구성 양상이 설치 이전과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舊고구려 왕실이 주도한 정책 기조에 반대하였을 지배세력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諸加가 部에 소속한 이유에는 자신들의 독자적 기반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런데 현도군이 설치되면서는 전한의 군현 설치를 형식적으로라도 수용하여야 자신들의 지배기반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지배기반의 유지가 舊고구려의 정치질서 속에 있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였던 셈이다. 여기서 두 가지 경우가 상정된

22) 장병진,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63~67 참조.

23) 『史記』卷30, 平準書8. '漢連兵三歲 誅羌 滅南越 番禺以西至蜀南者置初郡十七 且以其故俗治 毋賦稅'

24)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p.60~64.

다. 하나는 이러한 전한의 영향력 확대를 거부하고 이동하는 지배세력의 존재이다. 기록상 전한의 군현이 직접 설치되지 않은 곳이 부여이므로, 현도군 설치 이후 부여로 유망한 세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일단 군현 설치를 형식상으로는 수용하되 이에 거부감을 지닌 지배세력이다. 특히 이들 중에는 部 소속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部에 소속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지배기반이 전한에 의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유지될 수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部에서 이탈한다는 것은 舊고구려에서 이탈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군현이 설치되지 않은 때라면 쉽게 部에서의 이탈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舊고구려에 속한 諸加 전체를 외부 세력으로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도군의 운영과 같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였을 때에는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역대 왕조의 기본적인 방침이 변경 이민족의 정치적 통합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25] 형식적으로라도 군현 설치를 수용한 지배세력을 쉽게 통합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서기전 2세기 후반 예군남려의 존재가 확인됨에도, 舊고구려에 비해 군현 지배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濊에서 결국엔 大君長이 다시 들어서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던 점도 참고할 수 있다.

이상의 추정을 토대로 보았을 때, 현도군 설치 이후 舊고구려는 여전히 舊고구려라는 정치체로서 유지되고는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舊고구려 왕실의 주도에 동조하는 지배세력과, 部에는 소속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세력,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전한의 군현 설치는 수용하되 部에서는 이탈한 세력, 그리고 舊고구려와 군현 설치 수용을 모두 거부하고 유이를 택한 세력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러한 동향에서 서기전 75년 현도군이 축출된 사건은 이후 舊고구려의 政勢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幘溝漊 설치 관련 기사가 주목된다.

[C] ㉠-1漢時賜鼓吹技人 ㉠-2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幘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幘溝漊(『三國志』)[26]

25)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28.
2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C]에서는 고구려와 중원 세력 간 교섭 관계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크게 보아 漢에서 賜鼓吹技人을 사여하고 고구려에서 현도군으로부터 조복과 의책을 받았던 시기(㉠), 고구려가 점차 驕恣해져 현도군에 오지 않은 시기(㉡), 東界에 小城을 쌓아 고구려가 여기서 조복과 의책을 가져간 시기(㉢), 마지막으로 지금도 그 城을 책구루라 부르는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은 '今'이라 하였으므로 3세기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부분은 ㉠부터 ㉢까지가 각각 어느 시기의 상황을 전하는가 하는 것이다.

[C]-㉢에서는 책구루가 위치한 곳을 '東界'라 하고 있다. 이는 현도군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구려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상황을 보여준다.[27] 同書 동옥저전에서 夷貊의 침입으로 郡治가 (고)구려의 西北으로 옮겼다고 하였으므로,[28] 현도군과 고구려가 위와 같은 경계를 이룰 수 있는 때는 서기전 75년 이후 이른바 제2현도군 시기로 파악된다.

책구루를 설치하였다는 것은 이를 매개로 고구려와 중원 세력이 교섭을 전개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서기 47년(建武 23) 大加 戴升 등이 낙랑군에 이르러 內屬한 사실과,[29] 서기 49년(건무 25) 고구려의 공격으로 중재에 나선 인물이 遼東太守 祭肜인 것을 보면,[30] 서기 1세기 중반에는 이미 현도군이 책구루를 통해 고구려의 대외교섭을 감당할 단계를 벗어나 있음이 확인된다.[31] 서기 12년(始建國 4) 新과 고구려 간 갈등이 촉발되었을 때, 遼西大尹 田譚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케 한 점도 참고된다.[32]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책구루의 설치 시기는 일단 서기전 75년 이후부터

---

27) 여호규, 앞의 책, 2014, p.171.

2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菟故府是也'

29)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二十三年冬 句驪 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

30)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二十五年春, 句驪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祭肜以恩信招之 皆復款塞'

31) 윤용구, 「高句麗의 흥기와 幘溝漊」, 『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2006, pp.16~17.

32) 『漢書』卷99中, 王莽傳69中. '先是 莽發高句驪兵 當伐胡 不欲行 郡强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遼西大尹田譚追擊之 爲所殺 州郡歸咎於高句驪侯騶 嚴尤奏言 貉人犯法 不從騶起 正有它心 宜令州郡且尉安之 今猥被以大罪 恐其遂畔夫餘之屬必有和者 匈奴未克 夫餘 穢貉復起 此大憂也

서기 전후 사이로 범위를 좁힐 수 있다.

한편 [C]-㉡에서는 '後'라는 표현이 확인되지만 이것만으로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렵다. 더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C]-㉠의 '漢時'이다. [C]에서 현도군이 이동하였다는 정황이 분명히 확인되지 않으므로, [C]-㉢의 '東界' 기준이 [C]-㉠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C]-㉠의 漢時는 제2현도군 시기로 볼 수 있다.[33] 그렇다면 [C]의 ㉠부터 ㉢까지는 제2현도군 시기 고구려와 중원 세력 간 교섭 관계를 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후한서』에서 漢武帝가 朝鮮을 멸하여 고구려를 縣으로 삼아 현도군에 속하게 하고 鼓吹伎人을 하사하였다고 하므로,[34] 이 기록을 존중한다면 [C]-㉠은 제1현도군 시기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35]

[D-1]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菟郡受朝服衣幘 高句麗令主其名籍(『三國志』)[36]

[D-2]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後漢書』)[37]

[D-3] ⓐ漢時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三國志』)[38]

[D-4] 其王葬用玉匣 ⓑ漢朝常豫以玉匣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焉(『後漢書』)[39]

[D-5]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三國志』)[40]

[D-6]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諟等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諟爲漢 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後漢書』)[41]

莽不尉安 穢貉遂反 詔尤擊之 尤誘高句驪侯騶至而斬焉 傳首長安'

33) 여호규, 앞의 책, 2014, p.171.

34)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 賜鼓吹伎人'

35) 金翰奎, 『古代中國的世界秩序研究』, 一潮閣, 1982, p.369 ; 權五重, 『樂浪郡研究』, 一潮閣, 1992, p.51.

3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37)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3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39)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夫餘.

4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41)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韓.

『삼국지』에서는 [D-1]의 ⓐ와 같은 '漢時' 용례가 부여전과 한전에서도 확인된다. 부여전에서 '漢時'에 부여왕의 장례 때 玉匣을 사용하였는데, 항상 현도군에 미리 갖다 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그것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른다고 할 때 '漢時'가 그것이다([D-2]). 그리고 한전에서는 韓이 '漢時'에 낙랑군에 속하였는데 四時로 朝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D-3]). 다만 『삼국지』에서는 위만이 조선에서 왕 노릇하였던 시기를 '漢初'라고 하고,[42] 公孫度이 활동한 시기를 '漢末'이라고 하여,[43] 전한과 후한을 아울러 '漢'이라 하였다. 때문에 『삼국지』 기사만으로는 '漢時'를 구체적으로 범주화하기 어렵다. [D-1]의 漢時 또한 마찬가지의 경우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는 『후한서』에서는 『삼국지』의 '漢時'를 보다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일단 부여전의 '漢時'는([D-3]의 ⓐ) 『후한서』에서 '漢朝'라고 쓰여 있다([D-4]의 ⓑ). 그리고 나머지 구절은 순서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내용은 같다. 이 점에서 볼 때, '漢時'와 '漢朝'도 원래는 같은 문구였는데 '時'와 '朝'가 字形이 유사한 까닭에 전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誤刻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지』에서는 '漢時'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고 『후한서』 동이열전에서 '漢朝'와 같은 용례는 이곳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주목하면, '漢朝'가 誤記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후한서』의 기록대로라면 玉匣을 갖다 두는 주체가 '부여'가 아니라 '漢 나라 조정'이라는 것인데, 전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아도 『삼국지』 쪽이 자연스러운 듯하다. 따라서 『삼국지』 부여전의 '漢時'는 『후한서』 부여전에서도 원래는 '漢時'로 기술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다음, 韓傳의 '漢時'는([D-5]의 ⓐ) 『후한서』에서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적시하고 있다. 서기 44년(후한 건무 4) 韓人 廉斯人 蘇馬諟 등이 樂浪에 이르러 貢獻하니 광무제가 蘇馬諟를 廉斯邑君으로 삼고 낙랑군에 속하게 하여 四時로 朝謁케 하였다는 것이다([D-6]의 ⓑ). 두 기록에서 '屬樂浪郡 四時朝謁'이라는 공통 구절이 발견되므로, 『삼국

4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4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夫餘本屬玄菟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지』 한전에서 '漢時'라 모호하게 처리한 내용의 실은 『후한서』의 蘇馬諟 등이 貢獻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삼국지』에서 '漢時'라고 한 시점에 대해, 『후한서』에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에는 [D-6]의 ⓑ와 같이 기록하고, 그 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D-4]의 ⓑ처럼 그대로 漢時로 기술하였다는 것이다. 즉, 『후한서』에서 '漢時'를 임의의 시기로 改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토대로 볼 때, [D]-1에서 '賜鼓吹技人'한 '漢時'에 관하여도 이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D]-1의 '漢時'를 [D-2]의 ⓑ와 같이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 使屬玄菟'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D-7] 漢武帝元封四年 滅朝鮮 置玄菟郡 以高句麗爲縣以屬之 ⓐ漢昭賜衣幘朝服鼓吹 常從玄菟郡受之(『北史』)[44]

[D-8] 漢時賜衣幘朝服鼓吹 常從玄菟郡受之(『梁書』)[45]

이와 관련하여 『北史』에서 고구려에 鼓吹와 조복, 의책을 사여한 시기를 '漢昭'라 한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D-7]의 ⓐ). 이를 '漢昭帝'로 보아 昭帝 시기(재위 서기전 87~서기전 74)에 [D-7]의 ⓐ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46] 하지만 이 구절은 『梁書』의 기사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므로([D-8]), 그 과정에서 '時'가 '昭'로 잘못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C]-㉠의 '漢時'는 『후한서』에 의거하여 서기전 107년 현도군이 설치된 이후, 즉 제1현도군 시기의 사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C]에서는 왜 현도군치의 이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를 [C]에서 분명히 언급할 여지는 있지만, [C]에서 전하려는 내용의 핵심은 고구려가 驕恣해져 더 이상 郡에 오지 않으니 책구루라 하는 小城을 쌓았다는 데 있다. 이에, 현도군의 이동 사정은 '後'를 통해 생략하고 전하려는 핵심만 기록하였다고 추측

44) 『北史』卷94, 列傳82, 高句麗.
45) 『梁書』卷54, 列傳48, 高句驪.
46)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61.

된다. 同書 동옥저전에서 서기전 109년(원봉 2) 옥저 지역이 현도군이 되었다고 한 뒤, '後'에 夷貊의 침입을 받아 현도군이 이동한 것 즉 서기전 75년의 상황을 전하였다.[47] 그런데 이보다 앞선 서기전 82년(始元 5)에 임둔군과 진번군을 罷하여 낙랑군과 현도군에 병합한 사실은 『삼국지』에서 생략되어 있다.[48] 이를 참고하면, '後'라는 단어가 언제나 이렇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삼국지』에서 '後'를 통해 수십 년 간에 있었던 일은 넘기고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정보만 제시하였다고 이해하여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C]의 기사는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C]는 제1현도군 시기의 상황을 전하는 ㉠과 제2현도군 시기의 상황을 전하는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다면 ㉡은 제1현도군에서 제2현도군으로 변화하는 시기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시기 중원에서 '後稍驕恣 不復詣郡'하였다고 기록할 계기가 될 만한 사건으로 서기전 75년 夷貊所侵에 따른 현도군의 축출이 가장 가능성이 크다.[49] 이 점에서 [C]-㉡은 대체로 제1현도군이 축출된 이후의 상황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된다.[50]

앞서 舊고구려의 왕실을 포함한 지배세력이 전한의 군현 설치를 수용한 위에서 자신들의 지배기반을 유지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C]-㉠-1에서 '鼓吹技人' 사여하였다는 기사가 주목된다. 鼓吹伎人의 사여는 漢에서 주변 세력을 자신의 질서로 편입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를 수여받은 세력은 현실적으로 왕권의 위엄을 확보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었다.[51] 따라서 고취기인을 수여받은 대상은 고구려왕이며, 漢은 고구려왕에게 그 지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였다는 의미가 된다.[52] 한편 조복과 의책은([C]-㉠-2) 諸加에게 개별적으로 사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53]

---

4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沃沮城爲玄菟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48)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濊. '至昭帝 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幷樂浪玄菟'
4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50) 朴京哲,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한국고대사연구』14, 1998, p.301 ; 윤용구,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서영수 외,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p.127.
51) 조법종, 『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p.340.
52)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pp.118~119.

그런데 [C]-㉡에서 확인되듯, 현도군 축출 이후에는 전한과의 교섭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현도군 축출 이후 舊고구려의 對漢 관계에 대한 기조에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그러한 정책을 이끄는 주도권에 또한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에서는 고구려가 다시 책구루를 통해 중원 세력과 교섭 관계를 재개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은 중원 세력이 책구루를 설치함으로써 교섭이 재개된 것처럼 기술하였지만, '不復詣郡'하던 고구려가 다시 '歲時來取之'하였다고 하므로, 고구려에서 또한 현도군과 교섭을 재개하려는 대내적인 계기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C]의 ㉡과 ㉢을 고구려의 대내 정세를 염두에 두고 해석한다면, 현도군 축출 이후에 舊고구려 왕실이 주도하는 현도군과의 교섭 관계를 단절·통제하면서 국정 주도권이 변동하던 시기가 있었고([C]-㉡),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고구려가 다시 현도군과의 대외 교섭을 재개하였던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C]-㉢). 이때 등장한 절충안이 책구루의 설치인 것이다. 앞서 책구루의 설치 시기를 서기전 75년 이후에서 서기 전후로 한정하였는데, 이 시기 고구려에서 주도권이 변동하다가 다시 한쪽으로 재정립될 만한 사건으로 王部의 교체가 있다. 이 점에서 책구루의 설치 시기는 서기전 1세기 후반 이후,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주몽의 고구려 건국 이후로 추정된다.[54]

이렇게 보면 제1현도군이 축출된 이후에도 消奴部 소속의 舊고구려 왕실은 한동안 고구려왕을 세우고 있었던 셈이 된다. 전한의 군현 지배 수용이 舊고구려왕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여기에 여러 지배세력 또한 동조한 결과였을 것이므로, 현도군이 축출되었다고 해서 이를 주도한 지배세력이 그 책임을 물어 王室을 곧바로 교체하거나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종래 對漢 관계를 이끌던 舊고구려 왕실이 전한과의 교섭 중지를 주도하기는 명분상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후 王部가 교체된 결과를 감안한다면, 舊고구려를 이끌 만한 새로운 인물이 대두한다면 王統을 바꿀 정도로 舊고구려 왕실의 입지는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있었던 것이다. 곧 주몽의 등장이다.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王部 교체 사정을 전하는 기록에 나타난 '稍微弱'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55] 그런데 후대 사료에서 이러한 王部의 교체 사실을 주몽의 고

53) 노태돈, 앞의 책, p.119.
54) 윤용구, 앞의 논문, 2008, pp.127~128 ;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68.

구려 '建國'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E-1] … 至卒本川 觀其土壤肥美 山河險固 遂欲都焉 而未遑作宮室 但結廬於沸流水上居之 國號高句麗 因以高爲氏 時朱蒙年二十二歲 是漢孝元帝建昭二年 新羅始祖赫居世二十一年 甲申歲也(『三國史記』)[56]

[E-2] 朱蒙建國 自號高句麗(『隋書』)[57]

[E-3] … 朱蒙遂至普述水 遇見三人 其一人著麻衣 一人著納衣 一人著水藻衣 與朱蒙至紇升骨城 遂居焉 號曰高句麗 因以爲氏焉(『魏書』)[58]

『삼국사기』에 따르면 주몽은 卒本川에 이르러 그곳의 땅이 기름지고 좋으며 山河가 험하고 방비하기에 걸맞으므로, 이곳에 도읍을 정하였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다([E-1]). [E-1]에서 '建國'이라 하지는 않았지만, 大武神王 5년(22) 扶餘王 金蛙의 季子가 鴨淥谷에 이르러 海頭王을 죽이고 그 百姓을 취하여 도읍한 일을 '立國稱王'이라 한 것을 보면,[59] 도읍을 정하는 것이 곧 '立國'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송양이 주몽과 遭遇하였을 때, 주몽에게 '立都'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였으니 자신에게 附庸할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에서,[60] 立都가 立國과 같은 의미로 쓰인 사실이 확인된다. 무엇보다 『隋書』 高麗傳에서 주몽의 설화를 전하며 주몽이 '建國'하고 스스로 高句麗라 하였다고 함에서([E-2]), [E-1]이 곧 建國에 관한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주몽의 건국 설화를 처음으로 전하는 中國史書는 『魏書』이다([E-3]). [E-3]은 435년 李敖가 고구려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된다.[61] 이 점에서 5세기 대 고구려인

5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本有五族 有涓奴部 絕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56)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57) 『隋書』卷81, 列傳46, 高麗.
58) 『魏書』卷100, 列傳88, 高句麗.
5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夏4月. '扶餘王帶素弟 至曷思水濱 立國稱王 是扶餘王金蛙季子 史失其名 初帶素之見殺也 知國之將亡 與從者百餘人 至鴨淥谷 見海頭王出獵 遂殺之 取其百姓 至此始都 是爲曷思王'
60)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松讓曰 我累世爲王 地小不足容兩主 君立都日淺 爲我附庸可乎'

은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王部가 교체한 당시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기보다는 舊고구려를 '繼承'하였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國號를 바꾸지 않고 고구려라고 한 것이 舊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이다. 고구려왕이 된 주몽이 국호를 고구려라 하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舊고구려의 계승자가 되는 동시에 舊고구려가 지닌 정치적 영향력을 재현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62]

舊고구려 시기부터 운영되었던 二重聳立體制 또한 영향을 주었다고 유추된다. '고구려'는 어느 한 세력이 일으킨 나라의 이름이 아니었다. 部에 소속한 諸加가 건설한 그들의 상부국가가 고구려였으며, 이들을 爲始한 지배층이 고구려의 '國人'이었다.[63] 따라서 주몽의 고구려왕 즉위에는, 비록 자료상 그러한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舊고구려의 諸加가 주몽을 새 고구려왕으로 推戴한 과정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王部가 교체한 이후에도 고구려왕이 다른 諸加와 같이 여전히 部에 소속한 사실은 이러한 추정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므로 주몽이 고구려왕으로 올라선 당대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다는 인식보다는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인식이 더 보편적이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고 있었던 시기, 나아가 정치체제의 변동이 일어나면서도 기존의 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시기까지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

---

61) 武田幸男, 「牟頭婁一族と高句麗王権」,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p.340 ; 노태돈, 앞의 책, 1999, p.84 ; 임기환,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광개토왕비문의 北夫餘, 東夫餘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54, 2016, p.161.

62) 이도학, 「高句麗의 夫餘 出源에 관한 認識의 變遷」 『高句麗硏究』27, 2007, pp.127~128 참고. 이 논문에서는 주몽이 국호를 고구려라 한 것을 현도군 설치 이전 속립 소국의 이름으로 존재한 '고구려'를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고에서는 舊고구려가 현도군 설치 이후에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파악하여, 주몽이 국호를 고구려라 한 것은 국호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계승으로 이해한다. 한편, 沸流國이 항복하였을 때 그 땅을 '多勿都'라 하였다는 기사를(『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2年 夏6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麗語謂復舊土爲多勿 故以名焉'), 주몽이 그 이전부터의 고구려를 계승한 것임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田美姬, 「高句麗初期 王室交替와 五部」, 『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探求堂, 1992, p.175).

63) 拙稿, 「高句麗 王部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7, pp.44~47.

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에서 消奴部의 前王室이 독자적인 종묘를 세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을 주목할 수 있다.[64] 이러한 정보가 山上王의 즉위(197) 과정에서 있었던 왕위계승 분쟁 당시 拔奇와 함께 公孫康에게 투항한 消奴加에 의해 전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65] 전왕실이 2세기 말 종묘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전왕실로 대우받아 종묘를 운영하는 한 그들에게 자신들이 舊고구려의 왕실이었다는 인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전왕실에게 '고구려'는, 주몽이 고구려왕이 된 이후의 고구려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가 王室이었던 舊고구려까지 포함하였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그리고 현왕실에서 舊고구려의 왕실을 전왕실로 예우하는 한, 현왕실에게 또한 '고구려'가 舊고구려를 아우르는 그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일면 수용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中川王 7년(254) 沸流 沛者 陰友가 國相에 임명된 데에서,[66] 3세기 중반까지 존재한 沸流那部(=消奴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천왕 9년(256) 掾那部의 明臨笏覩가 公主에게 장가든 기록을 마지막으로,[67] 기존 五部 관련 기록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후 기록부터는 중앙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재편된 이른 '方位名部' 관련 기록만 확인된다.[68] 이러한 양상에 근거하여 볼 때, 기존의 部는 3세기 후엽 늦어도 4세기 초엽에는 그 기능을 다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전왕실이 소속한 消奴部 또한 그러하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왕실'에 대한 예우 및 '前王部'의 인식은 점차 약해져 갔고, 이들을 그렇게 대우해야 할 명분 또한 상실되었으리라 유추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貴人'으로서의 신분을 강조하고 유지해 나갔을 것이다.[69]

---

6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6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 임기환, 「고구려 초기 消奴部, 桂婁部의 형성과 卒本」『사학연구』136, 2019, p.18.

66)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7年 夏4月. '國相明臨於漱卒 以沸流沛者陰友爲國相'

67)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9年 冬11月. '以掾那明臨笏覩 尙公主爲駙馬都尉'

68) V장 2절 참조.

69) 消奴部가 解體되고 나서 곧바로 前王室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前王室이었던 家門에서는 면면히 이어져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주류로 밀려난 前王族의 인식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편린으로 남아 있는 단군 관련 소재인 곰, 호랑이 등의 묘사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조법

한편 현왕실에게 주몽은 왕실의 구심점으로 인식되어 갔고, 특히 新大王 3년(167) 왕의 始祖廟 親祀를 계기로 시조묘 제사가 國家祭祀로 자리 잡으며, 주몽이 국가의 始祖로서 거듭났다.[70] 주몽이 국가적 시조로 公認되어 가는 배경에는 王部 교체 이후, 특히 太祖大王 대에서부터 정비되는 새로운 정치체제 운영의 頂點에 있는 國王의 位格이, 여타 諸加와 동등한 성격을 지닌 加的 基盤에서 점차 '加'格을 초월한 君主로 변화하였던 사정이 있었다고 해석된다.[71] 이는 주몽이 국가의 시조라는 인식의 확대를 가져왔고, 아울러 고구려라 하면 桂婁部 소속 王室을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로 인식하는 경향을 강화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廣開土王碑文」의 '創基'라는 표현이 주목된다.[72] 5세기 초 고구려인은 鄒牟王代를 고구려 국가 성립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創基'라 表白하였던 것이다.[73] 즉, 주몽에게 혈연적 시초로서 시조의 성격과 더불어 건국자로서 '太祖'의 성격도 함께 주어지면서,[74] 고구려 내에서 '고구려'라 함은 시조 주몽이 '創基'한 나라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중원에 전해져 중국사서에 기록된 결과가 [E-3]이라 해석된다. 따라서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주몽이 고구려의 국가시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등장한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종,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단군학연구』12, 2005a ; 「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先史와 古代』23, 2005b, pp.157~163).

한편, 귀족가문의 族祖 전승에서 그들 시조의 계보가 天神과 연결되지 않고 이들 가문이 고구려의 건국과 발전에 기여했음을 내세우는 경향이 나타나, 귀족가문의 족조 전승이 왕실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된다(徐永大,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한국고대사연구』8, 1995), 이를 토대로 보건대, 주몽이 건국 시조로서 고구려 사회 전체에 확산·정립되면서 前王室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회 전반에서 희미해져 갔으리라 추정된다.

70) 姜辰垣, 「高句麗 國家祭祀 硏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a, pp.80~89.

71) V장 3절 참조.

72) 「廣開土王陵碑」.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한국고대사회연구소, 『역주 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73) 朴京哲, 「高句麗의 國家形成 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b, pp.120~121 참고.

74) 조우연, 「고구려의 왕실조상제사—4~5세기 '始祖 朱蒙의 위상과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60, 2010, p.57. 文武王 10년(670) 安勝을 高句麗王으로 책봉하며 中牟王[=朱蒙]을 '太祖'라 한 점이 확인된다(『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10年 秋7月. '公太祖中牟王 …').

결국 주몽이 舊고구려를 계승한 위에서 새로운 고구려왕으로 추대된 이후 고구려는, 舊고구려로부터 운영되어 온 조직과 질서를 기반으로 하여 진전하여 가는 과정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도군 축출 이후 분열되어 있던 舊고구려, 그리고 舊고구려에서 이탈하였을 지배세력,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 군현의 지배질서의 영향 하에 놓여 있던 諸 세력들을 다시 고구려로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이다.

2. 諸加 세력의 재편과 尉那巖 천도

王部 교체기 고구려의 대내 사정이 어떠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몽이 새로운 왕실을 開創하는 과정에서 舊고구려의 지배세력이 모두 새로운 고구려 성립에 참여하였는지, 종래 舊고구려를 이탈한 지배세력 중에서 다시 통합된 세력은 없었는지, 혹 새로운 고구려가 성립 이후 이탈하는 세력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四方에서 이를 듣고 來附한 자가 무리를 이루었다는 기사가 주목된다.[75] '來附'라는 단어만으로 주체의 성격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來附한 자'를 주몽의 뜻을 좇아 따르는 사람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來附의 용례를 감안한다면, 막연히 많은 사람들이 주몽에게 와서 붙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짐작된다. 來附라고 하였을 때 그 주체가 지배층을 가리키는 경향성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가령 고려 태조 원년(918) 阿字盖가 고려 태조 왕건에게 來附하였다고 한다든가,[76] 同王 6년(923) 命旨城 將軍 城達이 그 동생들과 來附하였다고 하고,[77] 8년(925) 渤海 禮部卿 大和鈞 등이 民 1백 戶를 거느리고 來附하였다는 것 등이 그러하다.[78] 中國正史에서도 이와 유사한 용례가 다수 확인된다.[79] 이를 토대로 볼 때, 주몽

75)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四方聞之 來附者衆'
76)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元年 9月 甲午. '尙州賊帥阿字盖 遣使來附'
77)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6年 3月 辛丑. '命旨城將軍城達 與其弟伊達 端林來附'
78) 『高麗史』卷1, 世家1, 太祖 8年 9月 庚子. '渤海禮部卿大和鈞 均老 司政大元鈞 工部卿大福謨 左右衛將軍大審理等 率民一百戶來附'. 『高麗史』에서 확인되는 '來附'의 용례는 대체로 누군가가 무리 얼마를 이끌고 來附하였다는 식이다.

이 나라를 세웠을 때 來附하였다는 자들도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지배세력이 주몽의 뜻에 따랐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특히 현도군 축출 이후 舊고구려의 대내 정세를 상기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욱 높다.

주몽 대에 근접한 시기 고구려의 전체적인 상을 그려볼 만한 자료로 『漢書』 지리지 현도군 조의 戶口數도 참고된다.

〈표 5〉『漢書』 地理志 所載 세 郡의 屬縣과 戶口 數値

	屬縣數	戶數	口數	戶別 平均 口數	縣別 平均 戶數	縣別 平均 口數
遼東郡	18	55,972	272,539	4.87	3,101	15,141
樂浪郡	25	62,812	406,748	6.48	2,512	16,270
玄菟郡	3	45,006	221,845	4.93	15,002	73,948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21 〈표 2〉 참고)

『한서』 지리지에는 현도군의 속현 및 호구 수가 기재되어 있다. 그 수치를 遼東郡과 樂浪郡 등 다른 邊郡과 비교하여 보면 縣別 평균 호수 면에서 편차가 매우 심한 것이 확인된다. 불과 세 개 현에 총 호수가 45,006호나 되는 것이다. 『한서』 지리지에 기재된 縣의 평균 口數가, 대규모 인구가 밀집한 중원의 경우 7만 이상을 보이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만 5천에서 2만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80] 이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에 관하여, 속현의 수와 호구의 수가 전하는 시기가 상이한 데에서 오는 차이로 해석하는 주장도 있었다.[81] 그러나 『한서』 지리지의 군국별

79) 일례만 들자면 南單于가 後漢에 來附하였다는 용례가 있다(『後漢書』卷89, 南匈奴列傳79. '今北匈奴見南單于來附 懼謀其國 故數乞和親 …').

80) 이종록, 「高句麗와 玄菟郡의 관계와 幘溝漊 설치 배경 검토」 『先史와 古代』55, 2018, p.420.

81) 이른바 속현의 수는 제2현도군 시기, 호구의 수는 제1현도군 시기의 것으로 추정하거나(李丙燾, 앞의 책, 1976, pp.177~178), 속현의 수는 고구려가 현도군에서 이반한 결과로서 王莽 이후, 호구의 수는 高句麗族이 현도군이 딸려 있었던 시대의 숫자로서 王莽 이전의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末松保和, 「玄菟郡の戶口数について」, 『和田博士古稀記念東洋史論叢』, 講談社, 1961, pp.540~541).

戶口籍이 元始 2년(2), 소속 현의 목록은 元延·綏和之交(서기전 9~서기전 8)에 작성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현도군만 예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82] 즉,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현도군 속현 및 호구는 제2현도군 시기의 政況이 담겨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현도군은 마치 각 縣別 戶數가 만 5천을 上廻하는 듯한 不可解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83]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목되는 기사가 『한서』 지리지에 기록된 '高句驪 莽曰下句驪'이다.

[F] 玄菟郡 武帝元封四年開 ㉠高句驪 莽曰下句驪 屬幽州 戶四萬五千六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 … 上殷台 … 西蓋馬(『漢書』)[84]

현도군조 기사는 일단 玄菟郡名을 밝히고, 屬縣을 열거하기에 앞서 '高句驪 莽曰下句驪'이라는 구절이 삽입된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F]-㉠). 그런데 『한서』 지리지의 郡에 대한 설명 방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高句驪 莽曰下句驪'라는 구절은 유사한 예시를 찾기 어려운 특이한 경우임이 지적된다.[85] 그리고 [F]-㉠의 '高句驪'는 縣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현도군의 직접 지배에서 벗어난, 구체적으로 왕망 시기의 고구려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86] 이런 식의 기술이 발생한 까닭에 대하여는, 현도군을 축출하여 漢과 교섭하던 고구려가 여전히 현도군에 소속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순과, 王莽이 高句

82) 윤용구, 앞의 논문, 2006, p.12 및 주 17)의 논고 참조.
83) 樂浪郡 初元 4年 戶口簿에 기록된 25개의 屬縣 중 郡治인 朝鮮縣의 戶數가 9,678, 口數가 56,890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이 외 4,000戶~5,000戶 규모의 縣이 2개, 3,000戶를 넘는 縣이 하나, 2,000戶를 넘는 縣이 2개, 1,000戶를 넘는 縣이 9개, 1,000戶 미만 縣이 10개인 점도 참고할 수 있다. 樂浪郡 初元 4年 戶口簿 判讀은 高光儀, 「樂浪郡 初元 四年 戶口簿 재검토」 『목간과 문자』7, 2011, p.40의 〈표 4〉 참조.
84)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85) 『漢書』 지리지에서는 郡名과 戶口數 사이에 郡의 연혁을 밝히고 이어서 소속 州를 기재하였다. 몇몇 郡의 경우는 郡의 설치와 소속 州 사이에 관할 지역 및 해당 지역 내 특별한 지형 등을 기술하였는데 '高句驪 莽曰下句驪'는 이러한 사례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관하여는 이종록, 앞의 논문, 2018, pp.418~419 참고.
86) 윤선태, 「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부'」, 『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p.261 ; 윤용구, 「소자하 유역의 중국군현과 교통로」, 『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동북아역사재단, 2011, p.95.

騶를 下句騶라 한 일을[87] 『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에 기록하고자 하였으나 그 改名의 대상인 고구려가 실제 郡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정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88] 이를 참고할 때, 현도군 조에 기재된 호구 수는 현도군의 직할 호구만이 아니라 현도군에 명목상으로 소속된 당시 고구려의 인구까지 포함한 수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89]

『한서』 지리지 편찬 당시 고구려의 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다. 다만 『한서』 지리지에 기재된 縣의 평균 口數가 중원을 제외하면 대체로 만 5천에서 2만 정도인 점,[90] 그리고 현도군의 속현 수가 세 개인 점을 감안하면, 당시 현도군이 직할한 口數는 대략 4만 5천에서 6만 사이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를 현도군의 총 口數에서 제외한다면 대략 16만에서 17만 5천이 남는다. 대략 이 수치가 현도군에 명목상으로 포함된 당시 고구려의 인구였을 것으로 상정된다. 산술적으로 단순 계산한 수치이지만 아래의 기사와 접목하여 볼 때, 이 수치가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G] 高句麗 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 (『三國志』)[91]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고구려의 위치 및 강역과 함께 戶數를 전하고 있다([G]). 이때 고구려의 戶數는 3만으로 나타난다. 당시 戶당 평균 인구가 5~6.5명으로 추산되므로,[92] 3만 戶에 따른 인구수는 대략 15만~19만 5천으로 추정할 수 있다. 3만 戶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구수와 『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의 口數를 바탕으로 추산한 서기 전후의 추정 인구수가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이다. 당시 평균 인구증가율이 0.1%

87) 『漢書』 卷99中, 王莽傳69中, p.4130. '… 其更名高句騶爲下句騶 布告天下 令咸知焉'
88) 이종록, 앞의 논문, 2018, pp.432~433.
89) 이종록, 위의 논문, 2018, p.421.
90) 이종록, 위의 논문, 2018, p.420.
91) 『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92) 여호규, 앞의 책, 2014, p.198.

미만이라는 추산에 따라 1~2세기 고구려의 총 인구가 3만 戶 전후였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참고된다.[93]

『후한서』 郡國志에 기재된 현도군의 口數도 주목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현도군의 속현은 6개이고 戶數는 1,594, 口數는 43,163이다.[94] 『후한서』 군국지에 기재된 숫자는 永和 5년(140)에 작성된 것으로 여겨진다.[95] 이 시기는 이른바 제3현도군 시기로, 제2현도군과 비교하여 보면 속현에 高顯, 候城, 遼陽 등 세 현이 추가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새로 추가된 속현의 口數 또한 고려해야 정확하겠으나, 『한서』 지리지에 기재된 수치에 비해 口數가 현격히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96] 그리고 감소한 口數가 약 18만이다.[97]

물론 이때 감소한 수치가 모두 고구려와 상관하였다고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의 口數를 바탕으로 추산한 서기 전후 당시 고구려의 추정 인구수와 『삼국지』 고구려전의 3만 戶를 바탕으로 추정한 인구수, 그리고 평균 인구증가율에서 추정되는 1~2세기의 인구수, 마지막으로 제2현도군과 제3현도군 사이에 나타나는 감소한 인구수가 모두 유사한 범위 내에서 관찰되고 있는 것을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점에서 미루어 본다면, 『한서』 지리지 현도군 조에 명목상으로 소속된 당시 고구려의 인구는 대략 이와 같았을 것이며, 『삼국지』 고구려전의 표현을 빌린다면 3만여 戶 정도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98] 이러한 추정이 유의미한 것은, 『한서

---

93)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硏究』, 一潮閣, 1984, p.121.

94) 『後漢書』卷113, 志23, 郡國5, 玄菟郡. '六城 戶一千五百九十四 口四萬三千一百六十三 高句驪 遼山遼水出 西蓋鳥 上殷台 高顯 故屬遼東 候城 故屬遼東 遼陽 故屬遼東'

95) 末松保和, 앞의 논문, 1961, p.541. 『삼국지』 고구려전에 기재된 3만 戶를 복속된 지역의 인구를 제외한 5나부의 주민만을 헤아린 숫자로 보기도 한다(김현숙, 『고구려의 영역 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5, p.119).

96) 『後漢書』 郡國志에 기재된 玄菟郡의 戶數와 口數는 戶數에 비해 口數가 너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관하여, 『後漢書』 郡國志의 書例에 비추어 볼 때 戶數를 '一千五百九十四'가 아니라 '千五百九十四'로 써야 한다며 戶數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末松保和, 앞의 논문, 1961, p.542).

97) 비직할지구인 고구려의 호구수가 제2현도군 시기에는 포함되었다가 제3현도군 시기에는 떨어져 나가면서 현도군 호구수의 激減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참고된다(박찬규, 『초기고구려사 연구—삼국지 고구려전과 관련사료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04, pp.46~47).

98) 조상현, 「『삼국유사』의 삼국 '全盛時期 戶口' 기사 검토」 『한국고대사연구』56, 2009,

』 지리지 자료를 작성할 당시 漢人에게 3만여 호가 하나의 고구려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樂浪郡 初元 4年(서기전 45) 戶口簿에 기재된 縣別 戶口數를 참고하여도 짐작되듯,[99] 3만여 戶로 파악되는 당시 고구려의 疆域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王部의 교체와 같은 주도권의 변화를 상정한다면, 새롭게 성립한 고구려의 정치적 형세가 舊고구려 시기와는 달랐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중심지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가 분명히 나타난 곳으로, 고구려왕이 거주하며 정치적 공간으로 기능하는 고구려 전체의 중심지 즉 王都를 떠올릴 수 있다. 중심지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왕실 즉 沸流國의 중심지와 현왕실 즉 卒本扶餘의 중심지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王部의 교체에 따라 고구려 전체의 중심 기능이 옮겨간 경우이다. 다른 하나는, 王部가 교체하면서 고구려의 중심지 기능을 할 새로운 도읍을 마련하였을 가능성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늠하는 데 단서가 되는 자료가 유리왕 22년(3) 단행한 國內 尉那巖城으로의 遷都이다([H-1]).

---

pp.428~433 참조. 한편, 『삼국지』에서 전하는 정보가 서기 전후 시기에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참고한다면(박노석,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정보 출처에 대한 고찰」 『전북사학』38, 2011), 『삼국지』 동이전의 모든 정보를 반드시 3세기의 것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99) 樂浪郡 初元 4年 戶口簿에 기재된 縣別 戶口數는 다음과 같다(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20에서 인용).

	縣別 戶口數						
1구역	朝鮮	詷邯	增地	占蟬	駟望	屯有	
戶	9,678	2,284	548	1,039	1,283	4,826	
口	56,890	14,347	3,353	6,332	7,391	21,906	
2구역	帶方	列口	長岑	海冥	昭明	提奚	含資
戶	4,346	817	683	338	643	173	343
口	28,941	5,241	4,932	2,492	4,435	1,303	2,813
3구역	遂成	鏤方	渾彌	浿水	荐列		
戶	3,005	2,335	1,758	1,152	1,988		
口	19,092	16,621	13,258	8,837	16,330		
4구역	東暆	蠶台	不而	華麗	邪頭昧	前莫	夫租
戶	279	544	1,564	1,291	1,244	534	1,150
口	2,013	4,154	12,348	9,114	10,285	3,002	10,076

[H-1]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三國史記』)[100]

[H-2] 修葺丸都城 又築國內城(『三國史記』)[101]

[H-3] 自朱蒙立都紇升骨城 歷四十年 孺留王二十二年 移都國內城 或云尉那巖城 或云不而城 … 都國內 歷四百二十五年 長壽王十五年 移都平壤 歷一百五十六年 平原王二十八年 移都長安城 歷八十三年(『三國史記』)[102]

유리왕 대 천도 문제에 한정하여 보았을 때 논란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103] 하나는 [H-1]에서 천도한 곳으로 나타나는 '國內'가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고국원왕 12년(342) 丸都城을 修葺하고 國內城을 쌓았는데([H-2]), [H-2]의 환도성과 국내성이 오늘날 집안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104] 이에, [H-1]의 國內가 [H-2]의 國內城을 동일한 대상으로 이해하면, 고구려의 수도는 유리왕 대 집안 일대로 옮겨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H-3]의 서술이다. [H-3]에 따르면 고구려는 서기전 37년 주몽이 紇升骨城을 도읍으로 삼은 지 40년이 지난 유리왕 22년(3)에 國內城으로 천도하였고,[105] 이로부터 425년이

100)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2年 冬10月.
101)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2年 春2月.
102)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103) 본고에서는 환인에서 집안으로 천도 문제를 詳論하지 않았다. 하여 관련 논의에 대한 자세한 언급 및 유물 유적 자료를 활용한 위치 비정은 삼갔다. 이와 관련한 연구 동향 및 쟁점에 관하여는 노태돈,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p.340~346 ; 권순홍, 「고구려 초기의 都城과 改都—태조왕대의 왕실교체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78, 2015, pp.187~190 ; 奇庚良, 「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64~92 ; 이정빈, 「고구려의 국내성·환도성과 천도」『한국고대사연구』87, 2017 ; 이준성,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pp.36~52 등 참조.
104) 환도성과 국내성의 비정에 관하여는 둘이 동일한 지명에 대한 다른 표기인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둘이 각기 다른 城을 가리키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뉠 수 있다. 이 중 후자는 다시 국내성을 하나의 성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시 '異處同域說'과 '異處移動說'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이정빈, 앞의 논문, 2017, pp.62~78 참조.
105) [H-3]에서 國內城을 尉耶(那)巖城 혹은 不而城이라고도 한다고 하였는데, 국내성과 불내성을 연관시킨 서술은 7세기 중반의 인식으로, 실제 그러하였다고 받아들이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이정빈, 앞의 논문, 2017, pp.53~61).

지난 장수왕 15년(427)에 다시 國內에서 平壤으로 移都하였다. [H-2]의 국내성을 [H-1]의 國內 尉那巖城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한편 [H-2]와 같이 國內 尉那巖城=國內城으로 상정하였을 때, 그러한 천도가 실제 언제 일어났는지도 문제이다. [H-3]의 이해와 같이 유리왕 대에 집안으로 천도가 실시되었다고 보기에는 집안 일대에서 3세기 이전 도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물·유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된다.[106] 또한 위나암 천도 이후에도 국내(집안)가 아닌 졸본(환인) 지역이 여전히 기록의 주요 배경으로 등장한다.[107] 따라서 현전하는 유물 및 문헌 기록상, 유리왕 대 집안의 국내성으로 천도하였다고 보기에는 주저되는 면이 있다.

이에, 태조대왕 대 있었던 천도가 유리왕 대로 소급하여 서술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108] 태조대왕 대 기록이 유리왕 대 굳이 분식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우며, 그러하였다면 國祖라는 공통점이 보이는 주몽 대로 분식되는 편이 자연스럽다.[109] 한편으로는 유리왕 대 천도가 실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유리왕의 아들인 해명 태자 설화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후대 고구려인이 덧붙인 설정으로 상정하기도 한다.[110] 천도까지의 과정에서 郊豕가 달아나 새로운 도읍지를 발견하였다고 하는 등 그러한 면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설화가 역사적 사실을 근간으로 성립하였을 여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는 郊豕가 달아났다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사건이 세 개가 있다. 그 두 가지는 후술하듯 천도 관련 기사이고, 나머지 하나가 산상왕 12년(208) 郊豕가 달아나서 掌者가 그것을 찾다가 酒桶村에 이르렀고, 이후 산상왕과 주통촌 여인 사이에서 아들을 생겼으니 그가 훗날 동천왕이 되었다는 기사이다.[111] 동천왕의 탄생

106) 양시은, 「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高句麗渤海研究』50, 2014, pp.50~53 ;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 『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2020, pp.53~63 참조.
107) 奇庚良, 앞의 논문, 2017, pp.67~68 참조.
108) 김종은, 「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숙명한국사론』3, 2003, pp.40~41.
109) 奇庚良, 앞의 논문, 2017, p.69.
110) 奇庚良, 앞의 논문, 2017, pp.70~73.
11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12年 冬11月. '郊豕逸 掌者追之 至酒桶村 躑躅不能捉 有一女子年二十許 色美而艶 笑而前執之 然後追者得之 … 其家知王來 不敢拒 王入室 召

과정 또한 천도 관련 기사와 같이 郊豕가 달아났다는 설화적 측면이 가미되어 있다. 그렇다고 이를 근거로 동천왕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는 곤란하다. 기록을 부정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없는 한 우선 해당 기록을 존중하는 위에서 접근하여야 본다. 특히 해당 기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당시의 역사상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112] 따라서 유리왕 대 천도는 인정하는 위에서, 國內 尉那巖城이 오늘날 집안 일대에 위치하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國內 尉那巖城은 城名이 尉那巖이고 고국원왕 대에는 특정 城의 이름이 '國內'이므로([H-2]) 둘은 구분됨 직하다. [H-2]의 국내성은 환도성과 함께 언급되고 있어, '國內'에 있는 城이기 때문에 국내성이라 한 것이 아니라 城의 이름 자체가 국내성인 것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유리왕 대 국내(집안)로의 천도가 불확실한 이상 尉那巖城이 위치한 '國內'는 집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國內'가 國都 또는 國中을 뜻하는데, 國內 尉那巖城에서 '國內'는 전자 즉 國都를 의미한다는 견해가 주목된다.[113] 일찍이 조선후기에도 [H-1]의 國內가 州縣의 治所를 '邑內'라 하는 것과 같은 語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114] 이러한 관점에 따른다면, 유리왕 22년의 천도가 반드시 집안으로의 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115]

이에 대하여, 국내란 명칭이 유리왕 대 이후 나타나지 않다가 고국원왕 대([H-2])에 이르러서야 다시 등장하며, 천도 관련 기사에 보이는 국내를 도읍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풀이하기에는 곤란하다는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116]

其女 … 秋九月 酒桶女生男 王喜曰 此天賚予嗣胤也 始自郊豕之事 得以幸其母 乃名其子曰郊彘 立其母爲小后' ;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卽位年. '東川王 或云東襄 諱憂位居 少名郊彘 山上王之子 母酒桶村人 入爲山上小后'

112) 김미경, 「高句麗 琉璃王代 政治勢力의 再編과 對外政策」 『북방사논총』4, 2005, p.218.

113) 鄭寅普, 『朝鮮史硏究』上, 1946(『薝園 鄭寅普全集』3,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p.247~248.

114) 丁若鏞, 「國內考」, 『我邦疆域考』. '國內城者 句麗三京之一 卽自卒本始徙之地也 … 鏞案 東人以州縣之治謂之邑內 此云國內亦此語法也'

115) 노태돈, 앞의 논문, 1999, p.358 참조.

116) 임기환, 「고구려 전기 都城 관련 기사의 재검토—기사의 原典 계통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65, 2018, pp.19~21.

[I] ① 十九年 秋八月 郊豕逸 王使託利 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 殺之 ② 九月 王疾病 巫曰 託利 斯卑爲祟 王使謝之 卽愈 ⓐ 二十年 春正月 大子都切卒 ③ 二十一年 春三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逐之 至國內尉那巖得之 拘於國內人家養之 返見王曰 臣逐豕至國內尉那巖 見其山水深險 地宜五穀 又多麋鹿魚鼈之産 王若移都 則不唯民利之無窮 又可免兵革之患也 ⓑ 夏四月 王田于尉中林 ⓒ 秋八月 地震 ④ 九月 王如國內觀地勢 還至沙勿澤 見一丈夫坐澤上石 謂王曰 願爲王臣 王喜許之 因賜名沙勿 姓位氏 ⑤ 二十二年 冬十月 王遷都於國內 築尉那巖城(『三國史記』)[117]

논의 전개상 『삼국사기』의 유리왕 대 천도 관련 기사를 한데 모아 보면 [I]와 같다. [I]-④의 '왕이 國內에 가서 地勢를 보고'와 같은 구절, 그리고 [I]-⑤ 이전의 기사에서 보이는 國內는 수도와 같은 의미로 풀이하기에는 어색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國內가 도읍을 뜻한다면 [I]-④까지는 아직 위나암이 있던 곳을 國內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I] 기사에서 ⓐ, ⓑ, ⓒ 기사를 제외하고 보면, [I]-①부터 ⑤까지가 위나암으로 천도하기까지의 과정을 엮은 하나의 줄거리로 연결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처음에 郊豕가 長屋澤으로 달아났는데, 託利와 斯卑가 脚筋을 끊어 郊豕를 상하게 하여 이들을 죽였다([I]-①). 이 때문에 유리왕이 병이 들자, 죽은 託利와 斯卑에게 사과하였더니 나았다([I]-②). 그리고 이번에는 郊豕가 尉那巖으로 달아났는데 이를 잡으러 간 薛支는 희생을 상하지 않게 하였고, 마침 국내 위나암에 이르러 그곳이 천도하기에 적당함을 알아보고 왕에게 이를 아뢰었다([I]-③). 이에 왕이 직접 국내로 가서 지세를 살피고([I]-④), 마침내 이곳으로 천도를 단행하였다([I]-⑤). 즉 [I]-①부터 ⑤는 원래 천도와 관련한 하나의 줄거리였는데, 이것을 편년에 맞게 배치하면서 중간 중간에 ⓐ, ⓑ, ⓒ가 삽입되어 [I]와 같은 형태가 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렇게 보면 [I]-④까지의 '국내'는 당시에 그렇게 불려서 쓰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천도 이후 설화적 요소와 함께 성립된 유리왕 대 천도 史話에서 이미 '국내'로 자리 잡은 명칭이 역으로 배치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11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한편 유리왕 대 '국내'가 등장한 이후 고국원왕 대에 들어서야 다시 국내성이란 표현이 나타나는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平壤' 관련 기사가 참고된다. 고구려는 장수왕 15년(427) 平壤으로 移都하였다.[118] 이때 平壤이 오늘날 평양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사료에 나타난 平壤은 모두 지금의 평양을 가리키지 않으며, 오늘날 서울이나 평양, 그리고 집안 혹은 환인 일대 등으로 추정되는 평양이 존재하였다.[119] 그리고 平壤의 原義는 國內와 동일어인 '불ᄂᆡ'(벌내)로 해석되며,[120] 그 뜻 또한 國內와 같은 首都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121]

[J-1] 王以丸都城經亂 不可復都 築平壤城 移民及廟社(『三國史記』)[122]

[J-2] 增築平壤城(『三國史記』)[123]

[J-3] 治平壤城 … 其外有國內城及漢城 亦別都也(『周書』)[124]

[J-4] 移居平壤東黃城 城在今西京東木覓山中(『三國史記』)[125]

동천왕 21년(247) 기사의 平壤城은 고구려본기에서 확인되는 첫 平壤의 용례이다([J-1]). 이 시기 오늘날의 평양 지역에 아직 낙랑군이 존재하였던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이때의 평양을 지금의 평양으로 연결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126] 고국원왕 4년(334) 기사의 平壤城은([J-2]), [J-1]과 같이 오늘날 평양 지역에 있던 城은 아니라고 보거나,[127] 미천왕 14년(313) 낙랑군이 축출된 이후라는 점에 주목하여[128] 오늘날 평

118)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長壽王 15年. '移都平壤'
119)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에 기록된 평양 관련 자료 및 이에 대한 검토는 조영광,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81, 2016, pp.90~92 참고.
120) 梁柱東, 『增訂 古歌硏究』, 一潮閣, 1965, p.39.
121) 鄭寅普, 앞의 책, 1946, p.162, p.173.
122)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21年 春2月.
123)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4年 秋8月.
124) 『周書』卷94, 列傳41, 異域上, 高麗.
125)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6, 故國原王 13年 秋7月.
126) 동천왕 21년(247) 기록의 平壤城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 성과는 권순홍, 「고구려 '평양'의 변천과 전기 평양성의 위치에 관한 쟁점 검토」 『역사문화연구』70, 2019, pp.5~11 참조.
127) 임기환, 앞의 논문, 2018, pp.27~28.

양 지역일 것에 무게를 두기도 한다.[129] [J-3]은 중국사서에서 '平壤城'이라 한 기록이며 또한 이 시기 평양이 오늘날의 평양이라는 점에서 주목되는 기사이다. 이후 고구려가 망하였으므로 이때 平壤이 이미 고유명사로 정착된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수도라는 의미를 지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고구려의 수도를 '平壤'이라 한다는 사실이 중원에 전해진 것만은 분명하다.

명칭 平壤의 이러한 전개 과정을 國內의 의미와 결부하여 보았을 때, '수도'의 의미를 지닌 용어가 '國內'에서 '平壤'으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국원왕 13년(343)에는 '平壤東黃城'으로 移居하였다고 하는데([J-4]) 이는 [I]의 '國內尉那巖'과 비교할 때 수도로서 '平壤'/'國內'가 제시되고 그 뒤에 구체 장소인 '東黃城'/'尉那巖'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확인된다. 이 점에서, 이보다 1년 전인 고국원왕 12년(342)에 축조한 國內城의 '國內'는([J-2]) 고유명사화한 명칭이었다고 이해된다. 이는 [J-3]에서 평양성과 함께 別都의 이름으로 國內城이 언급되고 있는 것과도 부합하는 양상이다.

'國內'와 '平壤'의 음가가 유사하게 재구되므로 이들이 서로 다른 계통의 용어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수도의 뜻을 지닌 고구려어가 '國內'로 표기되었다가 사료상 확인되는 3세기 중반부터는 '平壤'으로 대체되었고, 고국원왕 시기에 이르러서는 '國內城'과 같이 고유명사로 쓰였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유리왕 대 천도 지역으로 나타난 '國內'를 반드시 [H-2]의 '國內城'과 연결하지는 않아도 좋을 듯하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대, 유리왕 대 천도 기사는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환인 지역 내에서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130]

이러한 유리왕 대 천도의 정치적 의미에 관하여, 유리왕이 종래 졸본계 정치세력을 대체하여 國內系 정치세력을 세력기반으로 삼은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131] 그러나

---

128)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14年 冬10月. '侵樂浪郡 虜獲男女二千餘口'
129) 권순홍, 앞의 논문, 2019, p.17.
130) 權純弘, 「고구려 도성 연구」,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9, pp.32~37 ; 이준성, 앞의 논문, 2019, p.49.
131) 김미경, 앞의 논문, 2005, pp.237~245. 주몽의 高氏集團과 구분되는 유리왕의 解氏集團이 고씨집단의 반발을 피하기 위하여 천도를 단행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泰, 「高句麗 太祖王系의 登場과 朱蒙國祖意識의 成立」『北岳史論』2, 1990, pp.66~75). 高와

유리왕이 천도한 곳이 졸본 내에 있었다고 한다면, '졸본계'와 '국내계'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정치세력의 다대한 교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삼국사기』고구려본기 동명성왕 즉위조에 分註로 기록된 기사가 주목된다. 주몽이 졸본부여에 이르렀을 때, (졸본부여의) 왕이 아들이 없어 주몽을 보고는 비범한 자임을 알고 그의 딸을 시집보냈으며,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것이다.[132] 백제본기에 기록된 시조 온조왕의 건국 설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전한다.[133] 여기서 주몽이 졸본에 이른 뒤 졸본부여왕의 사위로 들어가 그의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즉, 주몽은 고구려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졸본부여의 왕이 되었던 것이다.[134]

이 점에서, 졸본 지역은 新왕실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세력이 결집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유리왕이 嗣位하였을 때 이에 반발한 세력의 움직임은 졸본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다.[135] 그리고, 비록 자결로 생을 마감하였으나, 당시 태자였던 解明은 古都에 여전히 남아 있었다.[136]

물론 천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유리왕 22년(3) 12월 주몽과 함께 남하한 인물 중 하나인 陜父가 천도 이후 유리왕에게 諫言을 하였다가 파직되었고 결국엔 南韓으로 가버렸다는 기사를 연결하기도 한다.[137] 이때의 陜父

解를 姓氏라 한 데 주목한 해석이라 할 수 있는데, '解'가 諸王에게 주어졌던 칭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70~71), 再考의 여지가 있다.

132)『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一云 朱蒙至卒本扶餘 王無子 見朱蒙知非常人 以其女妻之 王薨 朱蒙嗣位'

133)『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始祖溫祚王. '百濟始祖溫祚王 其父鄒牟 或云朱蒙 自北扶餘逃難至卒本扶餘 扶餘王無子 只有三女子 見朱蒙知非常人 以弟二女妻之 未幾扶餘王薨 朱蒙嗣位'

134) 박노석, 「졸본부여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고찰」『全北史學』26, 2003, pp.7~13 참조. '졸본부여'라는 명칭이 당시에 실제로 있었을지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제기되기도 한다(이도학, 「高句麗와 夫餘 關係에 관한 再檢討」,『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6, pp.31~32 ; 奇庚良, 앞의 논문, 2017, p.42). 다만, 졸본부여와 관련한 기록이 주몽이 남하한 곳에 먼저 자리한 세력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 지배자를 漢譯語로서 '王'이라 한 것을 '加'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본고에서는 기록상 제시하고 있는 표현을 수용하였다.

135)『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始祖溫祚王. '及朱蒙在北扶餘所生子來爲太子 沸流溫祚恐爲太子所不容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 百姓從之者多'

136)『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7年 春正月. '王太子解明在古都 有力而好勇'

를 천도를 반대하는 세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138] 그러나 기사를 천천히 음미하여 보면, 陜父가 반대한 것은 천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 民이 安堵하지 못하는데, 田獵을 행하며 정사를 돌보지 않는 유리왕의 태도이다. 陜父가 천도 그 자체를 반대하였다고 해석하기에는 주저된다. 만일 그러하였다면, 薛支가 천도를 건의하였을 때,[139] 이미 그러한 의견을 피력하는 기사가 확인되어야 자연스럽다.

陜父가 천도 이후의 급무로 제시한 것은 '刑政'이었다. 刑政은 형벌과 관련한 政事이며, 형벌을 주관한다는 것은 공적인 권위에 의한 조정·판결이자, 나아가서는 조직된 정치권력 즉 공적인 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동반된 처벌을 포함한다.[140] 刑政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諸加評議'이다. 고구려에서는 罪지은 자가 있으면 諸加가 評議하여 處決하였다.[141] 즉, 이 당시 고구려의 刑政은 고구려왕뿐만 아니라 諸加가 참여하는 공적인 정치권력의 실현이었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陜父는 유리왕에게 지배세력 간 의견을 조정하는 고구려왕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구절이 후대 유교적 潤色이 가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田獵 행위가 실제로는 군사훈련의 기능이 있었다는 지적을 참고하면,[142] 적어도 陜父가 유리왕에게 軍政이 아니라 고구려왕으로서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정치를 강조한 것으로 보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유리왕 19년(서기전 1)에 長屋澤으로 달아난 郊豕에 상처를 입힌 託利와 斯卑를 죽인 일이 있었는데,[143] 위나암으로 천도할 때에도 그 發端은 郊豕의 도망이었다.[144] 이

13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2年 12月. '王田于質山陰 五日不返 大輔陜父諫曰 王新移都邑 民不安堵 宜孜孜焉 刑政之是恤 而不念此 馳騁田獵 久而不返 若不改過自新 臣恐政荒民散 先王之業墜地 王聞之震怒 罷陜父職 俾司官園 陜父憤 去之南韓'
138) 朴京哲, 앞의 논문, 1996b, pp.161~162 ; 김미경, 앞의 논문, 2005, p.243.
139)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1年 春3月.
140) 한영화, 「신라의 刑政과 理方府」『사학연구』133, 2019, p10.
14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142) 金瑛河, 「高句麗의 巡狩制」『歷史學報』106, 1985, p.26.
143)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19年 秋8月. '郊豕逸 王使託利 斯卑追之 至長屋澤中得之 以刀斷其脚筋 王聞之怒曰 祭天之牲 豈可傷也 遂投二人坑中 殺之'
144)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1年 春3月. '郊豕逸 王命掌牲薛支逐之 至國內尉那巖得之 拘於國內人家養之'

에 託利와 斯卑를 죽인 사건 또한 천도를 반대한 졸본세력의 반발로 해석하기도 한다.[145] 하지만 이것은, 유리왕이 위나암 천도 이전부터 이미 천도를 계획하였지만 아직 적당한 遷都處를 찾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다.

앞서 언급하였듯 郊豕가 도망간 것으로 시작되는 세 개의 기사는, 郊豕가 달아났는데 이후 郊豕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천도' 혹은 '왕자 탄생'과 같은 결말을 맺고, 郊豕에 이상이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로 끝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郊豕와 관련한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유리왕 19년(서기전 1) 기사를 해석한다면, 유리왕이 이전부터 천도를 위한 장소를 물색하였고, 託利와 斯卑는 長屋澤을 그 후보지로 제시하였으나 여기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둘에게 물었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반면 同王 22년 薛支가 제안한 尉那巖은 적합한 장소였고 이에 천도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설화적 요소로서 郊豕에게 투영되었다고 사료된다.

유리왕 대 천도를 전후한 기사를 위와 같이 해석하였을 때, 당시 고구려에 천도 실시의 반대로 인한 내분이 강하였다거나, 고구려 왕실이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해서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유리왕 대 천도 시기를 넉넉잡아 서기 전후로 가늠하였을 때, 이 시기 고구려가 이미 3만여 호를 아우르는 세력으로 결집되어 있었던 것, 천도는 계획된 바였다는 점, 그리고 그 천도가 환인(졸본)에서 집안(국내성)으로가 아니라 졸본 내에서의 실시였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리왕 대 천도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천도는 정치체제가 정비되고 정치세력이 교체되는 등 국가체제의 변화를 야기하는 고도의 정치행위이다.[146] 이를 참고하였을 때 역시 주목되는 것이 王部의 교체이다. 이를 천도와 결부하여 본다면, 王部 교체 이후 舊고구려의 전왕실인 비류국에서 주몽을 현왕실로 하는 졸본 지역으로 중심지가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유리왕 대 천도는 졸본을 여전히 근거지로 하면서 고구려 전체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145) 鄭鍾泰, 「高句麗形成過程에 對한 一硏究—初期 王權의 性格變化를 中心으로—」, 明知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4, pp.42~43 ; 박노석, 「고구려 초기의 영토 변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pp.43~44.

146) 金瑛河, 「古代 遷都의 역사적 의미」『한국고대사연구』36, 2004, p.9, p.14.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모색한 결과로 추측된다.

유리왕 대 천도를 단행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주목되는 것이 유리왕 2년(서기전 18) 松讓의 딸을 맞아들여 妃로 삼은 일이다.[147] 고구려왕의 혼인과 관련한 기사가 유리왕 대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고국천왕 2년(180)에야 다시 등장한다는 점에서,[148] 유리왕이 송양의 딸을 妃로 삼은 데에는 정치적 상징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전하지 않는데, 이에 참고가 되는 자료로 고구려 왕실과 비류국과 유사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935년 고려와 신라 사이의 혼인 기사가 있다.

935년 10월 신라 경순왕은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였다.[149] 이에 왕건은 항복을 받아들이고 長女 樂浪公主를 경순왕에게 시집보냈다.[150] 한편으로 왕건은 경순왕에게 甥舅의 우호가 영원하기를 바란다면서 신라 宗室과의 혼인을 청하여, 경순왕의 伯父 億廉 𠫓干의 딸을 맞아들였다.[151] 송양은 來降 후 主로 봉해졌는데,[152] 그를 多勿國王이라고도 하였으므로, 王 당대적 표기로 보았을 때 加의 지위가 여전히 인정되어 전왕실로 대우한 반면, 경순왕은 正承公으로 봉해져 비록 그의 지위가 太子보다 위에 있을 만큼 높게 대우받기는 하였지만,[153] 新羅國王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高麗 내로 편입되었다는 차이가 존재한다. 다만 나라를 들어 항복한 지배세력과의 혼인에는 그들을 포섭하여 안정적인 관계를 도모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으며, 유리왕의 혼인 또한 그러한

14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年 秋7月. '納多勿侯松讓之女爲妃'. 이 기사에서는 송양을 多勿侯라 하였는데, 대무신왕 즉위 기사에서 송양을 多勿國王이라 한 것을 보면(『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卽位年. '母松氏 多勿國王松讓女也'), '侯'는 後來的 표현으로 추정된다.

148)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2年 春2月.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149)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9年 冬10月. '王以四方土地盡爲他有 國弱勢孤 不能自安 乃與羣下謀 擧土降太祖 羣臣之議 … 乃使侍郎金封休 齎書請降於太祖'

150)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9年 11月. '太祖受王書 送大相王鐵等迎之 … 以長女樂浪公主妻之'

151)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9年. '初新羅之降也 太祖其喜 旣待之以厚禮 使告曰 今王以國與寡人 其爲賜大矣 願結昏於宗室 以永甥舅之好 答曰 我伯父億廉𠫓干知大耶郡事 其女子德容雙美 非是無以備內政 太祖遂取之 …'

152)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2年 夏6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153) 『三國史記』卷12, 新羅本紀12, 敬順王 9年 12月. '封爲正承公 位在太子之上 給祿一千石'

취지였으리라 해석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하다.

문제는 송양이 유리왕 대가 아니라 주몽 대에 항복하였다는 점이다. 혼인에 위와 같은 의도가 있었다면, 전왕실과 현왕실 간 혼인은 주몽 대에 있었음 직한데 그것이 유리왕 대 실시된 것이다. 이로 볼 때, 王部가 교체된 이후 얼마간은 전왕실과 현왕실과의 관계가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유추된다. 조금 더 추측해 본다면, 전왕실을 비롯하여 舊고구려의 국정을 주도하던 세력은, 비록 어쩔 수 없이 그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형세였지만, 新舊 주도 지배세력 간 緊張 관계가 완전히 청산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점에서 유리왕 즉위 후 송양과의 혼인은 고구려의 新舊 세력 간 관계가 개선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관계 개선은 고구려왕의 의지이기도 하였겠지만, 특히 陜父와 같이 새 고구려 왕실 개창에 조력한 舊臣의 역할도 있었다고 추측된다. 陜父가 천도 이후 유리왕에게 諫言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나아가 新왕실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의 재편이 일단락하면서, 각 部에 소속한 전체 諸加가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으로 단행한 것이 유리왕 대의 천도라 하겠다.

따라서 王部 교체 이후 고구려는, 유리왕 대에 들어 新왕실을 구심점으로 지배세력의 재결집이 일단 마무리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당시 고구려의 대내 정세를 이와 같이 추정하였을 때, 이후 고구려의 크게 두 방면으로 전개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나는 새로운 주도 세력을 중심으로 재편된 部 조직을 통한 국정 운영의 전개이다. 다른 하나는 정돈된 대내 정세를 바탕으로 한 대외 관계의 추진이다.

3. 諸加 共論의 국정 운영과 大加의 지위

고구려의 部는 諸加를 중심으로 결성된 정치조직이었다. 이러한 성격의 部는 주몽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기보다는 舊고구려 시기에서부터 존재하였다고 추정된다.

문제는 部의 성격을 위와 같이 이해하였을 때, 이 部가 국정 운영에 어느 정도 상관하는 조직인가 하는 것이다. 즉, 국가체계는 部 조직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部는 국정에 참여하는 지배층이 구성한 일종의 배타적인 모임 정도인지, 아니면 국가운영체계까지도 部를 바탕으로 조직된 측면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보았을 때, 대체로 部가 국가체계에 또한 일면 관련하는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유추된다. 보다 실상에 접근해 보는 데 실마리가 되는 것이 『삼국지』에 기록된 '諸加評議'이다.

[K] ㉠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形如弁 ㉢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三國志』)[154]

고구려에서는 10월 祭天 시 國中大會하였는데 이를 東盟이라 하였다([K]-㉠). 그리고 [K]-㉡에서는 公會 시의 복장을, 뒤이어서는 隧神祭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K]-㉢). [K]-㉣에서는 고구려에 牢獄이 없으며 죄지은 자가 있으면 諸加가 評議하여 處決한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제천행사와 諸加評議가 함께 즉 10월에 동시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제천행사와 諸加評議가 별개의 사실을 전하는 기록인지가 일단 문제가 된다.

부여에서도 제천 시 國中大會하였는데 이때 刑獄을 處斷하고 죄수를 풀어준다고 한 점을 보면,[155] 고구려에서 또한 國中大會 때 諸加評議가 있어 형옥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56] 그리고 [K]-㉣에서 표현한 '諸加'는 특히 앞에서 언급한

15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5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156) 최광식,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p.151 ; 이정빈, 「고구려 東盟의 정치의례적 성격과 기능」『한국고대사연구』41, 2006a, p.174 ; 여호규, 앞의 책, 2014, pp.282~284. 祭日에 재판을 실시하는 遺習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데 주목하여, 부여와 같이 제천행사 시에 재판이 함께 행해졌음을 지적한 연구도 참고된다(李基白, 「韓國 古代의 祝祭와 裁判」『歷史學報』154, 1997).

公會 때 幘을 쓰는 大加와 折風을 쓰는 小加를 염두에 둔 표기라 할 수 있으므로, 評議에 참여한 諸加는 곧 국중대회 시 公會에 참석한 大加와 小加로 보아야 자연스럽다.[157] 이 또한 [K]-㉣의 評議를 10월 국중대회에 실시한 것으로 보는 데 무게를 실어준다.

한편 [K]-㉢에서는 '有罪'라 하여 사법적인 문제에 諸加가 評議한 것으로 나타난다. 죄지은 자 및 그 처자에게 처한 형벌이 부여에서 살인자를 죽이고 그 家人을 沒하여 奴婢로 삼는 형벌과 동일하므로,[158] 살인죄와 같은 死罪, 여기에 안위와 질서를 흔들거나 위협하는 죄까지 포함되었을 것이다.[159] 다만, 국가 운영상 三權分立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았던 당대 사회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諸加評議는 司法的인 활동에만 국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國家全般에 걸치는 사안을 다루었다고 추정된다.[160] 따라서 諸加評議가 사법 처리 문제에서 보다 확장하여 국정 전반에 관한 중요 사안을 議決하는 會議體였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그렇다면 불특정·불시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하나의 문제로 남는다. 일 년에 한 번 定例로 모이는 것은 '大會'로 표현될 만큼 盛大한 행사이다. 이런 大會에서 불특정·불시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처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有罪'에 한정하여 보아도, 기록대로 牢獄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재판 또한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이며, 죄인이 발생할 때마다 제가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161] 이 점에서 諸加會議는 평시에도 운영되는 회의기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문제는, 위와 같이 해석하였을 때 [K]-㉣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의 사회상인가 하는 것이다. 일단 [K]-㉡에서 확인되는 公會는 大加와 함께 主簿 관등 소지자도 동등한 복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의 형태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162] 그리고 [K] 기사가 『삼국지』에 실린 자료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3세기 대의 사회상

157) Ⅱ장 2절 및 그 주 183) 참조.
15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159) 한영화, 「한국 고대사회의 형벌권의 추이—'율령' 반포 이전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47, 2012, p.19.
160) 盧重國, 「高句麗國相考(上)—初期의 政治體制와 關聯하여—」 『韓國學報』16, 1979, p.21.
161) 李廷斌, 「3세기 高句麗 諸加會議와 國政運營」 『震檀學報』102, 2006b, p.7.
162) Ⅱ장 3절의 주 148) 참조.

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에, [K]-㉣을 본래 國中大會에서 개최되는 정기회의적 諸加會議가 이른바 '貴族會議'로 변모하며 상설회의로 변화한 3세기 중엽의 사회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163]

3세기 중엽의 제가회의가 이러한 성격을 지녔으리라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만일 제가회의가 정기회의에서 상설회의로의 변화를 거쳤다고 한다면, 정기회의 단계에서는 불특정·불시에 발생한 사안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또한 국정과 관련한 重且大한 사안이 國中大會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게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評議는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단적으로 불시에 外敵이 침입하였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0월 公會 시에 大加는 幘을 쓰고 小加는 折風을 써서 大加와 小加가 구분되고, 主簿 관등 소지자는 大加와 같이 幘을 써서 大加에 비견되는 位相을 드러내고 있어, 『삼국지』 기록이 전하고 있는 시기에는, 복식상 小加보다 優位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K]-㉡). 그럼에도 評議의 주체를 諸加라고 하였음을 보면, 이때 主簿는 評議 절차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즉, 3세기 公會에서 관등으로서 主簿가 大加에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지위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評議의 참여 자격이 여전히 그가 加인가 아닌가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보다 앞선 시기의 고구려에서, 불특정·불시에 발생한 긴급한 국가의 중대사를 고구려왕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였고, 정기회의에서만 諸加에게 권한이 주어졌다고 보기는 석연치 않다. 3세기 이전에도 이러한 사안의 결정권은 諸加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었을 때에는 임시로 제가회의를 개최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도 있다. 이는 당시의 국정 운영이 임시로 소집된 제가회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었는지 아니면 신속한 논의를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 제가회의를 운영하는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이해의 상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명확히 파악할 만한 실마리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諸加가 中核이 되어 고구려를 건설하였다면, 이러한 국가 건설과 함께 諸加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회의기구 또한 일찍부터 갖추

163) 여호규, 앞의 책, 2014, pp.282~284. 상시적인 귀족회의적 諸加評議와는 별도로 연례적으로 大會에서 실시되는 評議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李廷斌, 앞의 논문, 2006b, p.7).

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건설 초반에는 諸加가 더욱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3세기 이전에도 제가회의는 국중대회에서 실시하는 제가평의를 포함한 정기 제가회의와, 諸加의 共論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별도의 회의기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다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하나는 諸加가 評議해야 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언제나 참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王者로서 자신의 독자 영역도 지배해야 하는 諸加가, 정기적 연례행사인 국중대회나 諸加의 직접 참여를 요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때에는 참여하였겠지만,[164] 국정 운영에 합의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리를 비우고 직접 제가회의에 참여하였다고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른 하나는 제가회의에서 논의·결정하는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까지인지에 관한 것이다.

회의기구가 존재하였다면 그것은 王都에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의에 참여하는 諸加가 管領하는 영역에 대한 지배는 그의 子弟나 親族 등에게 맡기고, 자신은 왕도에 常住하면서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정된다. 가야의 사례이지만, 仇衡王이 신라에 항복할 때 그와 그의 아들 등은 신라로 갔고 同氣인 脫知爾叱今은 본국에 머무르게 하였다.[165] 물론 이는 항복할 경우의 양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166] 적어도 本國과 王都를 오고 가는 연락의 가능성과 諸加가 왕도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을 가능성을 짐작하는 데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와 반대로, 加는 본국에서 머무르며 지배하고 그의 자제나 친족 등 '加'層이 왕도에 머무르면서 加를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 평시 제가회의 또한 기본적으로 加가 加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164) 고구려왕이 사망하여 후대 왕위계승자를 결정하는 문제를 긴급한 사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165) 『三國遺事』卷2, 紀異2, 駕洛國記, 仇衡王. '新羅第二十四君眞興王興兵薄伐 王使親軍卒 彼衆我寡不堪對戰也 仍遣同氣脫知尒叱今留在於國 王子上孫卒支公等降入新羅'

166) 仇衡王의 항복 사례가 비류국왕 송양이나 부여왕 종제가 來降하였을 경우에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만 國中大會에서 실시하는 諸加評議와 평시 제가회의는 다르게 운영되었으리라 짐작된다. 諸加가 실제로 얼마나 있었을지 분명히 확인하기 어렵지만, 평시 제가회의에도 이들이 모두 구성원으로 참여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國中大會에서는 그야말로 '大會'였기 때문에 이들이 모두 참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평시 제가회의는 國中大會보다는 소규모로 운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평시 제가회의에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이들을 정하는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으로 諸加가 소속되어 있는 部가 가장 가능성이 있다. 즉, 평시 제가회의는 모든 加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었겠고 각 部를 대표하여 한 명 혹은 약간 명의 加로 구성된 회의체였다고 추측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존재가 '大加'이다.

[L] 諸大加亦自置使者皁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皁衣先人同列(『三國志』)[167]

[L]에 따르면 大加는 使者, 皂衣, 先人을 自置할 수 있었다.[168] 이때 使者는 使人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일반적이며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초기의 使者란 대체로 지역 내 管轄 및 收取 등을 담당한 行政實務職으로 이해된다.[169] 皂衣는, 배송지가 註한 『吳書』 기록에 宮(=동천왕)이 皁衣 25명을 보내어 秦旦 등을 호송케 하였다는 기사를 바탕으로 보면,[170] 武士職과 관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先人은,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泉男生이 9세에 先人이 되고, 泉獻誠 또한 9세 때 先人의 職에 除授된 것을 보아,[171] 花郎과 같은 靑少年 修習武士로 추정되기도 한다.[172] 즉, 사자, 조의, 선인 등이 각기 구체적인 職能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6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68) 『三國志』에는 皁衣라고 표기되어 있고 『三國史記』에는 皂衣로 표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삼국사기』의 용례를 따라 皂衣로 표기한다.
169) 金哲埈, 앞의 논문, 1956, pp.132~133 및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102~103 참조.
170) 『三國志』卷47, 吳書2, 吳主傳. '是歲 權向合肥新城 遣將軍全琮征六安 皆不克還 吳書曰 … 其年 宮遣皁衣二十五人送旦等還'
171) 「泉男産墓誌銘」. '年始九歲 卽授先人' ; 「泉獻誠墓誌銘」. '九歲在本蕃 卽拜先人之職'
172) 皂衣와 先人에 관하여는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103~105 참고.

大加가 自置한 官名 그리고 王家의 그것 또한 모두 使者, 皂衣, 先人으로 동일하다는 것은, 이러한 체계가 共通的·統一的으로 설치될 수 있는 上位權力에 의해 조직·운영되었음을 의미한다. 大加 隸下의 관인 명단이 왕에게 전달되는 것도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명단을 '전달'한다고 함을 보면, 이는 統制보다는 管理·監督의 차원으로 이해된다. 大加의 사자, 조의, 선인 등의 自置는 고구려왕에 의해 小加가 아닌 大加에게만 許與된 권한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小加는 그러한 조직을 둘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아무리 小加라 하더라도 王者的 存在인 加가 여러 읍락을 統主하기 위해서는,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직능을 수행하는 행정적·군사적 조직이 필요하였다고 보아야 한다.[173] 그러한 조직을 고구려왕이 許與치 않았으므로 아무런 조직을 가지지 못하고 읍락을 지배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 이 점에서, 大加가 自置한 사자, 조의, 선인 등은 大加 자신의 지배 영역을 위해 갖춘 조직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그렇다면 이들 관원의 설치는, 大加에게 自置權을 주어 별도의 무언가를 운영하였던 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자연스럽다. 大加와 小加 즉 諸加가 部에 소속한 사실을 고려할 때, 그것은 諸加가 소속한 部의 운영을 위한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諸加는 諸 읍락 지배에 필요한 조직은 독자로 운영하였고, 각 部에 소속한 諸加가 다스리는 영역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해서는 별도로 使者, 皂衣, 先人을 두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大加는 小加에 비해 규모면에서 우월하였을 것이다. 가령, 8만 戶 규모의 부여에서 諸加가 別主하는 四出道의 규모가 大者는 수천 家이고 小者는 수백 家인 것이나,[174] 4~5만 戶의 弁辰에서 大國은 5천 家이고 小國은 6~7백 家,[175] 10여만 戶의 馬韓에서 大國이 만여 家, 小國이 수천 家로 대별되었던 점을 참고하면,[176] 3만여 戶 규모의 고

173) 하일식, 『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p.79 참조.
17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戶八萬 …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17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弁辰 …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17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韓. '馬韓 …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구려에서 또한 大加는 대체로 수천 家, 小加는 수백 家의 규모를 지배기반으로 삼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부여의 사출도나 변진, 마한의 서술은 세력 규모의 大小를 설명하고 있는 기사이지만, 고구려의 大加는 앞서 살폈듯 그가 大加임에 따라 許與되는 권한이 있다는 데 차이가 있다. 후술하겠으나 大加에게는 정복 지역에서 수취를 거둘 수 있는 租賦統責權 또한 따로 許與되었다.[177] 이를 토대로 볼 때, 大加와 小加가 그들이 거느린 세력 규모의 大小에 의해서만 구분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된다. 大加는 세력 면에서도 大者이겠으나 그와 동시에 국정 운영상 주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지위의 역할로도 기능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沸流部長'의 존재가 주목된다.

[M] 黜大臣仇都 逸苟 焚求等三人爲庶人 此三人爲沸流部長 資貪鄙 奪人妻妾牛馬財貨 恣其所欲 有不與者卽鞭之 人皆忿怨 王聞之 欲殺之 以東明舊臣 不忍致極法 黜退而已 遂使南部使者鄒勃素代爲部長(『三國史記』)[178]

대무신왕 15년(32), 仇都, 逸苟, 焚求 등 3인이 남의 妻妾과 牛馬, 財貨 등을 빼앗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등 貪鄙하였으므로, 왕은 極法으로 다스리려 하였으나 東明의 舊臣이었기에 黜退만 하였다([M]). 黜退되기 전 그들은 沸流部長이었으며, 黜退된 이후에는 南部使者 鄒勃素가 部長을 대신하였다. 이 沸流部長의 실체에 대해 그간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었는데, 대체로 이들을 沸流部의 長(=우두머리)으로 해석하는 데 공통점이 있다.[179] 이에 대하여, 이때의 長이 沸流部를 대표하는 자가 지니는 칭호라면 복수의 部長이 동시에 존재하는 셈이 되어 정점에 있어야 할 部長의 존재가 설명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180] '沸流部長'의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료가 전하

177) Ⅳ장 2절 참조.
178)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春3月.
179) 沸流部의 전체 대표자인 部長과 部內部長을 가리킨다고 보거나(노태돈, 앞의 책, 1999, p.123), 沸流部의 大加(琴京淑, 『高句麗 前期 政治史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4, p.110), 혹은 沸流那部를 구성하는 3개의 대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p.77 ; 김현숙, 앞의 책, 2005, p.62 ; 여호규, 앞의 책, 2014, p.197).
180) 이준성, 앞의 논문, 2019, p.98.

는 앞뒤 맥락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部長'과 같이 당대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용어가 발견된다는 점에서, 후대 윤색이 된 부분은 없는지 유의하여야 한다.

우선 이들 3인이 '庶人'이 되었다는 데 주목해 볼 수 있다. 『新唐書』에는 고구려의 복식에 관해 설명하며, 이를 각각 王과 大臣, 臣, 庶人, 그리고 여자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181] 『舊唐書』 百濟傳에서는 백제의 복식을 설명하며 왕과 官人을 언급하고, 그 다음 庶人은 緋色이나 紫色 옷을 입을 수 없다고 하였다.[182] 여기서 庶人이 官人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특히 『新唐書』 百濟傳에서 왕, 群臣의 복식을 설명하고 民은 絳色과 紫色의 옷을 입을 수 없다고 하여,[183] 『舊唐書』의 庶人이 곧 『新唐書』의 民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참고할 때, 『新唐書』 고구려전의 庶人 또한 無官한 民에 가까운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翰苑』에서는 高麗記를 인용하여 고구려의 관등을 설명하면서, 말단 관등으로 先人을 正9品에 비견하며 一名 庶人이라 하였다.[184] 여기서 庶人은 無官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M]의 문맥을 감안한다면, [M]의 庶人은 『翰苑』에서 설명하는 庶人보다는 『新唐書』에 기록된 庶人에 가깝다. 특히 구도 등 3인이 庶人으로 강등되기 전에 '大臣'이었다고 한 데에 주목하면, 이들의 庶人 강등은 官職 강등에 따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구도 등 3인이 소지하였던 沸流部長은 官職과 관련한 대상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다.

구도 등을 '極法'으로 다스려야 하나 그러지 않고 黜退할 따름이었는데, 그 결과가 '庶人'이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極法 즉 死刑을 가하는 대신 庶人으로 삼았다는 내용은, 樓船將軍 楊僕을 병력손실에 대한 처벌로 마땅히 誅殺하여야 하는데 贖바치고 庶人으로 삼았다는 『史記』 朝鮮傳의 구절과 동일한 성격의 양상으로,[185] 前漢에서

---

181)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王服五采 以白羅製冠 革帶皆金釦 大臣靑羅冠 次絳羅珥兩鳥羽 金銀雜釦 衫筩袖 袴大口 白韋帶 黃革履 庶人衣褐 戴弁 女子首巾幗'

182)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百濟. '其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 官人盡緋爲衣 銀花飾冠 庶人不得衣緋紫'

183)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百濟. '王服大袖紫袍 靑錦袴 素皮帶 烏革履 烏羅冠 飾以金鶡 羣臣絳衣 飾冠以銀鶡 禁民衣絳紫'

184) 『翰苑』, 蕃夷部, 高麗, 部貴五宗, p.210. '次先人 比正九品 一名失元 一名庶人'

185) 『史記』卷115, 朝鮮列傳55. '樓船將軍亦坐兵至洌口 當待左將軍 擅先縱 失亡多 當誅 贖爲庶人'

나 고구려에서 모두 官人이 庶人으로 격하되는 것이 死刑 다음으로 강한 처벌내용임을 보여주고 있다.[186] 이 점에서도, 그들이 庶人으로 강등당하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沸流部長'은 官職과 결부된다.

'黜退'하였다는 것 또한 유의된다. 黜退란 관직을 떨어뜨려 물리친다는 의미이다.[187] 『삼국사기』에 黜退가 쓰인 용례가 列傳에서 확인되는데, 大舍 純德의 아들인 實兮가 진평왕 대 上舍人이 되었는데, 下舍人 珍堤라는 자가 아첨을 잘하여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서는 實兮를 시기하여 왕에게 讒訴하는 대목이 그것이다.[188] 이때 珍堤는 왕에게 實兮가 智慧는 없고 膽氣만 많아 喜怒가 급하니 大王의 말이라도 그 뜻이 맞지 않으면 憤을 참지 못한다고 하며, 만일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장차 난을 일으킬 것인데 어찌 '黜退'하지 않느냐고 하였다.[189] 이에 왕이 그리 여겨 實兮를 泠林으로 '좌천[謫官]'시킨다.[190] 여기서 黜退가 官職과 관련하여 벼슬의 좌천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鄒勃素를 仇都 등 3인에 대신하여 '部長'으로 삼았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이로써 보면 그 직위의 이름인 沸流部長은 '沸流部의 長' 즉 '沸流部+長'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沸流의 部長' 즉 '沸流+部長'으로 읽을 수 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나타난 部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部가 반드시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 貫那라 하든 桓那라 하든 그것은 貫那部와 桓那部를 가리킨다. 沸流那部와 관련한 용례를 살펴보아도, 태조대왕 80년(132) 기록에서 陽神을 '沸流那' 皂衣라고 한다든가,[191] 中川王 7년(254) 국상 明臨於漱가 죽고 대신 국상의 자리에 오른 陰友를 '沸流' 沛者라고 하는 데에서,[192] 部가 표기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186) 趙法鍾, 「三國時代 民·百姓의 槪念과 性格에 대한 검토」 『百濟文化』25, 1996, pp.92~93.
187)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66(2011, 3판 4쇄), p.2705.
188) 『三國史記』卷48, 列傳8, 失兮. '實兮 大舍純德之子也 … 眞平王時爲上舍人 時下舍人珍堤 其爲人便佞 爲王所嬖 雖與實兮同寮 臨事互相是非 實兮守正不苟且 珍堤嫉恨 屢讒於王曰 …'
189) 『三國史記』卷48, 列傳8, 失兮. '實兮無智慧 多膽氣 急於喜怒 雖大王之言 非其意則憤不能已 若不懲艾 其將爲亂 盍黜退之'
190) 『三國史記』卷48, 列傳8, 失兮. '王然之 謫官泠林'
191)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年 秋7月.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 於是 貫那于台彌儒 桓那于台菸支留 沸流那皂衣陽神等 陰謂遂成曰 …'
192)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7年 夏4月. '國相明臨於漱卒 以沸流沛者陰友爲國相'

할 수 있다. 따라서 '沸流部長'은 '沸流(部)의 部長'으로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部가 표기되기도 하고 표기되지 않기도 하였다는 것은, 당시 고구려의 정치조직을 가리키는 용어로 '部'가 아직은 정착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部長이 실제 쓰인 官職名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시에는 다른 이름이었던 것을 후대에 이렇게 옮겨 적었을 수도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자료가 참고된다. 하나는 『삼국사기』에 기록된 '部長'과 관련한 또 하나의 용례이다. 弓裔가 무리 3천 5백인을 나누어 14隊로 삼고 金大, 黔毛, 昕長, 貴平, 張一 등을 舍上으로 삼았다는 기사에서, 舍上은 '部長'을 이른다고 하였다.[193] '隊'라고 한 데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이 기사 뒤에 궁예가 '士卒'과 즐거움과 괴로움, 수고로움과 편안함을 함께 하는 등으로 衆心이 畏愛하여 '將軍'으로 추대하였다고 한 것을 보아도,[194] 여기서 舍上이 군대와 관련한 職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舍上이 곧 部長이라고 하고 있다. 궁예 대의 기사를 토대로 곧바로 [M]의 '部長'을 군대와 관련한 직책으로 확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沸流部長'에서 '部長' 또한 고구려어로 무엇이라 한 것을 이후에 '部長'으로 표기하였다고 추정하는 데에는 참고가 된다.

[N-1] 蠶友落部大家戴升等一萬餘家 詣樂浪投漢 後漢書云 大加戴升等萬餘口(『三國史記』)[195]

[N-2] 句驪 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後漢書』)[196]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이 '蠶支落部' 기사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N-1] 기사는 『후한서』 기록([N-2])과 비교하여 볼 때, 大加를 大家라 하고, 戴升 등이 이끈 규모를 만여 家라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차이는 [N-1]에서는 '蠶友落部'(=蠶支落部)라 한 반면, [N-2]에는 部라 하지 않고 蠶支落이라 한 것이다.

---

193) 『三國史記』卷50, 列傳10, 弓裔. '有衆三千五百人 分爲十四隊 金大 黔毛 昕長 貴平 張一等爲舍上 舍上謂部長也'

194) 『三國史記』卷50, 列傳10, 弓裔. '與士卒同甘苦勞逸 至於予奪 公而不私 是以衆心畏愛 推爲將軍'

195)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4年 冬10月.

196)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鬱支落部의 '部'는 후대에 덧붙인 것으로 보이며, 鬱支落部가 고구려 五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197] 하지만 [N-2]를 참고하여 사서를 편찬할 때 大加를 大家로, 만여 口를 만여 家로, 鬱支落을 鬱支落部라 하듯, 『후한서』 기록과 다르게 표기된 것이 세 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볼 때, 이는 그 나름의 이유에 의해 고친 결과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改書 시기는 확단하기 어려우나 고구려 당시에 실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198]

『舊唐書』에서는 고구려에 書籍을 매우 좋아하는 습속이 있음을 전하며, 고구려에서 전하는 중국사서로 『史記』, 『漢書』, 『三國志』 등과 함께 『후한서』를 언급하고 있다.[199] 그렇다면 고구려에서 『후한서』 기록을 확인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嬰陽王 11년(600), 太學博士 李文眞에게 명하여 『留記』 일백 권을 刪修하여 『新集』 다섯 권을 만들게 하였음을 보면,[200] 고구려에서 역사서의 改修 작업이 있었음도 확인된다. 이를 토대로 볼 때, [N-1]의 기사는 고구려에서 편찬된 사서에 담겨 있었던 내용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N-2]의 기록 중 몇 字가 달리 표기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가령 大加를 그대로 옮겨 적지 않은 것은, 전술한 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加 관련 기록이 빈약한 양상을 고려할 때, 加를 달리 표기하였던 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口를 家라 표기한 이유는 더욱 알기 어려운데, 戴升 '等'이라 하였으므로 大加인 戴升과 더불어 그에 준하는 여럿의 有力者가 함께 투항하였을 것이니, 그에 따른 규모가 만여 口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다만 적어도 大家이든 만여 家이든 이렇게 고치는 데 영향을 미친 이유가 있었음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197) 노태돈, 앞의 책, 1999, pp.106~107.

198) 『삼국사기』 민중왕 4년(47) 鬱支落部 기록에 『후한서』 기사 중 '大加戴升等萬餘口'만 註한 것을 보면, 편찬 과정에서 鬱友落部(→鬱支落部)와 鬱支落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이는 『삼국사기』 편찬에 바탕이 된 原典 기록에서, 貫那라 하기도 하고 貫那部라 하기도 하는 것처럼, 部가 붙기도 하고 붙지 않기도 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데 기인한다고 추정된다. 즉, 편찬 과정에서 별도로 部를 붙이거나 하는 改書는 없었다고 보이며, 이들이 결국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여 鬱支落部 또한 鬱支落과 같다고 이해한 것은 아닌가 한다.

199) 『舊唐書』卷199上, 列傳149上, 東夷, 高麗. '俗愛書籍 … 其書有五經及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 尤愛重之'

200) 『三國史記』卷20, 高句麗本紀8, 嬰陽王 11年.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이러한 見地에서 蠶支落部를 살펴보면, 部를 덧붙인 것 또한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N-2]가 [N-1]로 변화한 것이 고구려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면, 部를 덧붙인 주체는 고구려인이며 여기에는 고구려인의 部에 대한 의미·인식이 투영되었다고 해석된다. 전술한 바 某某那라 하든 某某那部라 하든 그 의미가 동일하다는 점에 착안하면, 蠶支落 또한 五部와 같이 蠶支落部로도 표기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에 部를 附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하여 '四掾那'의 용례가 주목된다. 左可慮가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한 세력이 四掾那인데, 이는 掾那部에 속해 있던 네 개의 下部單位體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201] 이 점에서, 部는 그 部 하나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위에 세부 조직으로 나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蠶支落에 部를 붙일 수 있던 것도 이에 연유한다고 짐작된다. 본고에서 추정한 部의 성격과 그 구성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종의 '部內部'로 개념화할 수 있는 성질의 조직인 셈이다.[202]

蠶支落部의 '部'와 沸流'部長'의 '部'는 후대에 삽입·개칭되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그리고 '部長'의 '部'는 沸流部의 部가 아니라 沸流部에 소속한 어떤 이름을 갈음한 표현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沸流部長은 沸流那部에 소속한 하위 部 조직의 長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부터 部長이라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고구려 자체에서 전승되는 '加' 용례 기사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면, 部長의 당대적 표기를 大加로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戴升을 '大加'라고 한 사실과도([N-2]) 부합한다.

그렇다면 部長 즉 大加를 官職과 같이 서술하고 있는 [M]의 기사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요구된다. 大加가 마치 官職이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의 정치체제를 감안하였을 때, 고구려왕이 구도 등 3인의 지위를 박탈하였던 상황에

---

201) 掾那部에 속한 下部單位體의 실체에 대해, 이를 部內部로 개념화하여 掾那로 吸收된 네 개의 那集團으로 보거나(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硏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2, 1975, p.26), 掾那部 안에 공존하던 네 개의 異姓集團으로 해석하기도 한다(金賢淑, 「高句麗 初期 那部의 分化와 貴族의 姓氏—《三國史記》 高句麗本紀內 出現 人名 분석을 중심으로—」 『慶北史學』16, 1993, pp.33~36).

202) 盧泰敦, 앞의 논문, 1975, p.26.

윤색이 가미된 양상인 듯하다. 大加가 단순히 세력의 大小에 따른 구분이 아니라 국정 운영상 주어지는 정치적 지위였기 때문에 고구려왕의 그 지위를 박탈할 수도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M]이 비류부장보다는 추발소에게 大室氏를 사여한 이유 즉 구도 등 3인의 지위를 박탈한 이후에 추발소가 이들과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데 초점을 둔 기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203] 대무신왕의 이러한 처사가 일반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발소의 원만한 해결이 성씨 사여로 이어질 만큼 부각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대무신왕의 이러한 처사로 인해 구도 등 3인이 거센 반발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것이 당대 정치적 형편이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던 고국천왕 12년(190) 左可慮 등의 전횡에 대한 국왕의 처사에 좌가려 등은 반란을 일으킨 것과[204]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205]

이상 각 部에는 하부 조직이 있었고, 여기에는 후대에 部長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었으며, 그것이 곧 정치적 지위를 드러내는 용어인 大加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추정에 기대어 다시 제가회의의 운영에 대해 고찰해 본다면, 평시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가회의에 참여하는 각 部의 대표가 이들 大加였다고 추정된다. 국중대회와 같은 大會에서는 大加와 小加가 모두 참여하고 이들 전체가 모여 國中大事를 정기적으로 논의하였을 것이고, 평시 소규모 제가회의에는 大加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가회의에서 논의·결정하는 사안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을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加는 자신의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범죄와 같은 문제 또한 독자적으로 처리하

---

20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春3月. '勃素旣上任 別作大室以處 以仇都等罪人 不令升堂 仇都等詣前告曰 吾儕小人 故犯王法 不勝愧悔 願公赦過 以令自新 則死無恨矣 勃素引上之 共坐曰 人不能無過 過而能改 則善莫大焉 乃與之爲友 仇都等感愧 不復爲惡 王聞之曰 勃素不用威嚴 能以智懲惡 可謂能矣 賜姓曰大室氏'

204)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2年 秋9月. '中畏大夫沛者於畀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並恃勢驕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 怒欲誅之 左可慮等與四椽那謀叛'

205) [M] 기사에서는 추발소가 使者 관등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M] 기사 이후에도 구도 등 3인이 여전히 지위가 박탈된 채로 추발소가 部長의 역할을 대신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別稿에서 詳論코자 한다.

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諸加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은, 그것이 동일 部에 소속한 諸加 간 문제라면 그들이 소속한 部 차원에서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제가회의에서 다루는 사안의 범위는 비교적 분명해진다. 곧 部 간에 관계한 이해 문제, 그리고 五部 전체 다시 말해 고구려 전체에 관련한 사안이 해당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가회의는 이들 문제를 중대사로 다루었으며, 이 외 사안 즉 각 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 및 諸加가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사안에까지는 간섭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財源의 마련이다. 아무래도 王室이 이를 단독으로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舊고구려 시기에 이미 戶籍과 같은 방식으로 피지배층을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한다면,[206] 諸加는 諸 읍락에 거주하는 피지배층을 이와 같이 파악하여 일정한 방식의 수취를 실시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 중 일부를 국정 운영의 재원으로 納付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諸加가 각 部에 소속하고, 각 部에 소속한 諸加가 다스리는 영역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해 大加가 使者, 皂衣, 先人을 둔 점을 고려한다면, 諸加에게 추렴한 재원이 곧바로 고구려왕에게 전달되는 체계라기보다는, 諸加가 자신이 소속한 部에 납부하면 大加가 그 중 얼마는 部 운영의 재정으로 두고 나머지는 고구려왕에게 보내는 절차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체계는 정복 지역의 지배방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여겨진다.[207] 즉, 고구려왕은 각 部를 단위로 그에 소속한 諸加에게 국정 운영을 위한 일정량의 재원을 부과하였고, 각 部에서 납부한 양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자료는 國中大會 때 취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208]

고구려왕 또한 加的 존재로서 제가회의에 참여하였을 것이며, 그 主宰者 역할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한편으로는 제가회의에서 결정한 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이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王部를 중심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갔을 것이

206) Ⅱ장 1절 및 3절 참조.
207) Ⅳ장 2절 참조.
208) 나유정, 「『三國志』 東夷傳에 나타난 대민지배방식과 民·下戶의 성격」『한국고대사연구』 90, 2018, pp.36~37 참고.

다. 이러한 정치운영 구조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王部를 제외한 각 部에 소속한 諸加 및 '加'層이 국정 집행을 위한 정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는 드물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고구려왕의 행적을 중심에 두고 편찬된『삼국사기』고구려본기 기록에서, 태조대왕 이전 시기에 部를 관칭하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과 추론을 바탕으로 보건대, 국정 운영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部이며, 그 과정을 이끄는 것이 諸加의 共論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舊고구려 시기에도 部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209] 현재로서는 部가 있었다는 점 외에는 다른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다. 다만, 部가 존재하였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王部 교체 이후의 고구려에서 작동하던 部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部의 성립이 곧 그러한 諸 조직 및 제도의 발생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舊고구려 시기 王者的 存在인 諸加가 部를 구성하고 다시 그들의 상위권력으로서 高句麗王을 용립한 정치체제인 二重聳立體制의 실제가 이러하였을 것이다.

물론 舊고구려 시기의 實相이 王部 교체 초기의 그것과는 다소 상이할 수도 있다. 그리고 歷史的 趨勢를 감안할 때, 舊고구려 시기에는 각 部가 보다 동등한 속에서 국정을 운영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部가 조직되고 그것이 운영되었다면, 실제적 측면에서 차이가 발견될 수는 있겠으나 원리적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고 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部를 重核으로 한 국가 운영 방식은 종래 舊고구려 시기부터 있어 온 방식의 계속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 점에서, 王部 교체 이후 고구려에서는 部에 기반을 둔 국가체계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하였으리라 짐작된다. 곧 二重聳立體制의 변동이다.

---

209) Ⅱ장 2절 참조.

Ⅳ. 정치권력의 集中化와 二重聳立體制의 변동

1. 예맥사회의 통합과 왕권의 성장

고구려는 王部 교체 초기부터 특히 태조대왕 전반기까지 주변 세력을 정벌하며 적극적으로 세력권을 확장해 나아갔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크게 주목받아 온 이유 중 하나는 지리적 조건의 열악함이었고, 이러한 열악함으로 인해 국가적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정복 전쟁이 필수적이었다고 해석된다.[1] 이러한 해석에는 『三國志』에서 전하고 있는 고구려의 자연 환경에 대한 기록이 영향을 주고 있다. 즉, 고구려에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고 原澤과 기름진 밭이 없으므로 힘써 농사를 지어도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2] 주변 세력을 적극적으로 침략하였다는 것이다. 평양 천도 이전까지 고구려의 중심 영역권이었던 압록강·동가강 유역이, 20세기 초반까지 可耕地가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하였다는 지적을 감안할 때,[3]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적극적인 대외 통합 양상을 자연 조건에서 오는 한계로만 설명하기에 주저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삼국지』에서 전하는 고구려의 자연 환경은 정치적 의도에서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同書 부여전에서는 부여에 山陵과 廣澤이 많아 東夷 지역에서 가장 平敞한 곳이라고 하여,[4] 고구려에 관한 서술과 대조를 이룬

---

1)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王權 및 中央集權的 支配體制의 强化과정과 관련하여—」 『韓國文化』2, 1981, pp.116~117 ; 孔錫龜, 『高句麗 領域擴張史 硏究』, 書景文化社, 1998, pp.16~17 ; 琴京淑, 『高句麗 前期 政治史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4, pp.124~125 ;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5, p.99 등 참조.

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多大山深谷 無原澤 隨山谷以爲居 食澗水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3) 徐永大, 앞의 논문, 1981, p.116의 주 123) 참조. 이러한 수치는 大正 12년(1923)에 만주와 東部 내몽골 지역의 농업 일반을 조사하여 편찬한 『滿蒙全書』3에서 제시한 各省 各縣別可耕地面積 중에서, 輯安, 桓仁, 通化, 興京의 현황을 근거로 산출한 수치이다. 각 총면적 대비 可耕地 비율은 12.73%, 18%, 12.27%, 13.68%이었다(「農業」, 『滿蒙全書』3, 1923, p.79).

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다. 이와 함께, 고구려는 人性이 凶急하고 寇鈔를 좋아한다고 한 반면, 부여는 性品이 彊勇하고 謹厚하며 寇鈔를 하지 않는다고 한 대조도 눈에 뜐다.[5] 즉, 자연 환경으로 인한 습속과 기질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는 중국이 漢代부터 부여와는 우호 관계를, 고구려와는 적대 관계를 이어온 배경에서 나타난 서술로 이해된다.[6] 이를 토대로 볼 때 고구려의 자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기술한 것은, 고구려가 노략질을 좋아한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근거로써 더욱 부각시킨 측면이 강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고구려의 자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는 사서가 『삼국지』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삼국지』에서 전하는 고구려의 자연 환경이 설혹 고구려의 전반적인 실제 형편을 전하는 것으로 본다면, 그러한 형편은 『삼국지』의 편찬 시기를 감안할 때, 대체로 서기 3세기까지에도 유효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통합 양상은 태조대왕 대에 우선 일단락된다. 즉, 『삼국지』 기사를 근거로 하여 고구려의 적극적인 정복 활동의 가장 큰 원인이 열악한 자연 조건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에 있었다고 한다면, 고구려는 3세기에도 여전히 열악한 자연 조건 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삼국사기』에서 이에 따른 적극적 정복 활동 양상이 꾸준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고구려가 王部 교체 이후부터 주변 세력을 적극적으로 통합해 나간 원인은, 전쟁 수행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당시 고구려가 처한 자연 조건 등 여러 부면을 참작하면서도, 무엇보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 및 정치적 목적에 보다 초점을 두고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1] 王命烏伊扶芬奴 伐太白山東南荇人國 取其地爲城邑(『三國史記』)[7]

[㉮-2] 王命扶尉猒 伐北沃沮滅之 以其地爲城邑(『三國史記』)[8]

---

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人性凶急 喜寇鈔' ;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性彊勇謹厚 不寇鈔'
6) 강종훈, 『한국고대사 사료비판론』, 교육과학사, 2017, pp.45~46.
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6年 冬10月.
8)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0年 冬11月.

고구려는 주몽 대에 두 차례의 대외 통합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가 동명성왕 6년(32) 荇人國을 정벌한 것이고([㉮-1]), 다른 하나가 同王 10년(서기전 28) 北沃沮의 정벌이다([㉮-2]). 북옥저는 一名 置溝婁라고도 하며 南沃沮에서 800여 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으로,[9] 대체로 오늘날의 琿春 일대로 비정된다.[10] 주몽이 고구려왕이 된 기반을 마련한 卒本과 멀리 떨어진 지역인 것이다. 행인국은 太白山 지금의 백두산 동남에 위치하여, 북옥저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상의 핵심 정치세력으로 볼 수 있다.[11] 이렇게 볼 때, 북옥저로의 진출은 행인국 정벌 시기부터 어느 정도 계획된 일이었다고 짐작된다.

북옥저는 철기시대 초기부터 철 생산과 깊은 연고가 있었던 곳이기에, 북옥저의 정벌은 이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전략물자인 철을 군사력 강화에 활용하고자 한 결과로 여겨진다.[12] 한편, 주몽이 재위 초반부터 경제적·군사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원거리의 북옥저를 정벌한 것은, 주변 예맥사회 내에서 고구려의 위치를 분명히 인지시키려는 정치적 명분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었으며, 주변 세력을 차례로 통합하여 북옥저 방면으로 진출을 도모하는 것보다 북옥저를 먼저 복속하여 다수의 주변 세력이 스스로 내항하게끔 유도하는 전략상의 효과를 기도한 결과였다는 해석도 참고된다.[13]

주목되는 것은 荇人國과 北沃沮 정벌 당시 선봉에 나선 인물들이다. 荇人國 정벌 당시 선봉에 나선 인물 중 하나는 烏伊이다([㉮-1]), 그는 주몽의 뜻에 따라 부여에서 함께 남하한 인물이었다.[14] 烏伊와 함께 한 扶芬奴도, 주몽이 鼓角의 威儀가 없어 비류국의 사신이 자신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라 하니, 從臣 부분노 등 3인이 비류국에 가서 비류국의 북을 취하여 온 일을 전하고 있음에서,[15] 주몽이 남하할 때부터 곁에서 從仕

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北沃沮 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10) 李龍範, 「大陸關係史: 古代篇(下)」『白山學報』19, 1975, p.19 ;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p.29.
11) 김미경, 「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p.38.
12) 朴京哲, 「高句麗軍事力量의 再檢討」『白山學報』35, 1988, p.158 ; 「高句麗의 國家形成 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b, pp.145~146.
13) 김미경, 앞의 논문, 2007, p.39.
14) 『三國史記』卷 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朱蒙乃與烏伊摩離陝父等三人爲友 行至淹㴲水'
15) 『東國李相國集』卷3, 古律詩, 東明王篇. '王曰 以國業新造 未有鼓角威儀 沸流使者往來 我不能以王禮迎送 所以輕我也 從臣扶芬奴進曰 … 於是扶芬奴等三人 往沸流取鼓而來 沸流王遣使告曰 云云'

한 자로 추정된다. 북옥저 정벌에 나선 扶尉猒에 관하여는([㉮-2) 상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다. 다만 그가 扶芬奴와 같이 扶氏를 칭하고 있어 주몽과 함께 남하한 부여계 유이민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16] 扶尉猒 역시 烏伊와 부분노와 같이 주몽의 남하 때부터 종사한 인물로 추정된다. 따라서 주몽 대 실시한 대외 통합은 주몽에 종사하는 자들이 주도해서 실시한 일이었다고 풀이된다.

[㉮-3] 命烏伊 摩離 領兵二萬 西伐梁貊 滅其國 進兵襲取漢高句麗縣(『三國史記』)[17]

한편 유리왕 33년(14)에는 梁貊을 정벌하여 그 나라를 滅하고 나아가 高句麗縣을 襲取하였다([㉮-3]). 여기서 梁貊은 大梁水 지금의 太子河 상류 유역에 존재한 세력을 가리킨다.[18] 滅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梁貊이 고구려에 통합되어 있던 세력은 아니었으며 玄菟郡의 羈縻 하에서 나름의 독자성을 띠고 있었던 세력으로 추정된다.[19] [㉮-3]에서는 이때 그 나라를 멸하였다고 하였지만, 梁貊이 太子河 상류뿐 아니라 소자하 연안 등 고구려 西邊의 여러 세력을 아울러 가리킨 명칭이었다는 지적을 참고한다면,[20] 이 당시 고구려 서쪽의 모든 세력이 일시에 고구려로 편입되었다기보다는, 특히 太子河 상류 지역에 있었던 세력에 국한하여 이들을 편입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梁貊은 2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의 세력범위에 속하여 동옥저의 지배방식과 같이 일정한 자치를 유지하면서도 조세를 부담하고 군사적인 통제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21]

---

16) 金賢淑, 「高句麗 初期 那部의 分化와 貴族의 姓氏—《三國史記》 高句麗本紀內 出現人名 분석을 중심으로—」『慶北史學』16, 1993, p.11.

1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33年 秋8月.

18) 鄭寅普, 『朝鮮史硏究』上, 1946(『薝園 鄭寅普全集』3,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250. 梁貊이 太子河 상류 유역에 존재한 것으로 보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19) 金光洙, 「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pp.27~28 참조. 이에 유리왕 33년(14)에 정벌된 梁貊을 舊王系와 관련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위의 논문, 1983, pp.27~28), 前王部인 消奴部와 관련한 기록은 松讓과 결부하여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저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당시 梁貊이 高句麗縣과 인접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玄菟郡의 기미 하에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여겨진다.

20) 余昊奎, 「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한국고대사연구』25, 2002, pp.99~100.

그런데 고구려는 梁貊을 정벌하는 데 끝나지 않고 나아가 高句麗縣을 襲取하였다([㉮-3]). 이후에도 고구려현이 여전히 현도군의 縣으로 유지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때 '取'까지 하였다고 보기에는 주저된다. 이때 동원한 병력이 2만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당시 고구려의 인구가 3만여 戶로 추정되고,[22] 2세기경 고구려가 동원한 병력 규모가 대략 5천에서 1만 명 전후로 추산된다는 점에서,[23] 2만이 실제 동원된 수치라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리왕 33년(14)의 기사는 梁貊을 '滅'하였다고 하고, 고구려현을 '襲取'하였다고 하며, 동원된 군사를 '2만'이라고 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건을 과장하고 있는 측면이 엿보인다. 다만, 이로부터 2년 전인 同王 31년(12)에 고구려와 新의 갈등이 표면화한 상황을 고려한다면,[24] 고구려에서도 실제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군사적 행동에 나섰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점에서, [㉮-3]에는 어느 정도 사실성이 반영되어 있다고 사료된다. 대체로 新과의 갈등 상황에서 고구려는 그에 대한 반발로 무력 행위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현도군으로 나아가는 지역의 양맥 세력을 일시 제압하였다고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고구려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일로 기념되어 개개 사건이 潤色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고구려는 유리왕 대에 들어서 新왕실을 구심점으로 지배세력이 재편된 상황이었다.[25] 그리고 고구려현 공격은 천도 이후 처음 실시한 전쟁이었다. 또한 王部 교체 이후 중원 세력과의 첫 무력적 충돌이었다. 그렇다면 2만이라는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고구려 측 자료에서 동원된 병력을 적시한 기록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경향 속에서도 유독 [㉮-3]에서 그 수치를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어떠한 사실을 담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측된다. 이 점에서 '2만'은 고구려로서 상당히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였다는 표현이 아닐까 한다. 즉 [㉮-3]은 새로운 고구려가 성립한

21) 이정빈, 「양맥·숙신의 난(難), 변경에서 본 3세기 후반 동아시아와 고구려」『韓國史硏究』187, 2019, pp.117~119.
22) Ⅲ장 2절 참조.
23) 여호규,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p.324.
24)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31年 ; 『漢書』卷99中, 王莽傳69中 ;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25) Ⅲ장 2절 참조.

이후, 재편된 五部 諸加의 병력을 동원하여 실시한 중원 세력과의 첫 정면충돌이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주몽 대에는 왕실이 독자적으로 주변 세력들을 정복해 나갔다면, 유리왕 재위 후반에는 五部의 병력을 동원하여 중원 세력과 충돌을 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1] 王進軍於扶餘國南 … 扶餘王擧國出戰 … 王於是揮怪由 怪由拔劒號吼擊之 萬軍披靡不能支 直進執扶餘王斬頭(『三國史記』)[26]

[㉰-2] 帶素以兵五萬來侵 大雪 人多凍死乃去(『三國史記』)[27]

[㉰-3] 扶餘王帶素遣使來聘 請交質子 王憚扶餘强大 欲以太子都切爲質 都切恐不行 帶素恚之(『三國史記』)[28]

주몽과 유리왕 대 실시한 전쟁을 이끈 인물이 고구려왕의 직속 신료였던 반면, 유리왕 이후 왕위에 오른 대무신왕은 기록상 자신이 직접 병력을 이끌고 전쟁을 실시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대무신왕 4년(21) 12월 대무신왕은 직접 부여 정벌에 앞장섰다([㉰-1]). 부여 또한 왕이 나서 擧國的으로 출전하였는데 결국 부여왕은 戰死하고 만다. 이후 고구려군이 부여군과의 전투에서 苦戰하고, 回軍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으며,[29] 대무신왕 스스로가 부여의 왕은 죽였어도 그 나라는 멸하지는 못하였다고 하였지만,[30] 이후 부여를 병합한 인물을 莫來 즉 대무신왕이라 하고, 고구려의 건국 서사를 구성하는 세 명의 왕이 주몽과 그의 아들 유리왕, 그리고 유리왕의 아들 대무신왕인 점을 보면,[31] 대무신왕 대의 부여 정벌이 자못 성공적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6)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春2月.
2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14年 冬11月.
28)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14年 春正月.
2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春2月. '扶餘人旣失其王 氣力摧折 而猶不自屈 圍數重 王以糧盡士饑 憂懼不知所爲 …'
30)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春2月. '王旣至國 乃會羣臣飮至曰 孤以不德 輕伐扶餘 雖殺其王 未滅其國 而又多失我軍資 此孤之過也 遂親吊死問疾 以存慰百姓'
31) 拙稿, 「中國史書에 나타난 高句麗 初期 王系와 宮의 裔孫化」 『高句麗渤海硏究』66, 2020, pp.15~19 참조.

부여는 유리왕 14년(서기전 6) 11월, 5만의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고자 하였으나 눈이 많이 내려 돌아갔다([㉰-2]). [㉰-2]에서 확인되듯 당시 고구려에게 부여는 매우 위협적인 상대였다. 부여가 고구려를 침공하려 한 이유는, 부여가 요구한 質子에 고구려가 불응하였기 때문이었다([㉰-3]). 유리왕은 太子 都切을 質子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도절이 두려워 결국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것인데, 유리왕이 부여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처음에는 부여의 요구에 응하려고 하였던 점에서도, 당시 고구려가 부여를 매우 강대하고 위협적인 대상으로 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대무신왕 4년(21)의 부여 정벌은([㉰-1]) 이전부터 고구려가 염두에 두었던 사안이라 풀이된다. 고구려가 보다 안정적으로 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부여와의 관계를 선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여 정벌을 통해 고구려와 부여의 관계의 轉機를 마련하면서, 마침내 고구려가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32]

유리왕 14년(서기전 6) 11월 고구려를 침공하고자 한 부여가 이끈 병력이 5만으로 나타나는데,[33] 고구려의 부여 정벌 당시 부여에서도 왕이 직접 나서 거국적인 출전을 하였다고 하므로,[34] 이때 부여에서 전투에 동원한 병력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에서 당시 고구려와 부여는 병력을 총동원하여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총동원된 병력에 諸加의 군사 또한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4] 王親征蓋馬國 殺其王 慰安百姓 毋虜掠 但以其地爲郡縣(『三國史記』)[35]

[㉰-5] 句茶國王聞蓋馬滅 懼害及己 擧國來降 由是拓地浸廣(『三國史記』)[36]

[㉰-6] … 好童勸王襲樂浪 崔理以鼓角不鳴不備 我兵掩至城下 然後知鼓角皆破 遂殺女子 出降(『三國史記』)[37]

---

32) 琴京淑, 「高句麗 前期 戰爭과 王權强化」『한국고대사연구』16, 1999, pp.280~286 참조.
33)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14年 冬11月. '帶素以兵五萬來侵 大雪 人多凍死乃去'
34)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春2月. '扶餘王擧國出戰'
35)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9年 冬10月.
36)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9年 12月.
37)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夏4月.

부여 정벌을 단행한 이후, 대무신왕은 재위 9년(26) 다시 親征하여 蓋馬國을 정벌하였다([㉮-4]). 蓋馬國은 '蓋馬'라는 지명에서 보아 압록강 상류 방면에 있었던 세력으로 추정된다.[38] 同年 11월에는 蓋馬國이 멸한 것을 보고 해를 입을까 두려워 句茶國王이 來降하였다([㉮-5]).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였다는 내용을 근거로 보건대, 구다국은 개마국과 가까운 곳에 있던 나라였다고 추측된다.[39] 여기서 구다국왕이 고구려에 정벌되는 '害'가 자신에게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음이 주목된다. 이는 구다국의 來降이 단순히 그 王의 恣意的인 판단에서 온 두려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투항하지 않는다면 蓋馬國王과 같이 자신이 살해되고 또한 나라가 정벌되는 것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당시의 政勢를 예견한 결과였다고 풀이된다.

이러한 추측은 구다국의 來降 이후 고구려의 세력권 확장 방향이 보다 남쪽으로 전진해 갔다는 점에서 뒷받침된다. 개마국의 정벌과 구다국의 항복 이후, 대무신왕 15년(32)에는 樂浪王 崔理가 항복해 왔다([㉮-6]). 최리의 항복은 구다국과 같은 자발적인 항복이기는 하였으나 고구려의 군사가 낙랑국의 城 앞에까지 당도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出降이었다. 또한 或說에 고구려가 낙랑을 滅하기 위해 혼인을 청하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40] 고구려는 미리 낙랑국의 정벌을 계획하였다고 해석된다. 결국 낙랑국은 대무신왕 20년(37) 대무신왕이 직접 이끌고 온 군대에 의해 멸망하였다.[41]

낙랑국의 실체에 관하여는 여러 해석이 제기되지만,[42] 적어도 개마국과 구다국이 위

---

38) 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上)』, 乙酉文化社, 1983, p.277 ; 金瑛河, 「高句麗의 巡狩制」『歷史學報』160, 1985, p.42 ; 정구복 외, 『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p.440.

39) 金瑛河, 앞의 논문, 1985, p.42. 句茶國이 살수 이남 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희천 혹은 이와 인접한 장자강 연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이종록, 「高句麗의 東沃沮 정벌과 樂浪郡」『先史와 古代』49, 2016, pp.50~51).

40)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夏4月. '或云 欲滅樂浪 遂請婚 娶其女爲子妻 後使歸本國 壞其兵物'

41)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20年. '王襲樂浪滅之'

42) 王子 好童이 沃沮에 갔다가 崔理를 만났다는 데에 주목하여, 30년(建武 6) 東部都尉 폐지 이후에 東沃沮 근방에서 독자화한 세력으로 추정하기도 하고(문안식,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보이는 樂浪·靺鞨史料에 관한 檢討—東海岸路를 통한 新羅의 東北方 進出과 土着勢力의 在地基盤의 運動力을 中心으로—」『傳統文化硏究』5, 1997, pp.22~23 ; 임기환, 「고구려와 낙랑군의 관계」『한국고대사연구』34, 2004, pp.146~148), 지금의 平壤 지역에 자리한 國으로 보기도 한다(尹乃鉉, 「漢四郡의 樂浪郡과 平壤의 樂浪」『韓國學報』

치했던 지역에서 보다 남쪽에 위치한 세력이었다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 즉, 대무신왕은 부여 정벌 이후에 남쪽 방면으로의 세력권 확대를 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개마국의 정벌은 단순히 그 나라를 정복하려는 차원이기도 하였겠지만, 보다 남쪽으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차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접근의 방향을 이렇게 설정하였을 때 주목되는 것은 蓋馬國과 樂浪國의 國名이 모두 漢 郡縣의 명칭에서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漢書』 地理志에 따르면 제2현도군 시기 현도군의 屬縣 중 하나로 西蓋馬縣이 있었다.[43] 서개마현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는 馬訾水와 鹽難水를 각각 지금의 어느 강에 비정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최근에는 馬訾水를 將子江으로, 鹽難水를 鴨綠江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4] 이에 따르면, 서개마현은 오늘날 개마고원의 서쪽 중 장자강 유역과 압록강이 합류하는 지역 일대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45] 이 지역이 함흥 방면에서 渾江이나 渾河 상류 지역으로 나아가는 동서 교통로상

41, 1985b). 樂浪郡의 위치에 관한 학계 일반의 추세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서 전하는 역사상의 맥락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樂浪國은 東沃沮 근방에서 독자적 세력으로 존재한 나라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한편, 樂浪國 관련 기사를 역사적 사실이 아닌 허구로 보기도 하였으나(津田左右吉,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批判」,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9, 1922, pp.45~46), 이는 『삼국사기』 초기 기사를 불신한 데에서 기인한 해석이다. 이때의 樂浪國을 樂浪郡과 동일시하는 해석도 있지만(三品彰英,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研究年報』6, 1953), 中國史書에서 전하지 않는 독자적 전승으로 이해되는 同王 27년(44) 기사에 光武帝가 樂浪을 伐하여 그 땅을 郡縣으로 삼았다고 하여(『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27年 秋9月. '漢光武帝遣兵渡海伐樂浪 取其地爲郡縣 薩水已南屬漢'), 郡과 별개의 실체로서 樂浪이 나타나므로, 崔理의 樂浪國은 독자적 정치세력으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서기전 178년경에 樂浪의 존재가 사료에서 확인되고, 이것이 崔理의 樂浪國의 실체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조법종, 『고조선·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pp.265~271), 樂浪國의 來歷은 前漢의 군현 설치 이전부터 찾아야 하고, 樂浪國에서 樂浪郡의 이름이 파생한 것으로 이해하는 위에서 그 실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43) 『漢書』卷28下, 地理志8下, 玄菟郡. '玄菟郡 …… 縣三 高句驪 …… 上殷台 …… 西蓋馬'

44) 和田淸, 「玄菟郡考」 『東方學』1, 1951(『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1955), pp.8~9 ; 노태돈,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p.323 ; 윤용구, 「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서영수 외, 『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p.118.

45) 馬訾水와 鹽難水를 각각 장자강과 압록강으로 비정하는 위에서, 서개마현의 위치는 오늘날 江界 일대로 보기도 하고(和田淸, 앞의 논문, 1951 ; 田中俊明, 「高句麗の興起と

에 위치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통로였다는 점을 참고할 때,[46] 漢 세력은 제1현도군이 축출된 상황에서도 이곳의 郡縣은 가급적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제2현도군 시기 현도군은 교통로상의 몇 개 거점을 중심으로 縣城을 설치하고 이를 잇는 지역을 관할하였다는 점에서,[47] 안정적인 군현 지배를 위해서는 토착 세력의 지지가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沃沮에서 군현 질서에 융합한 渠帥에게 縣三老의 지위가 부여된 것과 같이,[48] 서개마현의 유지를 위해 주변 토착 세력의 지배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취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서개마현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을 세력은, 같은 명칭이 보이기도 하고 지리상으로도 인접한 지역에 있었던 蓋馬國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蓋馬國王은 중원 세력으로부터 그 지위를 인정받아 나라를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개마국이 멸한 뒤 자발적으로 來降한 구다국 또한 한 군현과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던 세력이었다고 생각된다. 崔氏라는 중국계 성씨와 自鳴鼓角에서 보아 낙랑국이 漢의 문물과 접촉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세력이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참고한다면,[49] 낙랑국 또한 중원 세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이상의 대무신왕 대 실시한 대외 통합 양상을 앞선 왕대의 그것과 연결지어 볼 때, 크게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하나는 고구려왕이 직접 전쟁에 나서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무신왕은 부여와 개마국, 그리고 낙랑국 정벌에 이르기까지, 기록상 나타나는 모든 전쟁을 직접 이끌었다. 그의 王號가 大'武神'王이었던 것은 이러한 업적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된다. 다른 하나는 한 군현에 의지하던 세력을 고구려의 세력권으로 편입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유리왕 대 서쪽 방면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고구려현을 공격하여 중원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한 것과, 부여 정벌을 통해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한 기반 위에서 가능하였다고 추정된다. 이를 발판으로, 부여 정벌 이후

玄菟郡」『朝鮮文化硏究』1, 1994, pp.14~15), 渭原에서 楚山으로 나가는 일대에서 찾기도 한다(윤용구, 앞의 논문, 2008, pp.122~123).

46) 노태돈, 앞의 논문, 1999, p.325.

47) 윤용구, 앞의 논문, 2008, p.123.

48) 權五重, 「樂浪郡의 支配構造」, 『樂浪郡硏究』, 一潮閣, 1992, pp.49~50 참조.

49) 임기환, 앞의 논문, 2004, p.148.

특히 남쪽 방면으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 군현에 附庸하고 있던 諸 세력을 통합하고자 한 것이다.

대무신왕 대 이러한 정책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원 대륙이 新이 망하고 後漢이 들어서는 큰 혼란기였기 때문에 고구려에 적극적인 강경책을 실시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新에 뒤이어 성립한 후한이 주변국에 유화책을 펴고 변경의 군현과 都尉를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던 사정 또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50] 중원의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 군현에 의지하고 있던 諸 세력에 대한 통합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고구려왕의 권위는 諸加에게 인정받았을 것이며 동시에 국정 운영에서 국왕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 장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결지어 본다면, 주몽 대에는 새로운 고구려를 건설하여 王部의 교체를 이끈 시기였고, 유리왕 대에는 새로운 왕실을 구심점으로 지배세력을 재편하여 천도를 단행하였으며, 대무신왕 대에는 고구려왕이 직접 전쟁을 이끌며 세력권을 성공적으로 확대해 나간 시기였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보여준 왕의 능력 및 권위는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국가를 이끈 指導者的 위상이 높아질 수 있었을 것이다.[51]

또한 대외 진출 정책의 전개는 고구려 내의 군사력을 왕권 하에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部를 기반으로 건설·운영된 신라에서는 六部가 공동으로 낸 군사력으로 六部兵이 구성되었고, 이것으로 외세의 침입에 대한 방어 및 신라를 구성한 각국에서 발생한 반란 등을 대응하였다.[52] 고구려에도 五部兵이 존재하였을 개연성이 크다. 대체로 諸加가 공동으로 군사를 差出하여 五部兵을 조직하고 이들에 대한 지휘권은 고구려왕에게 委任하는 방식이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

50) 余昊奎, 「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軍史』54, 2005, pp.25~26 ; 앞의 책, 2014, pp.183~186 ; 홍승현, 「後漢時期 邊郡 통치의 변화와 樂浪郡—王調 반란의 분석을 중심으로—」『韓國史學報』61, 2015, pp.127~136 참조.

51) 申瀅植, 「三國時代 戰爭의 政治的 意味—《三國史記》戰爭記錄의 綜合的 檢討—」『韓國史研究』43, 1983, pp.15~16 참조.

52) 서의식, 「韓國古代國家의 二重聳立構造와 그 展開」,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p.84.

다. 다만 실제 운영 면에서 각 部의 영향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성공적인 대외 세력의 통합 과정은 평시 五部兵의 운용에서도 고구려왕의 입지를 강화시켰으리라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왕권의 우월성을 諸加에게 인식시키고, 정복 사업으로 얻어지는 정치력·경제력의 확대는 고구려왕의 集權力을 강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53]

그러나 확장된 세력권에서는 막대한 행정력 및 통치력 또한 요구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때 요구되는 힘은 종래 운영·유지하던 정치체제에 기반을 둔 諸加의 支配力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이 과정에서 집권적 행정 및 그에 걸맞은 정치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그것이 필요하게 되는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였겠지만, 확장된 영역을 바탕으로 고구려왕에게 결집된 정치권력이 다시 部에 소속한 諸加에게 賜與됨으로써, 이중용립체제와 함께 새롭게 구축되어 가고 있는 정치체제가 한동안 共存하는 양상을 띠었다고 짐작된다.

한편으로는 북옥저의 정벌과 같이 피정복 지역에서 획득한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욕구로 전쟁이 실시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대외적인 전쟁은 고대국가 발전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토지와 인민획득의 가장 유력한 수단이었으며,[54] 인간을 위시한 전리품을 약탈하는 데에서 농업생산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량한 農耕地와 경작 農民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조직적인 군대에 의한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 유발되었다는 지적이 참고된다.[55]

그런데 고구려가 세력권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는 諸加의 독자적 군사력 또한 투입되었으리라 예상된다. 유리왕 대 서쪽으로의 확장과 대무신왕 대 부여 정벌이 단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정복 활동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을 때, 諸加는 그들이 제공한 군사력에 대한 위와 같은 자원을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고구려왕은 전쟁에 참여한 諸加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획득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하게 재분배

53) 徐永大, 앞의 논문, 1981, p.117 ; 孔錫龜, 앞의 책, 1998, pp.15~16 참조.
54) 金瑛河, 「新羅의 發展段階와 戰爭」『한국고대사연구』4, 1990, pp.105~106.
55) 김기흥, 「보론—삼국간 전쟁의 사회경제적 의미」,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역사비평사, 1991, pp.218~222 ; 「삼국시기 戰爭과 租稅制의 변화」『한국고대사연구』16, 1999, pp.152~153 참고.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재분배를 주도하는 고구려왕은 재분배의 혜택을 받는 諸加와는 점차 그 성격을 달리하는 존재로 거듭났다고 추정된다. 특히 재분배할 자원이 경제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라면, 정복 지역에 대한 지배구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하는 왕권은 더욱 성장해 나갔을 것이다.

2. 정복 지역의 지배구조와 租賦統責權

고구려는 王部 교체 이후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갔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된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배가 실시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자세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三國志』동옥저전에 고구려가 臣屬한 동옥저를 지배한 방식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이 기사는 고구려의 지배방식을 파악하는 자료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아래의 [㉮]가 그것이다.

[㉮]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①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②又使大加統責其租賦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 以爲婢妾 遇之如奴僕(『三國志』)[56]

많은 주목을 받아 온 만큼 그 해석을 두고 多岐한 견해가 제출되어 논란이 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①과 ②의 구절의 해석 및 그에 따른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이다. '使相主領'이 그 한 예이다.[57] '使相主領'의 해석 외에도, 고구려에서 삼은 使者는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의 대인을 使者로 삼은 것인지, 大加가 '統責'하였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즉 동옥저에서 수취한 것을 大加가 그대로 자신의 지배기반으로

56)『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57) [㉮]-①에 대한 諸 해석에 관하여는 김현숙, 앞의 책, 2005, pp.132~133 ; 이종록,「1~3세기 고구려의 두만강 유역 지배방식과 책성(柵城)」『역사와 현실』116, 2020, pp.167~169 참조.

삼은 것인지 아니면 大加는 수취한 것을 납부하는 책임을 진 것인지 등의 해석 문제도 있다. [㉰]가 비단 동옥저에 대한 지배방식뿐만 아니라, 고구려가 정복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였는지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우선 이러한 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①의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는 일단 '(고)구려는 다시[復] 그 중[其中]에 大人을 두고 使者로 삼았다'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다시'는, 고구려가 이때에 앞서 동옥저에 大人을 '置'한 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置'에 걸리는 의미라기보다는, '고구려에 臣屬하였다'는 문장을 받아 '동옥저가 고구려에 臣屬하였고, 고구려는 (이 땅에) 다시'로 이해하면 무난할 듯하다. 『新唐書』에서 고구려가 망한 뒤 '그 땅을 아홉 개의 도독부와 42개 주, 1백 개의 현으로 나누고 '다시[復]' 安東都護府를 두어 云云'할 때 '復'와 같은 용법으로 볼 수 있다.[58] 그리고 '그 중'의 '그[其]'는 맥락상 동옥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니 '동옥저에'로 해석된다. 여기서 大人을 몇 명으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읍루전에서 읍락마다 大人이 있다 하고,[59] 동옥저에는 읍락마다 長帥(=渠帥)가 있다고 한 구절을 참고한다면,[60] 大人이 臣屬 前 渠帥와 같은 勢力家였다고 보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大人은 대체로 하나의 읍락마다 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뒤에서 大加가 '統'責하였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추정에 힘을 실어준다. 다만 이 구절에서 大人을 渠帥로 그대로 대체하기에는 문맥상 어렵다. 여기서 大人은 고구려에서 동옥저를 지배·통제하기 위해 둔 것이고, 渠帥는 읍락에서 世世로 下戶를 統主하던 존재이기 때문이다. 동옥저전에서 앞서 계속 渠帥라 하다가 [㉰]-①에서는 渠帥라 하지 않고 大人이라 한 이유가 이에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지배 초기에는 종래 渠帥였던 자를 大人으로 삼는 것이 고구려의 지배를 관철하는 데 효율적이었을 것이므로, 渠帥가 大人이 되었을

58) 『新唐書』卷220, 列傳145, 東夷, 高麗. '剖其地爲都督府者九 州四十二 縣百 復置安東都護府 擢酋豪有功者授都督 刺史 令 與華官參治 仁貴爲都護 總兵鎭之'. '復'가 '又', '再'의 뜻으로 풀이되는 것을 참고하였을 때(『康熙字典』, 復. '【集韻】又也 【增韻】再也'), 『新唐書』의 구절은 '又'로 이해할 수 있겠고, [㉰]-①의 '復'도 이러한 의미에서 쓰인 용례로 사료된다.

5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6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들이 비협조적이거나 반란을 일으킬 때에는 大人을 새로 대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大人을 둔 주체가 고구려라는 점에 초점을 둔다면, 종래 渠帥가 그대로 下戶를 統主하도록 두기보다는 大人이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끔 한 지배상이 여기에 반영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①의 '使者'는 同書 고구려전에서 고구려 관등으로 使者가 확인되어,[61] 관등으로서 使者로 풀이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語義 그 자체로 보아 使役人으로 삼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어느 것인지 확단하기는 어렵지만, 大人이 고구려의 지배체제 내에 편입되어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를 읍락에서 담당하는 자로서 역할하였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지배가 계속되면서는 渠帥가 점차 豪民으로 轉化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문제는 [㉰]-①의 '使相主領' 구절이다. 여기서 '相'을 '서로'로 볼 것인지, 아니면 ②의 '使大加統責 云云'과 對句로 보아 '相'이라는 관직 혹은 관리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해석이 갈린다. 문맥상 보았을 때 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62] 물론 '使相主領'이 '서로 主領케 하였다'라고 해석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후한서』 기사가 이러한 해석 방식으로 기술되었다고 추정된다.

[㉱] 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間 遂臣屬句驪 ①句驪復置其中大人爲使者 ②以相監領 ③責其租稅貂布魚鹽海中食物 發美女爲婢妾焉(『後漢書』)[63]

『후한서』 기사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②에서 統責의 주체로 나타나는 '大加'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이다([㉱]-③). 大加가 생략됨으로써 '責'의 주체는

61)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雛加主簿優台丞使者皁衣先人 尊卑各有等級'

62) '使相主領'을 '相으로 하여금 主領케 한다'고 해석한 견해로 다음의 논고가 참조된다. 徐毅植, 「新羅「中古」期 六部의 部役動員과 地方支配」『韓國史論』23, 1990, pp.127~128. 이러한 해석으로 풀이하는 연구로는 김미경, 「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學林』17, 1996, pp.49~50 ; 김남중, 「위만조선과 고구려 초기의 相」『韓國古代史探究』14, 2013, pp.27~29 ;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p.100~102 참조.

63)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東沃沮.

[㉰]-①의 句驪 즉 고구려가 되었다. 고구려가 大人을 두어 使者로 삼아 '以相監領'하게 하였고, (고구려가) 租稅 등을 責하였으며, (고구려가) 美女를 뽑아 婢妾으로 삼았다고 해석되는 것이다. 때문에 '統責'은 '責'이라고만 하고, [㉱]에서 '미녀를 보내어'라 할 때 '送'은 '發'로 바꾸어 썼다고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지』 읍루전에서 漢 이래로 읍루가 부여에 臣屬하였는데 부여가 그 租賦를 과하게 責하였다고 한 기사가 참고된다.[64] 이로써 보면, '責'의 주체를 大加가 아니라 고구려로 놓아도 文意를 해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大加가 租稅 등을 責하는 것이니 大加를 생략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이해한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②의 '相'을 '相으로써 다스리게 하고'와 같은 식으로 해석하기는,[65] 곤란할 듯하다. 大加를 생략하여 주체를 고구려로 통일한 [㉰]에서 '相'만 남겨두었다고 보기는 주저되기 때문이다. 또한 '以相某某'는 다른 데에서도 확인되는 용례이므로,[66] [㉮]-②의 '相'은 '서로'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67]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후한서』에 나타난 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①의 '使相主領' 또한 같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主領'이란 용어가 '서로(相)'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성질의 것이 아님이 지적되기 때문이다.[68] 主領은 '主管하고 거느리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서로'라고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에게 主管하는 어색한 해석이 된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主領'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그 대상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主領'이라는 표현이 나타난 『후한서』 선비전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 ①乃自分其地爲三部 從右北平以東至遼東 接夫餘 濊貊二十餘邑爲東部 從右北平以西至上谷十餘邑爲中部 從上谷以西至敦煌 烏孫二十餘邑爲西部 ②各置大人③主領之 皆屬檀石槐(『後漢書』)[69]

---

64)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65) 김남중, 앞의 논문, 2013, p.31.
66) 『삼국지』 오환전 所引 『英雄記』에서 확인되는 '以相統領'이 그 예이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烏丸 所引 英雄記. '始有千夫長、百夫長以相統領 用能悉乃心 克有勳力於國家 稍受王侯之命').
67)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p.100~101.
68) 徐毅植, 앞의 논문, 1990, pp.127~128.
69) 『後漢書』卷90, 烏桓鮮卑80, 鮮卑.

[㉮]는 166년(후한 延熹 9) 檀石槐가 후한의 변경 9개의 군을 공격한 이후에 스스로 선비의 땅을 3部로 나누었다는 기사이다. 여기서 '主領'이라는 용례가 확인된다. 이 [㉮] 구절은 그 땅을 東部, 中部, 南部 등 3部로 삼고(①), 각각 大人을 두어(②), (大人이) 그것을 主領케 하였다(③)로 구분할 수 있다. 즉, ①에서 主領의 대상이 나오고, ②에서는 主領하는 주체가 나오며, ③에서 '主領하다'로 나타난다.

主領은 아니지만 의미가 통하는 '統攝'의 구절도 참조할 수 있다. 『周書』 고려전의 기사가 그 일례이다. 『주서』 고려전에서는 고구려에 있던 城에 대해 설명하며, '遼東, 玄菟 등 수십 城이 있는데(1), 모두 官司를 두고(2), (그것을) 統攝케 하였다[以相統攝](3)'고 하였다.[70] [㉮]와 마찬가지로 統攝한 대상이 나오고(1), 統攝의 주체가 나온 다음(2), '統攝하다'가 쓰였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①을 다시 보면, 主領 앞에 대상과 주체가 나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①은 '사자로 삼은 大人'이 主領의 대상이고, '相'이 主領의 주체이며, 그 뒤에 主領이 나온 구절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71] 이로 보아도 '相'을 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①은 '고구려가 동옥저에 大人을 두고 使者로 삼았으며 相이 (그들을) 主領케 하였다'라고 해석된다.

여기서 相은,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相加라는 官名이 확인되고,[72] 東川王 4년(230) 國相에 임명된 明臨於漱를 中川王 3년(250) 相이라 하였음에서,[73] 구체적으로 國相을

---

70) 『周書』卷94, 列傳41, 異域上, 高麗. '復有遼東 玄菟等數十城 皆置官司 以相統攝'. 여기서 '以相統攝' 구절이 확인되는데, 이때의 '相'은 동작이나 행위가 단지 어느 한쪽에만 관련됨을 나타냄과 동시에 대명사의 역할을 겸한다는 설명을 참고하여 '그것을'로 해석하였다(延世大學校 虛詞辭典編纂室 編, 『虛詞大辭典』, 相, 成輔社, 2001, p.314). 이렇게 보면 『후한서』의 '以相監領'에서 '相' 또한 반드시 '서로'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한다. 그렇게 되면 '고구려가 동옥저에 大人을 두고 使者로 삼아 (동옥저를) 監領하였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삼국지』의 '相'은 본문의 분석에서 보건대 이와 같이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71) '主領'의 대상이 반드시 어떤 지역인 것은 아니다. 『漢書』卷22, 禮樂志2의 '僕射二人主領諸樂人' 구절이 대표적인 예이다.

7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官有相加'

73)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4年 秋7月. '國相高優婁卒 以于台明臨於漱爲國相' ; 中川王 3年 春2月. '王命相明臨於漱 兼知內外兵馬事'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74] 國相은 고구려 국정을 총괄하는 最高位職으로서 종래의 左·右輔를 개정하여 설정한 官職이었다.[75] 그런데 國相이 된 明臨於漱에게 中川王 3년(250)에 內外兵馬事를 兼知케 하였으므로, 國相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軍事까지 총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國相은 兵馬事 즉 軍事에 관한 업무는 국왕의 위임에 의해 더하여 겸하였고, 기본적으로는 行政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던 職으로 이해된다.[76] 이를 근거로 보건대, 동옥저에서 使者를 主領한 相은 동옥저 내에 행정과 관련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즉, 고구려왕이 임명한 相이 行政을 통괄하고 이와 별도로 部에 소속한 大加가 租賦를 '統責'하는 것이 동옥저의 지배구조라 할 수 있다.[77]

여기서 統責은 統과 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統은 읍락마다 부과된 租賦를 大加가 統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責'의 의미를 어떻게 상정하는가에 따라 大加가 租賦를 統責했다는 모습이 달라진다. 統責을 동옥저에서 수취한 租賦를 중앙으로 옮기는 과정까지로 상정할 수도 있고,[78] 아니면 수취한 바가 大加에게 귀속되는 것까지로 상정하여,[79] 일종의 식읍과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80]

일단 '責其租賦'의 용례를 보았을 때 責은 '徵收하다'로 풀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81] 이에 統責은 大加가 동옥저의 諸 읍락에서 租賦를 통괄하여 징수하는 권한을 지녔다는

---

74) 김미경, 앞의 논문, 1996, p.50.
75) 金光洙, 「高句麗의 '國相'職」, 『李元淳敎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敎學社, 1991, p.8.
76) 여호규, 앞의 책, 2014, pp.308~310 참조. 서천왕 11년(280) 王弟인 達賈(安國君)에게 內外兵馬事를 맡긴 사례를 볼 때(『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11年 冬10月. '拜達賈爲安國君 知內外兵馬事 兼統梁貊肅愼諸部落'), 國相이라고 해서 반드시 兵馬事를 管掌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兵權은 發命, 發兵, 掌兵으로 三分되고, 국왕은 최고통수권자로서 형식적으로 이 三權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지만 주로 發命權을 행사하였고, 나머지 發兵權이나 掌兵權은 측근이나 장군에게 위임하였다는 지적이 참고된다(金鍾洙, 「고구려의 軍制와 그 承繼」『歷史敎育』96, 2005, pp.107~108).
77) 徐毅植, 앞의 논문, 1990, p.128.
78)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102 ; 이정빈, 앞의 논문, 2019, p.118.
79) 김현숙, 앞의 책, 2005, p.134.
80) 김남중, 앞의 논문, 2013, p.30.
81) '責其租賦'의 용례로 본문에서 제시한 『삼국지』 읍루전의 기사가 있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挹婁.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이 외 '그 租賦(租, 租稅)'를 '責'한다는 용례는 대체로 징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의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징수한 租賦가 누구에게로 가는가에 관하여는 '大家' 관련 기사가 주목된다. 고구려의 大家는 佃作하지 않고 坐食하는 者로 下戶가 멀리서 米糧, 魚鹽을 짊어지고 그들에게 供給하였다.[82] 이때의 大家를 지배계급 곧 大加로 보기도 하고,[83] 豪民과 같은 경제적 상층민에 대한 통칭으로 이해하기도 한다.[84] 후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大加·小加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85] 그리고 이 기사를 [㈐]-②와 비교하여 보면, 租와 米糧의 대비, 魚鹽의 동일함, 그리고 멀리서[遠]에 대응할 만한 千里 등 공통점이 발견된다. 그렇다면 '大家' 관련 기사가 [㈐]-②의 '千里擔負致之'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 수 있어도, [㈐]-②의 '千里擔負致之'하는 것이 '大家' 관련 기사에서 말하는 양상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보았을 때 '千里擔負致之'하여 도착하는 곳은 大加에게라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동옥저의 諸 읍락에서 거둔 租賦는 일단 大加에게 옮겨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大加가 직접 동옥저로 내려가서 收取하는 것이 아님은 大家 기사에서 유추 가능하다. 즉, 大加는 자신의 本國에서 혹은 王都에 常住하던 시기에는 王都에서 이렇게 올라온 租賦를 취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모두 大加가 소유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추정된다. 우선 [㈐]-②에서는 大加의 이러한 권한을 '使'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使한 주체는 기사대로는 고구려인데 그것은 곧 고구려왕을 가리키는 것일 테니, 大加의 租賦統責權은 고구려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 보아야 한다. 그런데, 고구려가 국가의 역량을 동원하여 주변 세력을 통합한 데에는 대내외 정세를 안정화하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수취 기반을 확대하려는 목표도 있었을 것인데,[86] 동옥저에서 거둔 租賦를 모두 大加에게 주고 고구려왕은 수취를 배제한 채 相을 통한 행정적 지배만 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리

8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83) 金洸鎭, 「高句麗社會の生産樣式—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普專學會論集』3, 1937 ; 김지현 譯, 「고구려 사회의 생산양식—국가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전통문화연구』15, 2015, p.319.
84) 文昌魯,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2000, pp.216~220.
85) 여호규, 앞의 책, 2014, p.375.
86)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p.102~103.

고 '租賦'라고 함에서 분명히 나타나듯,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과하여 납부케 하는 구실이다. 따라서 원리상 동옥저에서 거둔 租賦는 국가로 납부되었다고 보아야 타당하다. 언뜻 서로 간에 모순된 결과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일단 收取를 하려면 그 전에 일정한 양을 諸 읍락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租賦 부과를 위한 나름의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다. 이는 각기 邑落의 현황을 고구려가 파악해야 하고, 파악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문제는 이러한 파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諸 읍락에 둔 大人을 使者로 삼아서 相이 主領케 하였다는 기사를 다시 주목할 수 있다.

해당 읍락의 종래 渠帥와 같은 지배자 혹은 그에 준할 만한 有力者를 大人으로 두었던 것을 보면, 고구려가 직접 관리를 파견해서 해당 읍락의 현황을 파악한 것 같지는 않다. 추정컨대, 大人을 매개로 하여 해당 읍락의 상황을 파악하였을 것이다. 동옥저의 戶가 5천이라고 하고,[87] 부여의 사례이나 諸加가 四出道를 別主하였는데 大者는 수천 家요 小者는 수백 家라 하여 그 기준이 '家'인 것을 보면,[88] 이때 파악한 현황에는 戶口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기전 2세기 후반 예군남려 등이 이미 28만 口로 그들의 지배 대상을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고구려가 동옥저를 지배할 때에도 그러하였다고 보아야 합리적이다.

그런데 읍락의 현황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담당자인 大人은 使者가 되어, 租賦를 統責한 大加가 아닌 相의 主領을 받았다. 이는 大人이 파악한 해당 읍락의 사정을 大加가 아니라 相이 관리하였음을 뜻한다. 즉, 이를 기초로 租賦를 부과하는 명분상 주체는 고구려왕이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부과된 租賦는 결국에는 국가로 납부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추론을 통해 본다면, 읍락에서 수취한 租賦는 租賦統責權을 지닌 大加에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大加는 이를 다시 국가에 납부하는 체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五部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던 고구려의 정치체제와 유사하였다고 이해되는 신라에서 초기 정복 지역을 어떻게 지배하였는지가 시사점을 제공한다.

---

87)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 '戶五千'
88)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諸加別主四出道 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신라의 諸干은 部를 단위로 결합하여 諸 邑落이 부담할 租賦의 양을 조정하고 결정하였으며 그 납부를 책임졌고, 국가는 그에 대한 수취를 干層에 위임하고 일정 액수의 稅收를 보장받음으로써 안정된 國政 운영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諸干의 수취가 혹독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가급적 이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정복 지역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꾀하였다.[89]

신라의 이러한 정복 지역 지배방식은 고구려에 새로 편입한 지역에 대한 지배방식과 대체로 동일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과 결부하여 다음과 같이 수취 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해당 읍락의 수취량은 相이 총괄적으로 파악·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租賦統責權을 지닌 大加에게 이에 따른 해당 읍락에 대한 실질 징수를 위임하였다. 大加는 넘겨받은 현황을 바탕으로 해당 읍락에서 징수를 하였다. 그런데 이때 실제 징수하는 양이 꼭 기준대로만은 아니었을 수 있다. 大加는 어디까지나 정해진 양을 납부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얼마를 더 걷어서 자신의 것으로 남길 수도 있었다고 사료된다. 물론 그것이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꽤나 혹독할 만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大家不田作 下戶給賦稅如奴'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기사로 읽을 수 있다.[90]

그런데 大加가 정해진 부과량 외에 恣意的으로 거두려는 목적만으로, 수취한 租賦가 大加에게 먼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租賦의 납부 과정이 邑落→大加→國家의 순서였다면, 이는 나라에서 인정한 체계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大加가 추가 이득을 남기는 것을 묵인하려고 이러한 체계를 세웠다고 보기에는 어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이 租賦統責權이 '大加'에게 許與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小加는 租賦統責權을 가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매우 유사한 경우가 하나 있다. 大加만 사자, 조의, 선인을 自置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大加가 自置한 관원이 大加 자신의 지배를 위한 조직이 아니라 部 운영에 관계한 조직이라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91] 이에 비추어 보건대, 大加에게 許與된 租賦統責權 또한 大加 그 자신의 지배기

89) 서의식, 「'中古'期 冷水里碑文의 '節居利'와 干의 租賦統責」, 앞의 책, 2010, p.192.
90) 『太平御覽』卷783, 四夷部4, 東夷4, 高句麗. '大家不田作 下戶給賦稅 如奴'

반에만 한정되는 권한은 아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大加의 관원 自置權과 租賦統責權이 짝지어진다는 점에서, 그 권한 역시 部 운영을 위한 경비 마련과 일정한 상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大加에게 租賦統責權이 있는 읍락에서 거둔 租賦는, 국가 운영을 위한 경비와 해당 大加가 속한 部 운영을 위한 경비, 두 가지 차원에서 쓰이는 財源이었다고 유추 가능하다. 租賦가 邑落→大加→國家 순으로의 납부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해당 읍락의 현황을 토대로 부과할 수 있는 租賦의 양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나름의 협의를 거쳐 국가 운영 경비와 部 운영 경비를 나누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大加는, 자신에게 統責權이 있는 諸 읍락에서 거둔 租賦가 들어오면, 일단 여기에서 사자, 조의, 선인 등 관원조직의 운영을 포함한 部 운영 경비로써 결정된 얼마간은 두고, 나머지는 다시 국가에 납부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 기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 고구려의 동옥저 지배방식을 통해 그 지배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고구려는 태조대왕 4년(56)에 동옥저를 정벌하였다.[92] 그리고 동옥저를 '城邑'으로 삼았다고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동옥저의 지배구조는 고구려가 城邑으로 삼은 지역에 대한 그것이라고 추정된다. 동옥저 외에도 荇人國이나,[93] 北沃沮를 정벌한 기사에서도,[94] 고구려가 해당 지역을 城邑으로 삼았다고 전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한 정벌 이후 지배 방식 또한 대체로 유사하였다고 짐작된다.

물론 새로 유입된 모든 영역이 동옥저와 같이 행정권과 租賦統責權이 분리되어 지배하는 구조를 이루었으리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고구려왕이 행정권과 租賦統責權을 모두 소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로 주목되는 것이 蓋馬國의 정벌 및 郡縣의 설치이다. 대무신왕은 재위 9년(26)에 蓋馬國을 親征하여 그 왕을 죽이고 그 땅을

91) Ⅱ장 3절 참조.
92)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4年 秋7月. '伐東沃沮 取其土地爲城邑 拓境東至滄海南至薩水'
93)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6年 冬10月. '王命烏伊 扶芬奴 伐大白山東南荇人國 取其地爲城邑'
94)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0年 冬11月. '王命扶尉猒 伐北沃沮滅之 以其地爲城邑'

郡縣으로 삼았다.[95] 郡縣制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가 파견된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통치방식이다. 군현제의 기본 원리가 이러하므로, 대무신왕이 개마국을 군현으로 삼았다는 기사 또한, 기본적으로 고구려왕의 명에 의해 임명된 관리를 통한 직접지배가 관철되는 지역으로 삼았다는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96] 따라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정복 지역에 대한 행정권 및 租賦統責權이 모두 고구려왕에게 있었을 것이다. 다만 郡縣으로 삼았다는 기사는 개마국 한 건뿐이고, 이에 비해 城邑을 삼았다는 기사가 많은 점을 고려한다면, 대체로 王部 교체 이후 정복 지역에 대한 지배 방식은 城邑 즉 동옥저의 지배 방식과 같은 구조에서 이루어졌다고 이해된다.[97]

동옥저에서와 같이 해당 지역 지배에 대한 권한을 分有하는 경우와 蓋馬國과 같이 고구려왕이 모든 권한을 지니는 경우의 차이는 해당 지역을 통합하는 데 기여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기여로는 통합을 위해 투여된 軍事力을 상정할 수 있다. 故國川王 13년(191) 左可慮 등이 반란을 일으키고 王都를 공격하였다는 사실에서,[98] 諸加가 독자적 군사력을 보유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太祖大王 20년(72) 藻那를 정벌할 때와 同王 22년(74) 朱那를 정벌할 때 동원된 군사력을 각각 貫那部와 桓那部의 독자적 군사력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참고가 된다.[99] 이와 같은 見地에서 해석한다면, 대외 통합에서 諸加의 군사력이 동원되었을 때, 이를 포함한 功績 등을 논의하여 해당 지역의 지배권 중 특히 租賦統責權이 大加에게 부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王部 교체 이후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가면서, 새롭게 편입·확장된 영

95)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9年 冬10月. '王親征蓋馬國 殺其王 慰安百姓 毋虜掠 但以其地爲郡縣'

96) 정복한 국가의 왕을 죽이고 군현을 두는 방식은 춘추시대 처음으로 縣이 등장하던 때의 양상과 유사한데, 당시에는 君長이나 國君을 제거하고 縣을 삼은 뒤 管領者를 파견하였고 내부의 질서는 유지되었다(김남중, 앞의 논문, 2013, p.32).

97) 國相은 차대왕 2년(166)에 신설된 관직이다(『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拜答夫爲國相 加爵爲沛者 令知內外兵馬 兼領梁貊部落 改左右輔爲國相 始於此'). 이에 근거하여 보면 서기 2세기 후반에 相이 使者를 主領하는 존재로 등장할 수 있다. 國相이 左·右輔를 고쳐 신설한 관직이므로, 그 이전에는 左·右輔가 그 임무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98)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3年 夏4月. '聚衆攻王都 王徵畿內兵馬平之'

99) 여호규, 앞의 책, 2014, pp.34~34.

역에서 大加가 租賦統責權을 얻을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租賦統責權의 획득은 大加에게, 뿐만 아니라 小加에게도 매우 긴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사료된다. 그 권한이 部 운영을 위한 경비 마련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엔 部에 소속한 諸加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租賦統責權의 획득 유무를 떠나, 諸加는 部의 운영과 국가의 운영을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諸 읍락에서 수취한 것의 일부를 납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大加에게 租賦統責權이 許與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정복 지역에서 거둔 租賦를 통해 部 운영의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자연 해당 部에 소속한 諸加가 부담해야 할 양 또한 輕減되었을 것이다. 만약 더욱 더 많은 곳에서 統責權을 얻어 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보다 많은 양을 확보한다면, 이를 통해 諸加는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다.

따라서 고구려왕이 정복 사업의 실시와 같이 세력권 확장을 제안하였을 때, 諸加가 주체적·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겠고, 때로는 諸加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고구려왕에게 그것을 제안함으로써 정복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의 분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였겠다. 혹 部內 大加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고구려왕과 결탁 혹은 그에 의지하여 部內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加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諸加 간 優劣을 심화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사자, 조의, 선인 등 관원조직을 自置하는 것과는 달리, 租賦統責權은 大加가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록 수취한 租賦가 명분상 部 운영에 쓰이는 재원이라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大加는 諸 읍락에서 임의로 추가 수탈하여 그 차익을 자신의 기반으로 남겨둘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이 大加에게만 부여되었으므로, 특히 大加와 小加 사이에는 점차 경제적 기반의 격차가 커졌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전제되는 諸加 사이의 동등성·평등성에 점차 균열을 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100] 그 정치체제가 변동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사료된다.

3. 諸加層의 관료 진출과 관등제의 운영

고구려는 諸加가 連帶하여 건설한 나라이며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조직이 部였다. 이에 기초한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던 때에는 部에 소속한 諸加의 共論을 바탕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王部 교체 이후 처해 있던 시대적·역사적 환경으로 인해 고구려는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갔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간 고구려 왕의 권위는 높아졌고 政治權力의 集中化가 발생하였다. 한편, 정복 지역에서 許與되는 租賦統責權의 획득은 諸加가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문제였다. 태조대왕 시기부터 部를 관칭하는 인물들이 본격적으로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는 加와 관련한 기록이 古鄒加 관련 자료와 중국사서에 바탕을 둔 자료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101] 때문에 部를 관칭하고 있는 인물들이 諸加인지 아니면 그들의 子弟인지, 혹은 이들과 친족 관계에 있으나 加의 지위를 더 이상 이어받을 수는 없는 인물인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들을 일단 '諸加層'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서 部를 관칭한 인물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이들이 관등을 수여받아 국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102] 관등과 관련하여 그간 주목받아 온 것이『삼국지』에서 전하는 고구려 官名에 관한 기사이다.

---

100) 신라에서 또한 干이 國政에 참여함으로써 본래의 지배영역 외에 국가적 지배구조에 참여하여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 새로운 기반의 개척에 있어 매우 유리한 정치적 위치를 점하였을 것이며, 이것이 諸干 상호간에 전제되고 있던 평등성을 점차 해치게 되는 단서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徐毅植,「新羅上代 '干'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p.34).

101) Ⅱ장 3절 참조.

102) Ⅱ장 2절 참조.

[㈏-1]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雛加 主簿 優台 丞 使者 皁衣 先人 尊卑各有等級(『三國志』)[103]

[㈏-2] 其置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大加 主簿 優台 使者 帛衣 先人(『後漢書』)[104]

[㈏-3]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加 主簿 優台 使者 皁衣 先人(『梁書』)[105]

[㈏-4] 其置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雛大加 主簿 優台 使者 皁衣 先人(『通典』)[106]

[㈏-5]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加 主簿 優台 使者 皁衣 先人(『南史』)[107]

『삼국지』에는 相加, 對盧, 沛者, 古雛加, 主簿, 優台, 丞, 使者, 皁衣, 先人 등 10개의 官名이 확인된다([㈏-1]). 이때의 丞을 고구려에 실재한 官으로 파악하기도 한다.[108] 하지만 『삼국지』 동이전은 『魏略』의 기사를 4분의 3 이상 참고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109] 『후한서』는 『위략』 혹은 이에 기반한 『삼국지』를 참고하여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110] 『후한서』에서는 丞이라는 官名이 나타나지 않는다([㈏-2]).

『양서』([㈏-3]), 『통전』([㈏-4]), 『남사』(㈏-4))에 기록된 官名을 살펴보면, 『삼국지』와 『후한서』의 文句와 기재 순서 등에서 유사함이 확인된다. 즉 이들 사서는 『삼국지』나 『후한서』를 참고하여 고구려 官名을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 자료에서 역시 丞이라는 官名이 발견되지 않는다. 만일 '丞'이 있었다면 『삼국지』와 『후한서』 기록 중 하나를 취사선택한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모두 丞을 제외한 관명만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111] 이는 당시 참고한 『삼국지』에 丞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지 않았을 가능

103)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04) 『後漢書』卷85, 東夷列傳75, 高句驪.
105) 『梁書』卷54, 列傳48, 諸夷, 高句驪.
106) 『通典』卷186, 邊防2, 東夷 下, 高句麗.
107) 『南史』卷79, 列傳69, 夷貊 下, 高句麗.
108) 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中央政府組織」 『東方學志』33, 1982, pp.46~47.
109) 全海宗, 『東夷傳의 文獻的 硏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1980, p.149.
110) 『후한서』가 『위략』을 참고하여 저술되었다는 견해는 高柄翊, 「中國歷代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 『大東文化硏究』2, 1966, p.18 참조. 이에 반해 『후한서』는 『위략』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삼국지』 동이전과 이에 대한 裴松之의 注文에 의거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尹龍九, 「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 『한국고대사연구』14, 1998, pp.149~150).
111) 『資治通鑑』에 注를 가한 胡三省(1230~1302)이 고구려의 官을 설명할 때, 『후한서』 기록에 따르면 帛衣인 것이 『삼국지』에서는 皁衣라 하였다고 한 것도 참고된다(『資治

성이 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따라서 고구려 관명에 삽입된 丞은 衍字로 여겨지며, [㈏-1]은 丞을 제외한 9개 官名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112]

9개의 官名 중에서 相加와 古雛加는 그 語形에서 '加'가 확인된다. 그리고 使者, 皂衣, 先人은 大加가 自置한 官名으로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왕과 大加에게 속하여 그들에게 從仕하는 자들(이하 從仕者層)이 담당하였다고 유추된다. 그러므로 남은 對盧, 沛者, 主簿, 優台 등이 諸加層에게 수여되는 관등이었다고 추정된다.[113] 이와 같이 구분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沸流那 皂衣 陽神과 椽那 皂衣 明臨答夫의 사례이다. 太祖大王 80년(132) 遂成에게 왕위 찬탈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당시 陽神은 皂衣를 소지하였는데,[114] 遂成이 次大王으로 즉위하자 그는 于台(=優台)에 올랐다.[115] 明臨答夫는 次大王을 시해한 인물로, 시해 당시 그 역시 皂衣였다가[116] 차대왕의 뒤를 이어 新大王이 즉위하자 沛者로 승진하였다.[117] 使者, 皂衣, 先人 등이 從仕者層에게 수여된 관등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을 從仕者層으로 볼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두 인물은 從仕者層으로서 諸加層이 지니는 관등에 올랐다고 해석될 수도 있다.

이를, 2세기의 皂衣는 본래 優台나 沛者를 수여받던 那部 내 那國 단계의 세력집단과 동질적이면서 가장 소규모인 개별 나집단에 수여되던 관등이었다가 3세기 중엽 경에는 大加의 예속적인 관원으로 격하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118] 국왕 예하의 사자, 조의, 선인이 다른 大加의 家臣과 차별적 위상을 갖게 되면서 다른 집단의 수장적

通鑑』卷72, 魏紀4 烈祖明皇帝. '句麗有相加 對盧 沛者 古鄒大加 主簿 優台 使者 帛衣 先人 帛衣 三國志作 皁衣). 만일 胡三省이 본 『삼국지』에 丞이 적혀 있었다면, 이 차이 또한 설명을 가하였을 것이다. 이 점에서도 丞은 衍字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112) 金哲埈,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b), p.126.

113) 使者, 皂衣, 先人은 幕僚的 從仕者層, 『삼국지』에 기록된 相加부터 優台 등은 貴族的 政治參與層의 所任으로 구분한 견해가 참고된다(서의식, 「6~7세기 新羅 眞骨의 家臣層과 外位制」, 앞의 책, 2010, pp.471~472, pp.476~77).

114)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年 秋7月.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 於是 貫那于台彌儒 桓那于台菸支留 沸流那皂衣陽神等 陰謂遂成曰 …'

115)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年 冬10月. '沸流那陽神爲中畏大夫 加爵爲于台'

116)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0年 冬10月. '椽那皂衣明臨答夫 因民不忍 弑王'

11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拜答夫爲國相 加爵爲沛者 令知內外兵馬 兼領梁貊部落'

118) 여호규, 앞의 책, 2014, pp.212~213.

존재들이 국왕의 臣的 존재로 편입되어 국가 차원의 관등인 사자, 조의, 선인을 수여받기도 하였다고 추정하기도 한다.[119] 또는 당시 고구려의 官制가 신분제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지만 高位로 나갈 수 있는 상한선에 제한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120]

陽神과 明臨答夫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 먼저 '加'層이라고 해서 반드시 于台 관등부터 수여받았던 것은 아닐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후대의 자료이기는 하나 泉男生이 9세에 先人이 되고, 泉獻誠 또한 9세에 先人에 除授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121] 고구려 후기에도 先人은 관등체계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한 初職으로 이해된다.[122] 그런데 泉獻誠은 泉男生의 아들이고 泉男生은 淵蓋蘇文의 아들이며, 연개소문은 그의 아버지가 東部(혹은 西部) 大人 大對盧였으며, 아비가 죽자 그 지위를 이어받았던 인물이다.[123] 그의 아비가 당시 고구려 최고 관등인 大對盧에 있었던 것을 보아도,[124] 연개소문 및 그의 자손이 당대 高貴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 집안의 子弟가 最下位 관등에서부터 入仕하였다. 이는, 이들이 가문의 榮譽와 정치적 배경에 힘입어 上限이 없이 높은 관등 및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겠지만,[125] 그렇다고 처음부터 항상 높은 관등 및 관직부터 入仕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고구려 말기의 상황이므로, 신분체제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이러한 양상을 곧바로 앞선 시기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 고구려인의 관료 진출 및 승진 과정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는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신라에서는 일정 관등 이상의 진급을 제한하고 그 밑 관등에서 곁가지로 승진시키기 위해 重位制가 설치되었는데,[126] 이는 일정 관등 이상을 소지할 수 있는 자는

---

119)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p.157~160
120) 琴京淑, 『高句麗 前期 政治史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4, pp.76~78.
121) 「泉男産墓誌銘」. '年始九歲 卽授先人' ; 「泉獻誠墓誌銘」. '九歲在本蕃 卽拜先人之職'
122) 이동훈, 『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2019, pp.60~62.
123) 『三國史記』卷49, 列傳9, 蓋蘇文. '其父東部 或云西部 大人 大對盧死 蓋蘇文當嗣 而國人以性忍暴 惡之不得立 … 蘇文頓首謝衆 請攝職 如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許嗣位'
124) 『翰苑』, 蕃夷部, 高麗, 部貴五宗, p.210. '高麗記曰 其國建官有九等 其一曰吐捽 比一品舊名大對盧 總知國事 …'
125) 이동훈, 앞의 책, 2019, p.63.
126) 서의식, 「新羅 重位制의 展開와 支配身分層의 變化」, 앞의 책, 2010.

그 밑의 관등을 포함하여 제한 없이 승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즉, 고구려나 신라는 특정층이 일정 이상의 관등을 소지할 수 없었고, 특권층은 그러한 제한을 두지 않았다고 추측된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陽神과 明臨答夫 또한 初出 관등인 皂衣보다는 승진 관등인 于台와 沛者 관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한편 皂衣 관등이 고구려 후기에 가면 사라지고,[127] 機密을 관장하고 政事를 모의하며 兵馬를 징발하고 官爵을 수여받는 고위 관등 중 하나로 종3품에 비견되는 皂衣頭大兄이 나타난다는 점도 주목된다.[128] 고구려에는 「집안고구려비」에 나타난 烟戶頭나 평양성 석각에서 보이는 百頭와 같이 '○頭'와 같은 표현이 있는데, 이 '頭'는 어떤 役을 수행할 때 책임자를 일컫는 용어로 추정된다.[129] 이에 비추어 보면, 皂衣頭大兄은 皂衣를 관장하는 우두머리라는 직책에서 비롯된 官位로, 국왕의 신변을 호위하던 皂衣와 함께 이들을 통솔하는 상급관직으로서 皂衣頭라는 직책, 여기에 후기 관등인 大兄이 결합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130] 大兄은 『삼국지』에는 보이지 않는 관등이기도 하고, 3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官名이므로 처음부터 皂衣頭大兄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皂衣頭와 같이 皂衣를 통솔하는 職이 고구려 초기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된다.[131] 그리고 皂衣頭에 '使者'官名이 아니라 諸加의 성격이 변모하면서 성립한 兄系 官名이 결합된 것을 보면,[132] 皂衣頭의 職務는, 兄系 관등이 성립하기 전에는 대체로 '加'層에서 맡았다고 추측된다.

---

127) 고구려 후기에 皂衣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官等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先人과 같은 하위 관직의 형태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이동훈, 앞의 책, 2019, p.64).

128) 『翰苑』, 蕃夷部, 高麗, 部貴五宗, pp.210~211. '次皂衣頭大兄 比從三品 一名中裏皂衣頭大兄 東夷相傳 所謂皂衣先人者也 以前五官 掌機密謀政事 徵發兵馬 選授官爵'

129) 정호섭,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 『한국고대사연구』70, 2013, pp.119~121.

130) 정호섭, 앞의 논문, 2013, p.121 ; 이동훈, 앞의 책, 2019, pp.73~74 참조.

131) 陽神과 明臨答夫가 소지한 皂衣는 皂衣先人들을 統領하는 大臣으로 皂衣頭大兄의 略이며, 新進官吏의 最初級인 皂衣를 訓練하기 위하여 大臣 中 一人이 大兄의 品位를 가지고 皂衣의 頭가 되어 그 職을 掌하던 것임이 지적된 바 있다(鄭寅普, 『朝鮮史硏究』下, 1947(『薝園 鄭寅普全集』4,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p.32~33).

132) 兄系 관등이 諸加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성립하였다는 지적은 윤성용,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11, 1997, pp.347~349 참고.

이러한 정황을 고려한다면, 陽神과 明臨答夫는 皂衣 관등을 소지하면서 諸 皂衣를 統率·管掌하는 重任을 맡았던 '加'層이었을 가능성을 지적해 볼 수 있다.[133] 그리고 이들은 각각 次大王과 新大王이 왕위에 오르는 데 공로를 인정받아 각기 于台와 沛者로 進級하였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陽神과 明臨答夫 또한 기본적으로 제가층의 범주에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 拜貫那沛者彌儒爲左輔(『三國史記』)[134]

[㉮-2]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 於是 貫那于台彌儒 桓那于台菸支留 沸流那皂衣陽神等 陰謂遂成曰 …(『三國史記』)[135]

[㉮-3] 左輔穆度婁 稱疾退老 以桓那于台菸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三國史記』)[136]

그런데 沛者, 主簿, 優台 관등 사이에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에서 于台 → 沛者·(大)主簿의 관계가 확인된다. 次大王 2년(147) 左輔(→右輔)에 임명될 당시 彌儒는 沛者였는데([㉮-1]),[137] 태조대왕 80년(132) 遂成과 倭山에 사냥을 나갔을 때 그가 소지한 관등은 于台였다([㉮-2]). 즉, 于台 관등을 소지하였던 彌儒가 어느 사이엔가 沛者로 승진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 于台 → 沛者의 관계가 상정된다. 그리고 菸支留는 左輔에 임명되면서 于台에서 大主簿로 승격되었다([㉮-2], [㉮-3]). 菸支留의 사례에서 于台 → 大主簿로의 승진이 나타난다.

[㉯-1]에서 남은 官名인 相加는 '相의 직능을 지닌 加',[138] '國相인 加'로 해석되어,[139] 加로서 相(=國相)의 관직에 있는 자를 특히 이르는 표현으로 여겨진다. 古鄒加

133) 陽神이나 明臨答夫는 비록 관등은 낮았지만, 그 신분이나 세력 기반은 諸加 나아가서는 大加級에 버금가는 인물로 본 견해도 참고된다(임기환,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p.131).
134)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年 春2月.
135)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年 秋7月.
136)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年 秋7月.
137) [㉮-1]에서는 彌儒가 左輔에 임명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同年 7월에 左輔 穆度婁가 은퇴하고 菸支留가 左輔에 임명되는 것으로 보아, 彌儒가 임명된 관직은 右輔로 추측된다(여호규, 앞의 책, 2014, p.304).
138) 金光洙, 앞의 논문, 1991, p.6.

는 후술하겠지만 嫡統의 繼承과 관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沛者, 主簿, 于台는 특히 제가층에게 한정된 官等的 性格이 강한 官名으로 이해된다.[140]

『삼국지』에서는 相加에서부터 先人까지를 '官'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들 官을 소지하였음은 곧 왕과의 군신 관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141] 그런데 당시 각 官이 官等, 官職 등으로 명확히 구분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이해되며 다분히 爵位的인 측면이 있었음도 지적된다.[142] 기록상으로도 앞서 살펴본 皂衣에서 于台로, 于台에서 沛者·(大)主簿로 진급하는 것을 '加爵' 혹은 '進爵'이라 하였다.[143] 이에 고구려의 관등제가 초기에는 지배세력을 편제하는 기능 또한 있었으리라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이때의 지배세력을 諸加로 환언한다면 고구려왕과 諸加의 관계, 그리고 諸加 상호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序階化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144] 결국, 관등제의 운영은

---

139) 여호규, 앞의 책, 2014, p.280. 相加를 '相과 加'로 나누어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中央政府組織」『東方學志』33, 1982, pp.32~38). 다만, 『삼국지』 고구려전에서 加가 古雛加, 大加, 小加, 諸加 등 주로 접미어로 사용되었고, 加가 지배세력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사용된 시기를 고려할 때 加가 단독으로 특정 관명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여호규, 앞의 책, 2014, p.280).

140) 고구려 초기 관등제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사안 중에 하나가 對盧와 沛者와의 관계이다. 『삼국지』에 따르면 고구려에서는 官을 둘 때 대로가 있으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가 있으면 대로를 두지 않았다(『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置官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대로는 百濟本紀에서 蓋鹵王 21년(475)에야 初出하며, 고구려본기에서는 寶藏王 4년(645)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로가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성격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연구자마다 각기 多岐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3세기 이전 시기에도 대로가 나타나지 않지만, 시기를 더욱 넓혀도 5세기, 고구려본기에 초점을 두면 7세기까지 여전히 그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승진의 형태가 대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접근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別稿를 기약하고자 한다. 다만 이것이 종사자층에게 수여되는 官은 아니었음이 분명해 보이므로, 여기서는 일단 제가층에게 수여된 官으로 이해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

141)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pp.154~155.

142) 노태돈, 앞의 책, 1999, p.149, p.154 ; 이준성, 「고구려 초기 대가(大加)의 성격과 상위 관제(官制)의 작적(爵的) 운영」『동북아역사논총』53, 2016 ; 이동훈, 앞의 책, 2019, pp.34~49.

143)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年 秋7月. '以桓那于台於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 ; 次大王 2年 冬10月. '沸流那陽神爲中畏大夫 加爵爲于台' ;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拜答夫爲國相 加爵爲沛者' ;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3年 秋9月. '以南部大使者倉助利爲國相 進爵爲大主簿'

고구려왕과 諸加와의 관계를 염두에 둘 때 그 운영 원리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주목되는 것이 '主簿大加'의 존재이다.

[㉮-1] 王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將兵助玄菟大守公孫度 討富山賊(『三國史記』)[145]

[㉮-2] 伯固遣大加優居 主簿然人等 助度 擊富山賊 破之(『三國志』)[146]

[㉮-3] 魏大傅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王遣主簿大加 將兵千人助之(『三國史記』)[147]

[㉮-4] 遣太傅司馬宣王 率衆討公孫淵 位宮遣主簿大加 將兵千人助軍(『梁書』)[148]

新大王 5년(169) 현도태수를 도와 富山賊을 토벌할 때 병사를 거느리고 나선 인물로 大加 優居와 主簿 然人이 나타난다([㉮-1], [㉮-2]). 그리고 동천왕 12년(238) 司馬宣王이 무리를 모아 公孫淵을 토벌할 때에는 '主簿大加'를 보내어 병사를 거느리고 司馬宣王을 돕게 하였다([㉮-3], [㉮-4]). 여기서 '主簿大加'를 主簿와 大加 2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主簿大加 1인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1]과 [㉮-3]은 [㉮-2]와 [㉮-4]를 참고하여 기록한 것이다. [㉮-2]에서는 분명히 大加와 主簿를 2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에, [㉮-3]의 '主簿大加' 또한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主簿와 大加 2인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런데 '主簿大加'가 2인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1], [㉮-2]와 같이 '將兵'의 주체를 밝힐 때에는 그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王이 '將兵'케 할 누군가를 '遣'한다는 내용을 기록할 때에 그러하다.[149] [㉮-1]이 그러한 용례의 하나이다.

---

144) 노태돈, 앞의 책, 1999, p.154.

145)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5年.

14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47)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東川王 12年,

148) 『梁書』卷54, 列傳48, 諸夷, 高句驪.

149) 遣의 대상으로 대표자 한 명만 기록하고 그 외에는 '等'으로 표기하는 용례도 있다. 이와 유사한 용법이 『후한서』의 '句驪 蠶支落大加戴升等萬餘口 詣樂浪內屬' 기사이다. 만일 만여구를 모두 戴升이 거느렸다면 書例로 보아 '等'이 아니라 '將'하였다고 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은 '主簿大加'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戴升에 관한 지적은 鄭寅普, 『朝鮮史硏究』上, 1946(『薝園 鄭寅普全集』3,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pp.295~296 참고.

[㉮-4] 其公會 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幘 如幘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三國志』)[150]

[㉮-5] 魏略曰 又以十月會祭天 名曰東盟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 以占吉凶 大加著幘 如幘無后 其小加著折風 形臺弁(『太平御覽』)[151]

『삼국지』에서는 고구려의 官을 기술하며 그 중 하나인 主簿를 적시하였다.[152] 또한 公會 시 복장을 기술하며 幘을 쓰는 대상으로 '大加主簿'를 설명하고 있다([㉮-4]의 ㉠). '其小加著折風 形如弁'과 비교하여 보면([㉮-4]의 ㉡), 小加와 大加가 對句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때 '大加主簿'는 '大加와 主簿'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太平御覽』에서 전하는 『魏略』의 기록에 따르면, 10월 祭天 시 大加는 幘을 쓰고, 小加는 折風을 쓴다고 하여([㉮-5]), 大加와 같은 복식을 하는 主簿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로써 보아도 [㉮-4]의 大加와 主簿는 별개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 또한 大加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 主簿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같은 이해에서라면 [㉮-3]의 '宮遣主簿大加 將數千人助軍'에서도, 설혹 앞서 優居, 然人과 같이 그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主簿와 大加를 나누어 보고 宮이 主簿大加 '等'을 보냈다는 식으로 써야 자연스럽다. 이 점에서 볼 때, [㉮-3]의 '主簿大加'는 '主簿와 大加'가 아니라 '主簿인 大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主簿인 大加를 특히 '主簿大加'로 칭하였다는 것은, 主簿가 아닌 大加도 있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大加가 아닌 主簿도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主簿大加'의 사례를 통해 고구려에서 主簿 계통의 지위와 大加 즉 加 계통의 지위가 서로 구분되어 쓰이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세기 중반까지도 사정이 이러하였다면, 이렇게 구분되는 지위는 이전부터 유지되어 왔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고국천왕 12년(190) 당시 왕후의 親戚이었던 於畀留가 소지한 관등은 沛者였

15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51) 『太平御覽』卷783, 四夷部4, 東夷4, 高句麗.
15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其官有相加 對盧 沛者 古雛加 主簿 優台 丞 使者 皁衣 先人'

다.[153] 그리고 同王 2년(180) 왕후를 맞아들일 때 그 아비는 提那部(=掾那部) 于素였다.[154] 이때 于素는 『삼국지』에서 世世토록 왕과 혼인하여 古雛의 號를 더할 수 있는 絶奴部의 大加였음을 알 수 있다.[155] 즉, 于素는 별다른 관등을 소지하지 않고 大加의 지위로서 王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於畀留의 사례를 다시 보면, 于素의 딸이 왕후가 된 지 10년 뒤의 일이므로, 于素의 아비가 아직 생존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만약 於畀留가 于素에 이어 大加의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었고 그래서 그를 沛者라고 하였다면, 역으로 于素 또한 沛者라고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于素는 관등을 소지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沛者 또한 加 계통과는 별개의 지위로서 수여된 관등이었다고 해석된다. '主簿大加'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主簿와 沛者와는 별도의 加 계통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 면모가 확인되는 것이다.

于台와 관련하여서는 태조대왕 16년(68) '曷思王孫' 都頭가 來降하였을 때 그를 于台로 삼은 기록이 주목된다.[156] 이때 '曷思王孫'의 曷思王은, 대무신왕 5년(22) 갈사국을 세운 史失其名한 부여왕 帶素의 아우를 가리키며 그를 '是爲曷思王'이라 하였으므로,[157] 史失其名한 그의 이름을 대신하여 쓴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도두가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다고 하였으므로, '曷思王孫都頭'는 대무신왕 5년(22)에 갈사국을 세운 曷思王의 손자이자 현재 갈사국의 왕인 도두를 의미한다.

갈사국은 대무신왕 5년(22) 金蛙의 季子가 從者 백여 인을 이끌고 鴨淥谷에 이르러 海頭王을 살해하고 그 百姓을 취하여 성립한 나라였다. 從者 백여 인의 규모에서 짐작되듯, 갈사국이 성립하였을 당시의 세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결국엔 고구려에 내투한 것을 보면, 투항 당시에도 세력 면

153)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2年 秋9月. '中畏大夫沛者於畀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154)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2년 春2月.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15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156)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16年 秋8月. '曷思王孫都頭 以國來降 以都頭爲于台'
157)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夏4月. '扶餘王帶素弟 至曷思水濱 立國稱王 是扶餘王金蛙季子 史失其名 初帶素之見殺也 知國之將亡 與從者百餘人 至鴨淥谷 見海頭王出獵 遂殺之 取其百姓 至此始都 是爲曷思王'

에서 그다지 큰 성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曷思國의 지배자가 王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도두 또한 加로서 독자 영역을 지배하던 자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도두는 투항 이후 고구려로부터 加로서 대우받았을지 의문이 생긴다. 기록상으로 보면 도두는 于台로 삼았다고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태조대왕 22년(74) 朱那를 정벌하여 그 王子 乙音을 古鄒加로 삼은 일이 참고가 된다.[158] 古鄒加는, 前王室의 適統大人이 古雛加를 칭할 수 있었고,[159] 古鄒加 再思, 古鄒加 咄固, 古鄒大加 助多가 각각 유리왕의 아들, 서천왕의 아들, 장수왕의 아들로서, 그들의 아들인 태조대왕, 미천왕, 문자명왕이 왕위에 오르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점에서,[160] 嫡統의 繼承과 관련한 호칭으로 이해된다.[161] 乙音이 그 나라의 '王子'라는 점에서도 이러한 면이 확인된다. 그리고 絶奴部에서 세세토록 왕과 혼인을 하니 '古雛'의 칭호를 더한다고 하였으므로 '고추가'는 '고추+가'의 형태이니,[162] 乙音을 古鄒加로 삼았다는 것은 곧 정벌된 이후에도 朱那에서 계속 加(=王)의 지위를 잇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3세기 중반 古鄒加는 王의 宗族으로서 大加, 前王室의 適統大人 및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고 있던 絶奴部 소속의 大加에게만 한정된 칭호로 사용되었다. 이후에도 王室에서는 여전히 古鄒加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古鄒加를 칭하는 범주가 시기를 더할수록 좁혀지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이 점에서 古鄒加의 수여 범주는, 朱那의 王子가 정벌되던 1세기 후반에는 3세기보다 더욱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것이 '加'와 결부된 호칭이라는 점에서 볼 때, '官'으로서 성격일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 古鄒加는 大加 및 小加와 같이 加 계통의 지위로 분류해 볼 수 있다.

---

158)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2年 冬10月. '王遣桓那部沛者薛儒伐朱那 虜其王子乙音爲古鄒加'

15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160)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大祖大王 或云國祖王 諱宮 小名於漱 琉璃王子古鄒加再思之子也' ;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美川王. '美川王 一云好壤王 諱乙弗 或云憂弗 西川王之子古鄒加咄固之子' ; 『三國史記』卷19, 高句麗本紀7, 文咨明王. '文咨明王 一云明治好王 諱羅雲 長壽王之孫 父王子古鄒大加助多 …'

161) 여호규, 앞의 책, 2014, pp.263~265 참조.

16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그런데 古鄒加 즉 加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식으로 지배세력을 편제하는 양상은 태조대왕 이전 시기에도 활용되던 방식이었다. 부여왕 종제가 來降하여 그를 王으로 봉한 사례가 한 예이다.[163] 여기서 '王'은 고구려 주변에 있던 독자의 세력을 거느린 지배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 내에 고구려왕 말고도 '王'이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존재를 가리킨다. 고구려왕이 부여왕 종제를 왕으로 봉하였다고 하는 것도 그러하거니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에서 고구려왕은 특히 대화를 인용한 기사를 중심으로 '大王'이라 불렸던 것으로 나타나므로,[164] 두 왕이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지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고구려왕이 왕으로 봉하였다고 하는 데에서, 부여왕 종제 또한 내투 이후에 王과 같이 대우받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곧 부여왕 종제를 加로 대우하였다는 의미인 것이다. 東明聖王 2년(서기전 36) 沸流國王 松讓이 나라를 들어 항복하였을 때 그를 主로 봉한 것 또한 부여왕 종제의 사례와 같았으리라 짐작된다.[165] 이때 主는 곧 王으로도 이해되는 것으로, 송양 또한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王者性을 인정하여 主로 봉한 것이다. 즉, 투항한 加의 王者性을 고구려 사회 내에서도 인정하는 처우가 곧 '封王'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도두가 來降하기 이전에도 加로서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도두 또한 기본적으로 加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으리라 추측된다. 이것을 앞선 主簿와 沛者의 사례와 연결

16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秋7月. '扶餘王從弟謂國人曰 我先王身亡 國滅民無所依 王弟逃竄 都於曷思 吾亦不肖 無以興復 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安置掾那部 以其背有絡文 賜姓絡氏'

164) 고구려왕을 大王이라 한 기사는, 琉璃王 28년(9) 太子 解明에게 自裁를 명하여 해명이 이를 행하려고 하자, 或者가 이를 말리며 해명에게 말하는 구절에서 유리왕을 大王이라 한 것(『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瑠璃明王 28年 春3月. '王遣人謂解明曰 吾遷都 欲安民以固邦業 汝不我隨 而恃剛力 結怨於隣國 爲子之道 其若是乎 乃賜劒 使自裁 太子卽欲自殺 或止之曰 大王長子已卒 太子正當爲後 …'), 대무신왕 4년(21) 怪由가 대무신왕을 大王이라 한 기사 및 同王 11년(28) 遼東太守가 침입하자 左輔 乙豆智가 대책을 말할 때 大王이라는 표현 등이 참고된다(『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4年 冬12月. '臣是北溟人怪由 竊聞大王北伐扶餘 臣請從行 取扶餘王頭' ;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1年 秋7月. '秋七月 漢遼東大守 將兵來伐 … 左輔乙豆智曰 小敵之強 大敵之禽也 臣度大王之兵 孰與漢兵之多 可以謀伐 不可力勝').

165)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2年 夏6月. '松讓以國來降 以其地爲多勿都 封松讓爲主'

하여 보면, 도두에게는 加로서의 지위와 于台로서의 지위가 동시에 주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 왜 두 가지의 지위가 수여되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무신왕의 王子인 好童의 출신을 밝히며 그의 어미가 대무신왕의 次妃인 曷思王의 孫女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166] 이 기사가 實相을 전하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적어도 曷思國 왕실이 來降 이전부터 고구려 왕실과 혼인 등과 같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짐작하는 데 무리는 없다. 도두가 비록 劣勢한 형편이라 하더라도 그를 于台로 삼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다.

이상을 토대로 본다면, 고구려에는 主簿, 沛者, 于台 계통의 관등적 지위와 大加, 小加, 古鄒加 계통의 加的 지위가 竝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官'으로서 성격이 강하므로 곧 고구려왕과의 관계에서 왕의 臣僚임을 드러내는 지위이며, 諸加層에게만 허용되는 관등이었다.[167] 후자는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작동되던, 서로가 王者的 存在로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지위라 할 수 있겠다. 이는 舊고구려에서부터 정치체제 상으로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五部에 기소속한 諸加는 이미 지니고 있었던 지위로 추정된다. 새로 통합된 지역의 지배자는 그 지위를 인정받았을 때에만 고구려 내에서 加로서 편입되고 部에 소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통합된 모든 세력을 加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蓋馬國과 東沃沮의 경우가 그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가 언제부터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일설에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라고 하는 '優台'가,[168] 고구려 관등으로 나타나는 于台(=優台)와 연결지어

---

166)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冬11月. '王子好童自殺 好童王之次妃曷思王孫女所生也'

167) 고구려본기에서 승진의 사례를 '加爵', '進爵'이라 표현한 점에 관하여는 보다 고찰이 필요하다. 다만, '爵'이라 한 점을 초기 관등에만 국한하여, 이것이 주변 세력을 편제하기 위해 이용된 흔적이라고 해석하지는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삼국사기』 온달전에는 왕이 온달을 사위로 삼으며 大兄으로 삼았다고 할 때 '賜爵爲大兄'이라 기술하였다(『三國史記』卷45, 列傳5, 溫達. '及論功 無不以溫達爲第一 王嘉歎之曰 是吾女壻也 備禮迎之 賜爵爲大兄'). 爵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이때의 爵이 官位와 品位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도 참고할 수 있다(이동훈, 앞의 책, 2019, pp.37~42).

168) 『三國史記』卷23, 百濟本紀1, 始祖溫祚王. '一云 始祖沸流王 其父優台 北扶餘王解扶婁庶孫 母召西奴 卒本人延陁勃之女 始歸于優台 生子二人 長曰沸流 次曰溫祚'

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169] 그 시기는 舊고구려까지 넓혀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몽 대부터 모본왕 대까지 관등을 소지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諸加層에서 적극적으로 고구려왕으로부터 관등을 수여받아 국정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운영된 국정 방식은 각 部에 소속한 諸加가 共論을 통해 국정을 의결하였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권한은 고구려왕에게 위임하였다고 추정된다. 아울러 五部 전체의 갈등 관계를 조정하고, 각 部에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 추렴한 조세를 바탕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의 政務는 주로 王室이 소속한 王部에서 담당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 部에 소속한 諸加層이 고구려왕의 官僚를 자처하지는 않았다고 이해된다. 고구려왕이 수여한 관등보다 자신이 '加'層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드러내는 데 더 기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구려의 세력권이 확장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이 고구려왕으로 집중하면서, 또한 租賦統責權과 같이 諸加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왕과의 결탁이 중요하게 되면서, 각 部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면서 점차 加로서의 지위보다 고구려왕에게 수여받은 관등으로서의 지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높아져 갔던 것으로 보인다. 公會 시 大加와 主簿는 幘을 쓰고 小加는 折風을 써서, 관등 主簿가 취하는 복식이 大加와 같기에 이른 것은([㉮-4]) 이러한 변화를 담은 사회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大加가 아닌 자 혹은 大加가 될 수 없는 자가 중앙 정계로 진출해서 主簿가 되면, 大加와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바, 『삼국사기』에 나타난 기록만으로는 部를 관칭한 이들 중 누가 諸加이고 누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主簿大加'의 사례를 보았을 때, 3세기 중반에 이르면 이제 大加도 관등을 소지하여 국왕의 臣僚가 되는 것이 자신의 지위 및 그 기반을 유지·확보하는 데 더욱 유리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한편 主簿는 중국 관제의 영향을 받아 생긴 官名으로, 王權을 배경으로 하여 行政事

169) 장병진, 앞의 논문, 2019, pp.166~167 참조.

務를 처리하는 관등이라는 데에 큰 이견이 없다.[170] 그리고 고구려 후기 관등에도 상위관등으로 등장하고 있다. 반면, 沛者와 于台 관등은 이후 관등제에서 확인되지 않는 즉 소멸한 관등으로 나타난다. 中川王 7년(254) 沸流 沛者 陰友가 國相에 임명된 기록이 마지막이다.[171] 諸加層에게만 수여되던 沛者와 于台 관등이 없어진 것이다. 이는 그들의 신분에 또한 심대한 변화가 동반하였음을 시사한다.

---

170) 金哲埈, 앞의 논문, 1956, p.128 ; 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中央政府組織」『東方學志』33, 1982, pp.44~46 ;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174~175 ; 노태돈, 앞의 책, 1999, pp.152~153 ; 여호규, 앞의 책, 2014, pp.214~216 등. 크게 보면 본래 官職的 性格이 강하였다가 점차 官等的 機能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171)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7年 夏4月. '國相明臨於漱卒 以沸流沛者陰友爲國相'. 陰友는 西川王 2년(271) 사망할 때까지 국상의 자리에 있었으므로(『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2年 秋7月. '國相陰友卒'), 그가 죽을 때까지 沛者 관등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Ⅴ. 지배질서의 재편과 國王集權體制의 정비

1. 국왕 중심의 지배질서 확대와 진휼의 실시

고구려의 國政은 諸加가 연대하여 조직한 部를 기반으로, 共論을 통해 그 방향이 의논·결정·시행되었다.[1] 그리고 이러한 정치체제를 작동케 하는 連帶的·分權的 정치운영 원리의 根幹에는 諸加가 王者的 存在로서 諸 邑落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統主權이 있었다.[2] 諸加는 이를 바탕으로 각 部에 소속하여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政治權力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 초기 정치체제의 변동 과정은 諸加의 統主權에 변화가 수반되는 과정이었으며, 諸加의 統主權이 諸加와 下戶의 정치적·사회적 지배—복속 관계에 基盤한 支配權力이라는 점에서, 諸加의 下戶에 대한 지배에 변화가 발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크게 두 방면에서 전개되었으리라 짐작된다. 하나는 하층부 즉 下戶의 성장에 따른 변화이다. 신라의 경우, 하층부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배력에 한계를 느낀 諸干이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갖기 위해 赫居世를 王으로 추대하고 상부국가인 신라를 건국하였음이 지적된다.[3] 諸加가 고구려를 건설한 사정에도 이러한 여건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후에도 농업생산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자 농민층의 사회적 성장이 크게 진전하면서,[4] 諸加와 下戶의 지배—복속 관계에 변화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하나로 상층부 즉 諸加 간 우열의 심화 및 諸加와 고구려왕 간 동등성에 균열이 가해지면서, 諸加의 지배하에 있던 下戶層이 국왕의 통치대상으로 轉化하였던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정복 활동에 따른 세력권의 확장 및 제가층의 관료 진출 등이 변화의 起因이었다고 이해되는데, 이러한 전개 과정을 특히 賑恤의 실시를 통해 추적하여 볼 수 있다.

---

1) Ⅱ장 3절 및 Ⅲ장 3절 참조.
2) Ⅱ장 3절 참조.
3) 서의식, 「韓國古代國家의 二重聳立構造와 그 展開」, 『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pp.79~81.
4) 三國期 농업생산의 증진 및 이에 따른 신분제의 재편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李景植, 『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古朝鮮~新羅·渤海—』,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pp.57~73 참조.

고대 중국에서 賑給은 예로부터 황제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시책의 하나로, 황제의 덕을 천하에 보여주기 위해 행해졌다.[5] 일본에서 賑給은 유교 이데올로기의 '군주유덕사상'에 의거하여 '왕토왕민'을 실현하는 국가 이데올로기 지배의 방책 중 하나였음이 지적된다.[6] 즉, 중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진 賑給은 王者가 곤궁에 처한 백성을 구제함으로써 그의 恩德을 강조하는 행위인 셈이다. 물론 이는 유교에 기반한 이데올로기이다. 하지만 治者로서 한 사회를 다스리는 王者라면, 그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궁핍한 상황에 처한 피지배층을 구제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고구려에서 처음부터 유교적 이데올로기와 같은 목적에서 賑恤을 실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賑恤의 실시가, 救援을 받은 자들에 대한 지배가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었다고 해석하여도 크게 무리는 없을 듯하다. 그렇다면 당시의 이중용립체제를 염두에 두고 보았을 때, 진휼의 주체는 고구려왕뿐만 아니라 王者的 存在인 諸加 또한 될 수 있다.

諸加가 자신의 독자 지배 영역에서 언제나 下戶를 수탈하였다고만 볼 수 없을 것이다. 가혹한 수탈만으로는 諸加의 統主權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삼국시대에는 백성이 奴婢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세 담당 신분을 유지해야 王權 또한 유지될 수 있었다는 지적을 참고한다면,[7] 加 또한 王者로서 자신이 지배하는 사회에 속한 피지배층의 삶을 안정시키고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을 보장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호가 생활에 전념할 수 없을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상정된다. 하나는 외부의 침략이 빈번하여 그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는 人爲的인 문제이므로 주변 세력과의 타협 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쟁과 함께 또 하나의 큰 요인으로 거론할 수 있으며, 또한 전쟁과는 달리 不可抗力的인 원인이 재해이다. 가뭄, 홍수 등 그들의 생계기반인 농업에 막심한 피해를 일으켜 그들이 생계를 유

5) 野尻忠, 「律令制下の賑給使と地方支配機構」『史學雜誌』110-9, 2001, p.35.
6) 玉井英夫, 「賑給について」『歷史硏究』18, 1980, pp.131~136. 중국과 일본의 진휼에 관하여는 정동준,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고대사회의 진휼」『한국고대사연구』99, 2020, pp.111~119 참고.
7) 趙法鍾, 「신라왕권과 노비제」『新羅文化』22, 2003a, p.172.

지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 그들은 거주지에 살면서 草根木皮로 延命하며 飢饉을 극복하려고도 하지만 流亡을 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子孫을 팔아 自活하거나 人相食의 慘狀이 나타나기도 한다.[8] 『삼국사기』에는 누리로 인한 피해를 전하는 기사가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로 인해 때로는 民이 굶주려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 도망할 정도로,[9] 누리로 인한 피해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전근대 사회에서 民을 곤궁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신라에서는 婆娑尼師今 30년(109) 누리가 곡물을 害하자 山川에 두루 제사를 지내기까지 할 정도였다.[10]

따라서 이러한 경우 治者는 비축한 식량을 통해 이들을 구휼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였을 때 결국 이는 반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加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피지배층이 기근을 겪고 있을 때, 이로 인해 사회를 불안케 하고 騷擾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 諸加가 연대하여 조직한 部가 部內 여러 사무를 돌보는 과정에서, 部에 소속한 諸加의 지배를 받는 貧民의 賑恤을 위한 자금도 일정 부분 마련해 두었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사료된다.[11]

[ⓐ-1] 國東大水 民饑 發倉賑給(『三國史記』)[12]

[ⓐ-2] 發使賑恤國內饑民(『三國史記』)[13]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첫 賑恤의 사례는 민중왕 2년(45) 5월에 나라 동쪽에 홍수가 나서 民이 굶주리자 창고를 열어 賑給케 한 일이다([ⓐ-1]). 그리고 모본

8) 기근에 따른 饑民의 動態에 관하여는 李昊榮, 「韓國 古代社會의 災害와 救貧策—三國 및 統一新羅時代를 中心으로—」『史學志』5, 1971, pp.35~36 참고.
9) 『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武寧王 21年 秋8月. '蝗害穀 民饑 亡入新羅者九百戶'
10) 『三國史記』卷1, 新羅本紀1, 婆娑尼師今 30年 秋7月. '蝗害穀 王遍祭山川 以祈禳之 蝗滅 有年'
11) 삼국 초기에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공납물을 감면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전덕재,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가뭄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책」『韓國史硏究』160, 2013, pp.25~26). 이를 참조하면, 고구려에서 部에 기반한 정치체제가 작동하던 시기에는, 국가적인 재해가 발생하면 각 部에서 국가 운영을 위해 추렴하는 경비를 절감·면제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12)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2年 夏5月.
1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2年 秋8月.

왕 2년(49) 8월에는 관리를 보내 國內 굶주린 民을 賑恤하였다([ⓐ-2]). 앞서 살펴본 진휼 실시의 의미를 고려한다면, 민중왕과 모본왕 대 실시한 賑恤策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고구려왕 자신이 직접 지배하던 피지배층에게 한정한 施策이었을 가능성이다. 諸加가 자신에게 예속된 피지배층에 대한 일차적인 구휼의 책임이 있었던 것과 같이, 고구려왕이 그의 지배를 받는 대상을 구휼할 권한 또한 독자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당시 施策의 대상이 고구려왕과 직접적인 지배—복속 관계에 있지 않은 諸加 예속의 하호층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賑恤이 각각 '國東'과 '國內'를 범주로 두고 실시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國'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國'이 '都城'을 의미하는 경우인데,[14] 고구려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葬地名에서 나타나는 '國'이나 卒本에서 遷都한 장소로서 '國內'가 이러한 방식으로 풀이된다.[15]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의미로서 '나라'를 뜻하는 경우이다. 민중왕과 모본왕 대 진휼 기사에 나타난 '國東'과 '國內'는 일단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다. '國'을 도성으로 보아 각각 '도성(을 기준으로) 동쪽'과 '도성 내'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나라 (안의) 동쪽'과 '나라 안[=나라 전체]'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國東'의 경우, '國'을 도성으로 해석하든 나라로 해석하든 그것이 가리키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國內'의 경우 '國'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것이 가리키는 범주에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의 '國'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도성을 가리킨다기보다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도읍을 가리키는 의미로 '京都'와 '王都'가 사용되고 있다.[16] 이때 '京都', '王都' 등의 용어는 고국천왕 13년(191) 左

14) 周代 이래 도시 간의 서열이 등급화하면서, '邑'을 바탕으로 하여 그 상위에 '都', 정점에 '國'이 위치하였으며, '國'은 天子의 도시, '都'는 宗室 및 卿大夫의 采邑을 가리키게 되었다(권순홍, 「도성 관련 용어 검토—'都'·'郭'·'京'을 중심으로—」『사림』62, 2017, pp.39~40).

15) 임기환, 「고구려 國內都城의 형성과 공간 구성—문헌 검토를 중심으로—」『韓國史學報』59, 2015, p.21 ; 여호규, 「高句麗 國內城期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高句麗渤海研究』65, 2019, p.22, p.31. 『삼국지』 고구려전에 기재된 '國中大會'나 '國東'의 '國'을 또한 도성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여호규, 「고구려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한국고대사연구』71, 2013, p.61 ;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可慮 등이 무리를 모아 '王都'를 공격하였다는 기사를 제외하면,[17] 모두 災異와 관련된 기사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18] 즉, 도성에서 발생한 재해였다면 國內라는 용어보다는 京都 혹은 王都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1] 立王子解明爲太子 大赦國內(『三國史記』)[19]

[ⓑ-2] 下令曰 … 可大赦國內(『三國史記』)[20]

[ⓑ-3] 赦國內二罪已下(『三國史記』)[21]

[ⓑ-4] 立王子藥盧爲王太子 赦國內(『三國史記』)[22]

[ⓑ-5] 王發國內男女年十五已上 修理宮室(『三國史記』)[23]

무엇보다 卒本에서 遷都한 장소인 '國內'를 제외한 나머지 國內의 용례가 '나라 안'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유의된다. 國內와 관련한 기사는 특히 (大)赦와 관련하여 자주 등장한다. [ⓑ-1]과 [ⓑ-4]는 각각 유리왕 23년(4)과 중천왕 8년(255)에 王子를 太子로 삼은 데 따라 國內 (大)赦를 실시한 사례이며, 신대왕 2년(166)과 산상왕 2년(198)에는 새 왕이 즉위한 이후에 國內에 (大)赦를 실시하였다([ⓑ-2], [ⓑ-3]). 이는 중국에서 사면령을 시행하는 과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에서는 春秋時期부터 사면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일체의 범죄행위를 赦하기에 이르고, 최종적으로는 天下에 은택

16) '京都'가 사용된 용례는 8건이고 '王都'는 6건으로 나타난다. 이에 관하여는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p.10 및 奇庚良, 「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27 표 2)의 정리 참조. 한편, '京都'와 '王都'는 섞여 사용되지 않고 고국천왕 13년(191)부터는 '王都'가 쓰이고 그 이전 기록에는 '京都'가 쓰이는데, 이를 기사의 계통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임기환, 앞의 논문, 2015, p.11), 『삼국사기』 혹은 『舊三國史』 등의 史書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장소명이 부재한 초기 災異 기록에 京都라는 용어를 일괄 삽입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奇庚良, 앞의 논문, 2017, pp.28~29).

1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3年 夏4月. '聚衆攻王都'

18) 임기환, 앞의 논문, 2015, p.11.

19)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3年 春2月.

20)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2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2年 夏4月.

22)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8年.

23) 『三國史記』卷17, 烽上王 9年 8月.

을 내리게 되었으며, 兩漢 시기에도 이러한 '大赦天下'의 전통이 계속 유지되었다.[24] 고구려 역시 도성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사면령을 내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봉상왕은 재위 9년(300)에 宮室을 修理하기 위해 國內 15세 이상의 男女를 징발하였다([ⓑ-5]). 봉상왕은 이전에도 宮室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지어 民을 곤궁하게 한 적이 있었다.[25] 당시 國相이었던 倉助利가 이를 두고, 재해가 계속되어 곡식이 익지 않아 일반 백성이 살 곳을 잃고, 장정들은 四方으로 流離하며 老幼는 轉乎溝壑한다 운운하며 봉상왕에게 諫言을 올렸다.[26] 이 구절은 『孟子』 梁惠王 下에서 穆公의 물음에 孟子가 답한 구절과 유사한데,[27] 이런 점들에서 보아 당시 궁실 수리를 위해 대규모의 징발을 실시하였던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여기서 '國內' 또한 앞선 사면 관련 기사에 나타나는 國內와 같이 나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사례를 토대로 보건대, [ⓐ-2] 國內의 '國'도 나라로 풀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國과 짝하여 방위를 나타내고 있는 [ⓐ-1]의 '國東' 역시 나라 동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해라는 것이 諸加가 각기 지배에 따라 人爲的으로 설정해 놓은 구획을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당연하겠으므로, 그러한 재해의 현황을 '國'을 기준으로 파악하고 또한 진휼의 대상을 선정하였다는 것은, 諸加가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에 속한 피지배층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진휼의 범위가 '國內'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렇듯 고구려왕이 諸加에 예속한 下戶에까지 賑恤을 실시한 원인으로, 재해를 입은 곳을 지배하던 加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여건이 부족하였거나, 그 재해가 加 혹은 그가 소속한 部 차원에서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심하였을 경우, 아니면 고구

---

24) 伍操, 「中國古代赦免制度及其歷史沿革」『重慶社會科學』, 2008-6(정병준 · 이진선 번역, 「中國 古代 赦免制度와 그 역사적 연혁」『韓國古代史探究』24, 2016, pp.418~419, p.421).

25)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7年 冬10月. '王增營宮室 頗極侈麗 民饑且困 羣臣驟諫 不從'

26)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烽上王 9年 8月. '倉助利諫曰 天災荐至 年穀不登 黎民失所 壯者流離四方 老幼轉乎溝壑 此誠畏天憂民 恐懼修省之時也 大王曾是不思 驅饑餓之人 困木石之役 甚乖爲民父母之意 而況比隣有強梗之敵 若乘吾弊以來 其如社稷生民何 願大王熟計之'

27) 『孟子』, 梁惠王下. '凶年饑歲 君之民老弱轉乎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而君之倉廩實 府庫充 有司莫以告 是上慢而殘下也 曾子曰 戒之戒之 出乎爾者 反乎爾者也 夫民今而後得反之也 君無尤焉 君行仁政 斯民親其上 死其長矣'

려왕이 先制的으로 구제에 나섰을 가능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그 원인을 확실히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일단 고구려왕이 진휼을 실시한 이상, 피지배층에게 그들을 구제하여 은덕을 베푼 治者가 고구려왕이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28]

이때 실시한 진휼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部에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王部로 수송할 財源을 저장해 둔 창고에서 고구려왕의 명에 따라 賑恤穀을 내어주는 방식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29] 國內 전반에 진휼을 실시할 수 있었던 까닭도 그러한 창고가 국내 여러 곳에 散在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점에서, 당시의 施策이 각 部가 합의하고 결정한 위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모본왕 대에 특히 '使'를 보내어 國內 饑民을 진휼케 하였는데([ⓐ-2]), 이 당시 '使'가 왕의 측근으로

28) 『삼국지』 부여전에서는 水旱이 不調하여 五穀이 익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서 왕을 바꿔야 한다든가 죽여야 한다고 하였다는 풍속이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三國志』 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같은 풍속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재해가 발생한 책임은 처음부터 고구려왕에게 돌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옛 부여의 풍속[舊夫餘俗]'이라 하였고, 그러한 풍속이 언제까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며, 고구려본기에는 이와 연관지어 볼 자료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실재하였던 일반적인 풍속인지, 아니면 왕을 폐하거나 시해한 정치적 명분에서 파생된 산물인지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후대에도 災異를 君主가 不德한 소치로 간주하는 경우는 매우 빈번하며, 또한 폐위·시해된 왕의 재위 시기에는 災異 관련 기록이 빈번히 언급되어서 마치 그 왕의 末路가 예견된 것처럼 선후가 전도되어 전승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경우 폐위된 烽上王 대 기록이 지진, 서리, 우박, 우레, 鬼哭, 客星犯月, 흉년 기사들로 채워진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漢代에 황제의 사망, 정치적 혼란, 하극상 등에 앞서 하늘이 내리는 경고의 의미로 해석되는 일식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참고된다(조우연, 앞의 책, 2019, p.241).

마지막으로, 서기전 202년부터 907년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중국의 가뭄 발생 빈도는 평균 3.3년이고, 고려는 1010년부터 1170년까지 평균 2.3년이라는 점을 참고해 보아도(전덕재, 앞의 논문, 2013, pp.8~9), 水旱不調가 결코 장기간에 한 번씩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럴 때마다 '或言當易 或言當殺'하였다면, 기근이 발생할 때마다 왕을 죽이니 아무도 왕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 결국 몰락하였다는 니우에(Niue)에 있던 왕족의 사례처럼 왕조가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경덕 옮김, 『그림으로 보는 황금 가지』, 까치, 1995, p.81).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고구려 초기 賑恤의 실시를 분석하는 데 『삼국지』 부여전의 기사를 결부하는 것을 유보하며, 이 기사는 부여의 사회구조와 정치체제 및 사상체계 등을 구축한 위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 漢代에 창고를 열어 진휼하는 결정권은 중앙에서 직접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흉년 시 중앙에서 사자를 파견하여 진급과 진대의 실행을 담당하였던 점이 참조된다(정동준, 앞의 논문, 2020, p.112)

서 家臣的 성격에 해당하는 官이었다고 이해되므로,[30] 피지배층에게 賑恤穀 등을 베풀어 주는 주체는 고구려왕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諸加 중에서는 이러한 고구려왕의 진휼 실시에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을 것이다. 이를 짐작케 하는 단서 중 하나가 민중왕 4년(47)에 蠶支落部 大加 戴升 등이 樂浪에 투항한 사건이다.[31] 戴升은 蠶支落部 소속의 大加라 할 수 있으며, '等'이라 하였으므로, 당시의 투항은 戴升과 비견할 수 있는 지배자 즉 加가 여럿 가담한 행동이었다고 해석된다. 이들이 고구려에서 이탈한 것은 당시 고구려의 대내 政勢에 대한 某種의 불만이 表出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蠶支落部의 이탈을 고구려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권력의 등장에 대한 반발 즉 각 집단의 개별적인 대외 교섭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파악하기도 한다.[32]

국가권력의 등장 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蠶支落部가 낙랑에 투항하기 2년 전에 실시한 진휼이다. 이때의 진휼 대상이 諸加의 지배를 받던 下戶까지 포함된다는 분석을 고려한다면, 이는 고구려왕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체계가 구축되어 가는 일면을 보여준다. 즉, 蠶支落部의 낙랑 투항은 당시 諸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던 변화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다. 모본왕 대에는 이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의 반발로서 고구려왕을 시해하였다고 추정된다.[33] 그러나 大勢는 고구려왕이 모든 民에 대한 통치자라는 이념이 확산되는 방향이었다고 짐작된다.

태조대왕 전반기까지 통합된 주변 세력은 沸流國王 松讓이나 부여왕 從弟, 그리고 句茶國王과 曷思國王 都頭와 같이 자발적 來降이 아닌 경우에는, 기록상 확인되는 바로는 城邑 혹은 郡縣으로 편제되었다. 郡縣으로 편제된 蓋馬國은 고구려왕의 직접 지배력이 충분히 관철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城邑의 경우, 荇人國과 北沃沮, 그리고

30) 이동훈, 『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2019, pp.49~51 참고.
31)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4年 冬10月. '蠶友落部大家戴升等一萬餘家 詣樂浪投漢 後漢書云 大加戴升等萬餘口'
32) 여호규, 「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역사와현실』21, 1996, pp.72~73 ;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pp.186~187.
3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6年. '冬十一月 杜魯弑其君 杜魯慕本人 侍王左右 慮其見殺乃哭 或曰 大丈夫何哭爲 古人曰 撫我則后 虐我則讎 今王行虐 以殺人 百姓之讎也 爾其圖之 杜魯藏刀 以進王前 王引而坐 於是 拔力害之 遂葬於慕本原 號爲慕本王'

東沃沮의 사례가 있는데, 전술한 바 이들 정복 지역에서는 고구려왕과 諸加가 각기 해당 지역 지배를 위한 권력을 分有하는 방식으로써, 고구려왕이 行政權을 가지고 大加가 租賦統責權을 맡았다.[34] 行政權이 고구려왕에게 있다는 것은 大加가 統責하기 위한 租賦의 기준과 그 대상의 파악이 명분상 고구려왕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벌된 지역을 지배하는 최상위에 고구려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물론 해당 사회의 피지배층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는 고구려에서 둔 大人 즉 在來有力者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단 고구려에 통합이 된 처지에서 실현되는 해당 읍락사회에 대한 지배력의 정당성은 고구려왕의 인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고구려왕이 最高支配者라는 이념적 기반을 수용한 데에서 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세력권이 확장되면서 이와 같은 지배방식이 확대・적용될수록 고구려왕이 모든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最高君主라는 이념 또한 확산될 것이라 충분히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이 확산할수록 그에 요구되는 제도 역시 정비되어 갔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1] 王東巡柵城 至柵城西嶲山 獲白鹿 及至柵城 與羣臣宴飮 賜柵城守吏物段有差 遂紀功於岩乃還(『三國史記』)[35]

[ⓒ-2] 春大旱 至夏赤地 民饑 王發使賑恤(『三國史記』)[36]

[ⓒ-3] 秋七月 蝗雹害穀 八月 命所司 擧賢良孝順 問鰥寡孤獨及老不能自存者 給衣食(『三國史記』)[37]

태조대왕 25년(77) 11월 京都에 눈이 석 자가 내렸다는 기사 이후,[38] 21년 간 기록이 없다가 태조대왕 46년(98)부터 다시 기록이 등장하는데,[39]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롭

34) Ⅳ장 2절 참조.
35)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46年 春3月.
36)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56年.
37)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6年.
38)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25年 11月. '京都雪三尺'
39) 태조대왕 25년(77)부터 46년(98) 사이에 기록이 부재한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도 한다(金基興, 「高句麗의 國家形成」, 한국고대사 연구회, 『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民音社, 1990, pp.214~217). 故國原王 대에 재위 25년(355) 기사 뒤에 14년 후인 재위 39년(369) 기사

다. 왕이 柵城으로 巡狩하였다가 柵城 서쪽 闕山에 이르러 흰 사슴을 잡았고, 柵城에 도착해서는 群臣과 宴飮하였으며, 柵城의 守와 吏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 주더니, 마침내는 바위에 紀功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1]). 고구려왕의 巡狩는 변경 지역에 대한 통치 영역 확인에 목적이 있었으며 통치력 과시의 기회로 이용되었다.[40] 이 과정에서 잡았다는 흰 사슴은 '天鹿'이라 하여 君主가 사리에 밝으며 어질고, 道를 갖추었을 때 출현하는 上瑞이다.[41]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위엄을 선포하는 행위가 곧 바위에 공적을 새기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42] 국왕의 권위가 政治的·神異的으로 한껏 提高된 면모가 확인되는 것이다. 즉, 태조대왕 46년(98)에 이르면, 고구려왕이 모든 피지배층을 지배하는 통치자라는 이념은 더욱 확산되었고, 그러한 정치적 상징으로서 巡狩가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태조대왕 56년(108) 봄에 큰 가뭄이 들어 여름이 되도록 땅이 황폐하여 民이 굶주리자 왕은 관리를 보내어 賑恤케 하였다([ⓒ-2]). 그리고 태조대왕 66년(118) 7월 누리가 곡물을 해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8월 왕은 所司에게 명하여 이에 따른 조처를 명하였다([ⓒ-3]). 그런데 이때의 조처가 어질고 착하며 孝順한 자[賢良孝順]를 천거케 하고,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자[鰥寡孤獨] 및 늙어서 스스로 自存할 수 없는 자들을 위문하고 옷과 음식을 주는 것이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3]에서 천거의 기준으로 나타나는 '賢良孝順'은 漢代 관리를 등용하는 방식인 '賢良方正' 및 '孝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43] 태조대왕 66년(118) 8월에 관리를 천거토

가 오고, 長壽王 대에 재위 28년(440) 기사 이후 14년 간 공백이 있다가 42년(454) 기사가 이어지는 경우를 감안하면, 21년이라는 기간이 물론 긴 공백이기는 하나 태조대왕 대에만 국한해서 제기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현재로서는 이 기간이 어떠한 政況이었는지 알 수 없다. 이후 기사의 맥락에서 억측해 본다면,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질서 이념을 각 部에 소속한 諸加가 받아들이는 혹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련의 변동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한다.

40) 金瑛河, 「高句麗의 巡狩制」『歷史學報』106, 1985, pp.41~52. 眞興王·法興王 代에 확대된 영역에 대한 巡狩가 민심수습과 영역확인의 기능이 있다는 지적을 참고한다면(金瑛河,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民族文化硏究』14, 1979, p.243), 태조대왕 대의 巡狩 또한 민심수습 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1) 조우연, 앞의 책, 2019, p.225.

42) 金瑛河, 앞의 논문, 1985, p.44.

43) '賢良方正' 및 '孝廉'에 관하여는 權赫允, 「漢代 官吏登用制度와 尙書의 關係 硏究」, 高麗

록 한 것은 漢 文帝 때 日食이라는 異變이 있어 賢良方正을 처음 실시한 것과 같이,[44] 前月인 7월에 누리가 곡물을 해한 災害가 있었던 데 따른 왕의 지시였다고 이해된다. 재해의 발생을 왕의 不察로 여기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이며, 이를 위해 국왕에게 諫言할 수 있는 官吏를 등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국왕에게 충성하고 그의 政事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필요로 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漢代의 관리등용제도가 국가권력의 안정 및 중앙집권체제의 정비와 맞물린 속에서 실시되고 완성되어 갔듯, 태조대왕 66년(118) 천거 실시 또한 국왕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要人을 찾는 대책이었다고 이해되는 것이다.[45] 이를 통해 국왕의 직접 통치를 위한 제도가 차츰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천거제와 아울러 실시한 것이 鰥寡孤獨 및 老不能自存者에 대한 施惠였다. 鰥寡孤獨은 『孟子』 梁惠王下에 기록된 유명한 구절로, 齊 宣王(?~서기전 301) 맹자에게 王政에 관하여 묻는 대목에서 나온다.[46] 鰥寡孤獨은 天下의 窮民으로서 도움을 바랄 곳이 없는 자들이니, 정치를 일으켜 어짊을 베풀 때에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당시에 [ⓒ-3] 기사 그대로 '鰥寡孤獨 및 老不能自存者'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47] 다만 民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한 표현

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4, pp.16~20 참고.

44) 權赫允, 앞의 논문, 2004, p.75, p.79.

45) 태조대왕 대 실시한 천거제가 漢代의 그것과 같은 제도로써 실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료상 한계가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災異의 발생과 이에 따른 관리의 등용, 그리고 그 기준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측면에 초점을 둔다면, 태조대왕 66년(118)의 기사는 漢代의 '賢良方正' 및 '孝廉'을 실시하였던 정치적 맥락을 참고하여 살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46) 『孟子』, 梁惠王下.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 關市譏而不征 澤梁無禁 罪人不孥 老而無妻曰鰥 老而無夫曰寡 老而無子曰獨 幼而無父曰孤 此四者 天下之窮民而無告者 文王發政施仁 必先斯四者'

47)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기사 중에는 '鰥寡孤獨'과 같이 다른 문헌을 참고한 듯한 구절이 종종 발견된다. 이것이 당대 고구려에서 실제 사용한 흔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후대 윤색이 가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설령 윤색이 가해졌다고 하여도 원전의 本義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해졌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해당 자료에서 명백한 시대적 착오 혹은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그 속에서 일정한 시대성이 확인될 수 있다면, 일단은 그 기사에 담긴 역사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어떤 용어가 실제로 쓰

이라는 점에서, 賑恤을 하였다고만 전하는 [ⓐ-1], [ⓐ-2] 시기에 비해 국왕이 적극적으로 對民施策을 실시하고 있던 당대의 사정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하여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전까지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진휼을 실시하였다면, 이제는 罹災民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의지할 데 없는 窮民을 모두 국왕의 民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中畏大夫沛者於畀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並恃勢驕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 怒欲誅之 左可慮等與四掾那謀叛(『三國史記』)[48]

[ⓓ-2] 聚衆攻王都 王徵畿內兵馬平之(『三國史記』)[49]

태조대왕 이후 국왕 중심의 지배질서가 확대되어 가는 양상으로는 故國川王 12년(190) 9월 左可慮 등이 謀叛한 기록이 주목된다. 左可慮 및 於畀留는 王后의 親戚으로 나라의 권력을 장악하였는데, 이에 그 子弟가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사치스러웠으며, 남의 자녀를 겁탈하고 남의 田宅을 빼앗아 國人이 怨憤하였다([ⓓ-1]). 여기서 '子女'와 '田宅'은 생산적인 노동력과 토지를 의미하며,[50] 지속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자 稅源이라 할 수 있다.[51] 於畀留와 左可慮의 子弟는 왕후의 친척이라는 權勢를 濫用하여 약탈을 恣行한 것이었다. 이러한 약탈이 가능하였던 것은, 물론 權勢가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권세는 현실적인 이유였을 것이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상의 이유는 따로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외부의 침입에 따른 일시적 약탈이야 명분과는 상관없이 자행되겠지만, 특히 '田宅'과 같이 지속적인 부를 생산할 수 있는 재산과 이에 필요한 노동력의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빼앗긴 자에게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이유라 하더라도 某種의 명분을 내세우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於畀留와 左可慮 및 그의 子弟는 '加'層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加'

였는지는 부차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48)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2年 秋9月.

49)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3年 夏4月.

50) 여호규, 앞의 책, 2014, pp.372~374 참조.

51) 권연미, 「고구려 고국천왕의 정치개혁과 의미」,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p.13~14.

層이 이러한 형태의 강압적인 약탈을 통하여 경제기반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 것은 [ⓓ-1] 기록이 전하는 2세기 말에 보이는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이해되지는 않는다. 부여에서 下戶의 처지가 奴僕과 같았다고 하거나,[52] 『魏略』에서 大家에게 賦稅를 供給하는 下戶를 奴와 같았다고 하는 데에서 확인되듯,[53] 諸加와 主從關係를 맺고 있던 下戶의 처지는 매우 열악하였다. 그만큼 諸加에 의한 苛酷한 처사가 下戶에게 적지 않게 가해졌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諸加의 統主權 하에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였다.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안은 諸加가 독자로 처리하였듯, 그리고 신라에서 諸干의 民戶에 대한 수취 관계가 혹독하게 이루어지더라도 가급적 이에 직접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정복 지역에 대한 효율적 통제를 꾀하였듯,[54]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下戶의 처우에 관한 권한은 諸 읍락을 統主하는 諸加에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국천왕은 '子女'와 '田宅'을 약탈하여 國人이 怨憤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을 誅殺코자 하였다([ⓐ-1]). 이들의 處事에 개입한 것이다. 이에 사건의 이해 당사자인 左可慮뿐만 아니라 掾那部 소속한 諸加가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이때의 반란이 비단 국왕의 誅殺 명령에 대한 反動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개입에 대한 掾那部 소속 諸加의 저항심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반란은 다음 해인 고국천왕 13년(191) 4월 평정되었다([ⓓ-2]). 반란 평정 후 고국천왕이 下令하여 인재를 천거케 하고 乙巴素를 國相에 등용하였으며, 또한 國相을 따르지 않는 자는 貴賤을 가리지 않고 滅族케 하겠다고 한 것을 보아,[55] 국왕이 고구려 사회의 피지배층을 모두 자신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의지는 더욱 힘을 얻었을 것이며 그 정당성 또한 강화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고국천왕 대 나타난 左可慮 등의 반란과 평정은, 특히 태조대왕 대 두드러졌던 그러한 統治理念이 擴散되고 그 이념에 따라 통치되는 영역이 擴大되면서 나타난 속에서, 그것을 더욱 鞏固히 하는 계기가 된 사례라 해석할 수 있다.

---

52)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夫餘. '邑落有豪民名下戶皆爲奴僕'
53) 『太平御覽』卷783, 四夷部4, 東夷4, 高句麗. '大家不田作 下戶給賦稅 如奴'
54) 서의식, 「'中古'期 冷水里碑文의 '節居利'와 干의 租賦統責」, 앞의 책, 2010, p.192.
55)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3年 夏4月. '遂下令曰 近者官以寵授 位非德進 毒流百姓 動我王家. 此寡人不明所致也 今汝四部 各擧賢良在下者 … 西鴨淥谷左勿村乙巴素者 … 乃除爲國相 … 王有教曰 無貴賤 苟不從國相者 族之'

[ⓔ] 王畋于質陽 路見坐而哭者 問何以哭爲 對曰 臣貧窮 常以傭力養母 今歲不登 無所傭作 不能得升斗之食 是以哭耳 … 命有司 每年自春三月 至秋七月 出官穀 以百姓家口多小 賑貸有差 至冬十月還納 以爲恒式(『三國史記』)[56]

이로부터 3년 뒤인 고국천왕 16년(194) 賑貸法이 실시되었다([ⓔ]). 10월 왕이 質陽으로 田獵을 나갔는데, 그 해 곡식이 여물지 않아 어미를 제대로 봉양치 못하고 있던 자가 길에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 해 7월, 서리가 내려 곡식을 해치니 民이 굶주려 창고를 열어 賑給하였는데,[57]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듯하다. 이를 계기로 고국천왕은 賑貸를 恒式化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방식은 매년 3월부터 7월까지 官穀을 내어 百姓 家口의 多少에 따라 賑貸하고, 10월에 還納케 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百姓'이란 용어가 확인된다. 『삼국사기』 재해 관련 기록에 나타난 百姓은 왕의 慰撫 및 救濟 대상을 의미하며, 三國時代 百姓으로 기록된 존재는 民과 동일한 개념으로서 왕의 統治對象이란 관념에 바탕을 둔 피지배 일반을 가리킴이 지적된다.[58] 주목되는 것은 賑貸法의 실시 기준이 이들 百姓의 家口 多少라는 점이다. 이는 각 가구의 인원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는 사실로서, 이 시기에 戶籍 작성 등과 같은 방식으로 국가가 民을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59]

이러한 방식의 피지배층 파악이 이전부터 고구려에서 이미 실시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국가 재정 마련을 위해 각 部에서 납부한 양이 적절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앙에도 이를 위한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전 시기에서는 諸加가 자신이 統主하는 諸 읍락에 대한 현황을 제출하는 것이었다면, [ⓔ] 시기의 그것은 국왕이 家口 多少에 따른 賑貸를 制度化하는 데에서도 감지되듯, 이를 바탕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56)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6年 冬10月.
5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6年 秋7月. '墮霜殺穀 民饑 開倉賑給'
58) 洪承基, 「1~3世紀의 「民」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所謂「下戶」의 實體와 관련하여—」 『歷史學報』63, 1974, pp.21~25 ; 趙法鍾, 「三國時代 民·百姓의 槪念과 性格에 대한 검토」 『百濟文化』25, 1996, pp.94~97 참조.
59) 趙法鍾, 앞의 논문, 1996, p.130.

실시하고 나아가서는 租賦 수취나 力役을 동원하는 등 국왕의 통치대상으로서 民에 대한 현황을 제출한다는 차이가 존재하였다고 해석된다.

문제는 [ⓔ] 시기 이러한 체제가 국가 전체에 적용되었던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고국천왕 이후 발생한 왕위계승분쟁 과정에서 拔奇가 公孫康에게 투항하였을 때 消奴加 또한 下戶 3만을 이끌고 참여한 것을 보면,[60] 고국천왕 시기에 모든 피지배층이 民으로 전환된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지금까지 살펴본 趨勢를 감안한다면, 고국천왕 시기에 점차 民으로의 전환이 활발히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때 그 전환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보는 데 무게가 실린다. 민중왕 대부터 賑恤을 통해 표출되었던, 고구려왕이 諸加가 지배하는 下戶도 국왕의 民으로 통치하겠다는 의지가 점차 理念化하기 시작하였고, 태조대왕 대에 들어서는 그러한 이념이 더욱 확산되면서 政治的으로도 現實化하여 갔으며, 고국천왕 대에는 制度化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諸加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였을 것이다. 諸加의 統主權은 諸加와 下戶의 정치적·사회적 지배—복속 관계에 基盤한 權力이었다.[61] 따라서 지배—복속 관계를 수립케 하는 諸加와 下戶의 主從關係가 유지되어야 諸加의 統主權 및 王者性이 보장되고 안정될 수 있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관계가 느슨해지고 下戶의 諸加에 대한 隷屬性이 약화되면 諸加의 統主權에도 균열이 가해지는 것이며, 終局에 이르러 그 主從關係가 부정되고 해체될 때 諸加의 統主權 또한 무너진다고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서 諸加와 下戶의 관계는 점차 遊離되어 갔을 것이며, 때문에 諸加와 고구려왕의 관계 또한 새롭게 정립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곧 諸加의 '貴族化'라 할 수 있다.[62]

---

60)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61) 李景植, 앞의 책, p.27 참조.

62) '貴族'이라는 용어에 대한 엄밀한 사료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왕권'과 대립·경쟁하는 주체로서 '귀족'이 개념화되고, 이에 따라 '왕권'과 '귀족'의 대립항 설정이라는 도식에서 신라사를 체계화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이재환, 「신라사 연구에 있어서 '귀족' 개념의 도입 과정」,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1 : 한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 2014). 이러한 지적은 고구려사의 이해체계를 세우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사료된다. 본고에서 표현한 '귀족'은, 이에 대한 개념 설정 및 도식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두고, 집권력이 강화하면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身

그런데 이러한 신분재편은 국왕의 의지에 따른 것만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자신의 기반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貴族으로의 재편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혹은 王者性을 더 이상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열악한 처지에 있는 加, 더 이상 자신은 加가 될 수 없는 '加'層 중 일부가 국왕에 의탁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諸加가 자신의 統主權을 포기하더라도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그 권력을 국왕에게 移讓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은 특히 적극적으로 국왕과 결탁하려는 목적으로 국정에 참여하고자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태조대왕 이후 部를 관칭하는 지배층이 나타난 것은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관료 집단의 국정 운영 장악과 方位名部의 성립

王部 교체 이후 政治權力의 集中化가 발생하면서 고구려왕이 諸加가 지배하는 下戶 또한 직접 지배대상으로서 통치한다는 이념이 성장하였고, 이러한 이념이 확산하면서 현실적·정치적 여건이 정비되어 갔다. 태조대왕 대 이후 可視化한 이러한 변동으로, 諸加는 한편으로 국왕에게 集中된 政治權力을 획득하기 위해 관등을 소지하여 국왕의 신료로서 국정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한 변화에 일차적으로 반응하였던 것은 아무래도 고구려왕이 소속한 桂婁部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태조대왕 이후의 국정 운영 양상에서는 그 영향이 여타 4部에게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桂婁部 다음으로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部는 貫那部와 桓那部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部 관칭과 관등 소지가 동시에 보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물이 소속한 部가 貫那部와 桓那部이다. 藻那를 정벌하는 데 나선 達賈와 朱那를 정벌하는 데 나선

分秩序에 편제된, 종래 王者的 存在로서 諸加 및 그에 기반한 '加'層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지배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三國時代 貴族에 관하여는 朱甫暾,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pp.3~22 참조.

薛儒가 각각 貫那部와 桓那部 소속이었다.[63] 이들이 소지한 관등이 모두 沛者라는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沛者는 국왕의 관료 중 部에 기반을 둔 제가층으로서 지닐 수 있는 고위 관등이었다.[64] 즉, 達賈와 薛儒는 고위 관등을 소지하여 왕의 명령을 받아 군사를 帶同하고 주변 세력을 정벌하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후 관등을 소지한 인물들에서 확인되는 소속 部 역시 貫那部와 桓那部이다. 貫那 于台 彌儒와 桓那 于台 菸支留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태조대왕 80년(132), 훗날 次大王이 되는 遂成과 함께 倭山으로 사냥을 가서 그에게 왕위찬탈을 권유하였다.[65] 당시 수성은 거절하였지만 이때 左輔였던 沛者 穆度婁가 수성이 異心을 품은 것을 알고 병을 핑계로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함을 보면,[66] 수성 또한 내심 그러한 뜻이 있었기에 彌儒 등이 이를 알고 제안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태조대왕 94년(146) 수성이 직접 나서 왕위찬탈을 모의하였고,[67] 讓位의 형식으로 국왕의 자리에 오른다.[68] 그리고 次大王 즉위 이후 彌儒는 右輔가 되었고,[69] 菸支留는 左輔가 되었다.[70] 모두 당시 국왕의 정사를 보좌하는 최고위 관직에 임명된 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정치적 상황을 바탕에 두고『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左·右輔 관련 기록을 一瞥하여 보았을 때, '輔'라는 글자에서도 감지되듯 左·右輔는 고구려왕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職

63)『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二十年 春二月 遣貫那部沛者達賈伐藻那 虜其王' ; '二十二年 冬十月 王遣桓那部沛者薛儒伐朱那 虜其王子乙音爲古鄒加'

64) Ⅳ장 3절 참조.

65)『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年 秋7月. '遂成獵於倭山 與左右宴 於是 貫那于台彌儒 桓那于台菸支留 沸流那皂衣陽神等 陰謂遂成曰 初慕本之薨也 太子不肯 羣寮欲立王子再思 再思以老讓子者 欲使兄老弟及 今王旣已老矣 而無讓意 惟吾子計之'

66)『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年 秋7月. '遂成曰 承襲必嫡 天下之常道也 王今雖老 有嫡子在 豈敢覬覦乎 彌儒曰 以弟之賢 承兄之後 古亦有之 子其勿疑 於是 左輔沛者穆度婁知遂成有異心 稱疾不仕'

67)『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94年 秋7月. '遂成獵於倭山之下 謂左右曰 大王老而不死 吾齒即將暮矣 不可待也 惟願左右爲我計之 左右皆曰 敬從命矣'

68)『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94年 12月. '王謂遂成曰 吾旣老 倦於萬機 天之曆數在汝躬 況汝內參國政 外摠軍事 久有社稷之功 允塞臣民之望 吾所付託 可謂得人 作其即位 永孚于休 乃禪位 退老於別宮 稱爲太祖大王'

69)『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年 春2月. '拜貫那沛者彌儒爲左輔'. 이 기사의 左輔는 右輔의 誤記이다(여호규, 앞의 책, 2014, p.304).

70)『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年 秋7月. '左輔穆度婁 稱疾退老 以桓那于台菸支留爲左輔 加爵爲大主簿'

이며, 특히 沛者 관등 소지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보아 최고위 관직이라 보아도 크게 틀림은 없다고 생각된다.[71] 이로써 태조대왕 대부터 국왕과 결탁하여 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였던 貫那部와 桓那部는, 차대왕 대에는 국왕과 함께 국정 집행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官職을 점하게 된다.

貫那部 彌儒와 桓那部 菸支留와 함께 수성의 왕위찬탈에 가담한 인물로 沸流那 皂衣陽神이 있었다. 그는 수성이 왕위에 오른 후 中畏大夫의 官職에 오르고 于台가 되었다.[72] 中畏大夫는 국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은 관직으로 추정되는데,[73] 그의 관직과 관등이 彌儒와 菸支留에 비해 낮다는 데 주목할 때, 당시 沸流那部가 貫那部와 桓那部에 비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차대왕 대 국정은 국왕과 결탁한 貫那部와 桓那部 소속 제가층이 官僚化하여 운영되었으며, 특히 차대왕이 시해되고 新大王이 즉위할 때까지 菸支留가 계속 左輔의 職에 있음을 보면,[74] 이러한 국정 운영이 차대왕 시해 전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차대왕은 재위 20년 만에 시해된다. 그를 시해한 인물은 椽那 皂衣 明臨答夫였고, 民이 차대왕의 폭정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 시해의 이유였다.[75] 明臨答夫는 새 왕으로 신대왕이 즉위한 뒤 沛者 관등에 올랐으며, 이때 좌보와 우보를 고쳐 새롭게 설치한 國相에 올랐다.[76] 國相이 좌보와 우보의 관직을 없애고 만든 것임에서도 알 수 있

---

71) 左·右輔에 대해서는 연맹체를 구성하는 族的 基盤이 강한 勢力者, 공동으로 諸加會議를 주재하는 계루부 대표와 다른 那部의 대표자, 계루부가 비류부나 연나부와 연합한 2나부 연합 체제를 유지해 가는 제도적 장치, 군신회의의 대표자, 왕권이 강화되면서 諸加會議와 비견될 수 있는 群臣會議를 이끄는 존재, 처음에는 계루부 내부의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왕을 보좌하는 측근이었다가 점차 나부통치체제 운영상의 일상 실무를 총괄하였던 관직 등 여러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여호규, 앞의 책, 2014, pp.299~308 참조.

72)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年 冬10月. '沸流那陽神爲中畏大夫 加爵爲于台'

73) 中畏大夫는 王室勢力과 가까운 中樞勢力과 관련한 것으로 지적되며(金哲埈, 앞의 논문, 1956, p.154), 國相에 버금가는 要職으로 近侍·監察 등의 임무를 띤 것으로 추정된다(金光洙, 「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 p.173 ; 「高句麗의 '國相'職」, 『李元淳敎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敎學社, 1991, pp.7~8).

74)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新大王 諱伯固 固 一作句 太祖大王之季弟 儀表英特 性仁恕 初 次大王無道 臣民不親附 恐有禍亂 害及於己 遂遯於山谷 及次大王被弑 左輔菸支留與群公議 遣人迎致'

75)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0年 冬10月. '椽那皂衣明臨答夫 因民不忍 弑王'

듯, 明臨答夫가 국상이 된 이후 자연 前王代 좌보와 우보에 있었던 彌儒와 菸支留는 관직에서 물러났을 것이다. 이후 기록에서 貫那部와 桓那部 소속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신대왕 대에 들어서면 貫那部와 桓那部를 대체하여 掾那部 소속 제가층이 국왕과 결탁하여 국정을 이끄는 핵심 部로서 자리하게 된 것이다.

掾那部는 왕실과의 혼인을 추진하여 部의 立地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고국천왕 2년(180) 왕이 提那部(=掾那部) 于素의 딸을 王后로 맞아들인 것이 그 예이다.[77] 이때 提那部는 椽那部의 異表記이자 『삼국지』의 絶奴部로, 于素는 絶奴部에서도 왕실과 혼인하여 古雛加를 칭하는 大加였다. 따라서 이 시기까지 제가층은 기존 部에 기반을 둔 채로 중앙 정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여 관료가 되는 한편, 특히 掾那部의 경우에는 大加가 國王과 혼인 관계를 맺어 政治的·社會的 地位를 유지·확대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掾那部는 左可慮 등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왕후의 親戚이었던 於畀留와 左可慮가 각각 中畏大夫 관직에 沛者 관등, 評者의 관직을 소지하여,[78] 나라의 權柄을 장악하였다.[79] 그러나 이러한 장악은 고국천왕 12년(190) 좌가려 등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일단락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태조대왕 대부터 고국천왕 대까지 각 部가 王權에 의탁하여 관료 집단으로서 정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된다. 특히 實權을 차지하는 部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 처음에는 貫那部와 桓那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部는 수성이 차대왕으로 즉위하자 실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차대왕이 明臨答夫에게 시해되면서 신대왕 대에는 掾那部가 실권을 장악한다. 이 점에서 차대왕의 시해 명분은 '民不忍'이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는 貫那部와 桓那部를

---

76)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拜答夫爲國相 加爵爲沛者 令知內外兵馬 兼領梁貊部落'

7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2년 春2月. '立妃于氏爲王后 后提那部于素之女也'

78) 評者는 고국천왕 12년(190) 기사에서만 발견되는 것으로 沛者의 誤記 혹은 沛者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나(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171~172), 구체적인 성격은 자세히 알기 어렵다. 다만, 이들이 나라의 權柄을 장악하였다고 하고, 반란 평정 이후 下令한 데에서 '官以寵授 位非德進'라 한 구절을 참조한다면, 評者가 국정 운영에서 높은 비중을 지녔으리라 상정된다.

79)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2年 秋9月. '中畏大夫沛者於畀留 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정치에 대한 掾那部가 일으킨 폭력적 반발이었다고 볼 수 있다.

차대왕이 貫那部와 桓那部와 결탁하여 왕이 되었다거나 그러한 차대왕이 시해되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王權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각 部를 제압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다. 당시 政局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였다는 점은 인정된다. 다만 이는 당대 國王權의 性格이 이중용립체제 하에서의 그것과 달리하게 되면서, 국왕의 지지·지원이 국정 운영에서 지니는 의미가 이전보다 커졌고, 이로 인해 국왕과의 관계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까닭에, 部에 소속한 諸加가 이를 이용하여 소속 部에게 유리하게 국정을 이끌어 가려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政局 변동에서 보다 주목할 부분은, 태조대왕부터 고국천왕대까지 국정이 국왕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변화가 발생하였고, 部에 소속한 지배층이 관료화하여 적극적으로 국왕과 관계하려고 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國王이 諸加를 포용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려는 의도 또한 반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원인으로 급격히 확장된 영역의 통치에 요구되는 行政力과 支配力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部와의 提携가 필요하였던 사정을 지적할 수 있다.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일단은 이중용립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지배방식이 여전히 유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기보다는 部에 소속한 諸加의 統主權을 일단 인정한 위에서 諸加가 자발적·주체적으로 새로운 統治理念을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참여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정치체제란 곧 정치권력이 국왕에게 集積한 위에서 성립한 것으로, 국정은 국왕에 의해 결정되고 국왕의 관료 집단 및 정치기구에 의해 운영되며,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가 정립하는 위에 종래의 읍락사회를 地方으로 재설정하여 지배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원리상 국왕이 정치권력을 掌握한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國王集權體制'라 부를 수 있겠다.

고국천왕 13년(191) 左可慮를 비롯한 네 掾那가 일으킨 반란을 평정한 뒤 고국천왕은 태조대왕 대 천명하였던 국왕이 民人을 모두 살피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였다.[80] 그리고 國相의 자리에 乙巴素를 등용하였다. 고국천왕이 4部에게 명하여 인재를 천거

케 하였을 때 처음 거론된 인물이 東部 소속 晏留였다는 점에서.[81] 처음 인재를 천거하도록 명한 4部의 部는 '方位名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을파소의 등용으로 朝臣과 國戚이 을파소가 새로운 세력으로 '舊세력'을 이간질한다고 하여 미워하였다고 함을 보면,[82] 舊세력이란 이전까지 국정에 참여하였던 朝臣 및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掾那部를 위시한 지배세력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된다. 그렇다면 좌가려 등의 반란 평정 이후 국정을 刷新하고 이끌어 나가는 데 참여케 한 '새로운 세력'은 '방위명부'를 기반으로 한 지배세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방위명부'는 王權에 기반하여 성립한 部임이 유추된다.[83] 방위명부를 冠稱하는 인물들 중에는 국왕집권체제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상한 지배층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존 部에 소속한 諸加 중 방위명부로 옮겨간 지배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아마도 貫那部와 桓那部에서는 방위명부로의 이동이 일찍 일어났다고 사료되며, 掾那部에서도 左可慮 등의 반란 이후에는 방위명부로의 이동이 점차

---

80) 본장 1절 참조.

8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3年 夏4月. '遂下令曰 近者官以寵授 位非德進 毒流百姓 動我王家. 此寡人不明所致也 今汝四部 各擧賢良在下者 於是 四部共擧東部晏留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淥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82)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故國川王 13年 夏4月. '朝臣國戚 謂素以新間舊 疾之'

83) 方位名部가 대무신왕 대 성립해 있었다고 보기도 하지만(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歷史學報』94·95, 1982, pp.85~88 ; 琴京淑, 『高句麗 前期 政治史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4, pp.110~111), 대체로 2세기 말에 중앙집권력의 강화와 함께 형성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하여는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pp.164~168 ; 여호규, 앞의 책, 2014, pp.42~43 참조. 方位名部의 성립 시기에 대한 견해가 갈리는 데 핵심이 되는 사료가 대무신왕 15년(32) 沸流部長 3인을 黜退하고 이를 대신하게 한 鄒勃素가 南部 使者인 기사이다(『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春3月). 여기서 使者 관등을 소지한 鄒勃素가 王命에 따라 행동하고 있으므로, 그는 『삼국지』에 기록된 '王家'의 使者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那部가 존재하였을 때 王都에는 '벌'에 가까운 발음이었을 '評'을 접미어로 한 구획명이 있었다가 집권화가 진전되면서 那部의 유력 세력이 王都로 결집하며 그들이 관칭하던 部와 혼용되다가, 那部가 소멸하면서 部가 評을 대체하였다는 견해가 참고된다(조영광, 「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81, 2016, pp.86~100). 이 문제는 方位名部의 實體 및 그 構造에 대한 해명을 함께 요하는데 이는 別稿에서 詳論하겠다. 다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고국천왕 대 이후 方位名部를 관칭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기존 部는 등장하지 않는 양상이 집권력의 강화를 반영한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다. '沸流部長'에 대해서는 Ⅲ장 3절 참조.

전개되어 3세기 후반에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리라 짐작된다. 고국천왕 2년(180) 王后를 배출한 于氏 가문은 椽那部 소속이었는데, 西川王 2년(271) 王后를 배출한 같은 于氏인 于漱가 西部를 冠稱하고 있는 것은,[84]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점차 기존 部 소속 지배층에서에서 방위명부의 지배층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左可慮 등의 반란을 평정한 이후 고구려에서, 국왕이 기존 部를 일시에 해체시키거나 기존 部가 국정에 참여할 권한을 박탈하는 조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고국천왕과 이후 산상왕의 王后가 掾那部 소속이었던 것, 특히 산상왕은 왕위 계승서열에서 후순위에 있었지만 掾那部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85] 그리고 消奴部에는 舊고구려의 前王室이 소속해 있었고 이들을 여전히 대우하였던 것 등이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통치이념이 확산하고, 이에 걸맞은 제도가 구축되어 가는 속에서 大勢는 변화하지는 않았다고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상이 沸流那部(=消奴部)이다. 沸流那部는 沸流那皂衣 陽神이 차대왕 2년(147) 中畏大夫에 임명되어 于台로 加爵된 사례 이후에는 국정에 참여한 흔적이 없다. 그러다가 中川王 7년(254)에서야 다시 沛者 陰友가 國相에 오르면서 국정 운영 과정에 등장한다. 이와 같은 양상은 前王部인 消奴部에서는 국왕의 관료로서 정계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消奴部에 소속한 諸加는 자신들의 統主權 유지에 집중하고, 諸加會議 등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消奴部가 정치적 사건에 크게 개입한 때는 산상왕 즉위 시 산상왕의 형인 拔奇가 왕위계승 서열상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公孫康에게 투항하였을 때이다.[86] 이때 消奴加도 下戶를 거느리고 발기와 함께 공손강에 투항하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發岐(=拔奇)는 公孫氏의 군사를 빌려 고구려를 공격하였지만, 동생 罽須에게 패배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亂은 실패로 돌아갔다.[87] 이에 가담

84)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2年 春正月. '立西部大使者于漱之女爲王后'
85) V장 3절 참조.
86)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消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한 消奴部 역시 그 실패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상왕이 형인 發岐를 王禮로 장사지내고,[88] 發岐의 아들이 古雛加의 칭호를 받아 고구려에서 계속 살았던 것을 보면,[89] 계승원칙에 어긋나게 왕위에 오른 산상왕은 發岐와 그 가담자에게 큰 책임을 묻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해된다. 消奴部에서 가담한 세력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消奴部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消奴部가 돌연 發岐의 행동에 가담하였던 것은, 發岐가 국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에 협력한 消奴部가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이전까지 消奴部의 動向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움직임은 태조대왕 대부터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던 국왕집권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反動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延優(=山上王)가 入宮하여 群臣의 추대로 왕이 되었을 때,[90] 發岐가 이에 大怒하여 병사를 이끌고 王宮을 둘러싸 延優의 즉위에 부당함을 시위하였으나, 國人 중 發岐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91] 그런데 發岐가 공손씨에게 투항할 때 消奴部가 가담하고 있는 것을 보면, 國人 가운데 消奴部에 소속한 인물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消奴部에 소속한 자들도 정치운영 원리상 國人이기는 하였으나, 실제 國政에는 참여하지 않는 명목상 國人이 되어 있었다고 해석된다. 이를 통해서도 消奴部에서는 변화하는 정치운영 원리를 거부하였으리라 짐작된다.

봉상왕 3년(294) 南部 大使者 倉助利가 國相에 오르기 전, 前任과 그 前任 國相은 沸流那部 소속의 沛者 陰友와 그의 아들 尙婁였다.[92] 이들이 기존 部 소속으로서 마지막

8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國人又無從發歧者 發歧知難 以妻子奔遼東 見大守公孫度告曰 某高句麗王男武之母弟也 男武死 無子 某之弟延優與嫂于氏謀卽位 以廢天倫之義 是用憤恚 來投上國 伏願假兵三萬 令擊之 得以平亂 公孫度從之 延優遣弟罽須 將兵禦之 漢兵大敗 罽須自爲先鋒 追北發歧 告罽須曰 汝今忍害老兄乎 罽須不能無情於兄弟 不敢害之曰 延優不以國讓 雖非義也 爾以一時之憤 欲滅宗國 是何意耶 身沒之後 何面目以見先人乎 發歧聞之不勝慙悔 奔至裴川 自刎死'

88)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元年 秋9月. '命有司 奉迎發歧之喪 以王禮葬於裴嶺'

89)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雛加駮位居是也'

90)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延優從之 王后執手入宮 至翌日質明 矯先王命 令羣臣立延優爲王'

9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發歧聞之大怒 以兵圍王宮 呼曰 兄死弟及禮也 汝越次簒奪 大罪也 宜速出 不然則誅及妻孥 延優閉門三日 國人又無從發歧者'

으로 國相에 임명된 인물들이다.[93] 消奴部까지 포섭하면서 기존 部에 기반을 둔 지배세력은 국왕을 君主로 하여 국정이 운영되는 정치체제를 모두 수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왕이 모든 피지배층을 民으로 지배한다는 통치이념을 消奴部 또한 수용하였으며, 諸加와 下戶의 지배—복속 관계가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물론 地方社會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러한 기반을 지니고 있는 세력은 종래 諸加일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중용립체제 하에서는 諸加가 王者的 存在로서 자신에게 복속된 下戶를 지배하는 것이었다면, 국왕집권체제 하에서는 國王의 民에 대한 지배를 이들이 담당하는 것으로 그 이념과 원리가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르러 諸加는 국왕 아래 지배신분층으로 편제가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귀족으로서 지배신분화한 지배층은 국왕과의 君臣關係에 근거한 '官僚'로서 정치권력을 획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고구려 초기 지배세력의 재편 과정은 政治權力을 중심에 두고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정치권력은 部에서 生成·保持되었고 諸加는 각 部에 소속함으로써 그 權力을 享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諸加가 연대하여 고구려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國家權力을 각 部가 分有한 형태였다. 이러한 체제에서 고구려왕도 또한 部에 소속하는 위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고구려왕이 지닌, 국정을 집행하고 諸加 간 갈등사항을 조정하며, 고구려 전체를 대표하여 대외교섭권을 지니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관리하는 등의 권한은 각 部에서 고구려왕에게 委任한 정치권력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런데 國王集權體制가 정비되어 가면서 정치권력은 점차 각 部에서 고구려왕으로 集積되어 갔다. 그러한 정치권력의 획득은 部에 소속하면서가 아니라 고구려왕과의 관계에서 가능하였다는 데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동이

92)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中川王 7年 夏4月. '國相明臨於漱卒 以沸流沛者陰友爲國相' ;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2年 9月. '以尙婁爲國相 尙婁陰友子也'

93) 尙婁는 소속 部를 明記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누락이 아니라 실제 그가 기존 部名을 칭하지 않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윤성용, 「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한국고대사연구』11, 1997, pp.334~335의 주 52)). 이에 따른다면, 尙婁 역시 西部 于漱의 사례처럼 方位名部 소속의 중앙귀족으로 전환한 사례로도 이해할 수 있다(여호규, 앞의 책, 2014, 신서원, p.385).

일어난 초반에는 종래의 정치 원리에 기반을 둔 국정 운영이 유지되면서도, 국왕이 각 部에 소속한 諸加 및 '加'層을 官僚化함으로써 정치권력을 각 部에게 分與하는 형식으로 국정이 운영되었다. 그러나 국왕집권체제가 공고히 하여 가면서, 정치권력은 국왕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면서 종래 諸加의 王者性을 뒷받침하던 統主權은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權力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중앙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앙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部가 성립하였다고 이해된다. 그것이 곧 '方位名部'라 생각된다.

3. 왕위계승과 '高句麗王'位의 推移

고구려의 部는 諸加 간에 서열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본질적으로 상호간의 평등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 구성 원리에 기반을 둔 조직이었다. 이러한 원리는 王位繼承 문제에도 일면 關係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곧 고구려의 國王權은 당대 基底에서 작동한 정치운영 원리를 살펴볼 때 그 성격을 보다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승원리는 형제계승에서 부자계승으로 전환되었다는 이해가 지지를 받고 있다.[94] 6대 태조대왕, 7대 차대왕, 8대 신대왕이 모두 형제 관계로 나타나고, 이후 9대 고국천왕과 10대 산상왕이 또한 형제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형제계승을 원리로 볼 수 있는 큰 이유이다. 그러나 이것이 '원리'로서 그러하였던 것이 아니라, 형제계승은 표면에 드러난 현상이고 그러한 현상을 만든 일관된 원리는 따로 존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95] 차대왕과 신대왕은 정변에 의한 것이고, 고국천왕 死後 그의 동생 산상왕이 즉위한 것은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던 이유에서 비롯된

94) 金洸鎭, 「高句麗社會의 生産樣式」『普專學會論集』3, 1937 ; 金哲埈, 앞의 논문, 1956 ; 李基白, 「高句麗王妃族考」『震檀學報』20, 1959 ; 盧泰敦, 「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대한 一考察」,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앞의 책, 1999).

95) 신인철, 「고구려의 건국과 왕위 계승」『한국문화인류학』27, 1995 참고.

것이며, 동천왕 대까지 왕위는 부자 계승이 원칙이었다고 파악한 견해도 참고된다.[96] 따라서 왕위계승에 작동한 원리는 承繼體制의 實狀을 파악하는 데 기초가 되는 당시 王權의 성격이나 자료상의 여러 조건을 포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97]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고구려왕위는 1대 주몽에서부터 5대 모본왕까지 現王의 直子에게 계승권이 우선 주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98] 문제는 6대 태조대왕이다. 그는 2대 琉璃王의 아들인 古鄒加 再思의 아들이었다.[99] 왕위가 傍系로 옮겨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에서는 現王에게 王位를 감당할 直子가 없으면 왕위계승의 기준점을 先代王으로 소급시킨다는 것이 後繼王 選定의 기본적인 논리였다는 점이 참고된다.[100] 이때 '先代王'이란 現王의 즉위 조건이 되었던 父王으로, 왕위 계보상의 前王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101] 태조대왕까지의 왕위계승 과정 또한 이러한 원칙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

96) 박노석, 「고구려 초기 왕위 계승의 원리」『대동사학』5, 2005. 이 논문에서는 4대 민중왕의 즉위 또한 반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박노석, 위의 논문, p.12), 민중왕의 즉위는 반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당대 작동되었던 정치운영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외, 고구려 초기부터 왕위계승은 부자 간 계승이 원칙이었다고 보는 견해로는 金光洙, 「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 問題」『韓國史硏究』55, 1986 ; 李玉, 『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敎保文庫, 1984, pp.250~260 참조.

97) 金光洙, 앞의 논문, 1986, p.1.

98) 金光洙, 앞의 논문, 1986, pp.2~9.

99)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大祖大王 或云國祖王 諱宮 小名於漱 琉璃王子古鄒加再思之子也'

100) 서의식, 「'上代'의 王位繼承과 聖骨」, 앞의 책, 2010, pp.329~330.

101) 서의식, 위의 논문, 2010, p.330.

〈표 7〉 高句麗本紀에 나타난 태조대왕까지의 왕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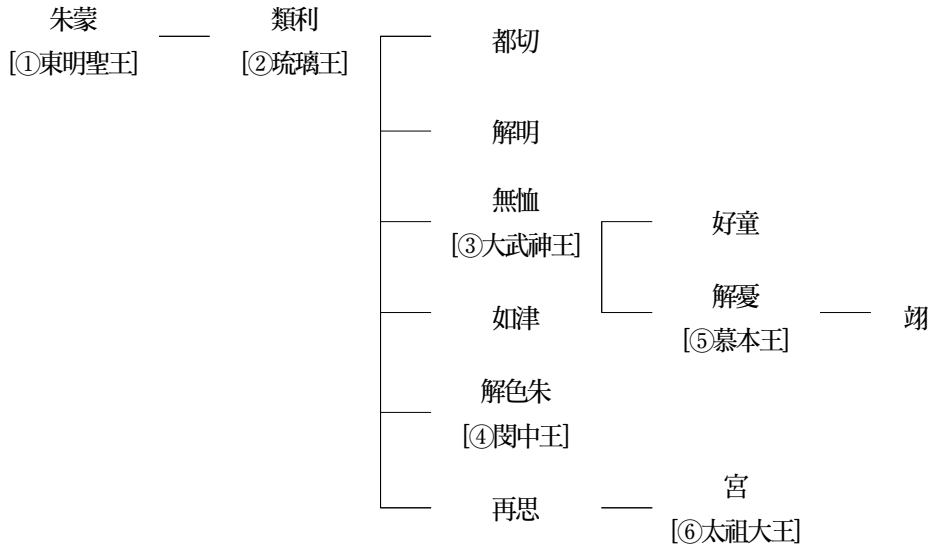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기록된 6대 태조대왕까지의 왕 계보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102] 大武神王 15년(32) 왕은 王子 解憂를 大子[太子]로 삼았다.[103] 따라서 同王 27년(44) 대무신왕이 薨하였을 때 태자 解憂가 왕위에 올라야 하겠으나, 그가 幼少하다는 이유로 國人은 解色朱를 왕위에 推戴하였다.[104] 解色朱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102) 『三國遺事』에는 4대 민중왕이 대무신왕의 아들, 5대 모본왕이 민중왕의 兄으로 나타나 『삼국사기』 계보와 차이가 있다(『三國遺事』卷1, 王曆. '第四閔中王 名色朱 姓解氏 大虎之子 甲辰立 理四年' ; '第五慕本王 閔中之兄 名愛留 一作憂 戊申立 理五年'). 『삼국유사』가 그렇게 기록한 데에는 나름의 까닭이 있었을 것이라 여겨지지만, 『삼국사기』에는 비단 계보뿐만 아니라 모본왕[解憂]이 대무신왕의 아들로 太子가 되는 기록도 확인되고, 解憂가 幼少하다 하여 민중왕이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도 확인된다.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에 비해 이들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 기록대로라면 모본왕은 민중왕의 동생인데, 형이 幼少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는데 동생을 왕위에 추대하였다는 등 『삼국사기』와 정합적으로 이해하기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삼국사기』 계보를 바탕으로 초기 왕위계승을 파악한다.

10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12月. '立王子解憂爲大子'

104)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閔中王. '諱解色朱 大武神王之弟也 大武神王薨 大子幼少不克即政 於是 國人推戴以立之'. 민중왕의 諱를 解邑朱라고도 하나,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 파른본에는 色朱라 한 점에 따라(『三國遺事』卷1, 王曆. '第四閔中王 名色

것은 그가 大武神王의 동생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3대 대무신왕의 先王인 2대 琉璃王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105] 그리고 閔中王이 薨한 뒤에 대무신왕의 태자였던 解憂가 왕위에 오른다(5대 모본왕).[106]

5대 모본왕은 慕本人 杜魯가 시해하여 사망하였다.[107] 모본왕은 同王 元年(48) 王子 翊을 太子로 삼았으니,[108] 모본왕이 薨한 뒤에 왕위에 오를 인물은 翊이어야 한다. 그러나 太子가 不肖하다는 이유로 그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고, 國人이 宮으로 繼立케 하였다.[109] 이를 염두에 두고 태조대왕을 중심으로 계보를 따져 올라가 보면, 5대 모본왕의 父王이 3대 대무신왕이므로, 대무신왕의 直子에서 다시 계승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보로 好童이 있으나 그는 대무신왕 15년(32) 自殺하였으며,[110] 계보상 대무신왕의 아들로 확인되는 인물은 없다. 따라서 父王인 대무신왕의 先代 父王으로 다시 계승권이 올라갔을 것이다. 이에 2대 琉璃王의 아들 再思가 지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조대왕 80년(132) 기록을 참고로 하면, 모본왕 사후 처음 왕위계승자로 추대하려한 인물은 再思였으나, 그는 자신이 늙었다는 이유를 들어 왕위를 그의 아들인 宮이 잇게 하였다고 이해된다.[111]

朱', 『파른본 삼국유사 교감』, 연세대학교 박물관, 2016, p.29), 민중왕의 諱를 解色朱로 표기한다.

105) 都切은 유리왕의 태자였으나 유리왕 20년(서기 1) 사망하였고(『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0年 春正月. '大子都切卒'), 同王 23년(4) 太子가 된 解明 또한 28년(9)에 自裁하였으며(琉璃王 28年 春3月. '乃往礪津東原 以槍插地 走馬觸之而死 時年二十一歲 以太子禮葬於東原 立廟 號其地爲槍原'), 如津도 37년(18) 溺死하였다(琉璃王 37年 夏4月. '王子如津溺水死').

106) 민중왕 대 기록에는 태자로 삼았다는 기록이 없다. 아마 민중왕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랬기 때문에 다음 왕이 대무신왕의 아들이었던 모본왕에게 돌아간 것이라 할 수 있다. 신라의 경우, 第二先代王의 孫보다는 第三先代王의 直子를 택하고, 第二先代王에게 이미 왕위를 계승한 直子가 있었으면 그 系列로 내려가 왕위승계자를 찾은 것으로 되어 있다(서의식, 「'上代'의 王位繼承과 聖骨」, 앞의 책, 2010, p.331). 이를 참고할 때, 민중왕 사후 유리왕의 아들 再思보다 유리왕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한 大武神王의 直子인 解憂에게 왕위계승의 우선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7)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6年 冬11月. '杜魯弑其君'

108)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元年 冬10月. '立王子翊爲王大子'

109)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慕本王薨 太子不肖 不足以主社稷 國人迎宮繼立'

110)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冬11月. '王子好童自殺'

111)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年 秋7月. '初慕本之薨也 太子不肖 羣寮欲立

따라서 6대 태조대왕까지의 왕위계승은 기본적으로 現王의 直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마땅한 후계자가 없을 때에는 先代王으로 거슬러 올라가 후보자를 물색하는 것이 일단의 원칙이었다고 추정된다.[112] 그런데 태조대왕이 즉위하기까지 왕위계승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앞에서 분석한 왕위계승 원칙과 함께 후계자를 選定하는 데 또 다른 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감지된다.

대무신왕이 薨하고 새로운 왕위계승자를 선정할 때 太子인 解憂가 있었으나, 國人은 그가 幼少하여 政事를 맡을 수 없다고 하여 유리왕의 아들이었던 解色朱를 推戴하였다(4대 민중왕). 이때 解憂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대무신왕 15년(32) 解憂가 태자가 되었고 대무신왕은 서기 44년에 薨하였으니, 만일 解憂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태자가 되었다고 해도 차기 왕위계승자를 선정할 당시 그의 나이가 10세는 족히 넘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는 國人이 宮을 추대하였을 당시 宮의 나이가 7세였다고 하는 것과 대조된다.[113]

이러한 양상에서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비록 이미 선정된 太子가 있을지라도 어리다든가하여 王位를 지탱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國人이 인정하는 가운데 承繼 자격을 지닌 다른 후보자 중에서 다시 후계자를 선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이다.[114] 다른 하나는, 國人이 왕위계승의 우선권을 지닌 후보자의 계승을 반대할 때 거론하는 이유인 '幼少하다'라는 것이 정말 幼少하기 때문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즉, 幼少하다는 것은 반대를 위해 내세운 명분이고, 실제는 다른 이유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115] 태조대왕이 왕위에 오를 때 太后가 垂簾聽

王子再思 再思以老讓子者 欲使兄老弟及'. 再思가 왕위계승권을 그의 아들에게 넘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리왕의 아들이라는 이유와 더불어 古鄒加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古鄒加는 적통의 승계와 관련된 칭호로서 왕위계승 후보자라 할 수 있다(여호규, 앞의 책, 2014, pp.263~265).

112) 태조대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7대 차대왕과 8대 신대왕이 모두 태조대왕과 형제 관계이면서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정변에 의한 즉위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차대왕 3년(148) 왕이 태조대왕의 元子 莫勤을 살해한 것은 莫勤이 왕위계승권을 주장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박노석, 앞의 논문, 2005, pp.14~15). 비록 차대왕과 신대왕의 즉위 과정에서 왕위계승이 원칙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이를 근거로 당대 왕위계승의 원칙이 존재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113)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以年七歲 大后垂簾聽政'

114) 金光洙, 앞의 논문, 1986, p.7.

政을 하였다고 하듯,[116] 만일 解憂가 幼少하였다면 일단 그가 왕위에 오르고 왕이 長成하여 政事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대리자가 攝政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민중왕과 태조대왕의 즉위 과정을 바탕으로, 당시 國人은 차기 高句麗王을 推戴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117] 이렇게 國人이 왕위계승 과정에 關與하였던 것은 常例에서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118] 민중왕과 태조대왕의 즉위 사례 외에는 國人이 推戴한다는 기록이 나타나지 않기도 하고, 推戴에 의한 왕위계승을 通常的 왕위계승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119] 高麗 太祖 王建의 訓要에서 왕위계승의 순서를 嫡子를 우선으로 하고, 혹 嫡子가 不肖하면 次子에게 돌리고, 그마저도 불초하면 兄弟 중에서 推戴된 자에게 大統을 잇게 하라고 한 대목에서도,[120] 推戴에 의한 왕위계승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推戴'가 通時的으로 나타나는 용어인 만큼, 민중왕과 태조대왕의 즉위 과정에서 작동한 推戴는 당대 맥락에서 살펴볼 때 그 성격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國人이 민중왕을 推戴한 것은, 당시 태자 解憂의 나이와 태조대왕의 즉위 당시 나이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도 확인되듯, 후계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非常의 例가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오히려 國人이 그러한 非常의 例를 발생시켰다고 해석

115) 신라의 사례이기는 하나, 奈勿尼師今이 薨하였을 때 그의 아들이 幼少하여 國人이 實聖을 세워 繼位케 하였는데(『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實聖尼師今. '奈勿薨 其子幼少 國人立實聖繼位'), 이를 실성이사금이 왕위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幼少하다는 이유를 들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참고된다(윤진석, 「신라 至都盧葛文王의 '攝政'」『한국고대사연구』55, 2009, p.75).

116)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以年七歲 大后垂簾聽政'

117) 拙稿, 「高句麗 王部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7, p.47.

118) 金光洙, 앞의 논문, 1986, p.7의 주 14).

119) 新羅 下代 推戴에 의한 왕위계승을 비정상적인 왕위계승의 한 형태로 파악하기도 하고(金昌謙, 「新羅 下代 推戴에 의한 王位繼承의 性格」『淸溪史學』16·17, 2002), 高麗 初 즉위 방식을 크게 嗣位, 禪讓, 推戴의 형식으로 구분할 때, 추대는 정식 儀禮로 보기 힘들다고 이해되기도 한다(장지연, 「고려 초 卽位儀禮와 喪禮를 통해 본 권위의 성격」『한국중세사연구』47, 2016, pp.305~307).

120) 『高麗史』卷2, 世家2, 太祖 26年 4月 癸卯. '其三曰 傳國以嫡 雖曰常禮 然丹朱不肖 堯禪於舜 實爲公心 若元子不肖 與其次子 又不肖 與其兄弟之衆所推戴者 俾承大統'

해야 합리적이다. 태조대왕의 즉위 과정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모본왕이 시해된 것은 분명 非常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본왕의 뒤를 이은 계승자를 선정하는 것까지 非常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사료된다. 차기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이미 太子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東明聖王 19년(서기전 19) 類利가 太子가 되었다.[121] 琉璃王 대에는 同王 20년(서기 1) 太子 都切이 사망하였다고 하니,[122] 그 전부터 都切은 太子였다는 것이고, 23년(4)에 解明을 다시 태자로 삼았으며,[123] 解明이 죽자 無恤[大武神王]을 다시 태자로 삼았다.[124] 大武神王도 15년(32)에 解憂를 태자로 삼았으며,[125] 慕本王도 元年(48)에 翊을 太子로 삼았다.[126] 당시 王位繼承을 위해 미리 후계자를 선정하는 형식이 마련되어 있었음이 확인된다.[127]

모본왕이 杜魯에게 시해되었다고 해서 太子였던 翊이 차기 왕위계승자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왕위계승 과정에 國人이 제동을 걸었던 것이다. 모본왕이 暴戾하고 不仁하여 國事를 돌보지 않아 百姓이 원망하였다고 하거나,[128] 모본왕이 앉을 때 늘 사람을 깔고 앉고 누울 때에는 사람을 베개로 삼았는데 혹 움직이기라도 하면 용서치 않고 죽였다고 하여,[129] 기록상 모본왕의 부정적인 風貌를 부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모본왕을 시해한 것은 杜魯가 단독으로 행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추정된다. 모본왕 사후 왕위계승 과정에서 國人이 태자 翊을 不肖하다는 이유로 왕위계

121)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9年 夏4月. '王子類利自扶餘與其母逃歸 王喜之 立爲大子'
122)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0年 春正月.
123)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3年 春2月. '立王子解明爲大子 大赦國內'
124)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33年 春正月. '立王子無恤爲太子 委以軍國之事'
125)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12月.
126)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元年 冬10月.
127) 金光洙, 앞의 논문, 1986, p.7. 고구려에서 태자 제도가 도입된 시기를 次大王 대로 보기도 한다(김병곤, 「고구려의 태자 책봉제 수용 과정 고찰」 『韓國史硏究』153, 2011). 기록에 나타나는 '太子'가 후대에 潤色한 표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그것을 太子라고 한 이상 여기에 왕위를 이을 차기 후계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고 해석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128)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爲人暴戾不仁 不恤國事 百姓怨之'
12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慕本王 4年. '王日增暴虐 居常坐人 臥則枕人 人或動搖 殺無赦 臣有諫者 彎弓射之'

승에서 배제하려 한 이유 또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보건대, 태조대왕 즉위 과정 역시 민중왕의 즉위 과정과 마찬가지로 非常의 상황이 아닌데도 國人이 왕위계승 과정에 關與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태조대왕 즉위까지의 왕위계승 과정에서 國人은 왕위계승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만 高句麗王을 推戴하는 역할을 하였다기보다는, 왕위계승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王室에서는 왕위를 계승할 차기 후계자를 지정하여 후사를 대비하였다. 이때 現王의 直子에게 왕위계승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리고 실제 왕이 薨한 후에는 國人의 共論과 合意 절차를 거친 뒤 그 후계자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 과정에서 왕위계승 후보자가 그대로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었지만, 태자 解憂나 翊의 사례와 같이 國人이 왕위계승에 문제를 제기하여 새로운 후보자를 찾을 수도 있었다. 혹은 後嗣가 없이 先王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왕위계승의 원칙에 따라 적합한 인물을 결정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특히 민중왕과 태조대왕 대에 國人의 推戴 기사가 나타나는 것은 王室에서 정한 후계자가 아닌 國人의 영향력에 의해 고구려왕이 추대된 경우를 特記한 것이라 해석된다.

그러므로 태조대왕 즉위까지의 왕위계승은 일정한 원칙에 따라 정해진 왕위계승권을 바탕으로 후계자가 정해지고, 國人의 합의를 거쳐 그를 推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왕위가 이러한 형식에 따라 承繼된 것은 당대 정치운영의 기본 원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이 시기 고구려는 舊고구려에서부터 작동한 이중용립 체제를 바탕으로 國政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체제에서 諸加와 高句麗王은 서로 간에 同質的인 平等을 지니면서도 그 안에서 位階와 序列을 이루는 관계였다.[130] 고구려왕은 加的 기반에서 諸加와 같이 國政을 審議하고 決議하면서도, 결정된 사안을 시행하고 諸加 간 갈등사항을 조정하며,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관리 등의 권한을 지닌 존재였다.[131] 部에 소속한 諸加는 이러한 權力構造 위에서 高句麗王을 推戴하였던 것이다. 고구려왕은 諸加의 共立을 통해 왕위에 오름으로써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는 절

130) Ⅱ장 3절 참조.
131) Ⅲ장 3절 참조.

차를 거치고, 그럼으로써 왕으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었다. 이 점에서 민중왕과 태조대왕의 즉위 과정에서 나타난 國人이란 五部에 소속한 지배층을 가리키며, 이때의 推戴란 곧 五部가 고구려왕을 共立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된다.

五部 특히 그에 소속한 諸加가 共立하여 推戴한 왕이라는 점에서, 이 당시 고구려왕은 '共立王'으로서의 性格을 띤다고 할 수 있다. 高句麗王은 '王'으로서 '加'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諸加가 共立한 王으로서 '共立王'이기도 하였다. '共立王'은 당대 자료를 해석하여 역사적으로 명명해 본 용어로 當代的 표현은 아니다. 당시 고구려 王權의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고구려어로는 '皆次'를 주목할 수 있다. '皆次'는 고구려어로 '王'이란 뜻으로,[132] 語義 및 音價 상 신라의 '居西'와 相同한 단어로 볼 수 있다. 이때 居西干은 諸干이 共立한 왕을 나타내는 용어임이 지적되는데,[133] 이를 참고한다면 '居西'와 음가가 상동한 고구려어의 '皆次' 또한 共立王이라는 의미를 내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34] 앞서 살펴본 바, 태조대왕 즉위 과정에까지 고구려왕이 諸加의 合意와 共論 절차를 통해 왕으로 推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고구려와 신라에서 비록 漢字 표기는 달리하지만 그 뜻과 음가가 같은 용어로 나타나는 것은, 고구려, 부여, 신라 등 나라는 각기 달리하여도 그 지배자를 가리키는 용어가 加·干 등 동일한 語形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135] 皆次·居西干을 共立하는 정치구조가 선행한 체제에서 이어진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이 점에서 다시 주목되는 것이 '箕子'이다. 王號로서 '箕子' 또한 皆次·居西와 같은 音價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의미가 '王'이라는 공통성이 발견된다.[136] 비록 '皆次'라는 고구려어

---

132)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牛首州 ; 『三國史記』卷37, 雜志6, 地理4 高句麗 漢山州.

133) 서의식, 「辰國의 變轉과 '辰王'位의 推移」, 앞의 책, 2010, pp.42~43.

134) 拙稿, 앞의 논문, 2017 참조.

135) 金光洙, 앞의 논문, 1983, pp.66~68 ; 徐毅植, 「新羅上代 '干'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pp.16~17 참조.

136) 李基文, 「百濟語 硏究와 관련된 諸問題」 『백제연구』13, 1982 ; 李炳銑, 『韓國古代國名地名硏究』, 螢雪出版社, 1982 ; 裵大溫, 『古代韓國語槪說』, 螢雪出版社, 2005 ; 최남희, 『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2005 ; 손희하,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王' 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14, 2006 ; 김양진, 「《고려사(高麗史)》 속의 고려어(高麗語) 연구」 『國語學』52, 2008, pp.195~196 등 참조.

가 고구려 초기 자료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箕子'와의 상관성을 고려하고, 신라에서 赫居世를 왕위에 추대할 때부터 '皆次'와 同音·同義 관계인 居西가 사용되었던 사실에 주목한다면, 태조대왕이 즉위하는 과정에서까지 고구려왕은 五部가 共論을 통해 推戴하여 共立한 왕으로서 '皆次'였다고 볼 수 있다.[137]

그런데 태조대왕의 뒤를 이어 次大王이 즉위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의 즉위는 앞선 태조대왕까지의 과정과는 사뭇 양상이 달라졌음이 확인된다. 遂成 즉 차대왕은 태조대왕 94년(146) 12월 禪位의 형식으로 왕위에 올랐다.[138] 그런데 수성의 繼位가 國人의 合意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태조대왕 80년(132) 貫那 于台 彌儒와 桓那 于台 菸支留, 沸流那 皂衣 陽神 등이 遂成에게 태조대왕이 讓位할 뜻이 없으니 계책을 도모할 것을 건의하였다.[139] 당시 수성은 承襲은 嫡子에게 돌아가는 것이 天下의 常道이므로, 태조대왕에게 嫡子가 있으니 감히 분수에 넘치게 기회를 엿볼 수는 없다고 거절하였다. 하지만 태조대왕 94년(146) 7월 즉 태조대왕의 禪位가 있기 다섯 달 전에, 수성은 大王이 늙어서 죽지 않고 있고 자신의 나이도 점차 저물어 가고 있으니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자신을 위해 계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하였다.[140] 그리고 이때 그의 뜻에 반대하는 발언을 한 자는 살해되었다.[141] 수성의 즉위는 簒奪의 성

137) 『高麗史』 高麗世系에는 道詵(827~898)이 世祖(王建의 아버지 王隆)의 집을 보고 '기장(穄)을 심어야 할 곳에 마(麻)를 심었다'고 한 기사에 대하여 고려 毅宗 대(1146~1170) 학자인 金寬毅가 기장(穄)과 王은 우리말이 서로 비슷한 까닭에 太祖가 王氏를 姓으로 삼았다고 풀이한 기록을 전하고 있다(『高麗史』, 高麗世系. '李齊賢曰 … 又曰 金寬毅云 道詵見世祖松嶽南第曰 種穄之田而種麻也 穄之與王 方言相類 故太祖因姓王氏'). 李齊賢은 金寬毅의 설에 반대하였으나 실제 王建이 어찌하여 王을 姓으로 삼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서라도, 이를 통해 12세기 중엽 고려에서 '기장(穄)'과 '王'의 우리말이 서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는 김양진, 앞의 논문, 2008, pp.195~196 참고. 수백 년이 지난 12세기까지도 '皆次'/'箕子'와 같은 語音이 王을 가리키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양상을 고려한다면, 역으로 수백 년 전에도 '皆次'가 쓰였다고 추정하는 것이, 특히 그러할 가능성이 가늠되는 정황에서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138)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94年 12月. '王謂遂成曰 吾旣老 倦於萬機 天之曆數在汝躬 況汝內參國政 外摠軍事 久有社稷之功 允塞臣民之望 吾所付託 可謂得人 作其卽位 永孚于休 乃禪位 退老於別宮 稱爲太祖大王'

139)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80年 秋7月.

140)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94年 秋7月. '遂成獵於倭山之下 謂左右曰 大王老而不死 吾齒即將暮矣 不可待也 惟願左右爲我計之'

격을 띠었던 것이다. 특히 수성이 왕위에 오르고 난 뒤 태조대왕의 元子인 莫勤을 죽였고, 莫勤의 동생 莫德은 화를 입을까 두려워 自縊한 것을 보면,[142] 자신의 繼位가 왕위계승 원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차대왕은 왕위계승 원칙 상 계승권을 주장할 수 있는 태조대왕의 아들을 살해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143]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차대왕의 즉위 과정에서 國人의 역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민중왕과 태조대왕 즉위 당시 國人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차기 왕위를 承繼할 수 있는 太子조차 繼立케 하지 않고, 왕위계승권 상 후순위에 있던 자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당시 國人의 고구려왕 共立 권한은 차기 왕위계승자로 王室에서 인정한 太子가 왕위를 승계하는 것도 막을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컸고, 그런 만큼 고구려왕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國人의 合意를 통해 共立되는 절차가 필요하였다.

國人이 고구려왕을 共立하는 과정에서, 민중왕의 즉위와 같이 설혹 왕위계승의 우선권이 있던 자가 후계자로 선정되지 않고 다른 후보자가 왕위를 承繼하더라도, 새 왕은 절차에 따라 公認된 고구려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후순위였던 解色朱가 즉위하고 계승서열 상 우선권이 있었던 대무신왕의 태자인 解憂가 살아있다고 해서, 解色朱가 고구려왕으로서 권위를 갖추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태조대왕 즉위 과정에서 모본왕의 태자였던 翊이 왕위에 오르지 못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태자 翊이 비록 왕위계승권상 宮보다 우선하였다고 해도, 不肖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宮이 國人의 推戴를 통해 왕위에 오른 이상, 宮은 고구려왕으로서 正統性을 인정받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다. 민중왕이 즉위하고 解憂가 살아있다가 민중왕 사후에 다시 왕위계승 원칙에 따라 모본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것과, 태조대왕이 즉위하고 모본왕의 태자 翊이 제거되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양상이다. 그러나 수성은 차대왕으로 즉위하고 태조대왕의 元子인 莫勤을

141)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94年 秋7月. '有其人對曰 今大王之賢 內外無異心 子雖有功 率羣下姦諛之人 謀廢明上 此何異將以單縷 繫萬鈞之重而倒曳乎 雖復愚人 猶知其不可也 … 左右妬其直 讒於遂成曰 王子以大王年老 恐國祚之危 欲爲後圖 此人妄言如此 我等惟恐漏洩 以致患也 宜殺以滅口 遂成從之'

142)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3年 夏4月. '王使人殺大祖大王元子莫勤 其弟莫德恐禍連及 自縊'

143) 박노석, 앞의 논문, 2005, pp.14~15.

살해하였다. 전술한 바, 이는 수성이 비록 왕위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莫勤이 살아 있는 이상 고구려왕으로서의 位格과 名分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풀이된다.

이 점에서 수성의 즉위는 앞선 고구려왕이 王統을 승계하는 데 필요한 절차였던 國人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고 이해된다. 만일 이 시기 國人의 共立 절차가 왕위계승 과정에서 본연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면, 태조대왕이 수성에게 禪位할 당시 반대에 직면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나 元子 莫勤이 있었으므로, 민중왕 즉위 과정과는 반대로 왕위계승 서열상 우선권이 있는 莫勤에게 왕위가 승계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차대왕에 앞선 태조대왕 대 수반된 國王權에 대한 性格 변화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모본왕 대까지 고구려왕은 현실적으로는 父系血緣에 의하여 이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초월적인 권위의 承繼意識이 작용하는 가운데 계승되어 갔다는 특징이 있다.[144] 주몽은 스스로 '天帝의 아들'이라 하여,[145] 자신의 권위를 하늘에 기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類利가 아비 주몽을 만났을 때, 주몽은 類利가 자신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나서도 다시 類利에게 어떠한 神聖함이 있는지를 물었고, 類利가 공중으로 올라 창을 타고 해에 맞닿는 異蹟을 보이고 나서야 주몽이 기뻐하여 太子로 삼았다고 한다.[146] 이는 주몽의 뒤를 이어 고구려왕이 되기 위해서는 비단 혈연상의 관계뿐만 아니라 神聖性 또한 갖추어야 한다는 의식이 반영된 설화라 할 수 있다. 이 외, 유리왕부터 모본왕까지는 '解'를 칭하고 있는데, 이는 太陽王과 같은 의미의 표식으로 해로 상징되는 하늘의 권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해석된다.[147]

그런데 태조대왕은 신성함의 상징과 같은 '解'를 칭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그에게서 人神的인 면모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어디까지나 人君과 같은 면모를 보이고

---

144) 金光洙, 앞의 논문, 1986, p.4.
145)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始祖東明聖王. '我是天帝子 來都於某所'
146) 『東國李相國集』卷3, 古律詩, 東明王篇. '前漢鴻嘉四年夏四月 奔高句麗 以劒一片 奉之於王 王出所有毁劒一片合之. 血出連爲一劒 王謂類利曰 汝實我子 有何神聖乎 類利應聲 擧身聳空 乘牖中日 示其神聖之異 王大悅 立爲太子'
147) 金光洙, 앞의 논문, 1986, pp.2~4.

있다.[148] 이러한 차이를 당대 왕위계승 원리와 결부지어 이해해 본다면, 모본왕 대까지는 하늘, 해와 같은 상징을 이용하여 자신이 고구려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드러내어 國人에게 자신의 권위를 정당화하고, 이를 통해 고구려왕으로서 共立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태조대왕 대에 들어서면 고구려왕은 君主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賑恤하여 國王의 은덕을 고구려 사회 전체에 베풀 수 있는 통치자로서의 이념이 더욱 강조되었다.[149] 즉, 태조대왕 대에는 고구려왕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장치가 요구되기보다는 民人에게 덕을 베풀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면모가 요구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차대왕 즉위 이후 國人의 共論과 合意가 國政 및 왕위계승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차대왕 이후부터 國人의 역할은 종래 왕위계승 과정에서 現王 및 先代王과의 혈연관계와 함께 또 하나의 요건으로 기능하였던 것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대왕은 재위 20년(165) 椽那 皂衣 明臨答夫에게 시해되었고,[150] 당시 左輔였던 菸支留를 筆頭로 公議하여 新大王이 왕위에 올랐다.[151] 여기서 '公議'란 國人의 共論 과정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152] 이것은 차대왕이 시해되었기에 발생한 共論으로 해석된다.

모본왕은, 비록 현실적으로는 모본왕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배후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侍從이었던 杜魯가 단독으로 일으킨 사건이었다. 따라서 모본왕 사후에 왕위계승권은 그의 태자 翊에게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國人이 翊에게 왕위가 승계되는 것에 제동을 걸어 宮을 왕위로 추대하였던 것이다. 반면 차대왕은 시해자가 椽那 皂衣 명림답부인 데에서 확인되듯, 掾那部가 차대왕에게 反旗를 들고 그를 시해한 政變이었다. 이것이 명림답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

148) 姜辰垣, 「高句麗 國家祭祀 硏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a, p.85 참조.
149) V장 1절 참조.
150)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次大王 20年 冬10月.
15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新大王 諱伯固 固 一作句 太祖大王之季弟 儀表英特 性仁恕 初 次大王無道 臣民不親附 恐有禍亂 害及於己 遂遯於山谷 及次大王被弑 左輔菸支留與群公議 遣人迎致 及至 菸支留跪獻國璽曰 先君不幸棄國 雖有子 不克有國家 夫人之心 歸于至仁 謹拜稽首 請卽尊位 於是 俯伏三讓而後卽位 時年七十七歲'
152) 拙稿, 앞의 논문, 2017, p.46.

니었다는 것은, 그가 신대왕 2년(166) 國相에 임명된 것에서도 알 수 있다.[153] 따라서 차대왕의 太子였던 鄒安에게 政變으로 인한 왕위계승 과정에서 우선권이 없었던 것은 물론, 그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었으므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는 일단 도망갔던 것이다.[154] 즉, 정변 이후 國人은 鄒安을 배제하고서 왕위계승자를 의논한 것이므로, 이것은 고구려왕으로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였던 이전의 추대와는 성격을 달리 한다.

[ⓕ-1]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三國志』)[155]

[ⓕ-2] 故國川王無子 故延優嗣立(『三國史記』)[156]

[ⓕ-3] 王后于氏祕不發喪 夜往王弟發歧宅曰 王無後 子宜嗣之(『三國史記』)[157]

[ⓕ-4] 王后曰 大王薨 無子 發歧作長當嗣 …(『三國史記』)[158]

[ⓕ-5] 令羣臣立延優爲王 發歧聞之大怒 以兵圍王宮 呼曰 兄死弟及禮也 汝越次簒奪 大罪也(『三國史記』)[159]

한편 9대 고국천왕 사후에 延優가 山上王으로 즉위하는 과정에서도 群臣이 그를 추대하는 모습이 확인된다.[160] 『삼국지』 고구려전에는 拔奇가 不肖하여 國人이 伊夷模 즉 산상왕을 共立하여 王으로 삼았다고 하여, 國人이 산상왕을 '共立'한 것으로 적시되고 있다([ⓕ-1]). 따라서 現象的으로는 이전 國人의 共立 절차와 산상왕의 즉위 절차가 동일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삼국사기』에 나타난 산상왕 즉위 과정을 자세히 살펴

153)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拜答夫爲國相 加爵爲沛者 令知內外兵馬兼領梁貊部落'
154) 鄒安은 신대왕의 赦免令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讓國君에 봉해졌다(『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新大王 2年 春正月. '初明臨答夫之難 次大王太子鄒安逃竄 … 王卽賜狗山瀨 婁豆谷二所 仍封爲讓國君').
155) 『三國志』卷30, 魏書30, 烏丸鮮卑東夷傳, 高句麗.
156)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157)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158)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159)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160)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보면, 國人의 共立이 지닌 位相이 종래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국천왕은 後嗣 없이 薨하였다([ⓕ-2]). 이때 王后 于氏는 고국천왕의 동생이자 산상왕의 형인 發歧에게 찾아가 왕[고국천왕]에게 후사가 없으니 그대[發歧]가 마땅히 嗣位하여야 한다고 하였다([ⓕ-3]). 그러나 發歧는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난 것을 몰랐던 상황이어서 왕후에게 왕위 승계를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며 또한 야밤에 부인이 돌아다니는 것은 禮가 아니라고 면박하였다.[161] 이에 왕후는 다시 發歧의 동생 延優에게 찾아가 대왕[고국천왕]이 薨하였는데 자식이 없으니 發歧가 마땅히 嗣位하여야 하나 云云하였다([ⓕ-4]). [ⓕ-4]에서 당시 왕위계승 과정에서 國人의 共立이 필요하였던 절차가 아니었음이 확인된다. 고국천왕 사후 왕위는 發歧에게 돌아가는 것이 원래는 정당한 절차였던 것이다.

이에 延優는 國人이 共立하였다는 절차를 빌려 왕위에 오른다([ⓕ-1]). 이에 發歧는 大怒하여 王宮을 병사로 둘러싸고는 산상왕의 즉위를 簒奪이자 大罪라고 하였다([ⓕ-5]). 당시 國人의 共立이라는 절차가 고구려왕으로서 正統性을 보장하는 데 영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부분이다.[162] 즉, 산상왕 즉위 과정에서 나타난 國人의 共立은 산상왕이 簒奪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형식적인 절차였던 것이다.

결국 고구려 초기의 왕위계승 및 왕권의 성격은 태조대왕 즉위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태조대왕 즉위까지는 國人의 共立가 새 왕이 고구려왕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이에 國人의 共論에 따라 고구려왕이 추대되면 설령 우선권을 지니고 있었던 왕위계승 후보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에 따랐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이 시기 고구려왕은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는 속에 다

161) 『三國史記』卷16, 高句麗本紀4, 山上王 卽位條. '發歧不知王薨對曰 天之曆數有所歸 不可輕議 況婦人而夜行 豈禮云乎'

162) 태조대왕 즉위 당시 모본왕의 태자 翊이 왕위계승자로 선정되지 못하였을 때, 그가 拔奇와 같이 反動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된다. 『삼국사기』에 그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기도 하거니와, 민중왕 즉위 당시 대무신왕의 태자였던 解憂가 왕위계승에서 한 차례 배제되었다가 민중왕이 薨한 뒤 5대 왕으로 즉위한 것을 보면, 解憂가 4대 왕위계승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별다른 反動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즉, 당대에는 國人의 共論을 통해 고구려왕으로 누군가 共立되면 그 정통성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은 적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翊은 왕위계승 과정에서 탈락한 것을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른 諸加와 동등한 加的 기반에서 그들의 共立에 따라 추대된 王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조대왕 이후부터 國王은 점차 다른 諸加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위치하게 되었다. 이제 국왕은 諸加가 共立한 왕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 속에서 民을 통치하는 君主로서의 성격을 띠어 갔다. 국왕집권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나타난 새로운 왕권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대왕 이후부터 국왕은 現王 및 先代王과의 혈연관계에 의해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확보되었다. 물론 이후에도 政變이나 왕위계승 분쟁 과정에서 共立의 절차가 이용되기도 하였고, 역사적으로 群臣의 公議를 통해 國王이 推戴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태조대왕 즉위 과정까지와 같이 필수적인 절차로서의 위상은 약화되어 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Ⅵ. 結論

고구려의 국가 성립은 고조선 및 舊고구려 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결 속에서 계기적 변화상에 주목하고, 지배층이 國政에 참여하여 정치를 운영해 나간 원리와 양상을 점검할 때 다음과 같이 해명할 수 있었다.

서기전 2세기 후반, 舊고구려는 위만조선 및 濊와 함께 東夷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이었다. 이러한 舊고구려에는 諸加가 스스로 連帶하여 구성한 정치조직인 部가 존재하였다. 部의 中核이었던 諸加는 독립된 政治力을 보유한 王者였고, 加의 王者性은 그가 諸 읍락을 統主하는 데서 가지는 行政的·軍事的·經濟的 측면 등의 支配權에 기반을 두었다. 이러한 統主權은 諸加와 下戶의 정치적·사회적 지배—복속 관계에 기반한 權力으로, 지배—복속 관계를 수립케 하는 諸加와 下戶의 主從關係가 유지되어야 諸加의 王者性이 보장되고 안정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諸加는 서로 간의 連帶를 통해 部를 조직하고 누층으로 疊築하여 상위권력을 마련함으로써 그들의 지배권을 더욱 鞏固化하였다. 곧 상부국가로서 舊고구려의 건설이며 그 왕으로서 高句麗王의 존재이다.

이 시기 고구려왕 또한 諸加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加的 性格에 기반을 두면서도, 部에 소속한 諸加의 合議를 主宰하고 고구려 전체를 指揮하는 統治者였다. 서로 간에 同質的인 平等을 지니면서도 그 안에서 位階와 序列을 이루는 관계인 것이다. 舊고구려 시기에는 王室이 消奴部에 소속하였는데 곧『삼국사기』고구려본기 기록의 沸流國이다. 즉, 비류국의 왕실이 消奴部에 소속하였으며 그 왕실에서 다시 舊고구려의 왕으로 聳立된 것이었다.

諸加는 각자의 독자적 지배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고구려를 건설하였고, 그 건설의 주체임을 드러내는 상징이자 그러한 지배층의 정치조직으로 기능한 것이 部였다. 이 시기 정치구조는 加가 자신의 지배영역에서 '王者'로서 서 있으면서도, 다시 '王者'의 상위 '王者'로서 고구려왕을 聳立시켰다는 특징이 있다. 수준과 성격이 다른 王의 이중적 聳立을 중핵으로 하여 성립해 있는 이러한 정치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정치체제는, 王者的 存在로서 諸加가 연대하여 다시 그들의 상위 王者로서 고구려왕을 聳立시킨

전제 위에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二重聳立體制'라 할 수 있다.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정치권력은 部에서 生成·保持되었고 諸加는 각 部에 소속함으로써 그 權力을 享有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권력은 諸加가 연대하여 고구려를 건설하면서 발생한 國家權力을 각 部가 分有한 형태였다. 이중용립체제에서는 고구려왕 또한 部에 소속하는 위에서 정치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고구려왕이 지닌, 국정을 집행하고 諸加 간 갈등사항을 조정하며, 고구려 전체를 대표하여 대외교섭권을 지니고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관리하는 등의 권한은 각 部에서 고구려왕에게 委任한 정치권력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러나 玄菟郡이 설치되면서 王部로서 消奴部와 王室로서 沸流國의 주도권 및 그 영향력은 점차 미약해져 갔다. 舊고구려의 왕실은 前漢으로부터 鼓吹伎人을 받음으로써, 현실적으로 왕권의 위엄을 확보하고 그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舊고구려 왕실의 국정 주도에 동조하는 지배세력과, 部에는 소속하면서도 내적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세력,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전한의 군현 설치는 수용하되 部에서는 이탈한 세력, 그리고 舊고구려와 군현 설치 수용을 모두 거부하고 유이를 택한 세력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고 추정된다.

서기전 75년 현도군이 축출되면서 舊고구려의 對漢 관계에 대한 기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그러한 정책을 이끄는 주도권에 또한 변화가 발생하였다. 종래 對漢 관계를 이끌던 舊고구려 왕실의 입지는, 舊고구려를 이끌 만한 새로운 인물이 대두한다면 王統이 바뀔 정도로 상당히 열악한 처지에 있었다. 곧 주몽의 등장이다. 주몽은 舊고구려의 王室이었던 消奴部 소속 沸流國王 松讓의 투항을 받아냄으로써 고구려의 새로운 王室을 열었고, 이로써 고구려의 王部는 消奴部에서 桂婁部로 교체되었다. 국정 주도권의 변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 고구려는 다시 현도군과 교섭을 재개하였는데, 이때 등장한 절충안으로 등장한 것이 幘溝漊의 설치였다.

王部가 교체된 당대에는 주몽이 고구려를 '建國'하였다는 인식보다는 고구려를 '繼承'하였다는 인식이 더 보편적이었다고 추정된다. 舊고구려의 왕실은 3세기에도 前王室로 대우받아 독자적인 종묘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고구려'는, 주몽이 고구려왕이 된 이후의 고구려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선조가 王室이었던 舊고구려까지

포함하였다고 이해된다. 그리고 現王室에서 舊고구려의 왕실을 전왕실로 예우하는 한, 그들 또한 '고구려'가 舊고구려를 아우르는 그것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일면 수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은 그가 국가의 시조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면서 등장한 象徵的 表現이라 할 수 있다. 주몽은 스스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고구려'를 '繼承'하여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舊고구려를 계승한 위에서 성립한 고구려의 국정은 한동안 舊고구려로부터 운영되어 온 조직과 질서에 기반을 두고 전개되었다. 곧 部를 中樞로 한 국가운영체계의 유지이다. 諸加는 部에 소속한 加로서 諸加會議에 참여하여 정책을 審議·決定하였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시행하는 권한은 고구려왕에게 위임되었다. 諸加會議는 國中大會에서 실시하던 諸加評議를 포함한 정기 제가회의와 諸加의 共論을 통해 사안을 결정하는 별도의 회의기구로 구성되었으며, 평시 소규모로 운영되는 제가회의에는 각 部의 대표로서 大加가 참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大加는 세력 면에서도 大者이겠으나 그와 동시에 국정 운영상 주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지위이기도 하였다. 大加는 使者, 皂衣, 先人 등의 독자적인 관원조직을 두어 部에 소속한 諸加가 다스리는 지배 영역에서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를 담당케 하였다.

加는 자신의 지배 영역 내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동일 部에 소속한 諸加 간 문제는 그들이 소속한 部 차원에서 처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회의에서는 部 간에 관계한 이해 문제 및 五部 즉 고구려 전체에 관련한 사안이 議決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제가회의에서 협의한 사안을 집행하는 政務는 주로 王室이 소속한 王部에서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던 시기에는 部에 소속한 諸加層이 고구려왕의 官僚를 적극 자처하지는 않았다고 이해된다.

당시 고구려왕은 五部에 소속한 지배층인 國人이 共立하였다. 舊고구려 시기부터 王部가 교체된 이후 6대 태조대왕 즉위까지는 이러한 원리에 따라 고구려왕이 推戴되었다. 이 시기 왕위계승은 現王의 直子 우선 계승이라는 원칙하에 現王에게 王位를 감당할 直子가 없으면 왕위계승의 기준점을 先代王으로 소급시켜 후계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혈연적 관계와 함께 신성함을 과시하여 그가 고구려왕으로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國人의 共立은 새 왕이 고구려왕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였다. 國人은 後繼王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명분상의 이유를 들어 우선권을 지닌 후계자가 아닌 다른 인물을 왕으로 추대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지녔다. 따라서 國人의 共論에 따라 고구려왕이 추대되면, 설령 우선권을 지니고 있었던 왕위계승 후보자였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에 따랐다고 이해된다.

國人이 共立하여 推戴한 왕이라는 점에서, 이 당시 고구려왕은 '共立王'으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왕은 '王'으로서 '加'이기도 하였지만 또한 諸加가 共立한 王으로서 '共立王'이기도 하였다. 당시 고구려 王權의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고구려어가 곧 '皆次'이다. '皆次'는 고구려어로 '王'이란 뜻으로, 語義 및 音價 상 신라의 '居西'와 相同한 단어이다. 고구려와 신라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것은, 皆次·居西干을 共立하는 정치구조가 선행한 체제에서 이어진 구조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王部 교체 이후 고구려왕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현안은 舊고구려에서 이탈한 지배세력에 대한 통합 및 정돈이었다. 대내적으로는 특히 유리왕 대에 지배세력의 재편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新왕실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의 재편이 일단락하면서, 각 部에 소속한 전체 諸加가 참여하여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으로 단행한 것이 尉那巖 천도라 하겠다. 유리왕 대 천도는 환인에서 집안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환인 지역 내에서 중심지가 이동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주몽 이후부터 대무신왕 대까지 五部 소속 諸加와 함께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갔다. 특히 대무신왕 대에는 부여를 정벌함으로써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유리왕 대 서쪽 방면으로의 확장을 도모하고 고구려현을 공격하여 중원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하고자 한 것과, 부여 정벌을 통해 예맥사회의 주도권을 차지한 기반 위에서, 남쪽 방면으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면서 한 군현에 附庸하고 있던 諸 세력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고구려왕이 임명한 相이 行政을 통괄하고 이와 별도로 部에 소속한 大加가 租賦를 '統責'하는 구조를 통해, 동옥저와 같은 정복 지역을 지배하였다. 租賦統責權을 지닌 大加는 해당 읍락의 실질 징수를 위임받았다. 이에 大加에게 租賦統責權이 있는 읍락에서 거둔 租賦는 邑落→大加→國家 순으로의 과정을 거쳐 국가로 납부되었다. 이

러한 절차를 마련한 이유는 해당 읍락의 租賦가 국가 운영을 위한 경비와 大加가 속한 部 운영을 위한 경비, 두 가지 차원에서 쓰이는 財源였기 때문이었다. 해당 읍락의 현황을 토대로 租賦의 부과량이 결정되면, 거기에서 국가 운영 경비와 部 운영 경비를 나누고, 大加는 사자, 조의, 선인 등 관원조직의 운영을 포함한 部 운영 경비로써 결정된 얼마간은 둔 뒤, 나머지는 다시 국가에 납부하였던 것이다.

王部 교체 이후 적극적으로 주변 세력을 통합해 나가면서, 새롭게 편입·확장된 영역에서 大加가 租賦統責權을 얻을 수 있는 곳 또한 많아졌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租賦統責權의 획득은 大加에게 뿐만 아니라 小加에게도 매우 긴요한 문제가 되었다. 그 권한이 部 운영을 위한 경비 마련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엔 部에 소속한 諸加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력은 점차 고구려왕으로 집중하였고, 또한 租賦統責權과 같이 諸加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고구려왕과의 결탁이 중요하게 되면서, 각 部에서도 적극적으로 국정 집행 과정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태조대왕 이후 官等을 소지한 部 소속 제가층이 나타나는 양상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고구려에는 主簿, 沛者, 于台 계통의 관등적 지위와 大加, 小加, 古鄒加 계통의 加的 지위가 竝存하고 있었다. 전자는 고구려왕과의 관계에서 왕의 臣僚임을 드러내는 지위이며 諸加層에게만 허용되는 관등이었다. 후자는 이중용립체제 하에서 작동되던, 서로가 王者的 存在로서 기본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지위였다. 五部에 기소속한 諸加는 이미 加的 지위를 지니고 있었으며, 새로 통합된 지역의 지배자는 그 지위를 인정받았을 때에만 고구려 내에서 加로서 편입되고 部에 소속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점차 加로서의 지위보다 고구려왕에게 수여받은 관등으로서의 지위가 정치적·사회적으로 높아져 갔다. 公會 시 主簿 관등 소지자가 취하는 복식이 大加와 같기에 이른 것은 이러한 변화를 담은 사회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國王이 諸加를 포용하여 국정을 이끌어 가려는 의도 또한 반영되었다고 추정된다. 급격히 확장된 영역의 통치에 요구되는 行政力과 支配力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전히 部와의 提携가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새롭게 확장된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는 데에는 이중용립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지배방식이 여전히 유효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정치체제를 무리하게 재편하려고 하기보다는 部에 소속한 諸加의 統主權을 일단 인정한 위에서 諸加가 자발적·주체적으로 새로운 統治理念을 수용하고 이에 걸맞은 체제를 정비하는 데 참여케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새로운 통치이념이란 곧 고구려왕이 諸加가 지배하는 下戶 또한 국왕의 民으로써 직접 통치한다는 이념으로, 민중왕 대부터 賑恤을 통해 표출되었던 이러한 의지는 태조대왕 대에 들어서 더욱 확산되며 政治的으로도 現實化하여 갔으며, 고국천왕 대에는 賑貸의 恒式化로써 制度化하였다. 이러한 時勢 속에 정치권력은 국왕에게 集積하여, 국정은 국왕에 의해 결정되고 국왕의 관료 집단 및 정치기구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가 정립하는 위에서 종래의 읍락사회는 地方으로 재설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체제는 원리상 국왕이 정치권력을 掌握한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國王集權體制'라 부를 수 있다.

국왕집권체제가 공고화하면서 정치권력은 部에 소속하면서가 아니라 고구려왕과의 관계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면서, 종래 諸加의 王者性을 뒷받침하던 統主權은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權力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앙에서 政治權力을 획득하기 위한 현실적 배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앙정치권력을 중심으로 지배세력은 재편되어 '貴族化'·'官僚化'하였고, 또한 새로운 형태의 部로서 '方位名部'가 성립하였다.

태조대왕 대 이후 可視化한 이러한 변동으로 고구려왕은 점차 다른 諸加와는 성격을 달리 하는 존재로서 새롭게 위치하게 되었다. 이제 고구려왕은 諸加가 共立한 왕이 아니라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체제 속에서 모든 民을 통치하는 君主로서의 성격을 띠어 갔다. 국왕집권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나타난 새로운 왕권의 성격이었다. 이에 차대왕 이후의 국왕은 現王 및 先代王과의 혈연관계에 의해 왕위계승의 정통성이 확보되었고, 國人의 共論을 통한 共立은 왕위계승 과정에서 이전과 같은 위상을 지닌 절차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결국 고구려의 국가 성립은, 部를 기반으로 국가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었던 舊고구려를 시야에 두었을 때 보다 입체적이고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중용립체제가 작동하던 舊고구려는 지배계급인 諸加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피지배

층을 지배하고, 이를 강제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놓은 古代社會인 것이다. 그리고 舊고구려 시기부터 존재한 部는 국가가 건설되고 운영되는 데 핵심 기반으로 작동한 조직이었다. 部와 같은 정치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건설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몽의 '건국' 이후 고구려는, 앞선 역사 경험에서 비롯된 현안을 해결해 나가며 이에 동반하여 요구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마련해 나가고 정치권력구조를 새롭게 調整하는, 곧 고대사회의 재편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시야를 고조선으로 확장한다면, 舊고구려, 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도 작동하였던 部에 기반을 둔 정치운영의 원리가 고조선에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제언할 수 있을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에서 공통의 정치운영 원리가 발견되는 이유는 '箕子朝鮮'의 존재를 염두에 두어야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자료가 전무하다시피 한 까닭에, '箕子朝鮮'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신라와 고구려의 역사를 통해 역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론으로 '箕子朝鮮'의 정치체제 또한 그러하였다고 확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석한 바에 토대를 둔다면, 적어도 그러한 정치체제가 없었다고 단정하는 것 또한 합리적인 관점은 아니다. '箕子朝鮮'과 고구려, 그리고 신라의 관계를 고조선사의 계기적 전환 과정 속에서 검토하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參考文獻

1. 資料

「高慈墓誌銘」「廣開土王陵碑」「泉男産墓誌銘」「泉獻誠墓誌銘」「王基墓誌銘」

『三國史記』,『三國遺事』『漢書』,『後漢書』『新唐書』『翰苑』『東史綱目』『修山集』『通典』『梁書』『册府元龜』『舊唐書』『太平御覽』『魏書』『東國李相國集』『南史』『資治通鑑』『高麗史』『孟子』『日本書紀』『朝鮮歷代史略』『新唐書』『唐會要』『元豐類稿』『宣和奉使高麗圖經』

2. 硏究論著

1) 著書

강종훈,『한국고대사 사료비판론』, 교육과학사, 2017.

고구려연구재단,『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2004.

孔錫龜,『高句麗 領域擴張史 硏究』, 書景文化社, 1998.

權五重,『樂浪郡硏究』, 一潮閣, 1992.

권인한 · 김경호 책임 편집,『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3.

琴京淑,『高句麗 前期 政治史 硏究』,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04.

한국고대사 연구회,『한국 고대국가의 형성』, 民音社, 1990.

기수연,『『後漢書』「東夷列傳」 硏究—『三國志』「東夷傳」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백산자료원, 2005.

김기흥,『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사회변동과 관련하여—』, 역사비평사, 1991.

김무림,『고대국어 한자음』, 한국문화사, 2015.

김영하,『한국고대사의 인식과 논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金翰奎,『古代中國的世界秩序硏究』, 一潮閣, 1982.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8.

金貞培,『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6.

金哲埈,『韓國古代國家發達史』, 한국일보社, 1975a.

_____,『韓國古代社會硏究』, 知識産業社, 1975b.

김현숙,『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2005.

盧重國,『百濟政治史硏究』, 一潮閣, 1988.

노태돈,『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文昌魯,『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2000.

朴京哲,『한국고대사의 재인식』, 서경문화사, 2018.

박대재,『의식과 전쟁—고대 국가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책세상, 2003.

朴炳采,『古代國語의 硏究—音韻篇—』, 高麗大學校出版部, 1971.

박준형,『고조선사의 전개』, 서경문화사, 2014.

박찬규,『초기고구려사 연구—삼국지 고구려전과 관련사료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주), 2004.

裵大溫,『古代韓國語槪說』, 螢雪出版社, 2005.

白南雲,『朝鮮社會經濟史』, 東京: 改造社, 1933.

서의식,『新羅의 政治構造와 身分編制』, 혜안, 2010,

여호규,『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014.

歷史學會 編,『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유 엠 부찐,『古朝鮮』, 國史編纂委員會, 1986.

兪昌均,『韓國 古代漢字音의 硏究Ⅰ』, 啓明大學校出版部, 1980.

李景植,『韓國 古代·中世初期 土地制度史—古朝鮮~新羅·渤海—』,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_____,『韓國 中世 土地制度史—朝鮮前期』,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李基白,『韓國古代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96.
李敦柱,『漢字音韻學의 理解』, 塔出版社, 1995.
이동훈,『고구려 중·후기 지배체제 연구』, 서경문화사, 2019.
李丙燾,『韓國古代史硏究』, 博英社, 1976.
李丙燾 譯註,『三國史記(上)』, 乙酉文化社, 1983.
李炳銑,『韓國古代國名地名硏究』, 螢雪出版社, 1982.
이승재,『漢字音으로 본 고구려어 음운체계』, 일조각, 2016.
李玉,『高句麗 民族形成과 社會』, 敎保文庫, 1984.
이인재 엮음,『소장학자들이 본 고구려사』, 혜안, 2018.
李鍾旭,『新羅國家形成史硏究』, 一潮閣, 1982.
_____,『주몽에서 태조대왕까지—고구려의 국가 형성과 성장에 대한 〈모델3〉』,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李賢惠,『三韓社會形成過程硏究』, 一潮閣, 1984.
임기환,『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2004.
전덕재,『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全海宗,『東夷傳의 文獻的 硏究—魏略·三國志·後漢書 東夷關係 記事의 檢討—』, 一潮閣, 1980.
鄭京日 외,『소장학자들이 본 고구려사』, 혜안, 2018.
정광,『삼국시대 한반도의 언어연구—고구려어의 역사비교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박문사, 2011.
정구복 외,『개정증보 역주 삼국사기3—주석편(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2.
鄭寅普,『朝鮮史硏究』上·下, 1946·1947(『薝園 鄭寅普全集』3·4,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3).
조법종,『고조선 고구려사 연구』, 신서원, 2006.
조우연,『天帝之子: 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2019.
중앙문화재연구원 엮음,『고구려 고고학』, 진인진, 2020.

千寬宇 編,『韓國上古史의 爭點』, 一潮閣, 1975.
최광식,『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994.
최남희,『고구려어 연구』, 박이정, 2005.
하일식,『신라 집권 관료제 연구』, 혜안, 2006.

사회과학력사연구소,『고구려편』(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2판)(서울: 백산자료원, 1997).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조선통사(상)』,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고조선사·부여사·구려사·진국사(조선전사 개정판)』,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서울: 백산자료원, 1997).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조선전사』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조선고대사』, 서울: 한마당, 1989).
손영종,『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서울: 백산자료원, 1997).
손영종,『고구려사의 제문제』, 사회과학출판사, 2000(서울: 신서원, 2000).
손영종,『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이지린·강인숙,『고구려역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6(『고구려 역사』, 서울: 논장, 1988).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 편집,『삼국 시기의 사회 경제 구성에 관한 토론집』, 과학원 출판사, 1957.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력사 연구소,『조선통사』(상), 과학원출판사, 1962.
채희국,『고구려력사연구—고구려건국과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 성곽』, 종합대학출판사, 1985(서울: 백산자료원, 1991).

武田幸男,『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1989.

C. Ⅰ 벡위드 지음, 鄭光 번역,『고구려어—일본을 대륙과 연결시켜 주는 언어』, 고구려연구재단, 2006.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경덕 옮김,『그림으로 보는 황금 가지』, 까치, 1995.

2) 論文

강경구,「高句麗 宗廟考」,『고구려의 건국과 시조 숭배』, 학연문화사, 2001.

강인욱,「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동북아역사논총』71, 2021.

姜辰垣,「高句麗 國家祭祀 硏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5a.

_____,「고구려 宗廟制의 전개와 변천」『고구려발해연구』53, 2015b.

_____,「고구려 졸본도읍기 王城의 추이와 전승의 정비」『사림』73, 2020.

高光儀,「樂浪郡 初元 四年 戶口簿 재검토」『목간과 문자』7, 2011.

_____,「충주 고구려비의 판독문 재검토—題額과 干支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98, 2020.

高柄翊,「中國歷代正史의 外國列傳—朝鮮傳을 中心으로—」『大東文化硏究』2, 1966.

권순홍,「고구려 초기의 都城과 改都—태조왕대의 왕실교체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78, 2015.

_____,「도성 관련 용어 검토—'都'·'郭'·'京'을 중심으로—」『사림』62, 2017.

_____,「고구려 도성 연구」, 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9.

권연미,「고구려 고국천왕의 정치개혁과 의미」,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權五榮,「三韓社會 '國'의 구성에 대한 고찰」『한국고대사연구』10, 1995.

權五重,「滄海郡과 遼東東部都尉」『歷史學報』168, 2000.

權仁瀚,『改訂版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 제이앤씨, 2005(개정판, 2009).

權赫允,「漢代 官吏登用制度와 尙書의 關係 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4.

琴京淑,「高句麗의 '那'에 關한 硏究」『江原史學』5, 1989.

_____,「高句麗 前期 戰爭과 王權强化」『한국고대사연구』16, 1999.

奇庚良,「高句麗 王都 硏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金光洙,「高句麗 前半期「加」階級」『建大史學』6, 1982.
_____,「高句麗 建國期의 姓氏賜與」,『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a.
_____,「高句麗 古代 集權國家의 成立에 관한 硏究」, 延世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3b.
_____,「高句麗 初期의 王位繼承 問題」『韓國史硏究』55, 1986.
_____,「古朝鮮·辰國硏究의 動向과「국사」敎科書의 敍述」『歷史敎育』45, 1989a.
_____,「고구려사 연구의 제문제—초기의 국가적 발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韓國上古史學會,『韓國上古史』, 民音社, 1989b.
_____,「高句麗의 '國相'職」,『李元淳敎授停年紀念 歷史學論叢』, 敎學社, 1991.
_____,「古朝鮮 官名의 系統的 理解」『歷史敎育』56, 1994.
_____,「古代國家形成論」, 金容燮敎授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韓國史 認識과 歷史理論』, 知識産業社, 1997.
金洸鎭,「高句麗社會の生産樣式—國家の形成過程を中心として—」『普專學會論集』3, 1937.
金基興,「고구려의 성장과 대외교역」『韓國史論』16, 1987.
_____,「삼국시기 戰爭과 租稅制의 변화」『한국고대사연구』16, 1999.
김나경,「新羅 五廟制 受容의 意味」『한국고대사연구』97, 2020.
김남중,「위만조선과 고구려 초기의 相」『韓國古代史探究』14, 2013.
_____,「箕子 전승의 형성과 단군 신화에의 편입 과정」『韓國史學報』65, 2016.
김미경,「高句麗의 樂浪·帶方地域 進出과 그 支配形態」『學林』17, 1996.
_____,「高句麗 琉璃王代 政治勢力의 再編과 對外政策」『북방사논총』4, 2005.
_____,「高句麗 前期의 對外關係 硏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병곤,「고구려의 태자 책봉제 수용 과정 고찰」『韓國史硏究』153, 2011.
김병준,「낙랑군 동부도위 지역 邊縣과 군현지배」『한국고대사연구』78, 2015.
金聖玹,「高句麗 王部交替期 '皆次' 共立 政治構造의 變轉」,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7.
_____,「中國史書에 나타난 高句麗 初期 王系와 宮의 裔孫化」『高句麗渤海硏究』66, 2020.
_____,「고구려 태조대왕 대 요동 공격의 추이와 宮의 沒年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75차

국내학술대회,『고구려와 발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2021.
김양진,「《고려사(高麗史)》 속의 고려어(高麗語) 연구」『國語學』52, 2008.
김영완,「高句麗 建國에 대한 一硏究」, 明知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3.
金瑛河,「新羅時代 巡守의 性格」『民族文化硏究』14, 1979.
_____,「高句麗의 巡狩制」『歷史學報』106, 1985.
_____,「新羅의 發展段階와 戰爭」『한국고대사연구』4, 1990.
_____,「韓國 古代社會의 政治構造」『한국고대사연구』8, 1995.
_____,「高句麗의 發展과 戰爭」『大東文化硏究』32, 1997.
_____,「三國時代의 王과 權力構造」『韓國史學報』12, 2002
김용선,「高句麗琉璃王考」『歷史學報』87, 1980.
金容燮,「日本·韓國에 있어서의 韓國史敍述」『歷史學報』31, 1966.
金元龍,「三國時代의 開始에 關한 一考察—三國史記와 樂浪郡에 대한 再檢討—」『東亞文化』7, 1967.
김인희,「국어학적 관점에서 본 안재홍의 '기, 지, 치 이론'의 성과와 한계」『語文論集』70, 2017.
金貞培,「君長社會의 發展過程 試論」『百濟文化』12, 1979.
_____,「古朝鮮의 再認識」『韓國史論』14, 1984.
_____,「東北亞의 琵琶形銅劍文化에 대한 綜合的 硏究」『國史館論叢』88, 2000.
金鍾洙,「고구려의 軍制와 그 承繼」『歷史敎育』96, 2005.
김종은,「고구려 초기 천도기사로 살펴본 왕실교체」『숙명한국사론』3, 2003.
金智姬,「高句麗 故國原王의 平壤 移居와 南進」,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16.
金昌謙,「新羅 下代 推戴에 의한 王位繼承의 性格」『淸溪史學』16·17, 2002.
金哲埈,「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李丙燾博士華甲紀念論叢』, 一潮閣, 1956.
_____,「韓國古代社會의 性格과 羅末麗初의 轉換期」,『韓國史時代區分論』, 乙酉文化社, 1970.
金賢淑,「高句麗 初期 那部의 分化와 貴族의 姓氏—《三國史記》 高句麗本紀內 出現人名 분석을 중심으로—」『慶北史學』16, 1993.
_____,「高句麗의 解氏王과 高氏王」『大丘史學』47, 1994.

_____, 「高句麗 前期 那部統治體制의 運營과 變化」『歷史教育論集』20, 1995.
_____, 「'동북공정' 이후 북한의 고구려사 연구동향」『국학연구』21, 2012.
金浩東, 「北아시아 遊牧國家의 君主權」,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1993.
김효진, 「高句麗 王號 '太祖王'의 정립 과정과 의미」『韓國史研究』178, 2017.
나유정, 「『三國志』東夷傳에 나타난 대민지배방식과 民·下戶의 성격」『한국고대사연구』90, 2018.
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研究—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韓國史論』2, 1975.
_____, 「국가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연구입문』, 지식산업사, 1981.
_____, 「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대한 一考察」, 『金哲埈博士華甲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983.
_____, 「朱蒙의 出自傳承과 桂婁部의 기원」『韓國古代史論叢』5, 1993.
_____, 「고구려 초기 王系에 대한 一考察」,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_____, 「고구려의 기원과 국내성 천도」, 김시준 외,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_____,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의 신빙성 검토」, 韓國史學會 編, 『한국사 연구방법의 새로운 모색』, 景仁文化社, 2003.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東明神話의 再生成 現象과 관련하여—」『역사학연구』10, 1980.
盧重國, 「高句麗國相考(上)—初期의 政治體制와 關聯하여—」『韓國學報』16, 1979.
_____, 『百濟政治史研究—國家形成과 支配體制의 變遷을 중심으로—』, 一潮閣, 1988.
_____, 「韓國古代의 邑落의 構造와 性格—國家形成過程과 관련하여—」『大丘史學』38, 1989.
문안식,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보이는 樂浪·靺鞨史料에 관한 檢討—東海岸路를 통한 新羅의 東北方 進出과 土着勢力의 在地基盤의 運動力을 中心으로—」『傳統文化研究』5, 1997.
文昌魯, 「『三國志』 韓傳의 馬韓과 伯濟國—마한의 역사적 실체와 백제국의 성장을 중심으로—」『韓國學論叢』27, 2005.
_____, 「동예의 읍락과 사회상—'不耐濊國'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81, 2016.
朴京哲, 「高句麗軍事力量의 再檢討」『白山學報』35, 1988.
_____, 「最近 北韓學界의 高句麗史研究動向에 關한 小考: 그 認識視點에 對한 批判的 接近」『

白山學報』46, 1996a.
_____, 「高句麗의 國家形成 硏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6b.
_____, 「'高句麗社會'의 發展과 政治的 統合 努力—國家形成期 高句麗史 理解를 위한 前提—」『한국고대사연구』14, 1998.
_____, 「高句麗人의 '國家形成' 認識 試論」『한국고대사연구』28, 2002.
_____, 「고조선·부여의 주민 구성과 종족」『북방사논총』6, 2005.
_____, 「中國 古文獻 資料에 비쳐진 韓國古代史像」『先史와 古代』29, 2008.
박노석, 「졸본부여와 고구려의 관계에 대한 고찰」『全北史學』26, 2003.
_____, 「고구려 초기 왕위 계승의 원리」『대동사학』5, 2005.
_____,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정보 출처에 대한 고찰」『전북사학』38, 2011.
_____, 「고조선대 창해군에 대한 재 고찰」『전북사학』50, 2017.
박대재, 「古朝鮮의 '王'과 國家形成」『북방사논총』7, 2005.
박현숙, 「『三國史記』 百濟本紀 溫祚王條의 檢討」『선사와 고대』10, 1998.
서길수, 「'高句麗'와 '高麗'의 소릿값(音價)에 관한 연구」『高句麗硏究』27, 2007.
徐永大, 「高句麗 平壤遷都의 動機—王權 및 中央集權的 支配體制의 强化과정과 관련하여—」『韓國文化』2, 1981.
_____, 「高句麗 貴族家門의 族祖傳承」『한국고대사연구』8, 1995.
徐毅植, 「古代·中世初 支配勢力硏究의 動向과 「국사」敎科書의 敍述」『歷史敎育』45, 1989.
_____, 「新羅 「中古」期 六部의 部役動員과 地方支配」『韓國史論』23, 1990,
_____, 「新羅上代 '干'層의 形成·分化와 重位制」,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손희하, 「고구려어 재구를 위한 기초적 연구—'王' 자의 고대 새김 재구를 중심으로—」『동북아역사논총』14, 2006.
신인철, 「고구려의 건국과 왕위 계승」『한국문화인류학』27, 1995.
申瀅植, 「三國時代 戰爭의 政治的 意味—《三國史記》戰爭記錄의 綜合的 檢討—」『韓國史硏究』43, 1983.

安在鴻,「箕子朝鮮考」,『朝鮮上古史鑑』上卷, 民友社, 1947.
양시은,「고구려 도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高句麗渤海研究』50, 2014.
양인호,「고구려 前期 정치체제와 執權勢力—최고관직의 변화를 중심으로—」『韓國史學報』72, 2018.
여호규,「압록강 중류유역에서 고구려의 국가 형성」『역사와현실』21, 1996.
_____,「1~4세기 고구려 政治體制 연구」,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7.
_____,「高句麗 初期의 梁貊과 小水貊」『한국고대사연구』25, 2002.
_____,「高句麗의 國家形成과 漢의 對外政策」『軍史』54, 2005.
_____,「고구려 초기 對中戰爭의 전개과정과 그 성격」『동북아역사논총』15, 2007.
_____,「고구려 도성의 의례공간과 왕권의 위상」『한국고대사연구』71, 2013.
_____,「新發見〈高乙德墓誌銘〉을 통해 본 高句麗 末期의 中裏制와 中央官制」『百濟文化』54, 2016.
_____,「高句麗 國內城期의 도성 경관과 토지 이용」『高句麗渤海研究』65, 2019.
吳炫受,「箕子 전승의 확대 과정과 그 역사적 맥락」『大東文化研究』79, 2012.
尹乃鉉,「箕子新考」『韓國史研究』41, 1983.
_____,「古朝鮮의 社會性格」,『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a.
_____,「漢四郡의 樂浪郡과 平壤의 樂浪」『韓國學報』41, 1985b.
윤상열,「고구려 前期 영토편제방식의 재검토」『高句麗渤海研究』51, 2015.
윤선태,「한사군의 역사지리적 변천과 '낙랑군 초원 4년 현별 호구부'」,『낙랑군 호구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0.
윤성용,「高句麗 貴族會議의 成立過程과 그 性格」『한국고대사연구』11, 1997.
尹龍九,「3세기 이전 中國史書에 나타난 韓國古代史像」『한국고대사연구』14, 1998.
_____,「高句麗의 흥기와 幘溝漊」,『고구려의 역사와 대외관계』, 서경문화사, 2006.
_____,「현도군의 군현 지배와 고구려」, 서영수 외,『요동군과 현도군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8.
_____,「소자하 유역의 중국군현과 교통로」,『한중관계사상의 교통로와 거점』, 동북아역사재단, 2011.

윤진석, 「신라 至都盧葛文王의 '攝政'」『한국고대사연구』55, 2009.

이강래, 「『삼국지』 동이전과 한국고대사」『전남사학』25, 2005.

이경섭, 「북한 초기 역사학계의 고대사 인식체계와 구상」『韓國史學史學報』36, 2017.

李景植, 「韓國史硏究와 時代區分論」, 金容燮敎授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刊行委員會 編, 『韓國史認識과 歷史理論』, 知識産業社, 1997.

이규호, 「고구려 對盧의 성격과 역할」『사학연구』127, 2017.

李基文, 「百濟語 硏究와 관련된 諸問題」『백제연구』13, 1982.

李基白, 「高句麗王妃族考」『震檀學報』20, 1959.

_____, 「高句麗의 國家形成 問題」,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一潮閣, 1985.

_____, 「韓國 古代의 祝祭와 裁判」『歷史學報』154, 1997.

이기성, 「일제강점기 '금석병용기'에 대한 일고찰」『韓國上古史學報』68, 2010.

李德星, 「高句麗 五部五族考」, 『朝鮮古代社會硏究』, 正音社, 1949.

이도학, 「高句麗와 夫餘 關係에 관한 再檢討」,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2006.

_____, 「高句麗의 夫餘 出源에 관한 認識의 變遷」『高句麗硏究』27, 2007.

李文基, 「新羅의 六部兵과 그 性格」『歷史敎育論集』27, 2001.

李丙燾, 「高句麗國號考」『서울대학교논문집』3, 1956.

李成制, 「北韓의 高句麗史 硏究와 歷史認識—孫永鍾 교수의 최근 저술에 보이는 고구려사 인식을 중심으로—」『高句麗硏究』18, 2004.

_____, 「玄菟郡의 改編과 高句麗—'夷貊所侵'의 의미와 郡縣의 對應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64, 2011.

_____, 「어느 고구려 무장의 가계와 일대기—새로 발견된 〈高乙德墓誌〉에 대한 譯註와 분석—」『中國古中世史硏究』38, 2015.

이승호, 「부여의 국가구조와 四出道」『한국고대사연구』96, 2019.

李龍範, 「大陸關係史: 古代篇(下)」『白山學報』19, 1975.

이재환, 「신라사 연구에 있어서 '귀족' 개념의 도입 과정」, 『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1 : 한

국 고대사 연구의 시각과 방법』, 사계절, 2014.
이정빈, 「고구려 東盟의 정치의례적 성격과 기능」『한국고대사연구』41, 2006a.
_____, 「3세기 高句麗 諸加會議와 國政運營」『震檀學報』102, 2006b.
_____, 「고구려의 국내성·환도성과 천도」『한국고대사연구』87, 2017.
_____, 「양맥·숙신의 난(難), 변경에서 본 3세기 후반 동아시아와 고구려」『韓國史硏究』187, 2019.
이종록, 「高句麗의 東沃沮 정벌과 樂浪郡」『先史와 古代』49, 2016.
_____, 「高句麗와 玄菟郡의 관계와 幘溝漊 설치 배경 검토」『先史와 古代』55, 2018.
_____, 「1~3세기 고구려의 두만강 유역 지배방식과 책성(柵城)」『역사와 현실』116, 2020.
_____, 「高句麗 초기 梁貊 관계 기사 검토」, 고구려발해학회 제75차 국내학술대회, 『고구려와 발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2021.
李鍾旭, 「高句麗 初期의 左·右輔와 國相」, 『全海宗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一潮閣, 1979.
_____, 「高句麗 初期의 中央政府組織」『東方學志』33, 1982.
_____, 「高句麗 初期의 地方統治制度」『歷史學報』94·95, 1982.
_____, 「韓國 初期國家의 形成·發展段階」『韓國史硏究』67, 1989.
이준성, 「고구려 건국기 '國主'교체와 集權化 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_____, 「고구려 초기 대가(大加)의 성격과 상위 관제(官制)의 작적(爵的 운영」『동북아역사논총』53, 2016.
_____, 「고구려의 형성과 정치체제 변동」,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_____, 「濊君 南閭의 동향과 滄海郡·玄菟郡 설치」『白山學報』116, 2020a.
_____, 「고구려 초기 읍락의 성격과 '부(部)'의 성립—'본유오족(本有五族)'의 의미를 중심으로—」『韓國史硏究』190, 2020b
李賢惠, 「三韓의 '國邑'과 그 成長에 대하여」『歷史學報』69, 1976.
_____, 「新進化論의 이해와 적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歷史學報』146, 1995.
李昊榮, 「韓國 古代社會의 災害와 救貧策—三國 및 統一新羅時代를 中心으로—」『史學志』5, 1971.

李弘稙, 「「高句麗祕記」考—附 三國末期의 讖緯的記事의 考察—」『歷史學報』17·18, 1962.
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 成立過程의 硏究」, 慶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_____, 「고구려 王號의 변천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28, 2002.
_____, 「고구려와 낙랑군의 관계」『한국고대사연구』34, 2004.
_____, 「고구려본기 전거 자료의 계통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42, 2006.
_____, 「고구려 國內都城의 형성과 공간 구성—문헌 검토를 중심으로—」『韓國史學報』59, 2015.
_____,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광개토왕비문의 北夫餘, 東夫餘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54, 2016.
_____, 「고구려 초기 消奴部, 桂婁部의 형성과 卒本」『사학연구』136, 2019.
임찬경, 「조선 즉 위만조선과 창해군의 위치에 관한 연구」『국학연구』22, 2018.
장병진, 「초기 고구려의 주도세력과 현도군」『한국고대사연구』77, 2015.
_____, 「고구려의 영동지역 진출과 관할 방식」『동북아역사논총』58, 2017.
_____, 「고구려의 성립과 전기 지배체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장지연, 「고려 초 卽位儀禮와 喪禮를 통해 본 권위의 성격」『한국중세사연구』47, 2016.
全京秀, 「신진화론과 국가형성론—인류학이론의 올바른 적용을 위하여—」『韓國史論』19, 1988.
전덕재, 「삼국과 통일신라시대 가뭄 발생 현황과 정부의 대책」『韓國史硏究』160, 2013.
_____, 「『三國史記』 高句麗本紀의 原典과 完成—광개토왕대 이전 기록을 중심으로—」『東洋學』64, 2016.
田美姬, 「高句麗初期 王室交替와 五部」, 『水邨朴永錫敎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上, 探求堂, 1992.
鄭求福,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三國史記의 기록과 관련하여—」『호서사학』19·20, 1992.
정동준, 「경제적 측면에서 본 고대사회의 진휼」『한국고대사연구』99, 2020.
鄭鍾泰, 「高句麗形成過程에 對한 一硏究—初期 王權의 性格變化를 中心으로—」, 明知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4.
정호섭, 「集安 高句麗碑의 性格과 주변의 高句麗 古墳」『한국고대사연구』70, 2013.

趙法鍾,「三國時代 民·百姓의 槪念과 性格에 대한 검토」『百濟文化』25, 1996.
_____,「衛滿朝鮮의 對漢 戰爭과 降漢諸侯國의 性格」『先史와 古代』14, 2000.
_____,「고구려 사회의 檀君認識과 종교문화적 특징—蘇塗文化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21, 2001.
_____,「신라왕권과 노비제」『新羅文化』22, 2003a.
_____,「고구려 사회·경제사의 연구 현황과 과제」『한국고대사연구』32, 2003b.
_____,「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단군 인식 검토—한국 고대 동물숭배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단군학연구』12, 2005a.
_____,「한국 고대사회의 고조선·단군인식 연구—고조선·고구려시기 단군인식의 계승성을 중심으로—」『先史와 古代』23, 2005b.
_____,「고구려 초기도읍과 비류국성 연구」『白山學報』77, 2007
조상현,「『삼국유사』의 삼국 '全盛時期 戶口' 기사 검토」『한국고대사연구』56, 2009.
조영광,「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동북아역사논총』27, 2010.
_____,「高句麗 初期의 國家 形成」,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1.
_____,「예맥 족명과 부여, 고구려 국호의 유래와 의미」『先史와古代』44, 2015a.
_____,「고구려 초기 관등의 기원과 성격에 대하여」『사학연구』119, 2015b.
_____,「고구려 王都, 王畿의 형성 과정과 성격」『한국고대사연구』81, 2016.
_____,「포스트 동북공정, 중국의 고구려 국가형성 및 초기 정치체제 연구 동향」『한국학논총』47, 2017.
조우연,「고구려의 왕실조상제사—4~5세기 '始祖 朱蒙의 위상과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고대사연구』60, 2010.
조원진,「기자조선 연구의 성과와 과제」『단군학연구』20, 2009.
趙仁成,「慕本人 杜魯—高句麗의 殉葬과 守墓制에 관한 一檢討—」『歷史學報』87, 1980.
_____,「4,5세기 高句麗 王室의 世系認識 變化」『한국고대사연구』4, 1990.
조재형,「고조선어 연구사—한국의 고조선어 연구 경향과 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북방사연구소 편,

『고조선의 언어계통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8.
朱甫暾,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一潮閣, 199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 『韓國學報』2, 1976.
崔光植, 「古代國家形成에 對한 理論的 檢討」 『新羅文化』3·4, 1987.
崔南善, 「朝鮮의 黎明」, 『故事通』(『六堂崔南善全集』7, 역락, 2003).
최슬기, 「蒼海郡 위치비정의 쟁점과 전제」 『고조선단군학』44, 2021.
한문호, 「高句麗 建國年代에 대한 一考察」,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한영화, 「신라의 刑政과 理方府」 『사학연구』133, 2019.
洪承基, 「1~3世紀의 「民」의 存在形態에 대한 一考察—所謂「下戶」의 實體와 관련하여—」 『歷史學報』63, 1974.
홍승현, 「後漢時期 邊郡 통치의 변화와 樂浪郡—王調 반란의 분석을 중심으로—」 『韓國史學報』61, 2015.

今西龍, 「高句麗五族五部考」 『史林』6-3, 1921(『朝鮮古史の硏究』, 國書刊行會, 1970).
那珂通世, 「朝鮮古史考」 『史學雜誌』5-3~7-10, 1894~1896(「外交繹史」, 『那珂通世遺書』, 大日本圖書株式會社, 1915).
末松保和, 「玄菟郡の戶口数について」, 『和田博士古稀記念 東洋史論叢』, 講談社, 1961.
白鳥庫吉, 「丸都城及國內城考」 『史學雜誌』25-4·5, 1914(『白鳥庫吉全集3—朝鮮史硏究』, 岩波書店, 1970).
三品彰英, 「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原典批判」 『大谷大學硏究年報』6, 1953.
_____, 「高句麗の五族について」 『朝鮮學報』6, 1954.
野尻忠, 「律令制下の賑給使と地方支配機構」 『史學雜誌』110-9, 2001.
玉井英夫, 「賑給について」 『歷史硏究』18, 1980.
田中俊明, 「高句麗の興起と玄菟郡」 『朝鮮文化硏究』1, 1994.
池內宏, 「高句麗の五族及び五部」 『東洋學報』16-1, 1926(『滿鮮史硏究』上世第1冊, 吉川弘文館, 1951).

池內宏,「高句麗の開國傳說と史上の事實」『東洋學報』28-2, 1941.

_____,「眞番郡の位置について」『史學雜誌』57-2・3, 1947(『滿鮮史研究』上世第1冊, 吉川弘文館, 1951).

津田左右吉,「三國史記高句麗本紀の批判」,『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9, 1922.

和田淸,「玄菟郡考」『東方學』1, 1951(『東亞史研究(滿洲篇)』, 東洋文庫, 1955).

日 文 抄 錄

高句麗初期における支配勢力の再編と政治体制の変動

金聖玹
ソウル大学校大学院
社会教育科 歴史専攻

本稿では、韓国の古代社会の表徴である「部」を分析対象にして、支配層が国政に参与して政治を運営した原理と様相を究明した。そのため、古朝鮮及び「旧高句麗」社会と有機的な連結の中で、高句麗の国家成立の過程に系統的にアプローチし、朱蒙を求心点として成立した高句麗初期の歴史が古代社会の再編の過程であったということを明らかにした。

紀元前2世紀の後半に、旧高句麗は衛氏朝鮮や「濊」と共に東夷地域を代表する政治勢力であった。また旧高句麗には諸加が連帯して構成した政治組織の「部」が成立していたのであった。部の中核とされる諸加は、独立の政治力をもった王者であり、「加」の王者性は加が諸邑落を統主することから生じる行政的・軍事的・経済的などの支配権に基づいたものであった。諸加は連帯を通じて部を組織し、累層に疊築して上位権力を創出することによって自分の支配権をより鞏固化させた。すなわち、上部国家としての旧高句麗であり、その王としての高句麗王の存在であった。

高句麗王は五部に所属した支配層の国人によって共立された。国人の共立は新たな王が高句麗王としての正統性を確保するための重要な手順であった。そのため、たとえ現

王の直子の優先継承という原則のもとに優先権をもっていた候補者であったとしても、国人の決定を受容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とされる。この点で、当時の高句麗王は「共立王」としての性格があったと言うことができる。こうした性格を表す高句麗語は「皆次」である。「皆次」は語義及び音價上の新羅語の「居西」と相同の言葉である。高句麗と新羅で、このような共通点が発見される理由は、「皆次」や「居西干」を共立する政治構造が先行の体制から継承され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

この時期の政治体制は、王者的な存在の諸加がまた上位王者としての高句麗王を聳立する前提の上で成り立っていた点から見ると、「二重聳立体制」と呼ばれる。二重聳立体制の上で、政治権力は部から生成・保持され、諸加は各部に所属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権力を享有することができた。このような権力は、諸加が主体となって高句麗を建設したことから発生した国家権力を各部が分有した形態であった。高句麗王も部に所属して政治権力を獲得することができた。

しかし、玄菟郡の設置や逐出の過程で、旧高句麗の王部としての消奴部とその王室としての沸流国がもっていた主導権と影響力は次第に微弱となってきた。従来の対漢関係を導いた旧高句麗の王室の立場は、旧高句麗の国政を主導する新たな人物が擡頭すれば王統すら変わってしまうほど、相当劣悪であった。そこで、朱蒙が登場したのであった。旧高句麗の王室であった沸流国王の松譲の投降によって、朱蒙は新しい王室を開創し、これにより高句麗の王部は消奴部から桂婁部に交替された。

王部の交替の当代には、朱蒙が高句麗を「建国」したという認識より、旧高句麗を「継承」したという認識が普遍的だったと推定される。朱蒙の高句麗の「建国」は、彼が国家の始祖として確固に位置づけられながら現れた象徴的な表現だと言える。朱蒙は、新しい国家を建設したというよりも、すでに存在していた「高句麗」を「継承」して即位したのであった。従って、旧高句麗を継承した上で成立した高句麗の国政は、しばらくの間は旧高句麗から運営されてきた組織と秩序に基づいて展開された。部を中枢とした国家運営体系の維持である。

諸加は部に所属する加として諸加会議に参加して、国家の重大事に関して審議・決定し、ここから決定されたことを施行する権限は高句麗王に委任された。諸加会議は国中大

会で開催された会議を含めた定期の諸加会議と、諸加の共論によって事案を議論した別の会議機構で構成され、また、平時に小規模で運営された諸加会議には、各部の代表としての大加が参加したと推定される。大加は、勢力的な側面にも大者であったが、同時に国政の運営上の一種の政治的な地位であった。

一方、王部が交替された後、高句麗王に要求された政治的な懸案は、旧高句麗から離脱した支配勢力に対する統合であった。対内的には、特に琉璃王代に支配勢力の再編が一段落つくと、各部に所属していた全体の諸加が参加して国政を運営することができる空間の必要性のために断行されたのが尉那巖への遷都であった。

対外的には、朱蒙から大武神王代までに五部に所属した諸加と共に積極的に周辺の勢力を統合してきた。特に、大武神王代の扶餘の征伐によって、濊貊社会の主導権を掌握した。また、琉璃王代に西方への拡張を企図し、高句麗県を攻撃して中原の勢力の影響力を抑制しようとしたことと、扶餘の征伐による濊貊社会の主導権を掌握した基盤の上で、南方に勢力圏を拡大しながら、漢の郡県に付庸していた諸勢力を統合しようとした。この過程の中で、政治権力は高句麗王へ集中しはじめ、また租賦統責権ように諸加の経済的な基盤を拡大することができる権限を分配するのに、高句麗王との結託が重要とされて、各部も積極的に国政の執行の過程に参与し始めた。太祖大王代の以後から官等を持つ部の所属の諸加層が現れる様相はこうした文脈で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

高句麗王も諸加を包容しながら国政を運営しようとした。急激に拡張された領域を統治するのに要求される行政力や支配力を充当するためには、部との提携が依然として必要であった。新たに拡張された領域を効率的に統治するのに、二重聳立体制に基づいて運営されてきた支配方式が有効であった。従って、既存の政治体制を無理に再編するより、部に所属していた諸加の統主権を認定した上で、諸加が自発的と主体的に新しい統治理念を受容し、彼らがこれに適合な体制を整備するのに参与させてきた。

新しい統治理念とは、すなわち高句麗王が諸加の支配の下戸もまた国王の民として直接に統治するという理念であり、閔中王から賑恤を通じて表出された意思は太祖大王代に入ってさらに拡散されて政治的にも現実となり、故国川王代には、賑貸の恒式化として制度化された。このような時勢の中で、政治権力は国王に集積され、国政は、国王によっ

て決定され、国王の官僚と政治機構により運営し、国王を頂点とする支配秩序が定立した上で、従来の邑落社会を「地方」と再設定した。このような点を特徴とする政治体制は、国王が原理的に政治権力を掌握した上で行われた点に着目すれば、「国王集権体制」と呼ぶことができる。

国王集権体制を鞏固にしながら、政治権力の獲得は部に所属するのではなく、高句麗王との関係を通じることによって獲得された。このようにして、従来の諸加の王者性を支える統主権は地方社会を実質的に支配するための権力として転換されたり、また中央から政治権力を獲得するための現実的な背景として作用したりした。そして、このような過程を通じて、支配勢力は中央政治権力を中心として再編され、「貴族化」・「官僚化」し、新しい形態の部としての「方位名部」が成立した。

太祖大王代から可視化されたこうした変動によって、高句麗王は諸加とは性格の異なる存在として新たに位置づけられてきた。つまり、諸加が共立した王だったのではなく、国王を頂点とする支配体制上、すべての民を統治する君主の性格であった。国王集権体制を整備しながら現れた新しい性格の王権である。よって、次大王以後の国王は現王及び先代王との血縁関係により王位継承の正統性が確保され、国人の共論による共立の王位継承への位相は以前とは異なるものとなった。

結局、二重聳立体制が行われた旧高句麗は、支配階級であった諸加が自分の利益を維持するために被支配層を支配し、これを強制し正当化することができる制度を用意した古代社會であったと言える。旧高句麗から存在した部は国家が建設・運営されるのに核心基盤であった。従って、朱蒙の「建国」以後の高句麗は、先行した歴史の経験から発生した懸案を解決しながら、それに伴って、新しい政治体制を準備していき政治権力構造を新たに調整した、すなわち古代社会の再編の過程として理解することができよう。

キーワード： 旧高句麗，部，諸加，二重聳立体制，国王集権体制
学籍番号：2017-34448